

軍



Military History

2020.6. 제115호

史

- 6·25전쟁기 노무단의 구성과 활동
- 한국군의 초기 서독 군사유학 경험과 그 영향
- 고려시대 평양[서경]의 위상과 성곽체제
- 조선시대 密符의 제도와 운용
- 미국해군제독 슈펠트와 조미수교(朝美修交)
-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중심으로(1880-1882)

[서 평]

-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중국과 소련의 협력과 갈등

[자료소개]

-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해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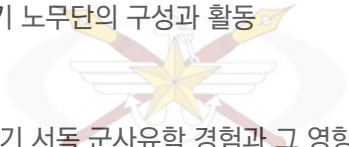
軍史

第115號
2020. 6.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20. 6. 제115호

- 
- 1 ▶ 6·25전쟁기 노무단의 구성과 활동 나상철
- 45 ▶ 한국군의 초기 서독 군사유학 경험과 그 영향 김도민
- 91 ▶ 고려시대 평양[서경]의 위상과 성곽체제 신안식
- 121 ▶ 조선시대 密符의 제도와 운용 노인환
- 167 ▶ 미국해군제독 슈펠트와 조미수교(朝美修交) 최덕규
-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중심으로(1880-1882)



軍史



Contents | 2020. 6. 제115호

[서 평]

- 215 ▶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중국과 소련의 협력과 갈등 김지훈
- 정형아 저, 『동아시아 전후 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자료소개]

- 231 ▶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해제 이상호

부 록

1. 연구소 동정 261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262
3. 『軍史』誌 投稿案内 264
4. 연구윤리예규 267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1-44
<https://doi.org/10.29212/mh.2020..11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기 노무단의 구성과 활동*

나상철**

1. 머리말
2. UN군의 노무인력 수요와 한국노무단(KSC) 창설
3. 한국노무단(KSC)의 조직과 운용
4. 진중 노무와 한국노무단(KSC)의 성격
5. 맺음말

1. 머리말

해방 이후 정부수립기는 국제적인 이념 대립과 국론이 분열되는 가운데 신생 자주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담금질이 한창이었던 시기였다. 특히 국방은 군사조직의 난립과 군 내 공산주의 세력 숙청 등의 혼란과 1946년 국방경비대 창설, 1948년 ‘국군조직

* 본고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한국전쟁기 UN군 한국노무단(KSC)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법' 시행, 1949년 '병역법' 시행 등 건군의 노력이 병존했다. 그러나 병사구사령부의 해체나 지원병제로의 변경과 같은 병무의 혼란은 상비전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전력 동원 체제 성립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같은 시기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 축소를 감행해, 일본 점령군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각종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 그 결과, 한국전쟁 개전 초 국군의 병역제도는 마비되었고, 미군 역시 대규모의 인적·물적 손실을 맞게 됨에 따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두징집과 같은 전근대적 전쟁 양상이 발현되었다. 특히 민간인 동원은 일제 강점기의 근로보국대를 환기시킬 만큼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비공식적인 군역이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을 기점으로 국가 기능이 가시적으로 회복되면서 동원의 양상도 변하게 되었으며, 그 변곡점은 1951년 7월, 한국노무단(Korean Service Corps, KSC)이 조직되기 전후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KSC는 미군을 필두로 한 UN군의 필요에 따라 태동 및 활용되었다. 여기에서 필요란 첫째,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이 UN군의 작전수행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둘째, UN군을 지휘하는 동시에 군비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을 갖고 있었던 미군에게 태평양 전역에서와 같이 현지 인력을 저렴한 임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국의 병력을 절약하는 기능적 최적점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노무부대 운영은, 한국전쟁의 거시사적 특수성에 가려져 있던 한 역사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군사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성'¹⁾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시 노무 동원의 양상을 발굴하고 고찰하는 것은 한국전쟁을 개관하는 데 있어 주요한 단초가 된다.

1) Van Fleet, HOW WE CAN WIN WITH WHAT WE HAVE, LIFE, 1953.

한국전쟁 중 노무인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노무자에 대한 이해와 해석방법이 대동소이하다.²⁾ 선행연구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KSC의 특성 중 창설 배경이나 구성과 같은, 정책적 범주의 것을 연구의 주요 골자로 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정책의 연결고리가 되는 지점, 이를테면 제5군단³⁾이 KSC로 전환되는 과정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는 노무 요원을 ‘영웅’으로 규정하여, 국가와 군이 행정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휘한 강압성이 축소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사사적 관점에서, 한국전쟁에서 운용된 노무인력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주목하여, 노무 정책의 종착점인 KSC의 창설에 이르는 사건과 정책의 연결지점과 개연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로 전쟁의 한 모습을 그려내어 군사사의 기조를 입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2) 김병곤, 「한국전쟁 기간 중 한국노무단(KSC)에 대하여」, 『군사』 23, 전사편찬위원회, 1991 ; 양영조, 「한국전쟁 시 노무동원과 운영에 관한 연구」, 『군사』 29, 국방군사연구소, 1994 ; 양영조, 「한국전쟁 시 한국노무단(KSC)의 운용과 성격」, 『군사논단』 54, 한국군사학회, 2008 ; 국방군사연구소,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 1995.

3) 본고의 모든 “제5군단”은 1951년 5월 5일 창설되어 동년 11월 1일 해체된 부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1953년도에 창설된 ‘제5군단’과 동명이나 다른 부대이다. 1951년 당시 해당 군단 명 뒤에는 “(예비)”를 붙여 구분하였다(육본 일반명령 51호(1951.5.2.)), 육본 일반명령 93호(1951.6.26.)). 그러나 본고는 1953년도의 제5군단을 다루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예비)”를 생략한 “제5군단”으로 명명한다.

2. UN군의 노무인력 수요와 한국노무단(KSC) 창설

한국전쟁 개전 초 국군과 미군은 모두 병력부족 문제에 부딪혔다. 국군의 병력부족 원인이 군의 조직화와 인프라의 결여라고 한다면, 미군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의 규모가 급속히 줄어든 상태에서 극동군 내에는 물자와 인력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고 소수의 병력으로 일본 열도에서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며 교육훈련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는 군수품을 급히 수송해야 했던 전쟁 초기부터 두드러졌다.

낙동강을 연해 전선이 형성되자 군은 어렵게 하역한 물자를 또다시 전선의 침단으로 수송해야 했는데, 이때 수송 체계의 열악함과 협준한 산악지형은 큰 장애 요인이었다. 때문에 국군은 1950년 7월 초의 계엄령과, 같은 달 말일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으로 조악한 형태로나마 민간인을 노무인력으로 포진시켰다. 그리고 미군은 민간인을 각종 계약 형태로 채용해 전문직으로부터 비숙련 노동에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인천상륙작전으로 UN군이 북진하자 이러한 노무인력 동원 체계는 장애에 부딪혔다. 빠른 속도로 진격하는 UN군에게 물자를 보급하는 데 있어, 앞서 북한군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파괴한 도로망, 전투부대와 함께 기동하는 추진 군수 기지 운영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발생한 많은 군수품의 재보급 필요는 더욱 많은 노무인력 소요를 낳았다. 그러나 기혼인 노무자는 대체로 북진을 희망하지 않았고⁴⁾, 피난민 중 고용 또는 징집된 이들은 군과 함께 북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향 일대에서 부대를 이탈하여 인력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남한의 징발 관련 법제를 적용받지 않는 북한

4) 미군과 달리 무임금으로 노무자를 운용한 국군 역시 희망자는 북진 간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양양문화원, 『양양의 6·25 비화』, 2009, p.223).

지역에서는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 그 결과, 전투부대로 도달하는 보급수송의 최종 연결고리로 노무인력은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동시에 그 확보가 더욱 긴요해졌다.

1950년 12월 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의 후임, 리지웨이 장군의 부임으로 작전은 ‘축차진지 상에서의 방어 작전 반복’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남하하던 전선은 한반도의 종적 중앙에서 고착되어 고지쟁탈전이 시작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대대적인 축성 공사에 돌입하기 위해 1950년 12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며 3만 명의 노무자와 축성 공구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음날 미 제8군사령부가 소재한 대구에서 1만 명을 미군에 우선 지원했다.⁵⁾ 이러한 일련의 전략적 시의와 더불어 UN군은 노무인력을 전술적 필요에 따라 노무 부대(Labor Unit)로 군 조직화 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미 제8군은 국군이 한국인 노무자를 통제하여 조직 효율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로, 1951년 3월 미 제8군 수송과의 감독 및 통제를 받는⁶⁾ 민간인수송단(CTC)을 창설한다.⁷⁾ 전선으로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축 혹은 인력에 의한 방법을 고려한 결과, 전자의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후자의 안이 선정된 것이었다.⁸⁾

5) Harold H. Martin, *Soldier: the memoirs of Matthew B. Ridgway*, Harper, 1956, p.207.

6) EUSAK, Transmittal of Indigenous Labor Policy and new Wage Scales, 1951. 4. 14. ; Lynn Montross,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vol. IV, US Marine Corps, Historical Branch, 1954, p.86 ; KSC가 창설되면 KSC를 관리하기 위해 미 제8군 군수참모부(G-4) 예하에 노무과(Labor Section)가 신설되자 CTC에 대한 관리도 해 부서로 이관된다(Austin, Stephan D., Kim Tae Sam, *United States Army Korean Service Corps*, 2000, p.231).

7) 미군이 버마전선에서 활용한 CTC(Civil Transport Corps)와는 이름은 같으나 다른 조직이다(John Grehan, Martin Mace, *The Fall of Burma 1941-1943*, Pen and Sword Military, 2015, p.196).

8) EUASK,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EUSAK), 1952, p.65.

CTC의 편제는 인가병력은 약 2만 명으로, 각 240명으로 구성된 82개 운수 중대 규모였다.⁹⁾ 그러나 3월 말, 실제 충원은 65개 중대 수준에 머물게 되고 동년 8월에는 KSC 창설로 인해 67개 중대, 13,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편성 계획 대비 차질이 발생한 것은 창설 당시는 국민방위군 중 일부의 현역 부적격자로 지목된 인원을 구성원으로 확보¹⁰⁾하였으나, 동시에 구성원의 일부를 지원제로 모집했기 때문이었다.¹¹⁾

미군의 노무인력 조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 무단결근 및 작업 현장 이탈, 보급 속도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¹²⁾, 절도와 손실에 의한 보급품 훼손, 인력의 잦은 교체와 같은 일련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은 CTC와 병행하여 노무자를 별도로 고용해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노무인력 운영에 관한 건 일체의 통합 기도에 불합치 하는 것이었다.¹³⁾ 그 결과, 미군은 무분별한 고용을 제한하고 더욱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1951년 하절기에 KSC 창설을 구상하고 창설 관련 문서를 동년 7월 14일 배부한다.¹⁴⁾

9) FEC & EUSAK(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I ch.Ⅲ, 1955, p.17.

10)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US ARM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88, p.352 ; Austin, Stephan D., Kim Tae Sam, United States Army Korean Service Corps, p.39 ; 노무자 일부가 개인 의사 확인과 같은 별도의 조치 없이 CTC로, 다시 KSC로 소속이 변경된 사례도 있다. “노무자로 있다가 전후방 교류를 해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CTC더라고 그러다가 다시 KSC가 되었어.”(진○○ 증언. 의정부 / 구술일시 2018. 7. 11.(목), 12:30~15:30 / 녹취: 나상철).

11) Austin, Stephan D., Kim Tae Sam, United States Army Korean Service Corps, p.229.

12) JLCOM,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25 August 1950 to 31 August 1951, 1952, p.57.

13) EUASK,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EUSAK), p.67.

14) EUSAK, AG 322 KGLK,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1951. 7. 14. ; EUASK Hq,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EUSAK), p.34.

공산군에 의해 남한 시민이 의용군과 노무인력으로 동원되자, 한국은 다수의 시민이 공산군의 진영에서 부역하는 것을 거부하고 약 50만 명의 예비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설치법’을 공포하고 국민방위군을 창설한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은 지휘부의 비리로 질병과 기아에 의한 사망자가 속출해 1951년 5월 12일부로 ‘예비병의 유지·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앞으로 ‘병역법’에 흡수·보완함’이라는 흔적을 남기고 해체되었다. 그리고 국민방위군은 CTC와 더불어 KSC 계보의 한 축으로 역할이 전환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민방위군은 해체되었지만, 군은 육본 일반명령 제51호(1951. 5. 2.)를 발령, 해체와 동 시간부로 제5군단을 창설한다. 인원과 장비의 상당수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제5군단은 호국군과 국민방위군의 계보를 이어 예비병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책의 연장 선상에 있었다. 해당 명령 중 관련 내용을 갈무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부대창설

1. 단기4284년 5월 5일 영시부 좌기 부대창설을 확인한다.

부대명	사령부	예하 연대 / 위치					
제101사단(예비)	마산	101	마산	102	마산	103	진주
제102사단(예비)	통영	105	통영	106	통영	107	삼천포
제103사단(예비)	울산	108	방어진	109	온양	110	서생
제105사단(예비)	창녕	111	창녕	112	밀양	113	청도
제106사단(예비)	여수	115	여수	116	여수	117	순천

부대창설

3-1. 단기4284년 5월 5일 영시부 대구에 제5군단(예비군단)

사령부를 창설한다.

3-3. 편성인원은 해체하는 국민방위국 소속인원으로서 편성한다.

위 명령을 살펴보면 국민방위군과 제5군단의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제5군단의 편성인원은 국민방위군의 구성원이 이어서 말도록 되어 있었고 각 부대의 위치 역시 국민방위군의 그것과 대부분 일치한다.

군단의 편제상 인가 병력은 장교 2,302명, 사병 51,864명¹⁵⁾이었으나 실제로는 인가된 병력을 충족할 수 없었다. 육본 일반명령 제132호(1951. 9. 17.)로 제102 · 106사단¹⁶⁾의 과부족한 4개 연대(제105 · 106 · 115 · 116연대)가 해체되자 군단은 사단별 병력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군단의 병력은 다음 작전지시 제58호(1951. 6. 7.)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제5군단장은 신체부적자의 제대가 완료하는 대로 좌기 예비사단을 이동시키라

제101예비사단(병력 약 2,000명)을 현 위치 마산부근으로부터 서울에 이동하여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미 제1군단장의 작전지휘를 바드라
제105예비사단(병력 약 3,000명)을 현위치 대전부근으로부터 춘천에 이동하여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미 제9군단장의 작전지휘를 바드라
제103예비사단(병력 약 2,600명)을 울산 부근 현위치로부터 원주에 이동하여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미 제10군단장의 작전지휘를 바드라

위 문서는 동년 10월 15일 육본 명령 제149호에 의거 해체되는 제102 · 106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사단의 부대이동을 지시하고 있다. 각 사단은 각각 2,000명, 3,000명, 2,600명으로 사단의

15) 육본 일반명령 제51호(1951. 5. 2.) 별표.

16) 당시 제5군단 예하의 예비 사단은 '제***예비사단', '예비연대제*중대'로 기술되었다(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70-83, 1985). 본 논문에서는 후일 1952년 3월 13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47호에 의해 부대명이 '예비사단'에서 '근무사단'으로 변경된 것을 포괄하여 '제***사단'으로 통일해 기술한다.

인가 병력 기준인 11,258명 대비 각각 17.7%, 26.6%, 23.0%로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꾸려졌다.

그런데 편제 대비 인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각 사단이 창설 한 달 만에 전선의 직후방인 서울, 춘천, 원주까지 이동해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미군의 제5군단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군은 1951년 2월 19일 국군에게 한국인 노무자 추가지원을 요청한다. 이에 정일권 총장은 “국민방위군을 한국인 노무자 대신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는 요지의 답신¹⁷⁾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영향인지 1951년 3월에 창설된 CTC로 국민방위군의 다수가 차출되었다.¹⁸⁾ 이어서 1951년 4월 15일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으로 부산항에 도착한 밴 플리트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고 전선을 시찰하며 전황을 파악했다. 이때 야전부대로부터 한국인 노무자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하기 위한 건의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한국군에 의한 노무자 통제’안 즉 KSC 조직안이 도출되었다.¹⁹⁾

그런데 이러한 전문이 오고간 후 3개월, CTC가 조직된 후 2개월 그리고 신임 미 제8군의 사령관이 부임한 후 불과 1개월 뒤 국민방위군은 해체되었고 사실상 이름만 바뀌어 제5군단이 창설되었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노무인력 지원요청에 대한 국군의 국민방위군, 다시 말해 제5군단으로 부대명이 바뀐 국군 예비병력의 지원의사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KSC의 창설 이전이라도 선약에

17) Chung Il Kwon, Major General, ROK Army Chief of Staff, Use of Indigenous Labor, 1951. 2. 21.

18) Austin, Stephan D., Kim Tae Sam, United States Army Korean Service Corps, p.39.

19) Austin, Stephan D., Kim Tae Sam, United States Army Korean Service Corps, p.230.

따라 공비토벌에 투입된 제102 · 106사단을 제외한 제5군단 예하의 3개 사단 즉 제101 · 103 · 105사단의 파견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국군은 부대이동 지시를 통해 3개 예비사단을 각 미 군단의 작전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미군은 CTC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고착된 전선에서 미군의 병력을 절약하되, 지휘체계가 강하고 일정 규모를 유지한 노무 조직을 편성하려 한다. 이토록 복합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1951년 6월 13일, 미 제8군 부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5군단을 기간으로 하여 사단별 6개 연대로 구성된, 국문으로는 “한국 노무단”²⁰⁾, 영문으로는 “KSC”²¹⁾ 편성을 제시하며 그것을 최단기간 내에 조직해 줄 것을 요청²²⁾한다. 이 대통령이 이에 응함에 따라 미 제8군 군수참모부는 노무처를 신설하고 기존에 수송장교의 통제를 받던 CTC에 관한 건을 노무처로 이관²³⁾하는 등 본격적인 창설 작업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1951년 7월 14일, 인력 수급 행정 외 보급 일체를 미군이 담당하며 해당 부대는 미군에 ‘예속’된다는 요지의 KSC 조직에 관한 공식 문건이 하달되었다.

이에 국군은 제5군단을 KSC로 재편해야 했다. 국군은 단지 국민 방위군의 후신으로 예비병력 통합을 위해 제5군단을 창설하였을 뿐

20) 「주한미제팔군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대한민국대통령에게 보내는 뱃새-지(BA0135213)」, 1951. 6. 17., 소장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21) EUASK, UNCAACK, Clothing and Equipage for the Korean Service Corps, 1951. 7. 13.

22) 1951년 4월 한국 정부와 미군 간 협의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 단, 동년 12월 28일 미 제8군 참모장 무드 준장이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공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공한은 노무자동원에 대하여 귀정부에서 부담○비용에 대해서 뽀푸리트 장군에게 보낸 1951년 12월 20일부 귀공한에 대한 면한입니다. (중략) 우리는 1951년 12월 20일부 귀공한에 비추워 1951년 4월 12일부 귀공한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일선노무자동원경비배부에 관한건(BA0084189)」, 1952. 5. 24., 소장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23) 김병곤, 「한국전쟁 기간 중 한국노무단(KSC)에 대하여」, pp.242-256.

이며, 선협적으로 군단이 KSC로의 기능적 변모를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각 사단은 3개의 예비 보병연대를 보유하고 있어 미군의 KSC 편성에 합치하는 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군과 미군의 정책 시행에서 시간상 오차는 KSC가 7월이 아니라 더 뒤에 창설되었다는 노무자 출신자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육군은 8월 19일 일반명령 제121호를 하달한다. 이 명령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료상 최초로 “근무군단사령부”를 언급한 것으로 그 창설과 제5군단이 이를 겸하는 점 그리고 3개 사단을 “8월 20일 영시부 좌기 각 사단(예비)을 제5군단으로부터 해편함과 동시에 근무군단에 예속시킨다”는 점을 명령한 것이다.²⁴⁾ 둘째, 제101 · 103 · 105사단의 연대를 각각 6개로 증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제101사단은 제118 · 119 · 120연대가, 제103사단은 제121 · 122 · 123 · 125연대가, 제105사단은 제126 · 127 · 128 · 129연대가 증설되었다. 그리고 제103사단의 제110연대와 제105사단의 제111연대는 각각 제5군단의 직할로 해편되어 비로소 3개 사단은 미군의 KSC 구성안과 같이 6개 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1년 8월 현재, 미군이 ‘제5군단 및 예하의 3개 사단’으로 범주를 정한 KSC와 달리 제5군단은 육군본부의 직할로서 국군 부대였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제5군단의 제101 · 103 · 105사단은 KSC이다. 그러나 미군이 ‘제5군단의 제102 · 106사단과 군단 사령부 그리고 직할대를 제외한’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

24) 이것은 일면 육군본부 군사감실에서 휴전 후 발행한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에서 “노무자 근무사단은 제오군단 (중략) 일반명령제17호에 의거 단기4284년 7월 15일부로 기술근무사단으로서 창설되었다”(육군본부 군사감실,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p.163.)고 한 것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휴전 후 결과론적 관점에서 미군의 이해를 보다 반영한 것으로 추측되나 해당 명령지가 보존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에 ‘제5군단’은 한미 양쪽에 모두 속하는 모순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동년 11월 1일부 제5군단이 해체되기 이전 9월 11일, 제5군단의 군수참모처가 KSC의 어려움을 KMAG에 보고하였던 것에서 사실상 군단은 국군과 KSC의 역할 모두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5군단이 해체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군단은 차차 해편과 같은 부대 경량화의 과정을 거쳐나갔다. 먼저 육군 일반명령 제132호(1951. 9. 17.)에 의거 제102사단의 제105 · 106연대와 제106사단의 제115 · 116연대가 해체되었다. 이어서 육군 일반명령 제148호(1951. 10. 15.)은 제102 · 106사단을 해체시키고 남은 제107 · 117연대를 제5군단 직할로 해편시킴으로써 제5군단은 3개 사단과 해체된 연대의 흔적과 같은 제110 · 107 · 117연대를 직할대로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로소 육군 일반명령 제160호(1951. 10. 24.)에 의해 11월 1일 부, 제5군단이 해체됨과 동시에, 군단 요원을 기간으로 하여 육군본부 병무감실을 신설한다. 병무감실은 미상일부로 ‘근무군단’에서 개칭된 “근무단”과 제5군단직할이었던 세 개 연대를 통할하게 된다.²⁵⁾

그리고 후일 육군 일반명령 제47호(1952. 3. 13.)에 의거 각 사단과 연대는 “육군보병제000사단 · 연대(예비)”에서 “제000근무사단 · 연대”로 부대명이 개칭됨으로써 제5군단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작전지속지원 부대 즉 온전한 KSC로 자리매김한다.

25) 육군본부 군사감실, 『6 · 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p.163.

3. 한국노무단(KSC) 조직과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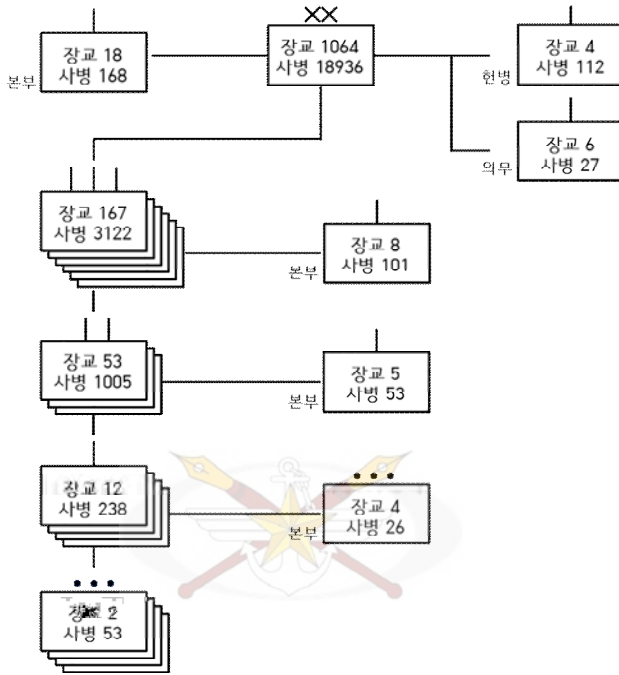
노무인력의 군 조직화 필요에 따라 미 제8군에 의해 창설된 KSC는 CTC를 포함한 미군 작전지역 내 한국인 노무자들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노무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1년 9월 대구의 CTC 보충대는 KSC 중앙보충대로 개칭되었고 동년 12월 중앙보충대 파견대가 용산과 인천에 설치되었다. 중앙보충대는 미 제8군 노무과의 감독을 받으며 국군이 운영을 했는데, 일일 100여 명이 노무자를 지원했다.²⁶⁾

가. 조직과 구성

미 제8군사령부는 1951년 7월 14일 KSC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시문을 하달한다.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KSC는 국군 제5군단 예하 3개 예비사단인 제101 · 103 · 105보병사단이 근간이 되어 각각 미 제 1 · 10 · 9군단을 지원하고 CTC는 당분간 그 조직을 유지해 차후에 KSC로 대체한다. KSC의 보급 책임은 미군 병참 부서에 있고 교육훈련 책임은 한국 육군에 있으며, 그들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KSC는 현재 활용중인 미군 내 한국인 노무자까지 취직시켜 사단별 20,000명으로 총 60,000명, 1개 사단은 6개 연대, 18개 대대, 72개 중대, 288개 소대로 구성한다.’ 별지에 명시된 각 제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6) EUASK, Labor Sec, Command Report, 1952. 6.

〈그림 1〉 KSC 사단 조직도(미 제8군 사령부 안)²⁷⁾



하지만 KSC를 현장에서 운용하는 미 제8군 예하 사단은 필요에 따라 그 편성을 조정해 예규에 반영하였다. 현재 확인되는 KSC 관련 미 사단 예규는 미 제40사단 제223연대의²⁸⁾ 것이다. 위의 〈그림 1〉에서는 인가 인원수와 조직편성만 확인이 가능하나 미 제223연대의 예규는 이를 세분화하여 KSC 중대 및 대대의 조직편성과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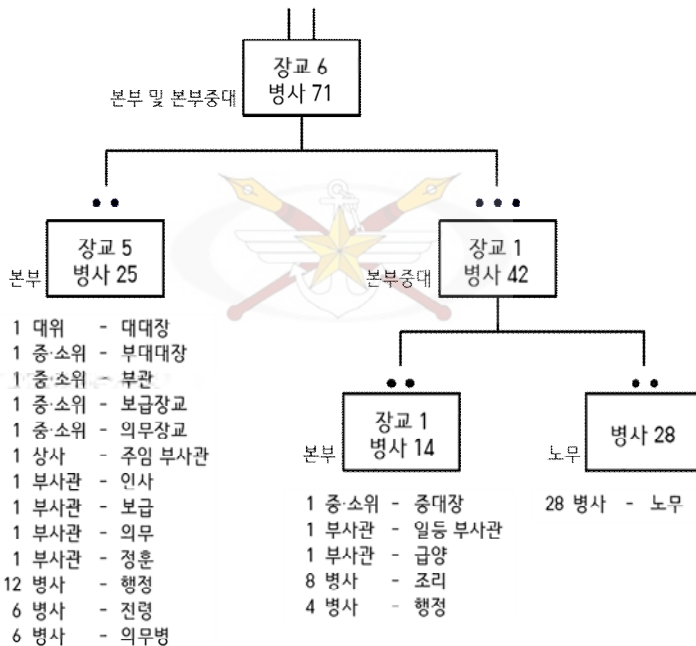
27) EUSAK,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1951. 7. 14.

28) 미 제40보병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창설되었으며 제160 · 223 · 224연대와 기타 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군 제183포병대대를 한국전쟁 기간 중 배속 받았다. Donald W. Boose, US Army Forces in the Korean War 1950-53, OSPRY PUBLISHING, 2005, p.85.

29) KSC 1개 대대는 미군 1개 연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연대 예규에는 KSC 중대와 대대까지만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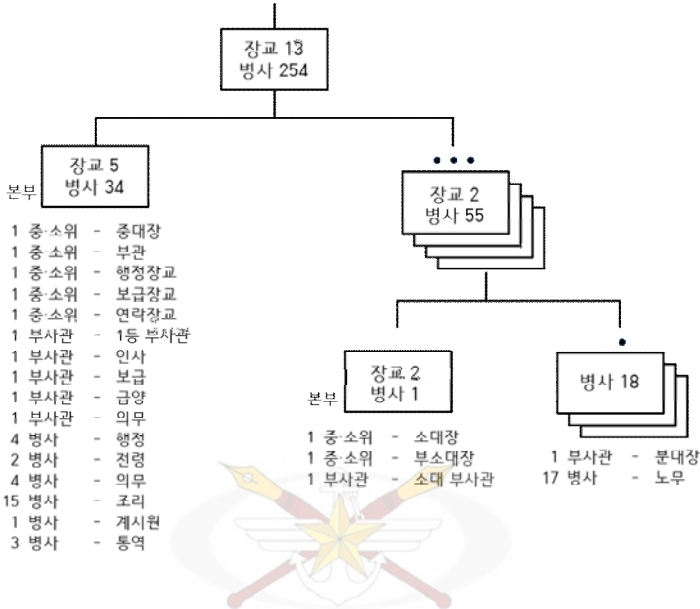
세부 직책을 명시하였고, KSC 및 한국인 노무자와 관련된 부대할당, 기능, 지휘책임, 의료, 휴가정책, 영현등록, 교체, 업무시간, 임금, 식사, 보급, 신원확인 그리고 미군 개인이 직고용한 노무자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수립하였다. 이 예규에서 고안된 KSC 편성안은 미 제8군의 안과 조금 상이한데 다음과 같다.

〈그림2〉 미 제40사단 제223연대 지원 KSC 대대본부 조직도 ³⁰⁾



30) RG319 ARMY-AG COMMAND REPORTS FORTIETH INFANTRY DIVISION
340-INF(223) Narrative W/Supporting Doc Mar 1952, ANNEX2, 1952. 3. 10.

〈그림3〉 미 제40사단 제223연대 지원 KSC 중대 조직도 31)



이상의 각 대대 및 중대의 편성표를 살펴보면 미 제8군이 제시한 기준인가 대비(이하 기준) 미 제223연대를 지원하는 KSC 대대의 장교는 45명으로 8명이 감소했고, 사병은 833명으로 172명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예하부대를 보면 대대본부 및 본부중대는 기준 대비 장교 1명, 사병 18명이 각각 증가, 중대는 장교 1명, 사병 16명 증가, 중대본부는 장교 1명, 사병 8명이 증가, 소대는 장교 증감은 없고 사병 2명이 증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준대비 예하부대에 확인된 바를 종합해 보면, 장교 5명(미확인 보직에 3명 추가), 사병 114명(미확인 보직에 58명 추가)을 추가로 할당함으로써 대대 지휘소를 경량화하고 첨단 부대에 인원을 추가로 할당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군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KSC 사단·연대·대대 지

31) RG319 ARMY-AG COMMAND REPORTS FORTIETH INFANTRY DIVISION 340-INF(223) Narrative W/Supporting Doc Mar 1952, ANNEX3, 1952. 3. 10.

휘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정리된 조직 표에 따라 운영된 KSC의 병력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전쟁 중 KSC 인원 현황³²⁾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1951년	7월	기록 없음	1952년	8월	73,142명
	8월	기록 없음		9월	74,083명
	9월	34,568명		10월	73,947명
	10월	44,932명		11월	73,022명
	11월	60,275명		12월	78,405명
	12월	69,218명		1월	80,906명
1952년	1월	71,808명	1953년	2월	83,384명
	2월	71,493명		3월	89,137명
	3월	69,932명		4월	91,991명
	4월	71,882명		5월	93,154명
	5월	73,294명		6월	91,922명
	6월	74,915명		7월	90,656명
	7월	72,227명		-	-

KSC 인가 인원은 1951년 12월에 64,000명으로 증가한다. KMAC는 이와 같은 인력 증강에 대해 “1951. 12. 까지 KSC가 64,000명으로 늘어나면 앞으로 노무자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³³⁾ 그러나 KMAC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한 1951년 10월 시점으로부터 불과 2개월 뒤 KSC 인가 인원은 오히려 75,000명으로 증가한다.³⁴⁾

KSC의 인가정원이 75,000명으로 증가된 이후 유동적이었던 근무 기간이 1952년 5월 18일 부 최소 6개월, 최대는 ‘후임 대체

32) EUSAK, Labor Sec, Command Report, 1951. 9. - 1953. 7.

33) KMAC, Augmentation of Korean Service Corps (KSC), 1951. 10., p.3.

34) FEC & EUSAK(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I ch.Ⅲ, p.20.

인원이 보충이 가능할 경우'로 결정되자, 주 당 3,000명의 공석 소요가 발생했다. 이에 미 제8군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KSC 인가정원을 25,000명 증가시켜 안정을 기도했다. 이렇게 증편됨은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 첫째는 미군 내 직고용 노무자 140,000명을 감축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임금을 증설된 KSC로 전환하는 것이었다.³⁵⁾

그러나 KMAG가 KSC 4,000명 증가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인 1951년 10월에 집계된 KSC 인원은 위 표에 따르면 44,932명이다. 정책 결정은 극동군사령부의 검토와 결심의 절차가 요구되는 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그러한 소요제기와 본 토의는 최소한 동년 9월경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위 표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즉 위 표는 실제 인원보다 약 2~3만 명이 덜 집계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쟁의 막바지에 인가인원이 100,000명이 된 이후에도 위 표는 이에 도달한 바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미 육군 군사연구소는 전후 이 수치를 근거로 '한국정부는 전쟁기간 동안 한 번도 100,000명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연구서에 기록하였다.³⁶⁾ 그러나 최근 작성된 미 육군 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에는 최대 인원을 133,000명으로³⁷⁾, 그리고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십여만 이상의 한

35) RG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31, Files: Radios; Histories; Korean Service Corps; Reports. 서신 작성 날짜 미상 ; Hq Eighth Army, Comd Rpt, sec.I, Narrative, 1952. 9., pp.105-106(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7, p.345에서 재인용) ; EUASK G-4 Col Silliman, G-4 Mission Brochure: Labor Annex, 1953, 10. 30.

36) FEC & EUSAK(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I ch. III, p.21.

37) Lieutenant Colonel Ressel L. Prewittcampbel, The Korean Service Corps, Army Logistician, US ARMY, 1999, p.35 ; Maj. Michael J. Lee, "The Korean Service Corps Battalion", Army Sustainment November-December

국노무자'로 기재³⁸⁾한 것에서 기밀로 유지된 노무자 수³⁹⁾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행정적으로 집계된 수를 상회하는 인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나. 운영과 관리

KSC 노무자들의 공식적인 임무는 전후에 작성된 미 제8군 군수 참모처 임무수행지침서의 노무자 관련 부록에 “KSC는 전선의 전투 부대에게 탄약, 연료, 식량, 물 그리고 기타 보급품을 옮겨주기 위해 조직되었다. (중략) KSC는 도로보수, 건설, 기타 미 제8군이 특별히 요구하는 비숙련 노무력을 제공하는 역할도 실시한다”고 기술되어 있다.⁴⁰⁾ 또 미 제40사단 예하 연대의 예규 중 KSC 관련 장에 따르면 “경·중 건설 작업, 정비, 차량 운전, 운송, 들것 운반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탄약 및 식량 등 보급품을 전선으로 수송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였고, 수색작전,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전선 지휘소 경계, 방치된 적 물자 폭파, 전차 및 차량 연료 보충, 총기 정비, 전·사상자 후송,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매립, 의무대 청소, 전투복 바느질, 전투물자 정리, 기타 지시사항 이행 등 작전지속지원의 일체에 투입되었다.⁴¹⁾

또한 KSC를 조직한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운용형태가 만연하였다. 이에 미 제8군은 수시로 KSC를 사역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시를 서면으로 하달한다. 이 문서에 기록된 사역의 종류는

2014, US ARMY, Logistics University, 2014. 10., p.27.

38) 「기한완료 복무해제; 사회부, 일선노무자대치결정」, 『동아일보』, 1953. 8. 3.

39) 국회사무처,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3회 제14호」, 1952. 7. 28.

40) EUASK G-4 Col Silliman, G-4 Mission Brochure: Labor Annex, 1953. 10. 30.

41) 진복균, 「피난길에 강제 징용된 15세 노무자」, (사)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6·25전쟁 참전수기3』, p.199 ; 진○○ 자서전(미출간), pp.3-15.

‘잡역, 웨이터, 취사보조, 이발사, 세탁, 기타 유사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⁴²⁾ 국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노무자를 군인과 동등대우하고 친절히 취급할 것’, ‘군사작전에 KSC 사용 금지’, ‘진지공사에 관한 사역 엄금’을 더러 지시하기도 하였다.⁴³⁾

미군은 KSC를 창설하며 “후일 이 제도는 타지에서 노무 단체가 군을 지원하는데 적용될 것이다”⁴⁴⁾는 자신감을 내비칠 정도로 이전의 노무 조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했지만 초기 운영의 어려움은 있었다. 창설 약 2달 뒤인 1951년 9월 11일 제5군단 군수참모처는 KSC의 어려움을 KMAG에 보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⁴⁵⁾

1. KSC 인원 현황

- 가. 보병제101사단(의정부): 장교 775명, 사병 9,477명
- 나. 보병제103사단(양구): 장교 743명, 사병 6,916명
- 다. 보병제105사단(춘천): 장교 793명, 사병 8,719명

2. KSC의 보급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제109연대를 조사함

3. 식사

- 가. 문제점: 1인당 4.7홉(1.5파운드)을 지급중임. 70%는 콩과 보리, 30%는 베트남 쌀로 국군보다 0.8홉이 적음
- 나. 해결방안: 하루 10시간 중노동으로 위 식사량은 부족함.
한국 쌀 5.5홉으로 인상을 건의함

42) EUSAK, AG322 KLS, Korean Service Corps(KSC) Regulations, 1953. 1. 25.

43)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8사단 행정명령 제1호(1953. 1. 9.)」, 『한국전쟁사료』 77, 1985, p.934 ;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9사단 작전지시 제30호(1952. 1. 9.)」, 『한국전쟁사료』 78, 1985, p.499 ;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9사단 작전지시 제149호(1953. 5. 18.)」, 『한국전쟁사료』 78, 1985, p.707.

44) EUSAK, AG 322 KGLK,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1951. 7. 14.

45) ROKA V CORPS G-4, STATUS OF LOGISTICAL SUPPORT TO KSC UNITS, 1951. 9. 11.

4. 기호식품

가. 문제점

- 1) 호박, 감자, 양파, 고구마는 부패하기 쉬움. 소금은 지급되지 않음
- 2) 담배가 지난 5일 동안 지급되지 않음. 기준은 1인당 하루에 10개비임
- 3) 장기간 보관으로 상한 채소류가 지급됨
- 4) 기호식품 보급 제한 시 금전으로 지급이 되나 국군의 절반 수준임
- 5) 미군의 재정적 한계로 기호식품이 구입되지 않음

나. 해결방안

- 1) 기본: 채소, 콩, 고기, 생선, 소금 지급 요망
- 2) 방안A: 채소를 KSC에 직접 전달
- 3) 방안B: 일일 기호식품비 500원 지급

5. 임금: 규정대로 지급됨

6. 피복

가. 문제점

- 1) KSC 창설 문건과 같이 개인 보급품을 미군이 지급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
- 2) 대부분 CTC복 또는 개인복을 입고 있음. 초기 모집된 인원 중 제5군단에서 폐품 전투복을 받은 인원이 일부 있음
(제101사단 2,075명, 제103사단 2,236명, 제105사단 8,881명)

나. 해결방안: 미군은 문서상 약속한 바를 즉각 이행

7. 숙소 및 텐트

가. 문제점

- 1) 사단 및 연대급 행정부서에만 온전한 텐트가 있음
- 2) 대대급 이하 부대에는 텐트가 없어 사실상 숙식을 참호에서 함

8. 의무 관련

가. 문제점: 부상 시 치료를 위한 진료 기회가 부족함

나. 해결방안

- 1) 연대별 급수 트레일러 1대씩 지급
- 2) 환자의 급격한 증가 고려, 외과전문의를 KSC에 배속

9. 기타

가. KSC 장교에게 필기구가 지급되지 않음. 일일단위 지휘보고가 제한되는 상태임

나. 해결방안

- 1) 방안A: KSC가 예측된 미 군단에서 필기구 지급
- 2) 방안B: KSC 자체적인 자금 확보

위 문서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제101사단 배속 KMAC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⁴⁶⁾에 따르면 1종 보급은 8월 말일을 기준으로 130~308파운드가 부족했으며, 그 종류는 감자, 호박, 콩류였다. 텐트 문제는 가장 심각했는데 50개가 분배되었으나 인원은 11,000여명이다. 모포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 1,748장이 부족했다. 피복은 파란색 작업복으로 역시 부족했고 우의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동계피복도 부족했다. 의료지원을 위해 KSC 설립 문건에 명시된 대로 민간 의료원으로 후송치료를 해야 하나 병원이 부족해 제한되었다.

KSC를 지원하는 문제가 복수로 접수됨에 따라 1951년 9월 12일⁴⁷⁾과 14일⁴⁸⁾ KMAC는 감사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46) 101ST DIVISION KSC OFFICE OF THE CENTER ADVISOR, REPORT ON DEFICIENCIES IN LOGISTICAL SUPPORT OF 101ST DIV KSC, 1951. 9.(날짜 미상), p.1.

47) KMAC, Organization of Inspection Team to Korean Service Corps, 1951. 9. 12., p.1.

안을 제시했다. 먼저 식별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KSC의 사기와 군기가 매우 낮고 탈영과 부상 빈도가 잦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임무에 대한 보상이 없음

둘째, 노무와 관련된 특별 조치가 없음

셋째, 의무 및 위생시설이 부족함

넷째, 노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없음

다섯째, 준비 부족으로 급료 및 보급 지급이 열악함

여섯째,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전선 상황으로 효과가 없었음

일곱째, KSC 대원에 대한 개인근무기록 유지 체계가 없음

이어서 KMAG는 나이, 신체 상태, 환자 여부 등과 보급의 실태로, 음식, 침구류, 옷 등 그리고 숙소와 쉼터, 위생 시설과 부상에 대한 조치, 동계 준비 그리고 기타 문제점을 감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계획했다. 감사 대상은 국군의 경우 제5군단 예하 3개 사단, 미군의 경우 배속 부대 포함, 제1군단 및 예하 제1기병사단, 제3·25사단, 영국 제29연대, 배속 국군 제1사단, 제9군단 및 예하 제19공병대, 제49항공, 제55탄약 대대, 제7·24사단, 제10군단 및 예하 제2사단, 제1해병사단, 제8224공병대, 배속 국군 제5·7·8사단으로 사실상 전 부대에 해당된다. 감사단은 한국의 국방위원회, 사회 및 경제 단체, 사회부, 재정부, 복지부, 국방부, 국군 지휘부, 5군단(예비), UN군, 미 제8군에서 선발을 하고 감사 기간은 1951. 10. 1.부터 20일간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에도 물품 부족에 대한 보고는 끊임

48) KMAG, Support of Korean Service Corps Divisions, 1951. 9. 14.

이 없었다.⁴⁹⁾ K MAG와 미 육군 군사감실 또는 미 제8군사령부가 취합한 감사 결과가 담긴 사료는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동일 기간에 미 제1군단 감찰부가 작성한 문건에서는 더 자세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는 K MAG가 계획한 감사 마지막 날인 20일 보다 하루 뒤에 보고된 것으로 미 제1군단과 예하 부대에 대한 감사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⁰⁾

1. KSC는 주요 군수지원을 군단으로부터 전량 받음. KSC를 배속 받은 연대 또는 대대의 관심이 소홀해지면 그들은 생필품을 조달할 수 없음
2. 공통 문제점: 동계 피복, 텐트, 음식, 파란색 작업복
가. 부대형 텐트에서 36 ~ 60명이 취침중임. 기준은 18 ~ 36명임
나. A형 텐트에서 4명이 취침함
다. 파란색 작업복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이 존재함. 이유는 이 복장이 일본 강점기 때 죄수복을 연상시키기 때문임
3. KSC 오 · 남용이 식별됨
4. 기타 한국인 노무자는 필수 요원에 한해 최소한으로 고용해야 함
5. 한국인 노무자에 대한 지침 부족으로 각 사단에서 KSC와 일반 노무자를 동시 활용중임. 일반 노무자는 기술직 또는 사역을 위해 고용됨
가. 미군 부대별 추가 고용 노무자 현황
 - 1) 제1군단 사령부: 269명
 - 2) 제5기병연대 114명, 제7기병연대 790명,
제8기병연대 354명을

49) EUSAK, Additional Requirements for Winter Clothing for Korean Service Corps, 1951.10.12.

50) HQ I CORPS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I Corps IG Survey of Indigenous Labor, 1950.10.21., pp.3-20

3) 제3사단: 2,129명

4) 영연방 제1사단: 908

나. 관련 지시: 1군단 예하 부대는 KSC 외 필요한 노무인력에
대해 1951. 10. 31.까지 보고

6. 해결방안

가. 동계 피복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나. 텐트를 추가로 보급하고 텐트별로 36명씩 취침을 시킴

다. KSC의 중요성에 대한 장병 대상 교육 강화

7. 추가사항

가. 미군이 KSC 대원을 임의로 활용하며 KSC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음

나. 전방에서 작업하던 대원이 적에게 납치됨

다. 일부 대원은 식기가 없음

라. KSC 불만사항: 식량 부족, 파란색 유니폼, 9월 담배 미보급,
의료지원 부족, 부대 방호를 위한 총기 요청

유일하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임금에 관한 것이었다. 각종 구술 증언 그리고 여러 형태의 회고록에서도 임금에 관한 부정적인 지적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국군보다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선에서 그칠 뿐이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계약형태의 노무자가 아닌 동원된 노무자의 손에 임금이 쥐어진 것은 CTC에 관한 사료가 부재함을 고려해 이를 배제 시, KSC부터이다. 직능과 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⁵¹⁾ 매달 말일 현금으로 받은 임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KSC의 임금표는 다음과 같았다.

51) 김영규, 『38선과 휴전선 사이에서: 철원 주민 20인의 구술사』, 진인진, 2018, p.70.

〈표 2〉 KSC 임금표(단위: 원)⁵²⁾

계급	임금	계급	임금	계급	임금	계급	임금
대장	90,000	중령	51,300	준위	32,100	상병	4,500
중장	72,000	소령	46,500	상사	26,100	일병	3,600
소장	66,000	대위	38,100	중사	24,300	이병	3,000
준장	60,000	중위	35,700	하사	6,600	-	-
대령	56,100	소위	33,300	병장	6,000	-	-

* 미군 계급체계를 기초로 작성되어 당시 국군의 계급체계와는 다르다.

구체적인 임금액은 조사자 및 피조사자마다 그리고 미군의 사료마다 서로 다르다. 대부분 급여가 인상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이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수치가 계속 변동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화폐단위가 환으로 변경된 시점의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구술 증언도 서로 달라 임금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노무자는 직능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1951년 4월 16일 부로 하달된 미군 내 직능별 임금표 기준 시급 약 300원을 받았다.⁵³⁾ 또 각 참전자의 구술에 근거하되 규정과 달리 KSC는 매일 초과 운용되었고 운용시간도 불규칙했기⁵⁴⁾ 때문에 당시 임금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52) UNCACK, Payment of the Korean Service Corps, 1951, p.49.

53) EUSAK, Transmittal of Indigenous Labor Policy and new Wage Scales, 1951. 4. 14.

54) 「노무사단은 이렇게 싸운다(하)」, 『동아일보』, 1953. 5. 6. ; 조덕제, 「평생을 실탄 추진 못한 죄책감에」, 『6·25전쟁 참전수기3』, pp.286-289 ; Interview (1951. 8. 7.), Captain Davis L. Mathews, 69th Ordnance Ammunition Company, Commanding Officer, Supply battle of the Soyang river, 10 May-7 June 1951, OCMH, p.1 ; EUSAK Hq Labor Sec, AG200.3 KLS, Study on Mobilization of Manpower, 1952. 2. 12., p.10.

- ① “처음에 \$20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예비사관학교 1기 김○○·이○○⁵⁵⁾)

“월 \$20에 해당하는 한국 돈을 그들 가족에게 지급했다.”

(밴 플리트)

◦ 기간: 1951. 7. -1953. 2.⁵⁶⁾ ◦ 환율: 1\$ = 6,000원

◦ 임금: $6,000 \times \$20 = 120,000\text{원}$

- ② 화폐 단위 변화 + ①

◦ 기간: 1953. 2. -1953. 5. ◦ 환율: 1\$ = 60환

◦ 임금: $60 \times \$20 = 1,200\text{환}$ (1환 = 100원⁵⁷⁾ / 120,000원

- ③ 미 임금표 상 ‘중강도 노동자 I 형’ 시급 310원⁵⁸⁾, 일일 8시간
및 주 7일 근무

◦ 기간: 1952. 6. -1953. 7.

◦ 임금: $310 \times 8\text{H} \times 30\text{D} = 74,400\text{원}$

이상을 종합해 전쟁 당시 군인의 봉급 인상엔 인플레이션이 적용되지 못했음을 고려하면 KSC 대원의 당시 임금은 약 100,000원 전후로 판단된다. 이 수치는 KSC가 한국군 장성보다 많은 임금을 받았다는 언급에 무게를 둔 것이다. 또 1951년 11월 미 제1군단이 2개월간의 단기 노무자를 모집하며 제시한 임금이 월 90,000원⁵⁹⁾이었던 것과도 맥락이 닿는다. 그러나 미 제8군 노무장교 보좌관이

55) 김○○·이○○ 증언(예비사관학교 1기), (서울 / 구술일시: 2018. 7. 31.(화), 14:00~16:30 / 녹취: 나상철).

56) 같은 기간 임금은 항구 직고용 노무자는 90,000만원(15달러), 항구 계약 노무자는 200,000원(33.4달러)이었다(2nd Log Comd, Procurement, Monthly Summary, 1952. 5., p.2).

57)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화폐와 경제」, 2017. 1. 2., p.12.

58) EUSAK,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1951. 10. 3., p.21.

59) 「노무원모집 제1군단서 의뢰」, 『조선일보』, 1951. 11. 4.

작성한 195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기간 KSC 노무자에게 지출되는 총 금액 중 급여는 94달러였다.⁶⁰⁾ 이를 당시 환율인 1달러 당 6,000원으로 환산한 후 12개월로 분할하면 월 임금 47,000원으로 계산된다. 94달러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한국군 장성보다 많다는 코멘트와는 합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군 대위와 중위(KSC 중대장)의 급여인 약 38,000원과 36,000원을 상회한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⁶¹⁾

4. 진중 노무와 한국노무단(KSC)의 성격

미군의 한국인 노무인력 운용과 관련된 제도의 확대와 KSC 노무자를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 그리고 지휘체계 확립 노력은 과거 직고용 및 계약 노무자 또는 CTC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엄정한 군 기강 확립’으로 발현되었다.⁶²⁾ 그러나 그들의 지위를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경향과 추세를 조감할 수 있을 뿐이다.

전쟁 당시 KSC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면모와 동료애와 같은 긍정적 면모가 공존하고 있었다. 노무자에 대한 배제와 소외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확인된다. 노무자의 임무수행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관심⁶³⁾에도 불구하고 ‘전시근로동원법’ 상 동원 기한인 6개월, 그리고 17세 이상 40세 이하라는 연령제한이 지켜지는 경우

60) AFFE, Indigenous labor in Korea July 1951-July 1953, 1954.9.15., p.36.

61) 이송만, 조선일보사, 『민족의 증언』 7, 1983, p.74 ; 백대현, 『녹슨 파편의 사연들: 나의 6·25 이야기』, 이야기너머, 2015, p.217.

62) Terrence J. Gough,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a research approach,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7, pp.88-89.

63) 「이대통령 일행 노무사단등도 방문」, 『경향신문』, 1953.7.19.

는 드물었다.⁶⁴⁾ 국방부는 이러한 실태와 개선 요구에 “능률이 오르
지 않아 할 수 없다”⁶⁵⁾며 일축하고 일선의 노무자를 방기했다. 육
군 또한 연령 부적격자 모집에 대한 미군의 지적의 타당성을 인정
하면서도 ‘그들은 노무에 적절한 신체조건 하에 있으며, 후일 병무
감실을 통해 인원을 교체하겠다’⁶⁶⁾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군은 제5군단과 근무군단이라는 군단급 부대 창설 및 해체의
제보와 주요직위자가 현역 및 예비역 장병인 점, 그리고 인원의 모
집과 편성, 인사행정을 육군이 통제하며 구성원에게는 군법과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는 면에서 KSC를 국군 예하의 특수 군사조직으로
간주했다.⁶⁷⁾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육군예비병력에 가산되지 않는
무편제의 특수부대’⁶⁸⁾라는 모순 속에 놓여 있었음에서, 이들은 일전
의 청년방위대나 학도호국단과 같은 군역 범주 밖의 타자로 인식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군 역시 KSC를 CTC의 단점을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기
간 장병만이 국군의 현역 및 예비역 장병인 점 그리고 구성원의 대
다수는 민간인임에 주목해 한국군과 다소 독립된 준군사조직으로
이해했다.⁶⁹⁾

미군은 때때로 KSC 대 미군 간의 협조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KSC 대원을 무단으로 활용하였고, 미군이 KSC 장교를 하대하고

64) 「대상은 40세까지 노무동원 방안 결정」, 『조선일보』, 1951. 10. 28. ; 「노무동원 방
안에 異狀! 인원부족으로 50까지도」, 『조선일보』, 1951. 10. 30.

65) 「영양부족목불인건 노무사단실태 국회조사단보고」, 『동아일보』, 1953. 5. 24.

66) EUSAK Labor Sec, Recruiting Age for Korean Service Corps(KSC), 1951.
11. 28.

67) KMAG Hq,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 Division, 1951. 6. ; 육군본부 군
사감실,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p.163 ; KSC 창설식 간에 부임한 방위장
교는 KSC는 ‘군인이나 마찬가지’ 라며 혼시했다(진○○ 증언).

68) 육군본부 군사감실,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pp.163-167.

69) Lieutenant Colonel Ressel L. Prewittcampbel, The Korean Service Corps,
Army Logisticians, US ARMY, 1999, p.34.

노무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거나 물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⁷⁰⁾ 당시 제101사단에서 중대장을 역임한 한병중은 대개의 미군은 노무자들을 후대하고 동정했으나 간혹 인종차별이 발생해 미군과 대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피란살이에 시달려 자원입대한 지식인들은 미군들의 멸시와 차별에 몹시 흥분했다고 증언하였다.⁷¹⁾ 미군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군법회의로써 노무자를 남용하거나 구타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⁷²⁾

KSC는 의식적 하대와 오·남용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 능력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미 의무부대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을 고용하거나 KSC를 할당받아 운용했다. 의무부대의 KSC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과 부정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부정적 평가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KSC는 훈련되지 않았으며, 전투 상황에 대한 정신적 준비가 미진하고, 임무 수행에 대단히 무관심하다”, “KSC를 후송병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효율이 극히 낮다. 적의 사격이 있을 때 KSC는 첫 번째 후송 임무 후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미군이나 KATUSA로 밀착 감시를 해야 한다. KSC는 밀착 감시 하에 노무 그룹으로서 진지보수, 물자운반에 가장 적합했다”. 의무부대의 이러한 평가는 KSC를 의료 관련 업무에서 완전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⁷³⁾ 또 미 제8군사령관 밴 플리트의 전기에서는 미 제7사단의 러셀고지 공격작전 간 한국인 노무자들의 임무수행 거부로 중국인민지원군의 접근을

70) EUSAK, HQ I CORPS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I Corps IG Survey of Indigenous Labor, 1951. 10, p.4.

71) 한병중, 조선일보사, 『민족의 증언』 7, 1983, p.75.

72) 김진휴, 『山河』, 정민사, 2012, p.86.

73) EUSAK, US ARM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The regimental medical company in Korea, vol. II, 1953. 6., pp.21-24.

허용하였다⁷⁴⁾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다분히 미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 부대는 그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부대에 끼어 싸우기를 꺼려”⁷⁵⁾한다는 당시 노무자들의 목소리는 함구된 것이었다.

또 제임스 버처(James Butcher)는 KSC의 단점을 다수 지적했다. 그는 KSC의 일상적인 임무가 미군이 적에게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KSC가 ‘조직화되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 이유는 전선에서 적군과 노무자가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노무자를 가장한 적 오열의 침투와 적에게 투항하는 노무자로 인한 것이었다.⁷⁶⁾ 이것은 노무자를 받은 적군으로 간주한 것으로 전장 스트레스로 공황에 빠진 노무자에게 ‘빨갱이 자식’(*“You commie bastards!”*)⁷⁷⁾이라고 다그치고, 전투간에 희생된 노무자를 적이라 하여 가매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⁷⁸⁾에서 노무자를 공산군과 연계 또는 동일시하여 인식하는 일련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한국전쟁기 미군 영내의 물질적 풍요는 미 육군성이 후일 지적⁷⁹⁾한 것과 같이 이전의 전쟁과 다른 특징이었다. 미군의 참호에는 라디오와 난로, 아이스크림이 지급되었다. 또 어느 전쟁에서보다 많은 복지시설이 설치되었고 식량도 풍족했다. 때문에 그들은 전투식량을 수당으로 하여 노무자들을 사역에 활용하거나, 선호하지 않은 음식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KSC 대원에게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

74) Paul F. Braim, *The Will to Win*, Naval Institute Press, p.289.

75) 육군예비사관학교 충동문회, 『豫友文集』, 2000, p.252.

76) James Butcher, Korea, Hellgate Press, 2013, p.101.

77) James Butcher, Korea, p.241.

78) 이장성 증언. 김영규, 『38선과 휴전선 사이에서』, p.143.

79) FEC & EUSAK(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I ch. I, pp.3-4.

에서 동정심이나 선의의 여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들의 인식의 저변에는 의도하던 하지 않았던 간에 ‘궁핍함으로 음식이긴요한 한국 사람들’⁸⁰⁾이라는 인상이 깔려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KSC를 한국인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는데, 그 증언 속 한국인 즉 KSC는 극도의 궁핍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그곳에는 전투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KSC였다. (중략) 후술하겠지만 서울에서 자유시간을 하루 갖는 기회가 있었다. 나는 한국 여성과 온종일 보냈는데 유일하게 만났던 다른 현지인은 KSC였다. 내가 본 바로는 그들은 너무도 가난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아이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무엇이든 달라며 구걸했다.⁸¹⁾

이처럼 미군의 눈에 비치는 KSC의 모습은 하찮은 일을 하는 짐꾼 또는 하인이기도 하였다. KSC 인솔 및 경호 임무를 수행했던 라이트(Jack E. Wright)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만일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 같은 하잘 것 없는 군사임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본다면 내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했다”고 술회했다.⁸²⁾

노무자들의 지위는 호칭에서도 확인된다. 호칭과 같은 일상 언어는 집단의 사유체계를 대변한다. 한국인은 KSC를 ‘총알받이’, ‘지계부대’라고 불렀고 그것은 ‘잡혀가는’ 것이었다.⁸³⁾ 국군은 대부분의

80) Robert Carroll Janes증언. <http://www.koreanwar-educator.org/memoirs/janes> (검색일 2018. 7. 15.).

81) Pete Rendina 증언. <http://www.koreanwar-educator.org/memoirs/rendina> (검색일 2018. 7. 18.).

82) 안토니 바벨, 데이비드 로차드슨, 아서 윌슨 저, 김남형 역, 『한국전쟁, 미군 병사들의 기록』, 도서출판백암, 2008, p.35.

83)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280.

노무자가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였기 때문에 대체로 이들을 “아저씨”라고 불렀다.⁸⁴⁾ 위선과 위악 그리고 적의의 여하와 별개로 미군은 편의상 노무자를 한국말로 “이리와(comehere)”를 뜻하는 “itiwas(eeteewas)”⁸⁵⁾ 또는 “Choggies”⁸⁶⁾로, 영국군은 세탁 노무자를 “워시-워시(Washy-Washy)”⁸⁷⁾라고 칭했다. 1966년 미 육군 군사연구소는 한국전쟁 공간사에서 KSC를 즐겁지 않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servant”)으로 표현하였다.⁸⁸⁾

그러나 갈등과 마찰이 긍정적인 관계맺음보다 일반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증언과 관찰에서는 KSC와 미군의 상호에 대한 호의적 모습이 훨씬 풍부하게 발견된다. 그것은 음식을 함께 나누었던 경험, 미군이 비정기 소독으로 DDT를 뿌리거나 영양주사를 놓아준 경험, 미군 영내에 남는 음식물을 마을에 나누어준 경험, 미군 물품을 한국 시장에서 한식으로 교환해 노무자에게 제공한 것 등등이다. 또 어려운 전투 현장에서 노무자가 군 장구류도 없이 전투를 함께한 사례는 각 부대에 귀감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국군을 포함한 UN군과 KSC는 결코 상리공생의 도식적 관계구도가 아니었다. 일련의 동정심과 관용적 이해가 읽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KSC의 구성원 특히 민간인 노무자에게는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상태였음에서 알 수 있다.

KSC에 대한 의식구조는 대체로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84) 유○○ 증언(서울 / 구술일시 2018. 8. 14.(화), 12:00~14:00 / 녹취: 나상철)

85) John Hoskins 증언. http://www.koreanwar-educator.org/memoirs/hoskins_john (검색일 2018. 7. 15.).

86) Dudley Hughes, Wall of fire, Hellgate Press, 2003, p.95 ; James Butcher, Korea, p.101.

87) Andrew Salmon, To the last round, Aurum, 2009, p.94.

8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74.

노무자를 관찰한 개인적 경험 축적의 형성물로, 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따라서 그것은 일방향적 사유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록을 남기지 못한 서발틴 즉, 노무자들의 가치와 심리는 다분히 침전되고 망각된 것이다. 국군 역시 신역(身役)에 동원된 전시 노무자를 인적자원 경시 풍조와 전시 기록의 미진으로 준거적 역사 그리고 그 관련 기억의 말단에 위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결국, KSC는 한미동맹의 교량이었음과 동시에, 미군 수뇌부에게는 자국의 군비와 군 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⁸⁹⁾이었으며, 한국 정부에게는 국군의 특수 군사체로서 예비병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노무에 총동원할 수 있는 기저조직이었다.



5. 맺음말

본고는 한국전쟁기에 원활한 군사 행정과 전선의 전투를 가까이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무 동원을 한국노무단(KSC)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시 노무자가 군사사적 맥락에서 자발성과 영웅화의 코드 그리고 민중사적 맥락에서 전시 희생의 아이콘이 되어 각각의 분야에서 캐치프레이즈화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들이 활용되어야 했던 배경과 그 경과를 조감함에 논점을 집중하였다. 이하에서는 논지의 요약과 더불어 결론을 도출한다.

89) Edward C. Keefer(United States, Dept. of State),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Clark) to the Joint Chiefs of Staff(1953. 5. 2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15, Korea, pt.1,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1114 ; Edward C. Keefer(United States, Dept. of State),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Clark) to the Joint Chiefs of Staff(1953. 6. 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15, Korea, pt.2, pp.1152-1154.

노무 운용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동원형 노무자이다. 이것은 이른바 지계부대의 효시로 산악이 발달한 한반도의 특성상 참호가 있는 전선의 각 요점까지의 보급을 위해 차량과 같은 기계화 수단이 아닌 인력을 활용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직고용 노무자로 이들은 부대의 수요에 따라 해당 부대·개인이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임금 역시 고용자에 의해 지급되었다. 세 번째 계약 노무자는 미군이 발주한 계약 건에 따라 선정된 민간업체가 노무자를 조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노무자 형태는 의사소통 및 물자손실 등의 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전시 군수 인프라의 열악함,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으로 낙동강 전선이 붕괴되어 UN군이 급히 북진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항구와 낙동강 인근에서 활용된 노무자의 다수는 피난민이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노역에 자원한 이들이었다. 부대의 북진 간에 기혼 노무자를 잔류시키며 1차 인력 상실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난민으로 노무자에 지원한 이들이 자신의 고향 인근에서 부대를 이탈함으로써 2차 인력 상실이 야기되었다. 또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북한지역에서는 계엄령이나 1950년 7월 26일 시행된 징발 관련 법령이 정상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워 현지의 노무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노무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대량의 군수물자를 방기하고 지연방어로 전환해 급히 철수하게 되며 보급 요구와 보급 지연의 악순환이 다시 반복 되었다. 또 38선 일대에서 전선이 고착되어 참호전에 돌입하게 되자 낙동강 전선에서와 같이 산악의 각 요점에 위치한 진지로 물자를 직접 수송할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해 졌다.

1951년 3월, 미군은 노무자를 활용한 여러 경험을 갈무리하여

‘한국군에 의해 통제되는 노무자 단체’에 방점을 찍은 준군사체, 민간수송단(CTC)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이 조직은 국민방위군의 일부를 흡수한 것 외에는 지원제였기 때문에 계획 대비 60%의 인력만 확보할 수 있었다. 또 앞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언어문제, 물자 도난, 부대이탈 등의 문제와 부대 및 개인이 노무자를 직접고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여 노무자 운용의 집권화와 일체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미군은 ‘한국군에 의해 더욱 강력히 통제되는 노무 조직’을 구상하였다.

이것은 국민방위군 해체 및 제5군단 창설의 시의와 합치되어 급물살을 타게 된다. 즉 1951년 2월 미군의 노무자 요청에 국군이 국민방위군 지원 의사를 밝힌 점, 3월에 CTC가 창설된 점, 5월에 국민방위군이 해체되고 제5군단이 창설된 점 그리고 6월 제5군단 예하 3개 사단이 미군의 각 1·9·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부대이동을 하고 7월에 비로소 한국노무단(KSC)이 창설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KSC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조직이었기 때문에 창설 직후부터 의식주의 열악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 각종 사역에도 운용되어 그 불안정한 지위로 말미암아 미군과 갈등이 불거졌고, 국내 언론은 연신 관련 문제를 타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인간 사회가 그렇듯이 피부색과 언어가 달라도 서로 정을 나누고 의지하는 경우도 다분하였다. 이러한 복잡성은 KSC에 대한 인식 그리고 더 넓게는 당시 UN군에 고용된 노무자에 대한 인식을 긍정과 부정 어느 한 방향으로 규정할 수 없게 하였다.

본고에서는 몇 가지 사례와 기억의 재현을 논의해 한국전쟁기 노무자의 지위를 ‘전쟁의 숨은 영웅’ 또는 ‘국가의 폭력에 희생된 시민’으로만 해석하는 것 보다는 이들 노무자 운용 실태와 그들의 생

활 양상을 조명하고 직시하여 해당 조직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KSC는 국군과 미군의 다층적 시의에 따라 급조된 한계로 고유의 지위가 불분명 했으며 따라서 그 구성원 모두는 제도권 밖에 위치하여, 끊임없이 타자로 내몰리는 압박과 소외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KSC는 한미동맹의 교량이자, 무제한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국가지도부의 총력전 의지를 담지한, 전시 동원 제도 도입기 국민을 원활히 통제하기 위한 노무 상비군이였다.

(원고투고일 : 2020. 4. 3, 심사수정일 : 2020. 5. 13, 게재확정일 : 2020. 5. 18.)

주제어 : 한국노무단, KSC(Korean Service Corps), 지계부대, 제2국민병,
전시 동원

〈참고문헌〉

1. 자료

- 「주한미제팔군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대한민국대통령에게 보내는
 멧새-지」, 1951. 6. 17.
- 「일선노무자동원경비배부에관한건」, 1952. 5. 24.
-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3회 제14호」, 1952. 7. 28.
- Chung Il Kwon, Major General, ROK Army Chief of Staff, Use
 of Indigenous Labor, 1951. 2. 21.
- ROKA V CORPS G-4, STATUS OF LOGISTICAL SUPPORT TO
 KSC UNITS, 1951. 9. 11.
- AFFE, 8086AU, Indigenous labor in Korea July 1951-July
 1953, 1954.
- COMMAND REPORTS FORTIETH INFANTRY DIVISION
 340-INF(223) Narrative W/Supporting Doc Mar 1952,
 ANNEX1-3, 1952. 3. 10.
- EUASK, UNCACK, Clothing and Equipage for the Korean
 Service Corps, 1951. 7. 13.
- EUSAK,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1951. 7. 14.
- EUASK,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1951. 10. 3.
- EUSAK, Transmittal of Indigenous Labor Policy and New Wage
 Scale, 1951. 4. 14.
- EUSAK, Additional Requirements for Winter Clothing for
 Korean Service Corps, 1951. 10. 12.
- EUSAK,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EUSAK), 1952.
- EUSAK, Korean Service Corps(KSC) Regulations, 1953. 1. 25.
- EUASK, Revision to Labor Annex, G-4 Mission Brochure,
 1953. 10. 30.
- EUSAK, US ARM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The
 regimental medical company in Korea, vol. II, 1953. 6.

- EUSAK, Command Report, 1951. 1.
- EUASK, Command Report, 1951. 6.
- EUSAK, Labor Sec, Command Report, 1951. 9. – 1953. 7.
- EUASK, Labor Sec, Command Report, 1952. 6.
- EUSAK, Labor Sec, Recruiting Age for Korean Service Corps(KSC), 1951. 11. 28.
- EUSAK, Labor Sec, Study on Mobilization of Manpower, 1952. 2. 12.
- FEC & EUSAK(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I – IV, 1955.
- HQ I CORPS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I Corps IG Survey of Indigenous Labor, 1950. 10. 21.
- JLCOM, Activities Report, 25 Aug 50 – 30 sep 50, 1950.
- JLCOM,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25 August 1950 to 31 August 1951, 1952.
- KMAG,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 Division, 1951. 6.
- KMAG, Organization of Inspection Team to Korean Service Corps, 1951. 9. 12.
- KMAG, Support of Korean Service Corps Divisions, 1951. 9. 14.
- KMAG, Augmentation of Korean Service Corps(KSC), 1951. 10.
- UNCACK, Payment of the Korean Service Corps, 1951.
- I Corps, I CORPS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IG Survey of Indigenous Labor, 1951. 10.
- 101ST DIVISION KSC OFFICE OF THE CENTER ADVISOR, REPORT ON DEFICIENCIES IN LOGISTICAL SUPPORT OF 101st DIV KSC, 1951. 9.
- 2nd Log Comd, Procurement Sec, Monthly Summary, 1952. 5.
- 2nd Log Comd, Command Report, 1951. 12.

- 국방군사연구소, 『점령정책 · 노무운동 · 동원』, 1995.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1-6, 2004-2009.
- 육군본부 군사감실,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70-83, 1985.
- US ARMY, FM 100-10 Combat Service Support, 1995.
- US ARMY, Draft FM 51-1 The Logistical Command, 1950.
- Gough, Terrence J.,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7.
- Hermes, Walter G.,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7.
- Montross, Lynn,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vol.IV, US Marine Corps, Historical Branch, 1954.
- Mossman, Billy C.,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US ARM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88.
- Prewittcampbel, Ressel L., The Korean Service Corps, Army Logistician, US ARMY, 1999.

2. 논문

- 김병곤, 「한국전쟁 기간 중 한국노무단(KSC)에 대하여」, 『군사』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1.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1818104>
-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평화연구』 9,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00.
- 양영조, 「한국전쟁 시 노무동원과 운영에 관한 연구」, 『군사』 29, 국방군사연구소, 1994.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1816584>
- 양영조, 「한국전쟁 시 한국노무단(KSC)의 운용과 성격」, 『군사논단』 54, 한국군사학회, 2008.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1816584>

윤시원, 「한국 징병제의 제도화와 국민개병주의의 형해화 1945~1964」,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p.67.

Lee, Michael J., “The Korean Service Corps Battalion”, Army
Sustainment November – December 2014, US ARMY,
Logistics University, 2014, 10.

3. 단행본 및 기타자료

양양문화원, 『양양의 6·25 비화』, 2009.

육군예비사관학교 총동문회, 『豫友文集』, 2000.

조선일보사, 『민족의 증언』 2·4·6·7, 1983.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화폐와 경제」, 2017.

6·25참전유공자회, 『6·25전쟁 참전수기3』, 2011.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영규, 『38선과 휴전선 사이에서』, 진인진, 2018.

김진후, 『山河』, 정민사, 2012.

백대현, 『녹슨 파편의 사연들』, 이야기너머, 2015.

안토니 바벨, 데이비드 로차드슨, 아서 월슨 저, 김남형 역, 『한국전
쟁, 미군 병사들의 기록』, 도서출판백암, 2008.

Austin, Stephan D., Kim Tae Sam, United States Army Korean
Service Corps, 2000.

Braim, Paul F., The Will to Win, Naval Institute Press, 2001.

Butcher, James, Korea: Traces of a Forgotten War, Hellgate
Press, 2013.

Edward C. Keefer,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15(1952-1954),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Grehan, John, Mace, Martin, The Fall of Burma 1941-1943,
Pen and Sword Military, 2015.

Fleet, Van, HOW WE CAN WIN WITH WHAT WE HAVE, LIFE, 1953.

Hughes, Dudley, Wall of fire: a diary of the third Korean winter campaign, Hellgate Press, 2003.

Martin, Harold H., Soldier: the memoirs of Matthew B. Ridgway, Harper, 1956.

Salmon, Andrew, To the last round, Aurum, 2009.

『경향신문』, 『동아일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통일인문학연구단 통합서사 아카이브(www.tongil-konkuk.co.kr)

www.koreanwar-educator.org/memoirs

4. 구술자료

연번	성명	성별	생년	구술 장소	구술 일시
1	진○○	남	1936	경기도 의정부시	2018. 7.
2	홍○○	남	1934	강원도 양양군	2018. 7.
3	김○○	남	193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8. 7.
4	이○○	남	193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8. 7.
5	유○○	남	1932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 8.

(Abstract)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Korean Service Corps(KSC) during the Korean War

Na, Sang-chul

This paper takes an overall look at the form and operation of the labor force mobilized during the Korean War,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Korean Service Corps(KSC) under the Eighth U.S. Army.

Despite the UN Forces' particip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war, the front line ended up being pushed down to the Nakdong River. Attempting to overcome this crisis, South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appealed to the whole nation for voluntary assistance in the war effort. However, due to the lack of legal basis for the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and laborers and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leading to men being conscripted on the streets, systematic mobilization was unable to be implemented. About one month after the war broke out, the "Special Measures Ordinance on Punishment" was enforced, laying down the legal basis for conscription and mobilization. However,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fugees and floating population, systematic mobilization could still not be carried out as administrative procedures were difficult to implement.

The range of the Eighth U.S. Army's labor mobilization expanded across the country as the Incheon landing cleared the frontline and the military advanced northward. However, some of the refugees who were mobilized during the Nakdong River battle went missing while following the U.S. military northward. Moreover, problems such as the language barrier and the work efficiency of the Korean labor force were continuously made apparent, raising the need to organize the workforce. As the front lines again moved southward with the entry of the Chinese military and the conflict turning into a war

of attrition along the present-day demarcation line, the organization of the workforce was stepped up, result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SC.

The creation of the KSC was not just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Eighth U.S. Army. The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create a national all-out war system by combining the reserve and non-combat forces. It established the "National Defense Corps" in December 1950, but due to the so-called "National Defense Corps issue," the National Defense Corps was disbanded after half a year. The Korean Army, feeling the need for the systematic mobilization of the labor force throughout the war just like the Eighth U.S. Army, established the Fifth Corps, a reserve unit. It aimed to reabsorb personnel from the National Defense Corps to secure troops enough for five divisions. Meeting both the need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KSC was established with the Fifth Corps as its parent institution.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all labor organizations have been gradually dismantled, with some remaining as the current KSC.

Despite its distinctiveness, the KSC was termed the 'vacuum of Korean War research' because it had not received attention in either history or military studies at home or abroad. Therefore, this research's significance lies in finding historical significance by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ose who existed at the center of Korea's national tragedy.

Keywords : Korean Service Corps, KSC, Labor Unit, A-Frame Army,
wartime labor mobilizatio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45-89
<https://doi.org/10.29212/mh.2020..115.4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군의 초기 서독 군사유학 경험과 그 영향*

김도민**

1. 머리말
2.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의 유형 및 경험
 - 가. 서독 육군사관학교
 - 나. 서독 지휘참모대학
 - 다. 서독 일반대학
3. 서독 군사유학이 한국군에 미친 영향
 - 가. 임무형 전술
 - 나. 복무규율 · 교육과정 · 기갑부대운영
4. 맺음말

* 본고는 2018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단이 주최한 ‘구술로 본 한국군과 정치·사회변동’이라는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한국군 장교의 초기 독일 군사유학 경험과 그 영향」을 수정·보완했다.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직접 만난 문영일 · 민병돈 · 정영주 · 유보선 · 박영한 장군의 생애사 구술 덕분에 가능했다. 본인들의 일생의 경험을 처음 보는 면담자에게 자세하고 친절히 이야기 해준 다섯 구술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1. 머리말

한국군의 해외 군사유학은 미군정 말기인 1948년 7월부터 시작됐다.¹⁾ 한국전쟁과 1950년대 내내 한국군 장교들은 미국의 초등군사반·고등군사반 과정에 참여하는 등 많은 수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만으로 가던 군사유학에 더해 1960년대 중반부터 서독 군사유학의 길이 열렸다.²⁾ 육군사관학교는 1965년 2월 건군(建軍) 이후 처음으로 해외 사관학교에 생도를 파견했으며 이후 한국군의 위관급·영관급 장교들도 서독 지휘참모대학 및 일반대학에서 수학했다. 1965년부터 시작된 한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독일 군사유학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독 군사유학은 한국군 내에 인적(人的) 및 군 지휘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첫째 인적 차원에서 볼 때 육군사관학교 입학 기수를 기준으로 서독 사관학교에 유학한 24기부터 43기까지 22명 중 무려 16명이 장군으로 진급했을 뿐 아니라 독일 군사유학생들 중 다수가 장·차관을 역임하기도 했다.³⁾ 2017년 한국에서는 사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른바 한국군 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는 조직으로서 ‘독일 사관학교 출신’의 의미를 가지는 ‘독사파(獨士派)’가 거론되기도 했다.⁴⁾

둘째 한국군은 독일에서 유래한 ‘임무형 지휘’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서독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장교들

1)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115~118쪽.

2) 본고는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 시기를 명확히 지칭할 때는 서독이라는 당대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 외는 통칭 독일로 표기했다.

3) 『金寬鎭과 독일 陸士 출신들: “실전 위주로 배워 野戰에 강하다”』 『월간조선』 2014년 7월호.

4) KBS NEWS 「홍익표 “사드 보고 누락, 독사파 개입 가능성…중심엔 김관진”」, 2017년 6월 2일자(<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1709&ref=A>), (검색일: 2020년 4월 1일)

에 의하여 ‘임무형 전술’ 개념에 대한 한국군 내 논의를 시작으로, 1999년 ‘임무형 지휘’는 육군 지휘개념으로 공식 채택됐다.⁵⁾ 2006년 육군본부는 『인간중심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라는 교육회장을 발간했으며 현재 육군교육사령부 내 ‘리더십·임무형지휘센터’가 운영중이다.⁶⁾

한국군의 군사유학의 행선지는 1950년대까지 미국뿐이었다. 그런데 한국군은 1965년 처음으로 서독 군사유학을 실시했다.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의 실시는 1961년부터 본격화된 한독(韓獨)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1957년 전후 진행된 미국의 상호안전보장계획의 재검토 결과 미국의 대외원조에는 변화가 발생했고, 이후 실제 미국의 대한원조는 감소했다.⁷⁾ 줄어드는 미국의 대한원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다방면으로 원조 공여자를 찾았는데, 그 결과 1961년 12월 13일 서독과 경제원조까지 포함한 「한·독 정부간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⁸⁾

한국정부가 서독과 관계가 밀접해진 것은 미국의 대한원조 감소라는 요인뿐 아니라 1960년 4·19 이후 수립된 장면정권과 5·16 이후 등장한 군사정부의 새로운 외교전략과도 맞물려 있었다. 장면정권과 군사정부 모두 과거 이승만정권의 외교를 대미(對美) 일변도의 ‘고립외교’라 비판하며 외교의 다변화를 표방 및 추진했다. 즉 1960년 이후 한국정부는 외교 다변화라는 새로운 전략 하에서 서독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어나갔다.⁹⁾ 서독도 냉전적 사고에 의해

5) 육군사관학교 산하협력단 「임무형 지휘 활성화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2016, 7쪽. 이 최종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온-나라 정책연구’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6) 육군본부 『인간중심의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 2006.

7) 이동원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연구』 서울대학교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213~259쪽.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2008년 하반기 보고서」 제1권, 179~180쪽.

9) 장면정권과 군사정부의 이승만정권의 대미일변도 외교에 대한 비판과 다변화하는

한국이 서방에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32개국 후진국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한국을 포함시켰다.¹⁰⁾ 1963년 한국정부는 서독에 한국광부를 파견했으며, 1966년에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간호사 파견은 정부 차원으로 확대됐다.¹¹⁾ 이처럼 1960년대 초 긴밀해지는 한독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도 1965년부터 처음 시행될 수 있었다.¹²⁾

기존 한국군의 해외 군사유학을 다룬 연구들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다.¹³⁾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은 육군사관학교가 유학을 떠난 사관생도들의 명단과 선발방법 등을 교사(校史)에 간략히 정리해놓았을 뿐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다루지지 못했다.¹⁴⁾

이에 본고는 서독으로 군사유학을 갔던 초창기 한국군 장교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이 한국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첫째 1965년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은 누가, 몇 명이, 몇 년도에

외교정책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도민 「3장 2절: 남한의 '중립국' 외교경쟁의 전개」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2008년 하반기 보고서』 제1권, 183쪽; 이유재·최선주 「전도된 개발원조: 독일으로의 한국인 노동이주」, 『교포(Kyopo Shinmun)』 492호; 경제기획원 주재관 「차관 상황에 관한 종합보고(주독기 302~994호), 주독한국대사관, 1962.6.
- 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2008년 하반기 보고서』 제1권, 179쪽.
- 12) 당시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의 군사적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외교사료 뿐 아니라 한국 국방부와 서독 국방성의 관계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외교사료관에서 당시 정부 외교사료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논문을 수정하는 현 시점까지도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교사료관 방문이 불가능하여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지 못했다.
- 13) 박수현 「한국전쟁기 한국군의 도미 군사유학 경험」 2012.1.27.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단 2012년 심포지엄 자료집; 김민식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그 영향」, 『군사지』 98, 2016.
- 14) 『陸軍士官學校 三十年史』, 陸軍士官學校, 1978; 陸士 五十年史 編纂委員會 編,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 50년사: 1946~1996」, 육군사관학교, 1996.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서독의 어떤 곳으로 유학을 했으며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서독을 경험한 한국군 엘리트들이 군사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군에서 하급 장교에서 장성으로 전역할 때까지 활동하는 내내 한국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서독 군사유학은 일차적으로 유학한 한국군 본인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이후 복귀하여 주요 직위에 오른 군사유학생들은 한국군에 직·간접적 영향주요자 노력했다.

본고가 다루는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이라는 주제는 한독관계사 연구에도 일정부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기존 한독관계사 연구에서는 주로 1960년대 진행된 광부와 간호사의 파독(派獨)이 다뤄졌다.¹⁵⁾ 그런데 동 시기에 한국에서 독일로 간 사람들은 광부와 간호사뿐 아니라 한국 군인도 있었다. 흥미롭게도 본고가 다룬 구술자 중 한명은 1960년대 서독 군사유학 당시 만난 파독 간호사와 인연을 맺어 귀국 후 함께 결혼에 이르기도 했다. 이처럼 본고는 그동안 한독관계사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파독 한국군’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1965년부터 1972년까지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군인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의 경험을 유형별로 정리할 것이다. 이 시기 한국군은 세 가지 방향에서 서독 군사유학을 진행했다. 한국군은 첫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직접 서독 사관학교에 파견했으며, 둘째 위관이나 영관급 장교들이 서독 지휘참모대학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지만 서독의 일반대학에 군인이 파견되기도 했다.¹⁶⁾ 이에 본고는 1장에서 유형

15) 윤용선 「1960-70년대 파독 인력송출과 차관: 원조인가 거래인가?」, 『독일연구』 26, 2013; 정현백 「한독관계사, 회고와 성찰」, 『독일연구』 28, 2014; 나혜심 「파독 한인여성 이주노동자의 역사」, 『서양사론』 100, 2009.

16) 실제 서독 군사유학은 세 유형 중 두 개를 경험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

별로 서독 군사유학을 떠난 이들이 왜 서독을 선택했으며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서독 군사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귀국한 이들이 한국군 내에서 장성까지 진급하여 활동하면서 서독의 경험이 어떻게 한국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960년대 중후반 사관생도이거나 위관급 장교로서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한국군 엘리트들은 대체로 1970년대 말부터 영관급 내지 장성으로 진급함으로써 한국군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위치에 올랐다. 따라서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한국 군인들이 초급장교에서 영관급 나아가 장성이 되면서 그들이 독일군 시스템을 한국군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와 좌절 혹은 성공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인물들의 자세한 구술에서 미군 시스템과 독일군 시스템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한국군 내 적용의 구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단이 수집한 서독 유학을 경험한 총 5명의 구술을 기본 자료로 활용했다.¹⁷⁾ 구술자 5명의 이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¹⁸⁾

어 박영한은 서독 사관학교 졸업 후 정영주는 서독 괴테 인스티튜트를 졸업한 후,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군 내 영관급 장교로서 활동하다가 다시 서독 지휘참모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 17) 문영일, 민병돈, 정영주, 유보선 등 4명의 구술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사업단(<https://mkoha.aks.ac.kr/>)에서 온라인 상으로 영상 및 구술녹취록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구술자 총 5명 중 4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사업단의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2018년 구술이 진행된 박영한의 구술자료는 아직 웹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다.
- 18) 이하 구술자료 인용은 구술자(성명), 구술자수, 구술년월일 순으로 표기할 것이다. 구술자의 자세한 약력은 논문 마지막에 정리한 <부록>을 참고할 것.

〈표 1〉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구술자의 주요 약력

성 명 출생년도	육사기수 졸업년도	독일 유학	미국 유학	주요 경력
문영일 (1935)	14기 (1958)	지휘참모대학 (1969~70)	미 특수전학교 유학 (Ft. Bragg NorthCaroline)(1962)	육군 중장 전역
민병돈 (1935)	15기 (1959)	괴테 인스티투트 (Goethe-Institut) 독어독문과(1965~1966)	없음	육사 독일어 교수(67~69), 육군 중장 전역
정영주 (1938)	17기 (1961)	괴테 인스티투트 독어독문과(1967~1968) 지휘참모대학 졸업 (1971~1972)	없음	육사 독일어 교수(69~71), 육군 소장 전역
유보선 (1946)	24기 (1968)	육군사관학교 (1965~1968)	미육군기교 미고군반 (1973.08~1974.07) 미육군대학원 연수 및 졸업(1985.04~1986.06)	육군 소장 전역. 국방부 차관
박영한 (1945)	27기 (1971)	육군사관학교 (1968~1971) 지휘참모대학 졸업 (1981)	없음	주서독한국대사관 무관(1986~1990), 육군 준장 전역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현대사구술사팀이 수집한 구술자료는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인물들의 생애 전체를 담은 최초의 기록이다. 이 구술자료들 덕분에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 관련하여 별다른 문헌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군의 초창기 서독 군사유학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밝혀낼 수 있었다. 나아가 서독 군사유학이 한국군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데도 구술자의 생생한 기억들은 큰 도움이 됐다.

그런데 구술자료에 기반한 본 연구는 이러한 장점뿐 아니라 한계 또한 존재한다. 본고가 다루는 5명의 구술자가 당시 서독 군사유학생 전체가 아니며 그들을 대표한다고 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구술자료의 성격상 구술자 개인의 회상과 기억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구술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자는 현재 확보가능한 문헌자료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나아가 구술자들의 구술 내용의 교차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¹⁹⁾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문헌자료의 추가적인 발굴과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²⁰⁾

2.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의 유형 및 경험

가. 서독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1965년 1월 29일 한국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서독 육군사관학교로 3년간 파견 유학차 김포공항을 떠났다. 육군사관학교는 초기에는 매년 2명을, 1969년도부터는 1명의 생도만을 선발하여 서독으로 군사유학을 보냈다. 1964년 육사

19) 예를 들어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이 서독 일반대학에 군사유학을 보내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민병돈과 정영주의 구술을 교차했으며 나아가 당시 한독간 군사교류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했다.

20) 익명의 심사자 중 한명이 지적했듯이, 서독 군사유학생들이 서독에서 경험한 ‘임무형 전술’의 한국군 인식 노력이 실질적으로 한국군 내 교범과 교리발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문헌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성과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지점에서 다른 익명의 심사자는 구체적으로 미육군의 『FM 100-5 Operations』(1976년판) 교범과 한국군 작전 교범을 비교 분석해서 증언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해주었다. 구술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두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다만 본 연구자가 짧은 시간 안에 자료적으로 한국군 작전 교범을 확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를 논문에 반영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24기로 입학한 생도를 시작으로 한국 육사생도의 독일 육군사관학교 위탁교육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²¹⁾

『육군사관학교 30년사』 및 『50년사』에 따르면 외국사관학교로의 파견교육은 “육사 발전의 도약기에 이루어진 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교사(校史)는 한국 육군사관생도의 서독 육군사관학교 군사유학 결정이, “우방국과의 긴밀한 장기적인 군사교류의 필요성 제고에 따라 국방부 당국은 우선 1964년에 서독 국방성과의 접촉을 통하여 매년 육사생도 2명씩을 서독 육사에 유학시키기로 합의”한 결과였다고 적었다.²²⁾ 다만 교사는 당시 한국 국방부 당국과 서독 국방성이 어떻게 접촉을 해서 어떤 협정을 맺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신문을 보면, 1964년 8월 26일부터 민기식 육군참모총장이 약 1개월간 서독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순방했으며²³⁾ 그는 9월 3일 카우우베 폰 하셀 서독 국방상과 요담을 나눴다는 사실이 확인된다.²⁴⁾ 이때 한국 국방부와 서독 국방성이 한국 육사생의 서독 군사유학에 서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965년 1월 30일자 『경향신문』이 “한독교육보조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2명씩 서독 육사에 유학보내기로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²⁵⁾ 당시 신문 보도

21) 『경향신문』 1965년 1월 30일, 8면;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 50년사: 1946-1996』, 육군사관학교, 1996. 345쪽. 1965~1970년 시기 서독 군사유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1965년(24기): 유보선(기갑)·유홍모(보병), 1966년(25기): 이상선(보병)·조남국(보병), 1967년(26기): 이한홍(보병)·정채하(기갑), 1968년(27기): 김유성(보병)·박영한(보병), 1969년(28기): 김관진(보병)·박홍환(보병) 1970년(29기): 김태영(보병)

22) 『陸軍士官學校 三十年史』, 陸軍士官學校, 1978, 328~330쪽; 陸士 五十年史 編纂委員會 編,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 50년사: 1946-1996』, 육군사관학교, 1996. 344~346쪽.

23) 『경향신문』 1964년 9월 30일, 1면.

24) 『경향신문』 1964년 9월 5일, 2면.

25) 『경향신문』 1965년 1월 30일, 8면.

와 교사의 내용을 모두 고려해보면,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은 1964년 9월경 한국 국방부와 서독 국방성이 ‘한독교육보조협정’을 상호 체결함으로써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²⁶⁾

서독 군사유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했다. 교사(校史)에 따르면 1964년 육사 24기로 입교한 1학년 중에서 독일어 성적 20%, 내무성적 20%, 학업성적 20%, 환경 및 가정 배경 20%, 신체검사 20% 등의 심사기준 가지고 위원장을 생도대장으로 위원을 교수부 차장, 교무부장, 인문처장, 부관부장 등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선발했다고 한다.²⁷⁾

『경향신문』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중 100명이 지원했고 이들 중에서 2명을 선발했다고 보도했다.²⁸⁾ 그런데 신문 보도처럼 반드시 모든 육사 생도들이 공고문을 읽고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1964년 서독 군사유학생으로 처음 선발된 유보선은 선발 공고를 보고 신청했던 기억은 없고, “신청도 안했지만은 학교에서 독일 유학 가지 않겠나”고 먼저 물어왔다고 회상했다.²⁹⁾

또한 1967년 육사 27기로 입교한 박영한은 1학년 시절 10월달쯤 삼사관학교 체육대회 응원연습을 하러 이동하던 중, “일학년 중 30명을 호명”하면서 따로 “독일어 시험치러” 갔다.³⁰⁾ 즉 그에 따르면 서독 유학생을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1학년 생도들 중에서 30명 정도를 독일어 시험을 치르게 하여 평가했다고 한다. 박영한은 본인이 추후에 자신의 독일어 시험 점수를

26)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독했는데 이때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본 연구자는 외교문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협정체결일과 협정문’을 담은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27) 『陸軍士官學校 三十年史』, 陸軍士官學校, 1978, 328~330쪽.

28) 『경향신문』 1965년 1월 30일, 8면.

29)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30) 박영한, 2차구술, 2018년 8월 10일.

확인했는데 100점 만점 중 27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물론 육군사관학교 1학년 교과목에는 독일어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발된 박영한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박영한은 독일어 시험을 치르면서도 이것이 서독 군사유학생을 뽑는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에서 『경향신문』이 지원자 중에서 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육군사관학교는 1968년 1월에 서독으로 떠날 최종 유학생 2명을 뽑기 위해 1967년에 후보로서 3명을 뽑았으며 이들에게 독일어 훈련을 따로 가르쳤다. 이때 육사 교수부의 독어과 교수이던 민병돈은 서독 사관학교 군사유학 준비 생도들을 가르쳤다. 민병돈은 사관생도뿐 아니라 위관급 및 영관급 장교 약 7명도 함께 독일어 교육을 했다고 한다. 1967년 12월 육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 후보 3명 중 1명을 탈락시키고 박영한과 김유성 두 명을 파독 군사유학생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런데 탈락한 1명은 최종적으로 선발된 2명이 서독으로 떠날 때까지 발생할지 모르는 낙오에 대비해 계속 유학 준비를 함께 했다고 한다.³¹⁾

육군사관학교 생활과 학업 성적이 모두 뛰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서독 유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었다. 평가항목에서 20퍼센트를 차지하는 “환경 및 가정배경”도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5년 1월 첫 서독 사관학교로 군사유학을 떠나는 육군사관생도는 입교 기준 24기 유보선과 유홍모였다. 유보선은 본인의 아버지가 육사 5기생으로 6·25전쟁 중 전사했기 때문에 “집안배경도” “확고”했다. 유홍모의 아버지도 경찰로서 모두 환경과 가정배경이 ‘확실한’ 생도생들이었다.³²⁾

31) 박영한, 2차구술, 2018년 8월 10일.

32)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흥미롭게도 1965년 서독 군사유학을 선택한 유보선은 자신이 독일유학을 결정한 이유에는 한국군의 폭력적인 군사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유보선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1학년 시절 학업성적은 1등이었으나 개인적으로 기합을 주는 군대문화에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 그러던 차에 학교에서 독일 유학에 대한 권유가 있었고 “하도 기합을 받다 보니까 돌파구로 그냥” 응했다고 한다.³³⁾

1965년 1월 29일 유보선과 유흥모는 서독으로 3년간 군사유학을 떠나기 위해 김포공항에 갔다. 서독 사관학교로 군사유학을 떠나는 첫 사례였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³⁴⁾ 『경향신문』은 두 육사생도의 사진을 실은 「사관생도판」 한·독친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음 〈그림 1〉과 같이 보도했다.

〈그림1〉 한국군 최초 육사생의 서독 유학



* 출처: 『경향신문』, 1965년 1월 30일자 8면.

33)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34) 『동아일보』 1965년 1월 27일, 3면.

이들 유학생은 독일에 도착하여 먼저 국방성 군사언어학교에서 독일어 과정을 약 6개월간 이수했다. 이후 전투병과학교에서 차량 운전, 병, 분대장, 공수유격훈련 및 소대장 과정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뮌헨에 있는 육군장교학교를 졸업하여 3년간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1968년 초에 귀국했다.³⁵⁾

서독 군사유학생은 6개월 어학과정을 끝낸 후 기초군사훈련을 2개월 정도 마친 다음에 병과를 선택했다. 유홍모는 보병을 유보선은 기갑을 선택했다. 한국군 시스템과 달리 서독의 사관생도는 무등병으로 시작하여 앞으로 장교가 될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관생도의 소매에다 마크 형태의 카뎃(Kadett)을 달았다. 즉 서독 사관생도들은 무등병에서 시작하여 계급이 올라가면서 병장, 하사, 중사, 상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위로 임관하는 시스템이었다.

기갑을 선택한 유보선은 먼저 2개월 간 모든 장비에 대한 운전 교육을 마치고 면허증을 땀다. 그다음으로 분대장 교육 및 분대장 실습을 각각 6개월 정도 받았다. 그는 한국의 육군사관학교와 달리 학내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일반 전투부대에 가서 1개 분대를 지휘 통솔하는 분대장을 맡았다. 유보선은 분대장 시절 한국의 군대문화와 서독의 군대문화의 충돌을 경험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분대를 지휘하는데 그 개네들이 체격들이 크잖아요 우리보다. 그 개네들 쪽 이렇게 세워놓고, 어, 군기잡고, (...) 군기잡는 방법은 기합주는 거밖에 몰라가지고, (...) 그런데 독일군이 창설되는 이차대전 때 패한 후에 창설되면서, 미군들에 의해서 창설되면서 앞으로 다시는, 세계대전을 (...) 일으키지, 못하도록 가장 민주화된 군대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인권에 대한 또, 이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구타라든가 (...) 어떤, 비인간적인 기합 이런 게

35) 『陸軍士官學校 三十年史』, 陸軍士官學校, 1978, 345쪽.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 이 덩치 큰 사람들을 고분고분 말을 하게,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은 내가 육사에서 일년 동안 당했던, 그것 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막 뽕뽕이도 돌리고 선착순도 시키고 막 했죠. 그리고, 거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렇게, 어, 복장이 불량해도 상대방에게 당신 몸에 손을 대도 좋으냐, 하고, 존댓말을 씁니다. 거긴 이제 반말도 있고 존댓말도 있는데, 당신 몸에 손을 대도 좋습니까, 부하인데도, 그렇게 존댓말을 쓰면서, 어, 허락을 득하고 이제 복장 교정해주고 넥타이 빼놓아진 거 이렇게 해주고 그러지 그걸 묻지 않고 그냥 했다가는 그거 폭력이에요. 그 정도로 인제 굉장히 인권이 강화됐죠. 그것도 모르고 이제 처음엔 그냥, 응? 넥타이도 그냥 이게 상태가 이게 뭐냐 그러고 탁 잡아서 해주고, 또, 이 쪼그려 뛰기도 시키고 뭐, 뽕뽕이 막 돌리고 막 했지. 근데, 참 그 독일 애들이 정면에서 반박을 안 하고, 그렇게 부당한 명령지시를 하더라도 다 수용을 하고, 그 나중에 인제 중대장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 인제 중대장이 불러다가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본국에 귀환시키겠다 하고 경고도 받고, 그런 기억이 나요.³⁶⁾

유보선 뿐 아니라 3년 후배인 박영한도 서독의 유학 시절 기합 없는 군대 훈련 문화에 대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박영한은 기합을 주는 한국군의 문화가 “일제 시대 때부터” “뿌리 깊은 전통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영한은 귀국하여 장교생활을 할 때는 이런 “구습 타파”를 위해 노력했지만 소수 독일 유학을 갔다온 장교들만으로는 한국군의 고질적인 폭력적인 군대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했다.³⁷⁾

36)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37) 박영한, 2차구술, 2018년 8월 10일.

서독의 사관학교 교육시스템에 대해 유보선과 박영한은 모두 자신들의 귀국 후 군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회상했다. 유보선은 한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소위 임관 후에야 경험할 수 있는 부대 지휘 경험을 이미 군사유학 과정에서 체득했기 때문에 귀국 후 소위로 임관 후 부대를 통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독일 시스템은 병, 병을 경험, 그러니까 무등병부터, 그, 하사관 생활도 하고 이제 장교로 임관하기 때문에 병과 하사관들의 생활을 다 해보고 그 사람들의 심리상태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장교로 임관하더라도 부대지휘 하는 데는 우리나라 장교 임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부대 사정에 밝겠죠. 병들, 하사관들을,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수준이 어떻고, 어 하는 걸 전부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니까, 부대 지휘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는 병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같은 집단에서 공부만 하고 같은 끼리끼리만 하다가 갑자기 소대장 명령받아서 소대를, 응?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하려니까 병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사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실습 그걸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급자가, 계속 지시를 해줘요. 요 길을 요렇게 따라가가지고 여기에선 뭐 어떻게 하고 여기에선 어떡하고 뭐, 세부적으로 지시를 해주는데, 만약에 그 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상황이 바뀌었다,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났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당황하게 되겠죠. 독일식 교육을 배우면은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또 다른, 임기응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³⁸⁾

38)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나. 서독 지휘참모대학

서독 군사유학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뿐 아니라 위관급 및 영관급 장교들의 서독 지휘참모대학(Führungsakademie der Bundeswehr) 위탁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1965년 육군사관생도가 처음 서독으로 유학을 갈 때 지휘참모대학으로 유학가는 장교로 육군에서 2명 해병대에서 1명 총 3명이 더 있었다.³⁹⁾ 이렇게 1965년에 시작된 지휘참모대학 유학생은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69년 1월 서독 지휘참모대학에 유학을 갔던 문영일에 따르면 자신이 선발된 1968년 당시를 제3기였다고 회상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1966년이 제1기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구술자의 착오이거나 실제 중간에 한해가 빠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영일은 1969년 독일로 군사유학을 떠난 숫자는 사관생도 2명과 병과학교인 고등군사교육반 과정에 2명 그리고 지휘참모대학에 3명 총 7명이 함께 출발했다고 한다고 회상했다.⁴⁰⁾ 이때 1969년 문영일은 지휘참모대학에 가는 영관급 장교로서 육군사관생도를 책임지고 주독 독일대사관 무관부까지 인솔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 문영일은 1969년 당시 육사 28기 생도이던 김관진을 인솔하여 서독으로 군사유학을 떠났다. 문영일은 유학 과정에서 사관생도와 휴일에 식사도 같이 하며 여가도 함께 보내며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⁴¹⁾

문영일은 서독에 도착한 후 6개월간 어학 연수를 이수했으며, 실습을 거친 후 서독 함부르크(Hamburg)에 있는 지휘참모대학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도 앞서 서독 군사유학을 떠났던 사관생도와 마찬가지로 서독 군대의 실습을 강조하는 훈련 경험에

39)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40) 문영일, 2차구술, 2015년 10월 13일.

41) 문영일, 2차구술, 2015년 10월 13일.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어학과정을_인용자] 졸업하면은 이제 함부르크 학교에 가기 전에 이, 독일 사람들 실습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중요시해. 모든지 실습, 이론보담도 실습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두달 동안 졸업하고, 6개월 졸업하고, 두달 동안 부대에 가가지고 일반 부대, 독일 부대, 내가 간곳은 어, 알프스산 밑에 있는 (...) 산악부대에 가서 두달 동안 여단이에요. 여단 참모를 겸해서 어, 연수를 해요. 부대도 살피고, 그러고 난 뒤에 함부르크(Hamburg)에 가서 10개월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본과 10개월이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달을 사단급, 사단급 부대 가가지고 사단 참모 또 오, 연수를 해요. 그러고 이제 귀국을 하는 겁니다.⁴²⁾

1971년 3월 정영주는 소령 계급으로 서독 지휘참모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쾰른(Köln)에 있는 연방어학국에서 3개월 어학연수를 마친 후 함부르크에 위치한 지휘참모대학에 들어갔다. 본과정은 9개월이었다. 정영주는 앞서 문영일과 달리 1970년대 초 독일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의 분위기에서 특이한 경험을 했다. 당시 서독은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동구권과 화해정책을 폈기 때문에 구주안보협력기구를 만들면서 모든 국방정책을 개방하자고 했으며 핵무기를 감축하며, 심지어 모든 훈련에 각국이 모두 공동 참관하는 정책을 펼쳤다. 따라서 정영주는 동구권 즉 공산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훈련에 실제 참가했다. 특히 그는 “공산국가”이던 “소련군대” “폴란드, 체코” “헝가리”와 함께 참관하는 경험에 큰 놀라움을 느꼈다고 한다.⁴³⁾

42) 문영일, 2차구술, 2015년 10월 13일.

43) 정영주, 2차구술, 2016년 11월 17일.

다. 서독 일반대학

앞서 두 유형과 달리 일견 군사 영역과 무관해 보이는 서독 내 일반대학에 유학을 간 사례도 있었다. 민병돈은 서울 휘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육군사관학교 15기로 입학한 후 1959년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 보병 제25사단 소대장으로 부임했다. 1963년 육군정보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1965년 2월 서독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독일어 성적이 매우 우수했을 뿐 아니라 어릴 적 실제 독일인과 대화를 해봤던 경험이 풍부하여 독일어 회화 실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는 당시 군내 분위기는 해외 유학하면 으레 미국으로 가는 것이 대세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보학교에 파견 나와 있던 주한 서독무관 육군중령 알프레드 자그너(Alfred Zagner)는 그에게 서독 정부초청 장학금으로 서독 유학생을 뽑는 시험에 응시해보라는 권유했다고 한다. 그가 회상하기를 당시 서울에서 시험을 봤을 때 군인뿐 아니라 일반대학 출신자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⁴⁴⁾

시험에 합격한 민병돈은 1965년 2월부터 괴테 인스티투트(Goethe-Institut) 독어독문학에서 약 2년간 유학했다. 당시 서독 대학의 지도교수는 처음으로 민병돈 같은 직업군인을 가르쳤다고 다. 민병돈은 일반적인 군사유학과 달리 군복을 입지 않았으며 주독 한국대사관과도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하숙비와 학비 등을 바이에른(Bayern)주 정부 장학금으로 해결했다.

그는 독일 유학을 그것도 전투병과 장교를 2년씩이나 전혀 군대와 상관없는 공부를 하게 된 까닭을 개인적 인연에서 찾았다. 그는 당시 정보학교 교장 최내현이 마침 육군본부 육군정보참모부로 영전해 갔고, 그가 건의하여 유학을 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

44) 민병돈, 2차구술, 2015년 1월 4일.

다.⁴⁵⁾ 이처럼 민병돈 본인은 자신이 군사 영역과 무관한 학문을 서독에서 배우게 된 이유를 개인적 관계에서 찾았다.

그런데 민병돈 다음으로 동일한 곳에 유학을 갔다온 정영주의 설명은 달랐다. 정영주는 서울 중앙 중·고교를 졸업하고 1957년 육사 17기로 입교한 후 1961년 졸업했다. 1966년 1년간 정보학교 전략정보반 독일어반 교관을 역임했으며 이때 주한 서독대사관과 접촉했을 뿐 아니라 민병돈처럼 무관이던 자그너를 만났다. 그리고 그는 동일한 경로, 즉 서독 정부초청 장학금으로 뮌헨 괴테인스티투트에서 어학을 배우고 교사 자격증을 받는 과정으로 1967년부터 2년간 서독에서 유학했다. 정영주는 민병돈이 개인적 관계라는 차원에서 서독 일반대학 유학을 설명한 것과 다르게 본인의 유학을 군사교류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64년도에 독일에 가서 간호장교, 간호원하고 그 탄광, 어, 그 광부들 보냈잖아요. 그 뉘브케(Lübke) 대통령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교류가, 군사교류까지 같이 했어요. 군사교류. 우리가 군사교류도 같이 하자. 그래서 군사교류가 되는 바람에 그 무관이 내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어, 독일에 유학을 가서 그 소정의 과정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받아서 독일 정부의 그 장학금 받고 이제 독일에 갔다 온 거예요.⁴⁶⁾

정영주는 육사 19기 김건한도 본 대학 장학금을 수령하며 독일문학을 전공하며 서독 일반대학에서 유학을 했다고 구술했다. 이렇게 1965년 민병돈을 시작으로 2년씩 독일어학 관련 유학을 보내는 과정이 한국과 독일 사이에 맺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민병돈(15기),

45) 민병돈, 2차구술, 2015년 1월 4일.

46) 정영주, 2차구술, 2016년 11월 17일.

정영주(17기), 김건한(19기)은 모두 서독 유학을 마치고 바로 육군 사관학교 독일어 교수를 역임했다. 실제 앞서 박영한의 구술에서 드러나듯이, 민병돈은 1967년 육사에서 독일 군사유학을 준비하는 사관생도 및 위관급, 영관급 장교들의 어학 교육을 담당했다. 민병돈과 정영주의 구술내용은 상반되지만 1965년 한독 간 군사교류가 본격화되던 시점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일견 군사유학과 무관해보이는 서독 일반대학으로의 한국군 파견도 한독 군사교류의 일환이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처럼 문헌자료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서독 일반대학으로의 군사유학은 1965년 이후 계속되는 서독 사관학교 및 지휘참모대학으로의 한국군의 군사유학에 필요한 독일어 교육 수준을 높이려는 한국과 독일 양 국가간 모종의 협의에 따라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⁷⁾



3. 서독 군사유학이 한국군에 미친 영향

1965년부터 시작된 서독 군사유학은 유형별로 세 종류가 있었으며 실제 1년에 군사유학생은 약 10명 내외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박영한은 1968년 서독 군사유학 준비를 위해 육군 사관학교 독일어 교수가 가르친 학생이 사관생도와 영관급, 위관급 장교들을 포함하여 약 10명 정도로 기억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문영일도 1969년 서독으로 군사유학을 떠날 때 함께 갔던 인원이 10명 남짓이었다고 기억했다.

47) 구체적으로 언제 이런 한국과 독일 간의 교류사업이 종료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은 외교문서 같은 문헌자료를 좀더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군사유학이 이미 시행되고 있던 미국 군사유학과 비교하면 서독 군사유학생 숫자는 매우 적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독 군사유학을 마친 사관생도나 위관급 및 영관급 장교들은 상당수 ‘장성’으로 진급하여 한국군 내에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예를 들어 서독 사관학교를 졸업한 1960년대 중후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영관급 이상의 장교가 되는 1970년대 말부터 서독 군사유학의 경험이 한국군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서독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장교들에 의하여 ‘임무형 전술’ 개념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제기됐다고 밝히고 있다.⁴⁸⁾

그렇다면 서독 군사유학의 경험이 과연 한국군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한국군 장교들은 독일군 시스템과 미군 시스템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먼저 임무형 전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임무형 전술

통제형과 달리 임무형 전술(auftragstaktik)은 독일에서 19세기부터 태동했다.⁴⁹⁾ 임무형 전술은 ‘임무에 의한 지휘 방식’으로서 모든 임무는 부하의 행동과 책임에 여유를 주기 위해 예하 부대의 지휘관의 위임하에 주도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전술을 의미했다.⁵⁰⁾ 독일은 150여년 전통의 임무형 전술을 바탕으로 하며, 1998년 임무

48)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임무형 지휘 활성화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2016, 7쪽.

49)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임무형 지휘 활성화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2016, 4쪽; 노병석 『임무형 지휘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군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5쪽. 디르크 W. 외팅 지음, 박정익 옮김, 『임무형 전술의 어제와 오늘』, 백암사, 1997, 16쪽.

50) 이한홍 『독일군 임무형 전술에 관한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 1995, 4쪽; 이영주 「임무형 전술 Auftragstaktik의 본질에 대한 고찰」, 『한국군사학논집』 67(1), 126쪽.

형 지휘를 공식적인 독일군의 지휘개념으로 채택했다.⁵¹⁾

서독 군사유학을 처음으로 떠났던 유보선은 일반 전투부대에서 1개 분대장을 하면서 지휘통솔을 했는데 서독 사관학교 시스템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보선은 미국식의 지시형과 독일식의 임무형을 나눠서 후자의 장점을 높이 평가했다. 유보선은 독일식 임무형 전술을 한국군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고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어, 실질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무만 딱 주면은 저 목표를 정해주고 저거, 뭐, 따라오려면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해서 저걸 딸 것이냐 하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임무형이죠. 임무형. 그런데 미국식은, 일일이 이게 어디, 어디로 지나가서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공격해서 따라 하는 식으로 세세하게 지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 융통성이 없고 이저 어, 상급자의 지시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그게 인제 임무형 명령하고, 어, 우리 군대하고 좀 다른 점인데, 그래도 독일 갔다 온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군대도 많이, 변화를 시켰는데, (...) 독일 사관학교에서 그런 식의 트레이닝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인제 그, 상당히 많이 바뀌고는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창설이 미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틀이 바뀌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⁵²⁾

51) 육군본부 『인간중심의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 2006, 3-10쪽.

52) 유보선, 1차구술, 2017년 10월 26일.

박영한도 독일의 임무형 전술 시스템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1968년 서독 사관학교에서 마지막 과정으로 프랑스 사관학교와 합숙훈련을 했는데 여기서 프랑스는 “독일보다 더 자유스럽게 스스로 참여하도록 교육하나”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도 당시까지 “짧은 기간에 데려다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비스트 트레이닝(beast training)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강제적인 훈련 시스템을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박영한은 베트남전쟁을 겪으면서 미국도 서독의 임무형 시스템을 확실히 받아들이게 됐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근데 미국이 임무형 전술을 확실히 받아들인 것은, 내가 나중에 이제 쪽 관련되는 거 연구하다 알았는데, 월남전에 당했거든. 월남전에서는 진짜 끈끈이 하나하나 지휘했던 말이야. 국방부에서 북폭 하면서, 무기 갖다 쏴야 부으면 될 줄 알고 밑에 군대들을 딱 묶어놓고, 위에서 계획한 대로 북폭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안되잖아.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손발 묶어놓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래놓고 그냥 폭격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안 되거든. 월남전에서 패망한 후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미국 사람들이 연구한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졌나? 그때 연구한 게 다시 독일의 아우프트라그스타틱(Auftragstaktik), 임무형 전술 다시 연구한 거야. 그걸 잘 연구해서 소화해가지고 교범도 많이 개량하고, 훈련 제도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걸프전에서도 승리한다고 볼 수 있죠. 승리하고, 여러 가지에서 되잖아.⁵³⁾

53) 박영한, 3차구술, 2018년 8월 14일.

박영한의 설명처럼, 미군은 베트남전 패인을 분석한 결과 화력 위주의 소모전에서 ‘기동전 사상’으로 전환했으며 특히 공지전투 교리 수립과정에서 서독군의 임무형 지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하기 시작했다. 실제 미군은 1990년대 걸프전 당시 이를 적용하였으며 2012년에는 『임무형 지휘 백서』를 출간하기까지 했다.⁵⁴⁾

유보선처럼 박영한도 자신의 부대만큼은 독일식 임무형 훈련을 실시하려고 노력했다. 박영한은 1985년 서독 지휘참모대학에 군사 유학을 두 번째 다녀온 직후 육군대학 교수로서 전투위원회 교리 발전부에 발령받았다. 당시 교리발전부는 한국에 기계화 부대가 창설되어 수도기계화사단도 있었지만 아직 교범이 없던 상황에서 사단 교범을 만들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상태였다. 이때 박영한은 선배 교관들이 사단 교범이 없다는 것을 듣고 본인이 86년, 87년 1년 과제로 사단 교범을 제작 과제를 신청했다. 그는 1년 과제로 잡고 최소한 초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소련·독일의 관련 교범 및 일본의 『통수강령』 등을 참조했다. 특히 그는 사단 교범 초안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미국 스타일로 큰 틀을 잡고 곳곳에 독일식 시스템을 집어넣었으며 특히 독일식 임무형 전술 개념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고 한다. 면담자와 구술자의 대화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구술 내용이 길지만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54)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임무형 지휘 활성화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2016, 5쪽.

면담자: 그게 그럼 만드는 과정, 실제 만들어 진 게 독일 게 주가 되는 건가요? 어떤, 어떤...

구술자: 많은 부분이, 많은 부분이 독일 걸 내가 많이 넣었어. 기동 이런 분야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응? 음, 많이 넣고. 큰 틀은 이 무기 체계나 이런 게 미국하고 같으니까 이 장, 절 편제 같은 거는 미국 스타일로 다 하면서.

면담자: 아, 큰 틀은 일단은 미국 스타일, 시스템 그대로. 기존 시스템 그대로...

구술자: 아, 무기, 저, 교범 체계는 이런 미국 시스템, 우리 하는 시스템으로 장절 구분은 다 하되 내용, 내용에 가가지고 중요한 어떤 핵심 개념에는 이제 독일 개념을 많이 넣었지.

면담자: 그러니까 장군님이 판단하실 때 저는 되게 궁금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처음에는 일본식이 었다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대개 미국화 된 시스템으로 가, 가고 있었던 거고 그 와중에 또 어쨌든 독일로도 유학을 보내서 이제 장군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실제 또 독일적인 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안에.

구술자: 그렇지 그 집어넣는 거지.

면담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틀은 어쨌든 미국적인 틀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요소요소를 조금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바꾸는 게 그러니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건지. 정말 미국하고.

구술자: 아, 그래 내가 나중에 해보니까 미국도 이미 독일 그, 임무형 지휘 전술을 이미 수용을 했더라고. 왜냐하면 월남전에서 뭐 실패하고, 했다고 보고 나왔잖아요. 군사적으로 반성을 했어. 새로 연구를 했어. 독일에 대해서 새로 연구했다고. 그래 거기 에 임무형 전술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미 적용 했더라고. 그래 참모 판단하는 방법. 다 알아. 임무형 전술을

적용하게 되면 항상 지휘관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의도에 맞춰서 이 개념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미국에 다 반영되어 있어. 이제 조금씩만 넣어서 강조하면 되는 거야.

면담자: 요때 지금 육군대학에 계실 때 실제 이제 없던 사단 교범을 만드실 때 어쨌든 다 참고는 하셨고 특히 이제 미국이 큰 틀이지만 또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독일 꺾 끌어다 쓰신 건데...

구술자: 그게 이제 임무형 전술이지.

면담자: 임무형 전술 이런 건데 근데 이미 고 시점에도 독일 교범에도 아니, 미국 교범에도 많이 좀 반영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 교범 자체는 독일 교범을 그 가장 기본 그런 요소요 소에...

구술자: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지.⁵⁵⁾

이처럼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한국군 장교는 서독의 임무형 전술 시스템을 매우 높게 평가했으며 이를 한국군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이들은 우선 군사유학 후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 적용하려고 했으며, 박영한의 경우 수도기계화사단 교범을 만드는 데 독일식 임무형 전술 시스템을 가장 많이 집어넣었다고 회상했다. 그렇다고 미군 시스템과 독일 시스템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군도 독일식 임무형 전술 체계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사단 교범을 작성할 때 박영한은 서독 군사교범을 가장 많이 반영했다고 구술했다.

55) 박영한, 4차구술, 2018년 8월 24일.

나. 복무규율·교육과정·기갑부대운영

사단 교범뿐 아니라 독일식 복무규율을 한국군에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정영주는 서독 지휘참모대학을 유학한 후 육군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74년 4월 제6군단 제28사단 제273대대 대대장으로 부임했다. 이때 그는 군단장 이재전의 지시로 서독 복무규율을 번역하여 그것으로 군단 내 군인 복무규율을 작성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단장이_인용자] “독일의 그 군대가 상당히 규율이 좋고 그렇다는데, 예, 독일 복무규율에 대해서 어,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자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마침 또 복무규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복무규율 1항부터 계속 번역을 좀 해라, 그 래가지고 군단장 지휘지침 내려갈 때마다 내가 제이, 한 장부터 어? 부하는 상관에게 절대 명령복종이다. 어? 뭐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복무규율이에요. 거 참 멋있어요, 그 독일 복무규율이. 내가 다 기억을 못지만. 그래 한 절씩 계속 그것을 번역을 해서 그 군단의 이 배, 비서실장에게 얘기하면 비서실장이 군단장 지휘서신 때마다 그 절 딱딱 번역한 걸, 어? 거기다 쳐 넣었어. 그래가지고 번역자, 독일 지휘참모대학 몇 대대 중령 정영주. 군단장 지휘서신에 내 이름이 번역자로서 전 군단에 퍼지니까 나야 뭐 너무 좋은 거지.⁵⁶⁾

문영일은 1981년 1월 1일 육군대학 교수부장으로서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서독 참모대학 교육과정처럼 개혁하고자 했다. 그는 연구단계로서 준비단계였기 때문에 시행 단계까지 가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56) 정영주, 2차구술, 2016년 11월 17일.

육대 교수부장이 돼 가지고 이제 지난 번에 내가 이야기 했던 그 욕심, 독일 참모대학에 교육과정,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즉각, 즉각 말이야. 그, 육대 교육혁신위원회. 하하하. 사실은 이게 총장이 하셔야 되는 건데, 육대 총장일 할 일을 육대 교수부장, 그런데 교수부장도 교육에 관한 건 힘이 있는 거니까. 지난 번 얘기했지마는, 장군이 되면은 뭔가 자기 뜻을 펼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육대, 그동안에 마음먹고 있던 거 육대 교육혁신위원회, 탁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당시 막 보니까 이제 벌써 나는 독일 갔다왔지마는, 많은 나라에, 외국에 참모대학을 갔다 오는 거예요. 캐나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불란서, 영국 막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 모아서, 모아가지고 ‘야, 너희가 보고 듣고 온 거 말이지. 교육혁신위원회 만들어, 만들었으니까 해란 말이야. 하자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연구를 시켰어요, 연구를 시켜가지고 몇 ‘한 달 내로 우선 자료 수집하고 3개월 내로 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입안을 해서 요거 내년부터, 내년도부터는 꼭 실천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4월이 돼서 명령이 난거지.⁵⁷⁾

서독 사관학교에서 기갑을 선택한 유보선은 한국에 귀국하여 군 생활을 하면서 소대장, 기갑여단장 전속부관, 기갑학교 전출처 교관 그리고 기갑여단장을 하던 시절 내내 독일 시스템을 한국군에 적용하는 데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는 귀국 후 1968년 창설된 제2기갑여단 소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당시 한국군은 서독에서 배워온 기갑 운용체제와 완전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1968년 1월 김신조 사태 때문에 한국군은 기갑을 서독처럼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 형태로서 진지만을 만들고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답답해했다.

57) 문영일, 5차구술, 2015년 12월 2일.

김신조 일당이 넘어오는 바람에, 그런 활동에 주력했고, 탱크도 기동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방에 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고정전차로 투입을 해놓고, 북한지역에 뭐 일이 일어나면 즉각 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그러니까 기동전과는 다른 양상의 운영을 했죠. 내가 배운 거하고는 정반대, 아주 동 떨어진⁵⁸⁾

그는 기갑여단장 전속부관 시절 한국군의 기갑여단의 문제점을 고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군의 장비 상황과 지리적 조건이 서독과 다른 점 그리고 자신의 계급이 낮아서 개선하지 못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워낙에 우리 군이 낙후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휘제대가 기갑은 기갑여단이었어요. 기갑여단, 그리고 거기에 있는 탱크들은 전부 6·25 때 사용했던 노후화된 전차고, 근데 독일은 그 뭐 군단 정도의 제대가 있고, 또 이제 기동전 위주고, 우리는 진지전 위주고, 탱크를 진지예다가 틀어박고 이렇게 사격하는 그런 위주로 사용을 했고, 보병하고 탱크하고 같이 협동작전을 하면서 탱크가 기동을 하면 보병들은 뒤따라오면서, 아니면 탱크에 올라타고 오던가. 근데 독일에서는 그런 그게 없거든요. 보병도 장갑차 타고 같이 쫓아오고, 탱크하고 같이 기동전을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보병하고 같이 하다 보면 탱크가 속력이 늦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완전히 전술, 물론 지형이 달라서 그렇지만, 거기는 광활한 평야고, 우린 산악지대고 하니까, 독일전술을 옮겨오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 당시는 내 위치가 소대장으로, 전속부관으로써 영향력이 하나도 없죠. 어떤 교육기관의 고급신분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전술을 개발하고 하면 몰라도, 말단부대에서 뭐 시키는 일만, 전속부관이라는 게 심부름만 하는 그건데. 그런 그거는, 그

58) 유보선, 2차구술, 2017년 11월 2일.

당시 여단장도 그런 분야에 깊이 이렇게 나한테 뭐 묻고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기갑여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갑여단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그런 면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인제 어떤 그, 그 기갑여단이 생겼지만 장비가 채 들어오지도 않았고, 완편이 되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 장비 완편하기 바쁘고, 병력보충하기 바쁘고 그랬지, 사령부만 딱 세워놓고 밑의 부대가 아직 보충이 안 되었으니까.⁵⁹⁾

1973년 유보선은 기갑학교 전술학처 교관에 부임했다. 그는 여기서도 서독 군사유학 시절 배운 내용을 한국군 작전 내용에 반영하고 싶었다. 그는 교관으로서 이미 정해진 교안에다 자신이 배운 것을 일부 반영하는 형식으로 전술학처장이나 학교장 등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로써 그는 기존에 보전협동작전 위주의 개념에 전격작전 개념을 조금 가미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전에는 보전협동작전 위주로 되어있었지만 그런 개념의 그런 전술 위주였는데. 속도도 없고, 기동도 없고. 그냥 사람 걸어가는 속도 정도. 그리고 진지전. 방어할 때도 진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전차를 틀어박아 놓고, 포를 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어, 내가 좀 바꾼 거는 방어할 때도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집결하고 있다가, 적이 뚫고 들어오면 이 집결하고 있는 부대가 역습을 해가지고 가서 타격을 하는, 역습작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진지전에서 기동전으로 조금 바꾸고, 공격작전에서도 그런 제병협동. 그런 개념으로 좀 바꾸고. 근데 아주 크게 많이 수정할 수는 없고. 제병협동. 제

59) 유보선, 2차구술, 2017년 11월 2일.

병과가 협동해서 작전하는 거죠. 항공, 포병, 전차, 보병. 이렇게 여러 부대들이 다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가면서 작전하는 그런. 독일의 이차 세계대전 때 전격전, 블리츠크리크(Blitzkrieg).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보전협동 위주의 그 속도도 없고 기동도 없는 그런 작전에서, 그런 전격작전 개념을 조금 가미한 그런 거죠.⁶⁰⁾

1990년 드디어 유보선은 제3군 제1기갑여단장으로 부임했다. 소대장 시절과 달리 20여년이 지나 여단장에 오른 그는 한국군의 기갑이 장비 면에서도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기갑 부대 운영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이제 우리 군 수내부에서도 전력 증강이 되어 가면서 기갑 부대 운영에 대해서 어, 어, 뭐 많은 어, 외국의 예를 배워오고 하니까 기갑여단이라 하면은 규모가 굉장히 큰 부대니까, 이 부대를 보병들 지원해 주, 주는데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 간의 기갑 여단이 하나 정도 이렇게 지원 되가지고 군단 작전 하는데 군단 같으면은 이제 사단이 여러 갠데, 그 작전 할 때 사단이 전방작전하면은 기갑여단은 후방에서 어디가 위험한가 하는 걸 보고, 그 지역이 위험하다 하면은 그 지역에 쫓아가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또 어느 지역이 뚫렸다 하면은 쫓아가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또 이제 뭐 과감한 지휘관들은 이제 일부러 이제 유인을, 적을 유인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슬슬 이제 뒤로 후퇴해가면서 그 지역으로 적을 몰아넣은 다음에 기갑부대 투입해가지고 적을 섬멸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기동전을 많이 활용하게 된 거죠. 그건 이제 기갑 여단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⁶¹⁾

60) 유보선, 2차구술, 2017년 11월 2일.

61) 유보선, 4차구술, 2017년 11월 15일.

이처럼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한국군 장교들이 영관급 혹은 장성급이 됐을 때 독일군 시스템을 한국군 교육과 사단 교범 제각, 복무규율, 군사훈련에서 직접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인물들의 개별적 노력에 의해 일부 서독군 시스템이 적용되기도 했다. 물론 기갑부대 운영 같은 군사훈련의 경우는 당시 현실적인 한국군의 장비상 제약 때문에 독일식 시스템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그런데 군사유학을 경험한 장교가 여단장으로 한국군 내에서 성장한 시점에서 마침 한국군의 장비 발달도 함께 향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서독에서 배운 기갑부대의 기동전을 현실화 시킬 수 있었다.

사단 교범에 독일식 임무형 전술 개념이 포함된 것은 한국군 사단 훈련에서 하나의 표준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독 군사유학을 갔다온 후 임무형 전술을 강조한 박영한은 1996년 『독일군 지휘철학』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흥미롭게도 이 문헌은 2006년 육군본부가 펴낸 『임무형 지휘』라는 교육회장의 참고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독 군사유학생들의 경험이 점차 한국군 내 교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⁶²⁾

62) 육군본부 『인간중심의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 2006, 부1-2쪽. 물론 독일식 임무형 전술이 한국군 훈련 교범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명확히 어떠한 문구를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으로 한국군 육군 훈련 교범의 분석이 필요하다.

4. 맺음말

본고는 1960년대 중반부터 서독으로 군사유학을 갔던 초창기 한국군 장교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이 한국군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다. 초창기 한국군 장교의 서독 군사유학은 육군사관학교·지휘참모대학·일반대학 등 세 곳에 10명 남짓 파견되는 형태였다. 서독 군사유학을 경험한 이들은 대체로 그곳의 군대문화가 한국과 달리 기합이 없이 자율적이며, 훈련 방식도 ‘임무형’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서독 군사유학을 하고 돌아온 한국군들은 1970년대 말부터 한국군 내에서 영관급 이상의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휘하의 부대 내 차원에서라도 서독식 군사문화 및 임무형 전술 등을 한국군 내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다. 때로는 한국군의 특정 사단의 교범이나 복무규율이 작성될 때, 서독 군사유학생에 의해 서독 교범이 활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생 숫자에 비하면 소수였지만 서독 군사유학생들이 한국군 내에서 일정한 지위에 오르게 되는 1970년대 말부터는 한국군에 독일식 군사 시스템이 일부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독일군 시스템이 한국에 적용된다고 하여 반드시 미군 시스템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독일에서 유래한 ‘임무형 전술’과 이를 한국군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던 서독 군사유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지휘관 계급에 오른 1980년대 이후 미국도 독일의 임무형 전술 시스템을 이미 흡수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유보선은 미국식 시스템과 독일식 시스템을 구별하기보다 미국도 이미 독일식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독일과 미국의 개념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단지 제대의 규모가 다를 뿐이지. 사관생도로써 배우는 제대의 규모는 소규모 제대고, 여기 미국 고등군사반에서 배울 때는 이미 대위, 또 거기 온 사람들은 소령도 있고 뭐 하나까. 그 장교들 상대로 하는 교육은 더 큰 제대니까. 개념은 같지만, 제대가 다르죠. (...) 그제 원래 독일에서 발전되어가지고 이차 세계대전 때 성공을 거둔 작전인데, 그걸 이제 미국이 받아들여가지고 더 정교화시키고 그런 거죠. (...) 독일 거하고 미국 거하고 뭐 완전히 다르다 하는 그게 아니고, 전술은 거의 같습니다.⁶³⁾

미군과 독일군이 한국군에 미친 영향은 군내 문화나 전술 시스템의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 군사유학을 미국으로 가느냐 서독으로 가느냐는 한국군 개인의 진급 및 정체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 동기와 경로 및 한국군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한국군 개인의 차원에서 서독 군사유학이 군인으로서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독유학 경험을 살려 한국군에서 길을 찾아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 서독유학보다는 미국유학을 더 중요시 한 사람도 있었다. 흥미롭게도 1965년 맨 처음 서독으로 군사유학을 떠났던 제1차 서독 사관학교 유학생 유보선과 유홍모는 각기 다른 길을 걸었다. 유보선은 이를 미국 쪽과 독일 쪽이라는 ‘두 개의 길’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독일만 갔다 왔으니까. 독일말 해도 재네들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영어를, 우리 군생활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절실함을 그때 처음 느꼈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제

63) 유보선, 2차구술, 2017년 11월 2일.

그, 중대장 마치고 미국에 교육 받으러 간 것도 그것 때문에 자국이 되어가지고 그때 간 거고. 독일어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군대에서는 더더군다나 독일어가 필요 없었고. 그래서 독일어는 완전히 죽은 언어다. 내가 직업군인으로서 생활할 때 독일어는 필요 없다.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과정은 미국 육군대학도 갔다오고 할, 이렇게 이제 주로 미국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이니까, 미군하고 작전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어떤 전술, 뭐 교리 이런 것도 받아 들여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미국 인맥도 맺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후에 나는 독일은 한 번도 안 갔고. 기회만 있으면 미국 쪽으로만 갔죠. 그 반면에 유홍모는 미국 쪽은 하나도 안 가고, 독일 쪽으로만. 정반대의 길을 걸은 거죠.⁶⁴⁾

이처럼 한국군 장교의 서독 군사유학의 경험이 한국군 개인의 정체성과 향후 한국군 내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된 한국군의 미군 군사유학과 서독 군사유학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고는 한국군의 서독 군사유학 유형의 또 다른 형태로서 서독 고등군사교육반 과정을 밝혀내지 못했다. 문영일의 구술에 따르면 분명히 1969년 서독의 병과학교인 고등군사교육반 과정으로 군사유학을 떠났던 두 명이 존재한다.⁶⁵⁾ 나아가 독일식 임무형 전술이 한국군 훈련 교범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명확히 어떠한 문구를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으로 한국군 육군 훈련 교범의 분석도 필요하다.

64) 유보선, 2차구술, 2017년 11월 2일.

65) 문영일, 2차구술, 2015년 10월 13일.

이러한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구술채록이나 문헌자료 발굴에 따른 후속 연구들이 추후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20. 4. 3, 심사수정일 : 2020. 5. 6, 게재확정일 : 2020. 5. 18.)

주제어 : 한국군, 군사유학, 서독(독일), 육군사관학교, 임무형 전술, 군대 문화, 유보선, 박영한, 한·독 관계사



〈참고문헌〉

1.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사업단 소장 구술자료

(<https://mkoha.aks.ac.kr/>)

『경향신문』

『동아일보』

『KBS 뉴스』

『월간조선』

『陸軍士官學校 三十年史』, 陸軍士官學校, 1978.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 50년사: 1946-1996』, 육군사관학교, 1996.

육군본부 『인간중심의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 2006,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임무형 지휘 활성화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2016.

2. 단행본 및 논문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국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http://uci.or.kr/I804:11032-000000160410>

김민식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그 영향」, 『군사지』
98호, 2016.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2836533@N2M>

김용주 · 신인호 『독일 연방군 총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7.

나혜심 「파독 한인여성 이주노동자의 역사」, 『서양사론』 100, 2009.

<http://uci.or.kr/G701:C-00030522594@N2M>

노병석 『임무형 지휘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군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디르크 W. 외팅 지음, 박정이 옮김, 『임무형 전술의 어제와 오늘』, 백

암사, 1997.

박수현 「한국전쟁기 한국군의 도미 군사유학 경험」 2012.1.27. 현대한
국구술사연구사업단 2012년 심포지엄 자료집.

오보영 편역 『(용어해설을 통해 본)독일군 지휘개념 = Führungsbegriffe』,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1.

윤용선 「1960-70년대 파독 인력송출과 차관: 원조인가 거래인가?」,
『독일연구』 26, 2013

<http://uci.or.kr//G701:A-00081946691@N2M>

이동원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
과 박사학위논문, 2019.

<http://uci.or.kr/I804:11032-0000000158394>

이영주 「임무형 전술 Auftragstaktik의 본질에 대한 고찰」, 『한국군사
학논집』 67(1), 2018.

<http://uci.or.kr//I410-ECN-0101-2018-039-001944236@N2M>

이한홍 『독일군 임무형 전술에 관한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
소, 1995.

이한홍 편저 『독일군 장교 양성교육』,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999.

정현백 「한독관계사, 회고와 성찰」, 『독일연구』 28, 2014

<http://uci.or.kr//G701:A-00081946665@N2M>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https://doi.org/10.978.8989768/49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독 광부 · 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
에 대한 기여의 건」, 『2008년 하반기 보고서』 제1권

〈부록1〉 문영일의 주요 약력 및 활동 내용

시기	활동 내용
1935	부산 동래 출생
1958	육군사관학교 졸업(14기). 육군보병소위 임관
1962	미 특수전학교 유학(Ft. Bragg NorthCaroline)
1963	보병학교 유격학부 교관
1966	주월 맹호부대 전사(戰史)장교
1970	독일군 참모대학 유학
1971	육군대학 교관
1972	수도기계화사단 창설요원. 제102 기계화대대 창설
1976	공수특전사령부 정보참모. 모로코 파견 군사지원사절단장
1979	국방대학원 군인교수 (사우디 아라비아파견 군사사절단, 비공식)
1980	육군대학교수부장
1981	제7공수여단장
1983	육군 제8사단장
1985	육군본부 작전참모장(副長)
1988	제1야전군 부사령관, 육군중장 예편.
1993	국가안보회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1995	미국 Ball 대학(인디애나 주립) 군사학부(ROTC) 방문교수
1999	국방대학원 초빙교수
2006	군사연구원 연구위원

〈부록2〉 민병돈의 주요 약력 및 활동 내용

시기	활동 내용
1935	서울 마포 출생
1948	휘문중학교 입학
1950.09.	육군 1사단 15연대 이등병으로 자원입대
1952	휘문고등학교 1학년으로 복학
1955	육군사관학교 15기로 입학
1959.05.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 보병 제25사단 소대장으로 부임
1963	육군정보학교 교관 부임
1965~1966	독일 괴테 인스티투트(Goethe-Institut) 독어독문과 유학
1966	육군사관학교 독일어 강사 교관
1969.10.01.	베트남 파병. 육군 보병제9사단 제28연대.
1970.10.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 보병장교 과장
1971~1972	육군대학 단기과정 수료
1972	제1공수특전단 제2대대장
1974	백마부대 작전참모
1974	제2군수사령부 정보작전처장
1975	국방대학원 군사전략기획 과정 수료
1975	육군대학 교수부 특수학 및 지휘학 처장
1978	제33보병사단 102연대장
1980.01.01.	육군본부 교육참모부 교육훈련처 교육과장
1980.06.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겸 간사
1981.06.	제3공수여단장
1983.06.	제20기계화보병사단장
1985.06.	육군 정보참모부 차장
1987.01.	육군 특전사령관
1988.07.01.	육군사관학교 교장(1989년 4월 10일까지 역임)
1989.05.30.	육군 중장으로 예편

〈부록3〉 정영주의 주요 약력 및 활동 내용

시기	활동 내용
1938	서울 출생
1950~1956	서울 중앙중, 고교 졸업
1957~1961	육군사관학교 졸업(17기)
1968~1970	독일 뮌헨 괴테 어학원 졸업
1971~1972	독일 지휘참모대학 졸업
1972~1974	28사단 273대대 대대장
1974~1978	육군전력증강위 연구위원 및 간사장
1978~1979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졸업
1980~1982	수도기계화 사단 포병여단장
1983~1984	한미연합군 사령부 작전과장
1984	보병36사단 부사단장(준장)
1984~1988	한미연합사 작전처장(준장), 작전차장(소장)
1988~1990	유엔사 정정위 한국 측 수석대표 및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1990	육군소장 예편

〈부록4〉 유보선의 주요 약력 및 활동 내용

시기	활동 내용
1946	서울 출생
1961	서울중학교 졸업
1964	서울고등학교 졸업
1964	육군사관학교 입학(24기)
1965 ~ 1968	독일육군사관학교 군사유학 후 졸업
1968.02.22.	육군 소위 임관(해외)
1969.11. ~ 1970.11.	한미계획단 전속부관
1972.02. ~ 1973.02.	8사전차중 증대장
1973.08. ~ 1974.07.	미육군기교 미고군반
1977.07. ~ 1979.03.	국방부장관실 장관육군부관
1979.08. ~ 1981.09.	국방부합참벨지움 무관보좌관
1981.11. ~ 1983.07.	2기갑제16전차대대 대대장
1985.04. ~ 1986.06.	미육군대학원 연수 및 졸업
1989.02. ~ 1990.06.	국방부 정책기획실 국외정책담당관
1990.06. ~ 1991.12.	5군단 1기갑여단 여단장
1991.12. ~ 1993.01.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작전처장
1993.01. ~ 1993.07.	합참 작전기획본부 작전처장
1993.07. ~ 1994.11.	국방대학원 교수부장
1995.04. ~ 1995.10.	합참작전참모부 소요검증처장
1995.10. ~ 1997.11.	국방부 군비통제관, 육군 소장 전역
2001.05. ~ 2003.03.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2003.03. ~ 2004.08.	국방부 차관

〈부록5〉 박영한의 주요 약력 및 활동 내용

시기	활동 내용
1945	경북 봉화 출생
1957	안동 중앙국민학교 졸업
1960	부산 배정중학교 졸업
1963	예천 대천고등학교 졸업
1964	대구 계명대학교 입학
1967	육군사관학교 입학(27기)
1968~1971	독일육군사관학교 군사유학 후 졸업
1971	육군 소위 임관 (소대장)
1973	연세대학교 학군단 교관
1974.04.~1978.06.	3공수여단 13대대 중대장
1977~1978	서강대 독문과 위탁교육
1979	합동참모본부 연구개발국 무기체계과
1981	독일 지휘참모대학 군사유학
1986~1990	주서독한국대사관 무관
1994	합동참모본부 대북전략과장
1995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략과장
1995.12.	삼사관학교 교수부장
1996	준장 진급
1997	삼군사령부 관리처장, 교육사 교리부 차장
1999	합참 대학 교수부장, 국방대학원 합참 대학 학장
2000~2002	65사단장(동원사단)
2002	육군 준장 예편

(Abstract)

The ROK military's early experiences with studying in West Germany and their impact

Kim, Do-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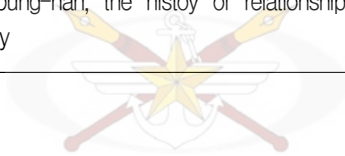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the early Korean military officers who went to study in West Germany in the 1960s and the impact of their experiences on the Korean military. Under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1964, from 1965, the 2 cadets of Korea military academy sent to West German Army Academy as a status of military cadet, and at the same time, officers attended the West German Command and Staff college. Looking at the related research papers, there is only research on the study of Korean military to the United States. In the situation where there was little literature on Korean military's study abroad in West Germany, this article revealed the specific types and experiences of military study in West Germany by analyzing the oral records related to the Korean military collected by the Contemporary Korean Oral History Research Group of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yujanggak Korean Studies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early days, 10 ROK military officers were dispatched to three locations, including a military academy, a commanding and staff college, and a general university in West Germany. Furthermore, this article revealed how ROK military West German students tried to apply the German military system within the Korean military since the 1980s, when military officers or officers at the level of military officers experienced military study abroad in West Germany and promoted up to become a Korean military general. For example, the German mission-based tactics were included as an FM(Field Manual) and the German decree on military service were not only translated and but applied to some ROKA units. Not only did some of the Korean

military officers who had experienced studying in West Germany studied American military at the same time, they were also able to confirm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merican military system and German one.

It is expected that the concrete situation of West German military study by the Korean military will be restored through the voices of experienced peoples, as well as fill the gap of histor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Germany

Keywords : Korean Army, Military Study Abroad, (West) Germany, Military Academy, Mission-type Tactics, Military Culture, Yoo Bo-sun, Park Young-han, the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German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91-119
<https://doi.org/10.29212/mh.2020..115.9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시대 평양[서경]의 위상과 성곽체제

신안식*

1. 머리말
2. 다경제와 서경의 위상
 - 가. 양경제와 서경
 - 나. 3경제와 서경
3. 서경의 성곽체제
4. 맺음말



1. 머리말

평양(平壤)은 668년 고구려의 멸망으로 역사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그 결과 200여 년 동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다. 하지만 평양은 918년(태조 원년) 고려가 건국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고구려역사계승’이라는 고려의 정체성과 더불어 북

*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방세력의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평양의 위상을 더욱 끌어올린 것이 ‘서경(西京)’의 표방이었다.

고려시대에는 개경(開京)·서경·동경(東京)·남경(南京)이 설치되었고, 대몽항쟁기에는 새롭게 강도(江都)가 건설되기도 하였다.¹⁾ 개경[개주(開州)]과 남경[양주(楊州)]은 고려시대에 새롭게 건설되었던 반면, 서경과 동경[경주(慶州)]은 고구려와 신라의 국도라는 ‘구경(舊京)’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강도[강화도(江華島)]’는 전쟁에 따른 피난처로서 임시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40여 년간 존속되었다.

그런데 ‘경(京)[도(都)]’에는 그 위상을 보여주는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즉 ‘경[도]’에는 최고 권력자의 공간인 궁궐을 중심으로 행정기구·주거지 등 도시의 기반 시설이 구축되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성곽체제를 갖췄다. 특히 방어시설인 성곽체제는 ‘경[도]’의 위상 및 도시 보호라는 중요한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개경의 성곽체제는 궁성(宮城)·황성(皇城)·나성(羅城)의 3성체제로 구축되었다.²⁾ 이는 건국하면서 곧바로 3성체제가 구축된 것은 아니고, 국도 개경의 위상을 갖춰가면서 최종적으로 3성체제를 완성하였다.

고구려의 국도 평양에 건설된 서경은 개경과 더불어 ‘양경(兩京)’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고, 태조대(918~943)로부터 현종대

1) 국가의 중심인 ‘京都’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심인 도시를 ‘國都京都’라 했고, 그 나머지는 副都로서 ‘陪京陪都’·別京別都·下都 등으로 불렸다. 이러한 여러 ‘京都’을 ‘三京制’(姜玉葉, 「高麗時代의 西京制度」 『國史館論叢』 92, 2000 ; 신안식, 「고려시대의 三京과 國都」 『한국중세사연구』 39, 2014) 혹은 ‘多京制’(金昌賢, 「신라 왕경과 고려 도성」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9, 2008)라고 하여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2) 전룡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2)」 『역사과학』 2·3, 1980 ; 박용은,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1996 ; 신안식, 「고려전기의 축성(築城)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2000 ; 김창현, 「고려시대 개경 황성의 구조」 『사학연구』 67, 2002 ;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비평사, 2002 ; 신안식, 「고려 개경의 築城과 도시 영역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59, 2019.

(1009~1031)에 걸쳐 도시 기반 시설 및 다양한 성격의 성곽이 구축되었다.³⁾ 신라의 국도[금성(金城)]에도 그에 걸맞은 도시 기반 시설 및 성곽체제가 건설되었을⁴⁾ 것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고려시대의 경주[동경]에도 그런 시설물들이 그대로 존속했거나 새롭게 조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문종대(1046~1083) 이후 새로운 천도지로 부상했던 남경에는 궁궐과 그 부속 시설이 조성되었지만,⁵⁾ 이들 시설들을 보호하는 성곽체제가 건설되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을⁶⁾ 찾아보기 어렵다. 강도는 대몽전쟁의 피난처로 조성되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개경이 구도(舊都)가 되었고, 궁궐과 행정시설 및 이를 둘러싼 성곽체제가⁷⁾ 점차 갖춰졌다. 그리고 ‘경[도]’을 기보(畿輔)하는 경기제(京畿制) 또한 국가의 중심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국도 개경을 보호하는 장치로 적현(赤縣)과 기현(畿

3) 李丙燾, 「西京의 在城과 羅城」 『(改訂版)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 김창현, 「고려 서경의 성곽과 궁궐」 『역사와 현실』 41, 2001 ; 신안식, 앞의 논문, 2014.

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21년, “築京城 號曰金城”. 여호규, 「國家儀禮를 통해 본 新羅 中代 都城의 空間構造」 『한국의 도성 : 都城 造營의 傳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3 ; 전덕재, 「신라의 王京과 小京」 『역사학보』 209, 2011.

5)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2, 문종 22년 12월, “是歲 創新宮于南京” ; 『고려사』 권12, 세가12 숙종2, 숙종 9년 5월, “南京宮闕成”.

6)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2, 예종 5년 9월 己卯, “御南明門 閱神騎軍擊毬 賜物有差” ;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2, 예종 5년 9월 壬辰, “御北寧門 閱文武臣僚射 中的者 賜物有差”. 이들 자료에서 보면, 南明門・北寧門 등이 성문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7) 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 ; 李丙燾, 『(改訂版)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 金庠基,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 강화군・육군박물관,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 ; 윤용혁, 「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정비」 『역사와 역사교육』 7, 2002 ; 김창현,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 고찰」 『韓國史研究』 127, 2004 ; 윤용혁,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 연구」 『國史館論叢』 106, 2005 ; 신안식, 「고려 江都時期 도성 성곽의 축조와 그 성격」 『軍史』 76, 2010. 이런 연구를 통해 강도의 성곽체제가 개경과 마찬가지로 3성체제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縣)의 경기 13현이 설정되었고⁸⁾, 서경에도 분사직(分司職)과⁹⁾ 경기가 설정되어¹⁰⁾ 있었다. 하지만 동경과 남경에도 개경·서경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설정되었으리라고 추정할 뿐 그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금까지의 고려시대 경제(京制) 연구는 개경·서경·남경을 중심으로 풍수지리설을 토대로 한 연구,¹¹⁾ 국도 개경의 역사성과 지리적 특성을 보완한 중간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¹²⁾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고려시대의 다정제가 가지는 의의와 개경의 위상을 다루려는 연구가 많았고, 한편으로는 국도 개경이 왕조 내내 천도 논란에 빠졌던 배경을 찾아보려는 연구로도

8) 尹武炳, 「所謂「赤縣」에 對하여」 『李丙燾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 ; 邊太燮, 「高麗時代 京畿의 統治制」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82 ; 朴龍雲, 「開京과 開城府」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1996 ; 안병우, 「경기제도(京畿制度)의 성립과 경기의 위상」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 박종기, 「고려시대 남경지역의 개발과 경기제」 『서울역사박물관 연구논문집』 창간호, 서울역사박물관, 2003 ; 신안식, 「고려시대 「京畿」의 위상과 역할」 『人文科學研究論叢』 25,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 2003 ; 정학수, 「高麗前期 京畿制 研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윤경진, 「고려전기 京畿의 편성과 운영」 『역사문화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 정은정, 『고려 開京·京畿 연구』, 혜안, 2018.

9) 安秉佑, 「고려시기 서경의 재정구조」 『典農史論』 7, 2001.

10) 윤경진, 「고려시대 西京畿의 형성과 재편-《고려사》 지리지 연혁의 補正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48, 2009.

11) 李丙燾, 앞의 책, 1948·1980 ; 崔柄憲, 「高麗時代의 五行的 歷史觀」 『韓國學報』 13, 1978 ; 강옥엽, 「高麗 西京의 風水地理의 考察」 『國史館論叢』 71, 1996 ; 김기덕, 「高麗時代 開京의 風水地理의 考察」 『韓國思想史學』 18, 2001 ; 김창현, 「고려의 운수관과 도읍경영」 『韓國史學報』 15, 2003 ; 김기덕, 「高麗時代 開京과 西京의 風水地理와 遷都論」 『韓國史研究』 127, 2004 ; 김기덕, 「高麗時代 西京의 風水地理의 考察-高麗初期 西京의 政治의 位相과 관련하여」 『史學研究』 73, 2004 ; 김기덕, 「高麗 中·後期 遷都論議와 風水·圖讖說」 『역사민속학』 20, 2005 ; 김기덕, 「韓國中世社會에 있어 風水·圖讖思想의 전개과정-高麗初期에서 朝鮮初期까지 遷都論議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 장지연, 「고려·조선 국도풍수론과 정치이념」, 신구문화사, 2015.

12) 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85, 129쪽 ; 金潤坤, 「지방의 통치조직」 『한국사』 13, 1993, 184쪽 ; 姜玉葉, 앞의 논문, 2000, 110~111쪽.

이어졌다. 후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고려초기 천도 논쟁에서 가장 중심적인 쟁점이 서경 천도였고, 정치적인 쟁점이 드러날 때마다 거론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 평양[서경]의 위상을 다경제 속에서의 서경 및 성곽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평양[서경] 도시구조의 일면을 이해하고, 서경으로의 편재 전후 시기의 평양 도시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경제와 서경의 위상

고려는 국도 개경 외에 서경·동경·남경을 설치하여 국도를 보완하였다.¹³⁾ 그런데 평양을 ‘서경’이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양경제 하에서 평양이 서경이면, 개경은 ‘동경’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런 점이 고려초기 양경제 연구에서 의문시되었던 문제였는데, 987년(성종 6)에 경주를 ‘동경’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가. 양경제와 서경

다음 자료 가-①·②·③을 살펴보면, 고려 건국 이후의 경제(京制)는 ‘개경과 서경’의 양경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① 왕경 개성부는 본래 고구려의 부소갑(扶蘇岬)이다. 신라에서 송악군(松嶽郡)으로 고쳤다. 태조 2년에 송악의 남쪽에 도읍을 정하여 개

13) 필자는 고려시대 京制에 관한 논문을(앞의 논문, 2014) 발표한 적이 있었고, 본 글에서도 그 논지를 그대로 따랐음을 미리 밝혀둔다.

주(開州)라 하고 궁궐을 창건하였다.¹⁴⁾

② 태조 원년에 평양이 황폐하였다고 하여 염주(鹽州)·배주(白州)·황주(黃州)·해주(海州)·봉주(鳳州)의 백성들을 옮겨 그곳을 채우고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삼았다. 얼마 되지 않아 서경이 되었다.¹⁵⁾

③ 개경을 고쳐 황도(皇都)라 하고, 서경을 서도(西都)로 삼았다.¹⁶⁾ 서경을 고쳐 호경(鎬京)으로 삼았다.¹⁷⁾

개경은 고려 건국 이듬해인 919년(태조 2) 정월에 철원(鐵圓)에서 송악으로 천도하면서 고려왕조의 국도가 되었다(가-①). 하지만 개경의 명칭이 언제·어떻게 정해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다. 개경의 명칭은 960년(광종 11)에 그 명칭이 황도로 개칭될 때 처음으로 발견되고(가-③), 그 이전에는 ‘開州’라는(가-①) 명칭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개주·개경’은 같은 의미로 이해되지만, 최고 권력자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개경’은 ‘개주 왕경(開州 王京)’에서 비롯되었을¹⁸⁾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가-②에서 보면, 918년(태조 원년) 9월에 평양을 대도호부로 삼고¹⁹⁾ ‘얼마 안 되어[심(尋)]’ 서경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때의 ‘얼마 안 되어’라는 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알 수 없지만, 개경 천도가 태조 2년 정월이었고²⁰⁾ 평양을 ‘경(京)’이라는 이름으로 확

14)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왕경개성부, “本高句麗扶蘇岬 新羅改松嶽郡 太祖二年 定都于松嶽之陽 爲開州 創宮闕”.

15)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서경유수관 평양부, 태조 원년, “以平壤荒廢 量徙塩·白·黃·海·鳳諸州民 以實之 爲大都護府 尋爲西京”.

16)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11년, “改開京爲皇都 西京爲西都”.

17) 『고려사』 권3, 세가3, 목종 원년 7월 癸未, “改西京爲鎬京”.

18) 신안식, 앞의 논문, 2014, 265쪽.

1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원년 9월 丙申.

2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2년 정월, “定都于松嶽之陽 創宮闕 置三省·六尙書·官九寺 立市廛 辨坊里 分五部 置六衛”.

인되는 것이 태조 2년 3월 ‘양경(兩京)’이었다.²¹⁾ 이런 점에서 보면, 평양에 서경을 설정한 것은 개경 천도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개경이 위치한 송악군은 898년에 궁예가 후고구려의 국도로 삼은²²⁾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평양은 일찍이 고구려의 국도였지만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 오랫동안 황폐화되어 있었다(가-②). 고구려 국도 평양을 고려 건국 이후 개경 천도와 동시에 서경으로 삼았던 배경에는 고려의 ‘고구려역사계승의식’과 그 지역의 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²³⁾ 이에 따라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는 서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²⁴⁾ 태조대로부터 현종대에 걸쳐 ‘재성(在城, 922)·나성(羅城, 938)·왕성(王城, 947)·황성(皇城, 1011)’²⁵⁾ 등의 성곽체제를 구축하여 개경과 대등한 위상을 갖췄다. 뿐만 아니라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이후 서경으로 천도하려는 의도를²⁶⁾ 보여주기까지 하였고,

2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2년 3월, “創法王·王輪等十寺于都內 兩京塔廟 肖像之廢缺者 並令修葺”.

2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충서, “光化 元年 戊午 裔移都松嶽 太祖來見 授精騎大監”.

23)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高麗太祖 興於高句麗之地 降羅滅濟 定都開京 三韓之地 歸于一統” ; 신안식, 「고구려 계승, ‘高麗’의 境界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24)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26년 4월, “御內殿 召大臣朴述希 親授訓要曰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 爲我國地脈之根本 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 以致安寧”.

2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5년 11월, “是歲 徙大丞質榮·行波等父兄弟及諸郡縣良家子弟 以實西京 幸西京 新置官府員吏 始築在城 親定牙善城民居” ;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21년 7월, “築西京羅城” ;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2년, “春 築西京王城” ;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2년 8월, “是月增修松嶽城 築西京皇城”.

2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15년 5월 甲申, “論群臣曰 頃完葺西京 徙民實之 冀憑地力 平定三韓 將都於此 …”.

3대 정종(945~949)은 서경 천도를 위해 궁궐 등 시설을 건축하다가 중국에는 실패한²⁷⁾ 적도 하였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고려시대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경[양도(兩都)]’은 주로 개경과 서경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였다.²⁸⁾ 개경의 영역이었던 송악군은 일찍이 태조 왕건의 세거지(世居地)로서 ‘한 나라의 근본[일국지본(一國之本)]’으로²⁹⁾ 인식되었던 반면, 서경은 ‘구도(舊都)’인³⁰⁾ 동시에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아국지맥지근본(我國地脈之根本)]’으로³¹⁾ 인식되었다.

그런데 양경인 평양의 별칭을 ‘서경(西京)’이라고 했다면 이와 대비되는 개경의 별칭도 함께 쓰였을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수나라 문제(文帝)는 장안(長安)을 국도로 삼았는데, 양제(楊帝)가 등극하면서 장안을 서경이라고 하면서 낙양(洛陽)을 동경이라고 하였다. 당나라도 장안을 국도로 정하면서 서경이라고 했고, 낙양을 배도(陪都)로 삼아 동경이라고 불렀다. 이는 곧 국도의 별칭이 정해지면서 배도의 별칭도 동시에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국도를 중심으로 남경(南京)·북경(北京) 등의 방향을 나타내는 별칭들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경 또한 별칭이 사용되었는데,

27)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4년 3월 丙辰, “王疾篤 召母弟昭內禪 移御帝釋院薨 在位四年 壽二十七 王性好佛多畏 初 以圖讖 決議移都西京 徵發丁夫 令侍中權直就營宮闕 勞役不息 又抽開京民戶 以實之 群情不服 怨讟胥興 及薨 役夫聞而喜躍”.

28) 개경과 서경의 양경 이외에 동경과 서경의 ‘東西兩京’(『고려사』 권7, 세가7 문종 1, 문종 즉위년 12 丙午, “... 文武百寮 於興國寺 東西兩京·四都護·八牧 各於所在佛寺行之 以爲恒式”) 혹은 ‘東西二京’(『고려사』 권6, 세가6, 정종 즉위년 11월 庚子, “設八關會 ... 又賜酺觀樂 東西二京·東北兩路兵馬使·四都護 ...”; 『고려사』 권9, 세가9, 문종 32년 6월 丁卯, “... 太子率群臣陳賀 東西二京·東北兩界兵馬使 八牧·四都護府 ...”) 등도 찾아볼 수 있다.

29) 『고려사』 권84, 지38 형법1 직제, 충선왕 즉위년.

30)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북계, 서경유수관 평양부, “本三朝鮮舊都 ...”.

3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26년 4월,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 爲我國地脈之根本 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 以致安寧”.

993년(성종 12)의 ‘상경(上京)’과³²⁾ 1096년(숙종 원년)의 ‘중경(中京)’³³⁾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평양의 별칭은 서경뿐만 아니라 자료가-③에서 보듯이 서도(西都)와 호경(鎬京)이라고도 하였다. 서경과 서도는 국도를 중심으로 한 방향을 나타내는 명칭이었음에 비해, 호경은 평양을 ‘호주(鎬州)’라고³⁴⁾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서경은 개경의 명칭이 ‘개주 왕경(開州 王京)’에서 비롯된 것과 마찬가지로 ‘호주 왕경(鎬州 王京)’을 의미했을 것이다.

양경으로서의 개경과 서경은 국도와 배도의 주종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고려초기 개경과 서경의 위상은 동등한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고려 건국 이후 국왕의 12차례에 걸친 서경 순행(巡幸)과³⁵⁾ 3대 정종의 서경 천도를 단행하려던 의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993년(성종 12)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적장 거란의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高麗)라고 하고 평양(平壤)에 도읍을 정한 것이다.”라

32)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상평의장, 성종 12년 2월, “置常平倉于兩京十二牧 教曰 漢食貨志 千乘之國必有千金之價以年豐歛行糶糴 民有餘則歛之以輕民不足則散之以重 今依此法行之以千金准時價金一兩直布四十匹則千金爲布六十四萬匹折米十二萬八千石半之爲米六萬四千石 以五千石委上京京市署糶糴令大府寺司憲臺共管出納餘五萬九千石分西京及州郡倉一十五所西京委分司司憲臺州郡倉委其界官管管之以濟貧弱”.

33) 『고려사절요』 권6, 숙종 원년 8월.

34) 『宋史』 권487, 열전246 외국3 고려, 융흥 2년, “... 平壤爲鎭州 [按長編卷三三九作鎭州] 號西京 西京最盛 總之 ...”. 이 자료에서 평양을 ‘鎭州’ 혹은 ‘鎭州’ 라고 한 것은 『고려사』 등 우리나라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鎭州’를 ‘鎭京’과 연관하여 유추하였지만, ‘鎭州’는 유추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35) 『고려사절요』 권1, 태조 3년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4년 10월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5년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8년 3월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9년 12월 癸未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11년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12년 4월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13년 5월 壬辰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13년 12월 庚寅 ;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14년 11월 辛亥 ;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17년 1월 甲辰 ;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18년 9월 甲午.

고³⁶⁾ 하여 평양의 역사성을 거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이 고려초기 개경과 서경의 위상이 동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서경이 개경과 유사할³⁷⁾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려 건국초기 양경제에서는 국도 개경과 새로운 천도지로서의 서경이 경쟁적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경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동경[경주]’과 ‘남경[양주]’의 성립이다.

나. 3경제와 서경

고려의 ‘3경제(三京制)’는 987년(성종 6) 신라의 국도였던 경주를 ‘동경’으로 설정하면서부터였다.

가-④ (현종) 21년에 다시 동경유수(東京留守)로 고쳤다. 당시 예방(銳方)이 올린 『삼한회토기(三韓會土記)』에 고려 삼경(高麗 三京)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다시 설치한 것이다.³⁸⁾

⑤ 양주(楊州)를 고쳐 남경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삼고, 근처의 군민(郡民)들을 이주시켜 채웠다.³⁹⁾

⑥ 위위승동정 김위제(金謂礪)가 상서하여 남경(南京)으로 천도하기를 청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도선기(道洗記)』에서 말하기를, ‘고려 땅에는 3경이 있어 송악(松嶽)이 중경(中京)이 되고, 목멧양(木覓壤)이 남경이 되며, 평양이 서경이 된다. 11·12·1·2월에는 중경에 머물고, 3·4·5·6월에는 남경에 머물며, 7·8·9·10월에는 서경에 머문다면,

36)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10월, “... 我國卽高勾麗之舊也 故號高麗 都平壤...”.

37) 『고려도경』 권3, 성읍, 군읍, “惟西京最盛 城市略如王城...”.

38)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동경유수관 경주, “(顯宗)二十一年 復爲東京留守 時銳方所上 三韓會土記有高麗三京之文 故復置之”.

39) 『고려사절요』 권5, 문종 21년 12월, “改楊州爲南京留守官 徙旁郡民實之”.

36국이 천자를 알현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개국한 이후 160여 년이 되면 목맥양에 도읍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지금이 바로 신경(新京)에 순행하여 머무를 시기입니다. 지금 국가에 중경과 서경은 있으나 남경이 빠졌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삼각산(三角山) 남쪽 목맥 북쪽의 평야에 도성을 건립하시어, 때마다 순행하여 머무르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일관[日者] 문상(文象)도 그에 따라 영합하였다.⁴⁰⁾

이들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삼한회토기』(가-④)와 『도선기』(가-⑥)는⁴¹⁾ 고려시대의 지리서로 알려져 있다. 자료 가-④에서는 『삼한회토기』를 인용하여 ‘3경’을 ‘개경·서경·동경’이라고 하였던 반면, 자료 가-⑥에서는 『도선기』를 인용하여 3경을 ‘중경[개경]·남경·서경’이라고 하였다. 이 두 책에서의 차이가 동경과 남경을 3경의 일원으로 각각 지적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려의 ‘3경제’는 양경인 개경과 서경을 중심으로 동경과 남경이 시기에 따라 각각의 위상을 달리하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고려 건국 다음 해인 919년(태조 2) 궁예 태봉(泰封)의 국도 철원에서 송악으로 천도하면서 그 지역을 ‘개주(開州)’라고 하였고(가-①), 철원도 ‘동주(東州)’라고⁴²⁾ 고쳐 불렀다. 철원을 동주라고 했던 배경을 알려주는 자료를 찾기 어렵지만, 그 명칭은 ‘동쪽의 주’라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태조 왕건이 궁예에 대한 정변을 통해 즉위

40) 『고려사절요』 권6, 숙종 원년 8월, “衛尉丞同正金謂碑上書 請遷都南京 略曰道說記云 高麗之地有三京 松嶽爲中京 木覓壤爲南京 平壤爲西京 十一・十二・正・二月住中京 三・四・五・六月住南京 七・八・九・十月住西京 則三十六國朝天 又云開國後百六十餘年 都木覓壤 臣謂今時 正是巡駐新京之期 今國家 有中京・西京 而南京闕焉 伏望 於三角山南木覓北平建立都城 以時巡駐 於是 日者文象 從而和之”.

41) 『道說記』는 『道說密記』와 같은 책으로 추정된다.

42)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교주도, 동주, “後弓裔起兵 略取高句麗舊地 自松岳郡來都 修葺宮室 窮極奢侈 國號泰封 及太祖即位 徙都松嶽 改鐵圖 爲東州”.

하였고 그 이듬해에 곧바로 개경[개주]으로 천도하였기 때문에 궁에 태봉의 국도 철원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철원에서 고려왕조의 건국이 이루어진 만큼 철원의 위상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이 철원의 동주라는 명칭이 평양의 ‘서경’이라는 명칭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개경의 이칭은 960년(광종 11)의 ‘황도(皇都)’(가-③)와 993년(성종 12)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경(上京)’⁴³⁾ 등이 있었다. ‘황도와 상경’은 동등한 개념으로⁴⁴⁾ 쓰였다. 따라서 성종 6년에 경주를 ‘동경’이라고 명명한 것은 개경의 ‘황도·상경’ 및 평양의 ‘서경·서도’와 대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개경의 ‘개주 왕경’ 및 호경의 ‘호주 왕경’ 등을 참고하면, 동경 또한 ‘동주 왕경(東州 王京)’에서⁴⁵⁾ 비롯되었을 것이다. 경주에 동경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경주의 위상이 격상되었다는 것이고, 이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국왕의 순행(巡幸)이었다. 하지만 997년(성종 16) 8월에 동경 순행이 처음으로 이루어진⁴⁶⁾ 이후 다시는 거행되지 못했고, 이후 경주방어사(慶州防禦使)·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 등으로 전락하고(가-④) 남경이 주목받기도 했으나 동경을 폐지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43)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상평의창, 성종 12년 2월, “置常平倉于兩京·十二牧 敎曰 “… 委上京京市署羅羅 令大府寺·司憲臺 共管出納 …”.

44) ‘황도’는 중국에서 秦 나라 때 皇帝를 칭하면서 국도 長安을 ‘皇都’라고(『史記』 권6, 진시황본기6) 한 이후 중국 국도의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다. 거란(遼) 또한 국도를 皇都라고 불렀다가 뒤에 ‘上京’이라고도 했다(『遼史』 권37, 지7 지리1 상경도, 상경 임황부, “神冊三年 城之名曰皇都 天顯十三年 更名上京 府曰臨潢”).

45) 신라의 국도 지역이었던 경주가 ‘東州’라고 불린 적이 있었다(『宋史』 권487, 열전246 외국3 고려, 용흥 2년, “… 以新羅爲東州樂浪府 號東京 …”).

46)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6년 8월 乙未, “幸東京”.

자료 가-⑤·⑥에 의하면, 1067년(문종 21)과 숙종 원년에 ‘남경’이 거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경을 양주(楊州)에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종대 이후 새롭게 부상한 정치세력의 동향에 주목하거나, 1069년(문종 23) 경기(京畿)의 확장과 관련하여 이해하거나, 풍수도참을 이용하여 왕권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 등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⁴⁷⁾ 생산되었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상경[중경]·서경[서도]·동경’이 각각 ‘개경[개주]·평양·경주’의 별칭인 동시에 국도를 중심으로 한 방향의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남경’ 또한 ‘국도 개경의 남쪽’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남경의 설정은 ‘3경제’의 새로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개경[상경]·평양[서경]·경주[동경]’의 3경제에서 ‘개경[중경]·평양[서경]·양주[남경]’의 3경제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자료 가-⑥에서 볼 수 있듯이, 숙종대의 남경 건설은 ‘도성을 건립하였다[건립도성(建立都城)]’이라는 천도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 중경과 서경은 있으나 남경이 빠졌습니다.’라고 하여 고려의 3경제가 ‘개경[중경]·평양[서경]·양주[남경]’로 새롭게 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개경·서경의 경기제(京畿制)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는 ‘남경 기내[南京圻內]’라는⁴⁸⁾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기(圻)’는 ‘기(畿)’와 같은 의미로서 남경의 ‘기보(畿輔)’ 지역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서경은 고려왕조의 ‘3경제’ 아래에서 동경과 남경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다.

47) 이익주, 「고려시대 남경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도시역사문화』 3, 2005.

48) 『고려사』 권14, 세가14 예종3, 예종 12년 8월 丁卯, “王至南京 契丹投化人 散居南京圻內者 奏契丹歌舞雜戲以迎駕 王駐觀之”.

결국 고려왕조의 3경제는 ‘개경과 서경’의 양경제를 중심으로 정치 사회적 목적에 따라 동경 혹은 남경이 교차하면서 운영되었다. 3경제가 시행된 명확한 배경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면적인 측면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를 고려왕조의 역사계승의식으로서의 ‘삼한(三韓)’ 의식⁴⁹⁾ 혹은 고려시대에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풍수지리설과 연관하여 이해하려 하거나,⁵⁰⁾ 이를 먼저 시행했던 신라의 제도에서 찾아보려는 시각이⁵¹⁾ 있었다. 이에 더하여 고구려의 국도 평양 및 신라의 국도 금성[경주] 등과 비교하여 역사성의 한계를 지닌 개경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도와 경기 및 5도와 양계로 이루어진 영토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려는 견해도⁵²⁾ 있다. 하지만 3경제는 거란 침입이라는 대외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피난처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⁵³⁾ 반면 개경의 한계성을 보완했던 대표적인 지역이 평양[서경]이었고, 특히 고려전기 북방민족과의 갈등 과정에서 서경의 지역적·군사적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49) 동경과 남경을 각각 신라와 백제의 역사와 결부시킨 자료도 발견된다(『宋史』 권 487, 열전246 외국3 고려, 융흥 2년, “… 以新羅爲東州樂浪府 號東京 百濟爲金州金馬郡 號南京 平壤爲鎮州 [按長編卷三三九 作鎬州] 號西京 西京最盛 總之 凡三京·四府·八牧·郡百有十八·縣鎮三百九十·洲島三千七百”).

50) 李丙燾, 앞의 책, 1948·1980 ; 崔柄憲, 앞의 논문, 1978 ; 강옥엽, 앞의 논문, 1996 ; 김기덕, 앞의 논문, 2001·2004·2005·2006 ; 장지연, 앞의 책, 2015.

51) 김창현, 앞의 논문, 2008, 82~83쪽.

52) 신안식, 앞의 논문, 2014, 274~275쪽.

53) 예컨대 1010년(현종 원년) 거란의 2차 침략에서는 국왕 현종이 전주로 피난 갔고, 대몽전쟁기에서는 최씨정권의 江華遷都가 단행되었으며, 고려말 紅巾賊의 침략에서는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려의 3경제는 정치·사회적인 목적이 군사적인 목적보다 앞섰다고 할 수 있다.

3. 서경의 성곽체제

고려시대 서경의 성곽체제는 서경의 도시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 윤곽 및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만, 전해지는 자료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 앞서 서경의 위상을 고려의 ‘다경제’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고려전기에는 국도 개경의 위상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려사회의 평양[서경]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① 여러 신하에게 유시(諭示)하기를, “평양(平壤)은 옛 도읍으로 황폐한 지 비록 오래지만 터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무성해 변인(蕃人)이 그 사이를 사냥하느라 옮겨 다니고 이로 인하여 변경 고을을 침략하니 그 피해가 매우 크다. 마땅히 백성을 이주시켜 그곳을 실하게 하여 변방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백세(百世)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평양을> 대도호(大都護)로 삼고 사촌 동생[堂弟] 왕식렴(王式廉)과 광평시랑(廣評侍郎) 열평(列評)을 보내어 수비하게 하였다.⁵⁴⁾

② 이 해에 대승(大丞) 질영(質榮)과 행파(行波) 등의 가족[父兄子弟]과 여러 군현(郡縣)의 양가(良家) 자제를 이주시켜 서경(西京)을 충실하게 하였다. <왕이> 서경에 행차하여 새로 관부와 관리를 두었으며 비로소 재성(在城)을 쌓았다.⁵⁵⁾

5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원년 9월 丙申, “諭群臣曰 平壤古都 荒廢雖久 基址尙存 而荆棘滋茂 蕃人遊獵於其間 因而侵掠邊邑 爲害大矣 宜徙民實之 以固藩屏 爲百世之利 遂爲大都護 遣堂弟式廉 廣評侍郎列評守之”.

5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5년, “是歲 徙大丞質榮·行波等父兄子弟 及諸郡縣良家子弟 以實西京 幸西京 新置官府員吏 始築在城”.

③ 여러 신하에게 유지(諭旨)를 내려 말하기를, “근래에 서경의 보수를 완료하고 백성을 옮겨 그곳을 채운 것은 땅의 기운을 빌려 삼한(三韓)을 평정하고 장차 그곳에 도읍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요즈음 민가의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큰바람이 불어 관아가 무너져 버리니 대저 어찌 재변(災變)이 이에 이르렀는가? …”라고 하였다.⁵⁶⁾

④ 왕이 내전(內殿)에 나아가 대광(大匡) 박술희(朴述希)를 불러 친히 「훈요(訓要)」를 내렸는데 〈여기서〉 이르기를, “… 다섯째, 짐은 삼한(三韓) 산천의 음우(陰佑)에 힘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지맥(地脈)의 뿌리가 되고 대업을 만대(萬代)에 전할 땅이다. 마땅히 춘하추동 네 계절의 중간 달[四仲月]에 왕은 그곳에 가서 100일이 넘도록 체류함으로써 〈나라의〉 안녕에 이르도록 하라. …”고 하였다.⁵⁷⁾

⑤ 왕의 성품이 부처를 좋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서, 처음에 도참설(圖讖說)을 따라 도읍(都邑)을 서경으로 옮기기로 결의하고 장정[丁夫]을 징발하여 시중(侍中) 권직(權直)에게 공궐을 건축하게 하였다. 노역(勞役)이 그치지 않고 또 개경의 민호(民戶)를 뽑아서 〈서경을〉 채웠으므로, 많은 백성이 따르지 않고 원망과 비방이 들끓더니 왕이 흥서하였다는 말이 들리자 역부(役夫)들이 기뻐 날뛰었다.⁵⁸⁾

⑥ 개경을 고쳐 황도(皇都)라 하고, 서경을 서도(西都)라 하였다.⁵⁹⁾

5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15년 5월 甲申, “諭群臣曰 頃完葺西京 徙民實之 冀憑地力 平定三韓 將都於此 今者 民家雌雞化爲雄 大風官舍頽壞 夫何災變至此 …”.

5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26년 4월, “御內殿 召大匡朴述希 親授訓要曰 …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 爲我國地脈之根本 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 留過百日 以致安寧”.

58)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4년 3월 丙辰, “王性好佛多畏 初以圖讖 決議移都西京 徵發丁夫 令侍中權直 就營宮闕 勞役不息 又抽開京民戶 以實之 群情不服 怨讟胥興 及薨 役夫聞而喜躍”.

59)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11년 3월, “改開京爲皇都 西京爲西都”.

⑦ 오직 서경이 가장 번성하여 성(城)과 시가(市街)가 대략 왕성(王城)과 같았다.⁶⁰⁾

자료 나-①·②·③·④는 태조대의 서경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게 한다. 우선 나-①에서는 국경을 사이에 둔 북방세력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평양을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자임한 것은 당시 신라의 역사적 위상 및 백제를 계승한 견훤의 국가 경영과 비교되는 상징성을⁶¹⁾ 보여주는 것이다. 그 실천 방향으로 “태조 원년에 평양이 황폐함으로써 염주(鹽州)·배주(白州)·황주(黃州)·해주(海州)·봉주(鳳州) 등 여러 고을의 백성들을 대량으로 이주시켜 채우고”,⁶²⁾ 관부와 관리를 두고 성곽을 쌓아 행정적 군사적 준비를 하였다는 자료 나-②·③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③에서 삼한(三韓) 즉 후삼국의 분열을 평정하고 새로운 국가 운영의 도읍지를 서경에 두려는 의도로도 표방되었다.

이런 점들은 곧 자료 나-④에서의 서경이 ‘우리나라 지맥(地脈)의 뿌리가 되고 대업을 만대(萬代)에 전할 땅[아국지맥지근본 대업만대지지(我國地脈之根本 大業萬代之地)]’로서 그 중요성을 후대의 군왕에게까지 계승시키려는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訓要十條)’에도 반영된 배경이었다. 아울러 자료 나-⑤에서의 서경은 태조가 죽은 이후 불안정한 왕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도 이용되었고, 특정 정치세력에게서 왕권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지기반으로서의⁶³⁾ 역할도 하였다. 그 결과 자료 나-⑥·⑦에서는 서경이 개경의 위상과 대등하게 취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인종대 서경세

60) 『高麗圖經』 권3, 성읍, 군읍 “惟西京最盛 盛市略如王城”.

61) 河炫綱, 『高麗時代의 西京』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316쪽.

62)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북계, 서경유수관 평양부.

63) 河炫綱, 앞의 논문, 1988, 315~345쪽.

력의 천도운동과⁶⁴⁾ 의종대 ‘호경(鎬京)은 만년토록 쇠하지 않는 땅 [호경만세부쇠지지(鎬京萬世不衰之地)]’으로⁶⁵⁾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평양[서경]의 정치·군사적 중요성은 일찍부터 성곽체제가 갖춰지게 된 배경이었다.

나-⑧ 평양에 성(城)을 쌓았다.⁶⁶⁾

⑨ (태조) 5년에 처음으로 서경에 재성(在城)을 쌓았는데, 【재(在)는 우리말[방언(方言)]로 발고랑[견(畎)]을 말한다.】 무릇 6년 만에 끝났다.⁶⁷⁾

⑩ 서경에 나성(羅城)을 쌓았다.⁶⁸⁾

⑪ 서경에 왕성(王城)을 쌓았다.⁶⁹⁾

⑫ 서경에 황성(皇城)을 쌓았다.⁷⁰⁾

⑬ 흥국사(興國寺)에서 연등도량(燃燈道場)을 열었으며, 또 궁성(宮城) 안팎의 거리에는 등불을 켜다.⁷¹⁾

64) 河炫綱, 앞의 논문, 1988 ; 李泰鎮, 「金致陽 亂의 性格 — 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的 推移와 관련하여 —」 『韓國史研究』 17, 1977 ; 李惠玉, 「高麗初期 西京勢力에 대한 一考察」 『韓國學報』 26, 1982.

65)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2, 의종 22년 3월 戊子, “御觀風殿 下敎曰 朕聞 鎬京 萬世不衰之地 後之王者 臨御于此 頒下新敎 則國風清明 小民安泰 朕 卽政以來 萬機實繁 未暇巡御 今以日官所奏 來幸此都 將欲革舊鼎新 復興王化 採古聖勸戒之遺訓 及當時救弊之事務 頒布新令”.

6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2년 10월, “城平壤”.

67) 『고려사』 권82, 지36 병2, 성보, “(太祖) 五年 始築西京在城【在者, 方言畎也】 凡六年而畢”.

68)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태조 21년 7월, “築西京羅城”.

69)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2년, “春 築西京王城”.

70)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2년 8월, “築西京皇城”.

71)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4년 9월 戊寅, “設燃燈道場于興國寺 又點燈于宮城 內外街衢”.

자료 나-⑧에서 919년(태조 2)에 평양에 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쌓은 성인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아마도 918년(태조 원년)에 평양이 황폐하여 염주·배주·황주·해주·봉주 등의 백성들을 대량으로 이주시켰다는⁷²⁾ 것을 보면 이들의 이주 지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자료 나-⑨에서 보면, 922년(태조 5)에 처음으로 ‘재성(在城)’을 쌓기 시작하여 6년이나 걸려 완성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자료 나-⑧의 성곽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이주민들을 정착시키고, 태조 2년에 평양을 서경으로 설정한 이후 ‘경(京)’으로서의 위상과도 연결되는 조치로 보인다.⁷³⁾

나-⑩에서는 938년(태조 21) 서경에 나성(羅城)을 쌓았다고 하였다. 이는 태조 왕건의 서경으로의 천도를(나-③)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나성을 쌓은 지역과 완성된 시점을 알려주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나성 축조 9년 이후의 자료 나-⑪에서는 947년(정종 2)에 왕성(王城)을 쌓았다고 하였다. 이 왕성도 어떤 성곽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고려도경』에서 개경의 나성을 왕성이라고 부른 사례가⁷⁴⁾ 있다. 이런 점에서 왕성을 축조하였다는 것은 태조 21년의 나성이(나-⑩) 이때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왕성의 축조

72)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북계, 서경유수관 평양부.

73) ‘在城’이 어떤 성곽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內城’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李丙燾, 「西京의 在城과 羅城」 『(改訂版)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김창현, 「고려 서경의 성곽과 궁궐」 『역사와 현실』 41, 2001). 재성이 건설된 것은 무엇보다 이주민들을 이른 시일 안에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 위치가 어디였을까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이른 시일 안에 건설과 안착할 수 있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구려 평양성[장안성]의 시설 중에서 이른 시일 안에 복구가 가능한 지역이었음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74) 『고려도경』 권3, 성읍, 국성, “今王城在鴨綠水之東南千餘里”.

는 앞서 나-⑤에서 보았듯이 정종의 서경으로의 천도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나-⑫에서의 황성은 앞서 나-⑥의 자료에서 광종대 개경을 황도라고 했듯이 서경도 그에 따르는 위상을 가졌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1010년(현종 원년)에 거란의 2차 침입을 당하고, 그 이듬해에 곧바로 서경에 황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거란의 공격으로⁷⁵⁾ 인한 성곽의 파괴 부분을 복구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성곽의 수축 및 재정비가 있었을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나-⑬에서는 서경의 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1087년(선종 4)에 왕이 서경에 행차했을⁷⁶⁾ 때의 사실이다. 궁성은 궁궐을 둘러싼 성곽으로 장락궁(長樂宮)과 그 정전인 장락전(長樂殿) 등 궁궐 영역의 시설들을⁷⁷⁾ 둘러싼 성곽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서경의 성곽 구축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성(在城)·나성(羅城)·왕성(王城)·황성(皇城)·궁성(宮城)’의 위치·규모·역할 등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성곽을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여 5성 체제였는지 혹은 ‘재성[내성]·외성[나성=왕성]·황성·궁성’으로 이루어진 4성 체제였는지⁷⁸⁾ 등 그 실제적인 구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75)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원년 12월 辛酉, “契丹主攻西京不拔 解圍而東”.

76)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4년 8월 丙午, “幸西京”.

77) 고려초기 서경은 개경과 더불어 양경제의 중심이었고, 국왕의 행차 또한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왕의 공간이 조성되었을 것이고, 장락궁과 장락전 등 궁궐 영역을 형성하였던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6년 3월 甲午, “王宴群臣於長樂宮, 誅金訓·崔實等十九人”;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4년 9월 癸丑, “御長樂殿視事”).

78) 김창현은 고려시기 서경성을 ‘나성·재성·황성(그 안의 궁성 포함)’이라고 하여 개경의 ‘궁성·황성·나성’의 3성 체제와 비슷한 것으로 서술하였다(앞의 논문, 2001, 189~201쪽).

한편 조선시대의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평양부(平壤府)의 성곽을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의 2중 체제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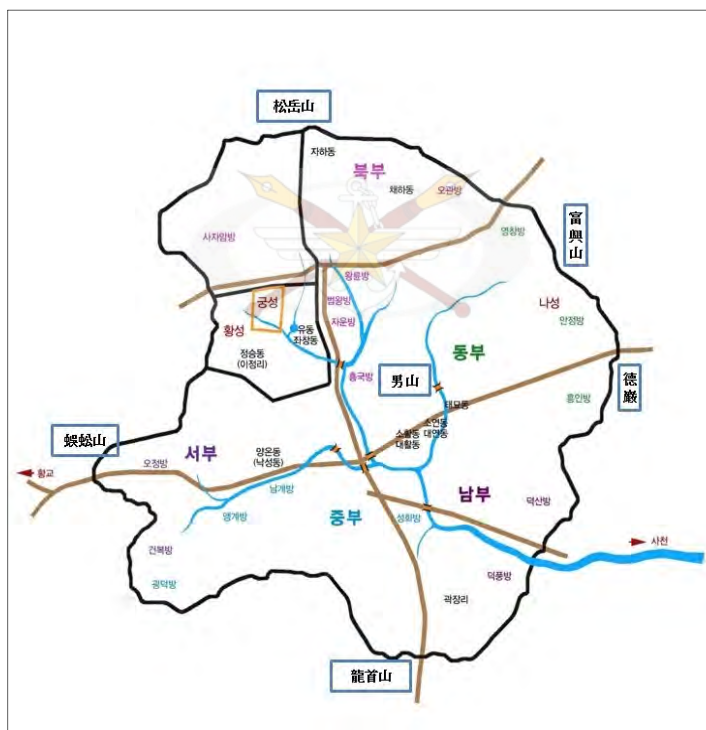
나-⑭ 내성(內城)【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24,539尺이고, 높이가 13척이다. 문이 6개인데, 동쪽은 장경(長慶), 서쪽은 보통(普通), 남쪽은 함구(含毬), 북쪽은 칠성(七星), 정동은 대동(大東), 정남은 정양(正陽)이라 이른다. 우리 태종 6년(1406)에 고쳐 쌓았다.】 외성(外城)【당포(唐浦) 위에 있는데, 돌로 쌓은 것은 둘레가 8,200척이고, 흙으로 쌓은 것은 10,205척이요, 모두 높이가 32척이다. 문이 두 개 있는데, 남쪽을 거피(車避), 서쪽을 다경(多景)이라 하였다.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이 성은 곧 기자(箕子) 때에 쌓은 것이다.”라고 하나 연대가 하도 멀어서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 고려 태조 5년에 처음으로 서도(西都)의 재성(在城)을 쌓아 무릇 6년 만에 끝냈다.”라고 한 것이 아마 바로 이 성인 듯하다. 『주관육익(周官六翼)』에 의하면, “재(在)는 우리말의 견(畎)이다.”라고 하였다.】⁷⁹⁾

자료 나-⑭는 조선시대의 사실이지만 서경 성곽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한다. 내성은 석축(石築)으로 둘레가 24,539척(尺)[영조척(營造尺) 1척=30.65cm, 약 7.5km]이고, 높이가 13척[약 4m]이라고 하였다. 이 내성을 1406년(조선 태종 6)에 고쳐 쌓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 윤곽이 조선초기까지 남아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성은 석축 둘레가 8,200척[약 2.5km], 토축(土築) 둘레가 10,205척[약 3.1km]이고, 높이가 32척[약 9.8m]이라고 하였다. 이 외성이 고려 태조 5년에 쌓은 재성(在城)일 것이라고도 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7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 평양부 성곽, “內城【石築 周二萬四千五百三十九尺 高三十三尺 門六 東曰長慶 西曰普通 南曰含毬 北曰七星 正東曰大東 正南曰正陽 我太宗六年改築】 外城【在唐浦上 石築周八千二百尺 土築一萬二百五尺 並高三十二尺 有二門 南曰車避 西曰多景 今皆頽壞 世傳此城 乃箕子時所築 然年代絕遠 未知是否 高麗太祖五年 始築西都在城 凡六年而畢 疑卽此城 周官六翼 在者放言畎也】”.

외성보다 내성의 둘레가 더 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곽의 높이에서는 외성이 내성보다 2배 이상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외성이 위치한 지대보다 내성이 위치한 지대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내성과 외성이 고려시대의 ‘재성·나성·왕성·황성·궁성’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렵다.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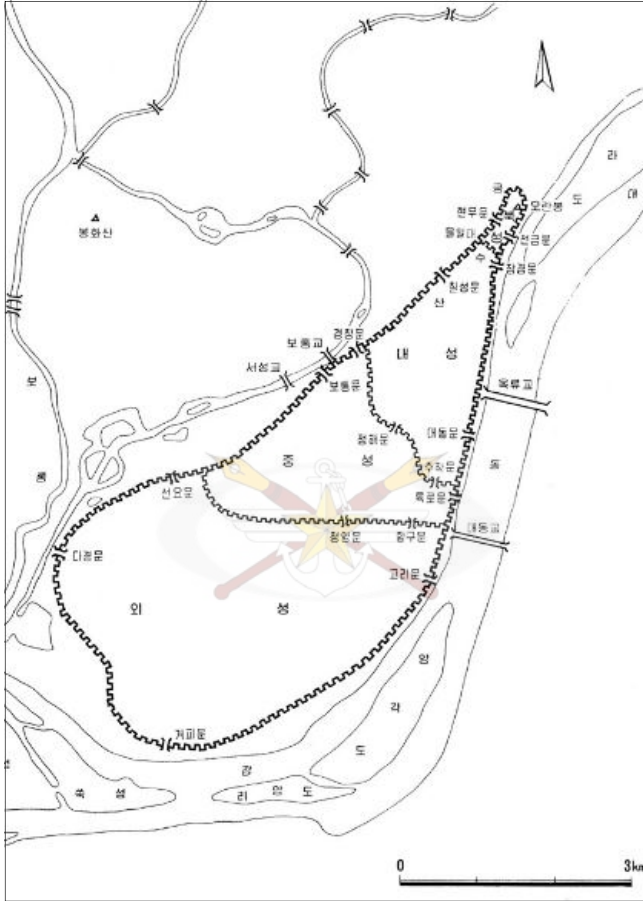
〈그림 1〉 개경 성곽



* 출처 : 숙명여자대학교 「韓國史上 開京(開城) 관련 기초자료 정리와 景觀 연구」

80)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평양[서경]의 성곽이 위치한 지역은 고구려의 평양성과 거의 일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평양[서경]의 地形·地勢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사례의 모범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2〉 서경 성곽



* 출처 : 동북아역사재단, 『평양지역 고구려도성 유적』, 2013, 21쪽

〈그림 1〉의⁸¹⁾ 개경 성곽은 ‘궁성 - 황성 - 나성’이 서로 감싸는 형세지만, 〈그림 2〉의 서경의 성곽은 남서쪽이 넓고 북동쪽이 좁은

81) 〈그림 1〉은 한국연구재단 ‘2008년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토대연구)사업’에 선정된 숙명여자대학교 「韓國史上 開京(開城) 관련 기초자료 정리와 景觀 연구」(연구책임자: 박종진)의 결과물 중 지도를 이용하여 재작성하였다.

지형에 따라 각 성곽이 서로 감싸는 형세를 이루기가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재성[내성] · 나성[왕성, 외성] · 황성[중성] · 북성’의 4성 체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⁸²⁾

이러한 서경 성곽을 성종대의 김심언(金審言)은 “우리나라의 서경(西京)은 경계가 황해[경진(鯨津)]에 접하고 땅이 북쪽 국경[안새(雁塞)]에 닿아 있으므로, 견고한 성지[금탕(金湯)]를 본떠서 요새를 만들고, 철옹성(鐵瓮城)을 모방하여 성을 쌓았다.”라고⁸³⁾ 하여, 서경성을 ‘철옹성’이라고 평가하였다. 인종 때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던 김부식은 “서경은 북으로는 산과 언덕을 등지고 3면(三面)은 물로 막혔으며, 성이 또 높고 험하여 서둘러 함락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성을 둘러싸고 진영을 펼쳐서 그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여겼다.”라고⁸⁴⁾ 하여, 서경성이 높고 험하다고[성차고 험(城且高險)] 하였다. 이런 서경성의 견고함은 1010년(현종 원년)에 거란이 2차 침입을 감행했을 때 서경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를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⁸⁵⁾

결과적으로 보면, 서경의 성곽체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토대로 몇 차례 수축과 증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북방세력의 성장이 커다란 현안이었기 때문에 동서양계의 군사적 중요성이 그만큼 높았다고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서경[평양]이 위치하고 있었다. 많은 외침 속에서 서경이 굳건하

82) 4성 체제를 가정한다면, 문제는 궁궐이 있는 宮城의 위치이다. 개경에는 皇城이 궁성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성에서도 ‘재성[내성]’ 혹은 ‘황성[중성]’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은 향후 평양성 발굴조사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83) 『고려사』 권93, 열전6 제신, 김심언, “(成宗) 九年七月 上封事 王下教褒獎曰 … 我國家以西京 境壓鯨津 地連鴈塞 寫金湯而設險 模鐵瓮以築城 …”.

84) 『고려사』 권98, 열전11 제신, 김부식, “富軾以西京 北負山岡 三面阻水 城且高險 未易猝拔 宜環城列營以逼之”.

85)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원년 12월 辛酉, “契丹主攻西京不拔 解圍而東”.

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견고한 성곽체제였을 것이다. 이런 점이 서경의 성곽체제를 고구려의 평양성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평양[서경]을 ‘다경제’에서의 위상과 성곽체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건국초기에는 국도 개경과 후삼국 통일 이후 새로운 국도 천도지로서의 평양[서경]이 ‘양경’으로 공존하였다. 서경은 고구려역사계승의식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북방세력으로부터 국도 개경을 지켜내는 전략적 기지로서의 역할에 적합하였다. 이러한 서경이 개경의 배도(陪都)로서 위상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경주에 ‘동경’을 설치하여 ‘3경(三京)’이 성립하면서부터였지만 동경은 이후 순행의 대상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개경·서경 중심의 ‘양경제’가 지속하였다. 이후 남경이 건설되면서 서경 일변도의 순행에서 남경까지 확대되어 개경·서경·남경의 ‘3경제’로 재정립되었다.

서경이 개경과 상응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성곽체제였다.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서경의 성곽은 ‘재성·나성·왕성·황성·궁성’ 등이었다. 이러한 성곽의 형식 및 규모 등을 알려주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그 내용을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평양[서경]의 성곽이 위치한 지역은 고구려의 평양성과 거의 일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평양[서경]의 지형·지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사례의 모범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서경에는 ‘재성[내성]·나성[왕성, 외

성]·황성[중성]·북성'의 4성 체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20. 3. 28, 심사수정일 : 2020. 5. 13, 게재확정일 : 2020. 5. 18.)

주제어 : 평양, 서경, 개경, 동경, 남경, 평양성, 재성, 나성, 황성, 북성



〈참고문헌〉

- 강옥엽, 「高麗 西京의 風水地理의 考察」 『國史館論叢』 71, 1996.
- 姜玉葉, 「高麗時代의 西京制度」 『國史館論叢』 92, 2000.
- 김기덕, 「高麗時代 開京과 西京의 風水地理와 遷都論」 『韓國史研究』 127, 2004.
- 김기덕, 「高麗時代 西京의 風水地理의 考察－高麗初期 西京의 政治的 位相과 관련하여」 『史學研究』 73, 2004.
- 김창현, 「고려 서경의 성곽과 궁궐」 『역사와 현실』 41, 2001.
- 김창현, 「고려의 운수관과 도읍경영」 『韓國史學報』 15, 2003.
- 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85.
- 신안식, 「고려시대의 三京과 國都」 『한국중세사연구』 39, 2014.
- 신안식, 「고려전기의 축성(築城)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2000.
- 安秉佑, 「고려시기 서경의 재정구조」 『典農史論』 7, 2001.
- 윤경진, 「고려시대 西京畿의 형성과 재편－《고려사》 지리지 연혁의 補正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48, 2009.
- 李丙燾, 「西京의 在城과 羅城」 『(改訂版)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 李泰鎮, 「金致陽 亂의 性格 — 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的 推移와 관련하여 —」 『韓國史研究』 17, 1977.
- 李惠玉, 「高麗初期 西京勢力에 대한 一考察」 『韓國學報』 26, 1982.
- 전덕재, 「신라의 王京과 小京」 『역사학보』 209, 2011.
- 전룡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2)」 『력사과학』 2·3, 1980.
- 崔柄憲, 「高麗時代의 五行的 歷史觀」 『韓國學報』 13, 1978.
- 河炫綱, 「高麗時代의 西京」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Pyeongyang[Seogyeong] and it's Fortress System in the Goryeo Dynasty

Shin, An-sik

Pyeongyang, currently located in North Korea, was removed from historical interest with the fall of Goguryeo in 668, and as a result, it had been almost a ruin for more than 200 years. However, Pyongyang reappeared at the forefront of history as Goryeo dynasty was founded on 918(the first year of King Taejo), and it had served as a advanced base to contain the northern forces with Goryeo's identity of 'succession of Goguryeo history'. What further boosted Pyongyang's status is to claim to advocate 'Seogyeong'.

In the early days of the Goryeo Dynasty, Gaegyeong, which was as an existing capital, and Pyongyang, which had been considered as a new capital relocation sit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coexisted as Two-Capitals. Seogyeong was suitable for its role as a strategic base to protect the capital Gaegyeong from the northern forces. The reason for the change of Seogyeong's status as a city behind of Gaegyeong was started when Donggyeong was established in Gyeongju. But the 'Two-Capital system' centered on Gaegyeong and Seogyeong continued because Donggyeong had gone off from a circumambulation after that. Since then, as Namgyeong had been constructed, a circumambulation of lean-to-one-side the one side Seogyeong had been extended to Namgyeong and re-established as the 'Three-Capital system' of Gaegyeong, Seogyeong and Namgyeong.

It was the fortress system that showed Seogyeong's status corresponding to that of Gaegyeong. The fortress of Seogyeong, which can be verified by materials, were 'Jaeseong, Naseong, Wangseong, Hwangseong and Gungseong'. It is not easy to deduce the conte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materials that can tell the format and size of these fortresse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area where the fortress of Pyeongyang[Seogyeong] was located in the period of Goryeo and Joseon Dynasty was almost identical to the castle of Pyeongyang of Goguryeo. It was because it took advantage of the best example to make efficient use of the terrain and geography of Pyongyang[Seogyeong].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eogyeong in the Goryeo Dynasty consisted of the four-fortress system of 'Jaeseong[Naeseong], Naseong[Ouseong], Hwangseong[Joongseong], and Bukseong'.

Keywords : Pyongyang, Seogyeong, Gaegyeong, Donggyeong, Namgyeong,
the castle of Pyeongyang, Jaeseong, Naseong, Hwangseong,
Bukseong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121-165
<https://doi.org/10.29212/mh.2020..115.12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시대 密符의 제도와 운용

노인환*

1. 머리말
2. 밀부의 시행과 변화
3. 밀부의 형태와 改造
 - 가. 밀부의 형태
 - 나. 밀부의 改造과 교체
4. 밀부의 운용
 - 가. 밀부관의 유형과 변화
 - 나. 밀부의 전달과 반납
 - 다. 밀부의 인수인계 관리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符信은 국왕이 군사지휘관에게 병력을 동원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대신이나 將帥 등을 긴급하게 부를 때에 사용하였던 信標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이다. 부신에 대하여 『經國大典註解』에서 ‘符는 돕는다는 것을 말하고 양쪽이 서로 돕고 합쳐서 차이가 없는 것이며, 또한 돕는 것이니 신표를 돕는 바이다.’ 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¹⁾ 이러한 부신은 국왕의 명령이나 군사지휘관의 관직에 따라 密符·兵符·命召·虎符 등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密符는 국왕이 지방의 군사지휘관에게 부임지의 병력을 동원하는 명령을 내릴 때에 사용하는 부신이다. 국왕은 左右로 반을 나눈 密符 중에서 左隻을 궁궐에 보관하였고, 右隻을 군사지휘관에게 내려주었다. 密符를 수취하는 군사지휘관인 密符官은 각 도의 관찰사·절도사·유수·통제사·방어사·총융사 등이 있었다.

국왕이 외적의 침입이나 역적의 모반 등의 비상시에 명령을 내려 병력을 동원할 때에 密符의 左隻을 密符官에게 전달하였고, 해당 관원은 좌우를 합쳐서 확인한 후에 병력을 동원하였다. 이것은 병력의 동원과 같은 중대한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의 군대를 통제하여 지방에서 함부로 병력을 출동하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密符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密符는 병력의 동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印信과 함께 군사지휘관의 군사권을 상징하였고, 군사지휘관을 교체할 때에 인수인계의 중요한 대상이었다.

조선시대 密符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인 密符論書에 대한 연구, 승정원의 密符 관련 有旨에 대한 연구, 密符와 관련된 처벌 연구가 있다. 密符유서에 대한 연구는 論書의 유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행되었다. 密符유서는 密符官에게 密符와 함께 전달하는 문서이며, 유서 중에서 가장 많이 발급된 문서이다. 현전하는 密符유서를 통해 변화 양상, 발급과 전달, 재발

1) 『經國大典註解』後集 吏典 六曹條 符信. “符之爲言扶也, 兩相扶合, 而不差也, 又輔也, 所以輔信.”

급, 告身·敎書와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가운데 밀부에 대해 소개하였다.²⁾ 밀부 관련 유지에 대한 연구는 유지의 유형과 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밀부 관련 유지를 통해 국왕이 내린 명령을 연구하였다.³⁾ 밀부와 관련된 처벌 연구는 조선시대 禁推의 대상 중에서 밀부로 인해 금추되는 규정과 사례를 연구하였다.⁴⁾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에 병력의 동원을 상징하는 밀부에 대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밀부와 관련된 고문서와 사료를 통해 밀부의 시행 과정과 제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법제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밀부의 구체적인 형태와 현전하는 밀부의 사례를 살펴보고, 밀부가 改造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밀부를 수취하는 밀부관의 유형과 변화 양상, 밀부의 전달과 반납 과정, 밀부의 인수인계를 관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밀부가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비상시 병력을 동원하는 과정 속에서 밀부의 역할과 부신 중에서 밀부가 차지하는 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노인환, 「조선시대 諭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노인환, 「조선시대 觀察使 敎書와 諭書의 문서 행정과 운용」, 『古文書研究』 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3) 노인환, 「조선시대 승정원 有旨의 유형과 제도」, 『奎章閣』 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4) 김진옥, 「『禁推』의 성격과 특징」, 『민족문화』 36, 한국고전번역원, 2010.

2. 밀부의 시행과 변화

조선시대 밀부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전하는 고문서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통해 적어도 세조 연간에 시행되었다. 1443년(세종 25)에 諭書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지만, 밀부와 관련된 기록은 수록되지 않았다.⁵⁾ 그 대신 1457년(세조 3) 平安道都節制使 李允孫 密符諭書에서 밀부에 대한 기록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1457년(세조 3) 平安道都節制使 李允孫 密符諭書



* 출처: 문화재청 국가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平安道都節制使 李允孫에게 내리는 諭書

경은 한 지방을 위임 받았으니 맡은 임무가 가볍지 않다. 무릇 군사를 일으켜 機微에 대응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며 적을 제압하는 것은 한결같이 응당 평상시의 일이며, 본래 옛날 법도에 있다. 생각

5)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1443) 8월 6일(무자).

건대 혹시 내가 경과 독단으로 처리할 일이 있으면, 密符가 아니면 시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親押한 제14 밀부를 내려주니 경은 이를 받으라. 그러므로 명령한다.

천순 원년(1457, 세조3) 3월 12일.⁶⁾

이 문서는 1457년 3월 12일에 세조가 平安道都節制使에 임명된 이윤손에게 밀부와 함께 내려준 밀부유서이다. 이윤손 밀부유서는 앞부분에 평안도도절제사로서 군사를 동원하여 적이나 반란의 기미에 대응하고, 백성을 돌보고 적을 제압하는 등의 임무가 수록되었다. 이어서 국왕과 이윤손이 독단으로 처리할 일이 생길 경우에 밀부가 아니면 시행하지 말라는 것과 직접 押한 제14부의 밀부를 내려주니 잘 받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윤손 밀부유서를 통해 세조 연간에 지방의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유서와 함께 국왕이 親押한 밀부를 내려주는 밀부 제도가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조 연간에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밀부를 내려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1460년(세조 6) 1월에 세조는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된 金脩에게 밀부유서와 함께 제24부의 밀부를 내려주었고,⁷⁾ 1462년(세조 8) 9월에 황해도관찰사 辛永孫에게 제11부의 밀부를 내려주었다.⁸⁾ 예종 연간에는 밀부의 칭호에 대하여 조정의 논의가 있었다. 1469년(예종 1) 9월 16일에 밀부의 칭호에 대하여

6) “論平安道都節制使李允孫。卿受委一方 體任匪輕。凡發兵應變，安民制敵，一應常事，自有舊章。慮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則非密符，莫可施爲。故賜親押第十四密符，卿其受之。故諭。天順元年三月十二日。”

7)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1460) 1월 7일(을유). “論黃海道觀察使金脩曰，卿受委一方，體任匪輕。凡發兵應變，安民制敵，一應常事，自有舊章。慮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則非密符，莫可施爲。故賜親押第二十四密符，卿其受之。”

8)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1462) 9월 12일(계묘). “論黃海道觀察使辛永孫曰，卿受委一方，體任匪輕。凡發兵應變，安民制敵，一應常事，自有舊章。慮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則非密付莫可施爲，故賜親押第十一密符，卿其受之。”

대신들이 의논하여 중국의 예에 따라 第一·第二로 부르게 하였다.⁹⁾

조선 전기에 밀부는 새로 임명된 관찰사·절도사에게 군사권을 운용하는 용도 이외에 실제로 군사를 동원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1461년(세조 7) 9월에 세조는 平安道都觀察使 金碩과 都節制使 金繼孫에게 의주 부근의 여러 고을에서 精勇한 甲士 150명을 더 뽑아서 聖節使를 호송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에 내려 보낸 밀부를 참고하여 증험할 것을 명하였다.¹⁰⁾ 도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밀부를 통해 입직한 군사를 동원하게 하였다. 1491년(성종 22) 4월에 한성부의 中部 貞善坊에서 불이 났을 때에 선전관에게 밀부를 가지고 달려가서 입직한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을 끄게 하였다.¹¹⁾ 또한 국왕은 行幸에서 병력을 동원할 할 때에도 밀부를 사용하였는데, 1528년(중종 23) 10월에 중종이 여주에 行幸할 때에 標信과 밀부를 함께 사용하여 군령을 전달하였다.¹²⁾ 조선 전기에 밀부 관련 기록이 소략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통해 밀부가 시행된 초기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1469) 9월 16일(병신). “左副承旨韓繼純啓, 密符何以稱號. 命大臣議之. 鄭繼趾·鄭昌孫·韓明澮·洪達孫·金碩等議, 依中國例, 稱第一·第二. 從之.”

10)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1461) 9월 15일(임자). “平安道都觀察使金碩·都節制使金繼孫等馳啓, … 回諭碩·繼孫曰, 今見卿啓本, 具悉趙三波等欲於東八站路間邀截. 此雖不可信, 然不可不爲之備. 卿審同封事目施行. 一, 參驗今送密符, 加抄義州旁近諸邑精勇甲士一百五十名, 護送聖節使.”

11) 『성종실록』 252권, 성종 22년(1491) 4월 18일(계해). “中部貞善坊家失火. 傳曰, 速令宣傳官持密符馳往, 使部將率入直軍士一百名救之.”

12) 『중종실록』 63권, 중종 23년(1528) 9월 19일(무자). “傳于政院曰, 常時行幸時, 凡軍令, 非但以標信, 亦或以密符諭之也. 今此驪州行幸時, 亦欲如此爲之也. 但成廟朝, 先以諭書下諭于左右廂而後, 用密符. 今亦以諭書先諭而後, 用密符乎. 抑密符與宣傳標信, 一時竝用乎. 此意議于兵曹.”

『중종실록』 63권, 중종 23년(1528) 9월 22일(신묘). “傳于政院曰, 左右大將·衛將處, 以用密符事, 爲諭書下諭. 標信與密符相用, 若隔岸隔山之處, 則以密符下諭, 一依成宗朝故事爲之.”

이후 선조 연간에 관찰사·절도사 등에게 내리는 밀부와 함께 비상시에 대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밀부를 추가로 제작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1660) 3월 13일(무진).

영의정 鄭太和가 아뢰기를, “時任三公이 密符를 차는 것은 옛날에 규례가 없었으나 기축년(1589)에 비로소 命召하는 牌가 있었습니 다. 신이 일찍이 신의 조부 昌衍의 말을 들으니, 무릇 어두운 밤에 命召할 때는 밀부로 증험하는 규례가 있습니다.”¹³⁾

㉡ 『광해군일기[중초본]』 57권, 광해군 13년(1621) 8월 17일(병술).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신 朴承宗이 기축년(1589)에 병조낭청으로 꺾내에 입직하였는데, 밤 2경 즈음에 海西에서 역적의 보고가 있었 습니다. 신이 이를 문틈으로 入啓하고 여러 대신들을 命召하여 밤 에 引見하였는데, 그 때 선조대왕께서 密符를 만들기를 명하여 야간에 대신들을 命召할 때의 용도로 마련하였습니다.”¹⁴⁾

㉢ 『선조실록』 24권, 선조 23년(1590) 2월 12일(갑신).

대신을 비상시 부를 때에 뜻밖의 변고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密符 3隻을 새로 만들도록 명하여 1隻은 대신에게 주고 2隻은 大內에 보 관하였다가 비상시 대신을 부를 때에 密符를 맞추어 증험하였다. 아울러 병조판서와 8도의 감사·병사·수사에게도 주었다.¹⁵⁾

13)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1660) 3월 13일(무진). “太和曰, 時任三公之佩密符, 古無是規, 己丑年始有命召之牌. 臣曾聞臣祖父昌衍之言, 凡昏夜命召之時, 有符驗之規.”

14) 『광해군일기[중초본]』 57권, 광해군 13년(1621) 8월 17일(병술). “備邊司啓曰, 臣承宗, 以己丑年, 以兵曹郎廳, 入直闕內, 二更分 海西逆報. 從門隙入啓, 諸大臣命召, 夜分引見, 其時宣祖大王命造密符, 以備夜間命召大臣之用矣.”

15) 『선조실록』 24권, 선조 23년(1590) 2월 12일(갑신). “大臣非時宣召時, 慮有意外之變, 命新造密符三隻, 一隻則付大臣, 二隻則藏內, 非時宣召時, 合符爲驗. 竝給兵曹判書及八道監兵·水使.”

㉠·㉡·㉢의 사례에서 선조 연간에 밀부를 통해 대신을 命召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영의정 정태화는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삼정승이 밀부를 차는 것은 옛날에 규례가 없었으나 기축년인 1589년(선조 22)에 대신을 명소하기 위해 밀부를 사용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에서 박승중은 기축년에 海西 지방에서 역적의 보고가 있을 때에 선조가 대신을 인견한 후에 밀부를 만들어서 대신을 명소할 때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과 ㉡에서 언급하는 기축년은 1589년으로 당시 정여립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선조는 밀부를 통해 야간에 대신들을 명소하였다. 이후 1590년(선조 23) 2월에 선조는 대신을 비상시에 부를 때 의외의 변고를 염려하여 밀부 3隻을 새로 제작하였다. 이때 좌2척은 대내에 보관하고, 우1척은 대신에게 주어 비상시에 대신을 부를 때 밀부를 맞추어 확인하였다. 또한 선조는 대신 이외에 병조판서와 팔도의 감사·병사·수사에게도 밀부를 내려 주었다. 이후 국왕이 긴급하고 중대한 일이 있어 야간에 삼정승과 병조판서 등을 부를 때 사용하는 밀부는 ‘命召’라는 符信으로 대체되었다.¹⁶⁾

밀부 제도는 조선 초기에 시행되어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쳤지만, 법제화 과정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經國大典』 「兵典」 符信 항목에는 밀부 관련 조항이 수록되지 않았고, 1746년(영조 22) 반포된 『續大典』에 처음으로 밀부 관련 조항이 수록되었다. 『속대전』에는 밀부의 반납 조항 및 그와 관련된 처벌 조항과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가는 관원의 밀부에 대한 조항이 수록되었다.¹⁷⁾ 1785년(정조 9)에 반포된 『大典通編』에는 밀부의 형태, 밀부

16) 『大典會通』 「兵典」 符信. “《增》… 命召(體圓, 一面書命召·某職, 傍書年號·月·日, 一面御押, 中分.), 右一隻, 頒于三大臣·左右捕將·三軍門大將·兵曹判書·兼兵曹判書, 左二隻, 藏于大內, 若有機密重事, 昏夜命召, 則合符舉行.”

17) 『大典會通』 「兵典」 符信. “《續》… ○ 將臣·藩臣·帥臣遞歸, 密符·命召必親納政院.(或無職或有故者, 親納闕外. 不遵命者, 卿宰重推, 通政禁推, 守職者以本資論.)

에 새겨진 내용, 密符官, 밀부 운용 방식 등의 조항이 수록되었다. 특히 『대전통편』에는 관찰사·통제사·유수·절도사·방어사 등 군사권을 가진 지휘관을 밀부관으로 규정하였다.¹⁸⁾ 1867년(고종 4)에 반포된 『六典條例』에는 밀부에 대해 승정원에서 啓稟해야 하는 조항을 수록하였다.¹⁹⁾ 이렇게 법전에 규정된 밀부 제도는 1895년(고종 32)까지 시행되었다. 1895년 3월 1일에 고종은 五都留守·各道監司·按撫使·兵水使·防禦使 등에게 밀부와 병부 등 符信 제도를 폐지하고, 각도에 있는 밀부와 병부를 모두 올려 보내게 하였다.²⁰⁾

조선 초기에 유서와 함께 시행된 밀부 제도는 용도와 수취 관원에서 변화 과정을 거쳤고 영조 연간에 밀부 관련 조항이 법전에 수록되어 조선 후기까지 시행되었다. 밀부 제도의 변화 속에서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지방의 지휘관에게 병력의 동원과 운용을 위해 발급한 符信이라는 점은 한결같이 유지되었다.

○ 身帶將任者, 無論佩召·佩符, 毋得處城外. [受由下鄉者, 密符, 非有特敕, 不得仍佩往來.]”

18) 『大典會通』 「兵典」 符信. “《增》… 密符(體圓, 一面書第幾符, 一面御押, 中分.), 右一隻, 頒于觀察使·統制使·守摠兩使(《補》守禦使, 今爲廣州留守.)·兩都(《補》四都)留守·節度使·防禦使, 左二隻, 藏于大內, 凡有發兵·應機等事, 合符防奸, 一依所受諭書舉行.”

19)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啓稟.

20) 『승정원일기』 3056책 고종 32년(1895) 3월 1일(임신). “摠理大臣·內務大臣·軍務署理大臣奏, 五都留守·各道監司·按撫使·兵·水使·防禦使所佩密符及各邑·鎮守令·邊將兵符, 實地符驗, 便同虛文, 自今頒符之例廢止, 而各道現存密符, 令各該監營都聚上送, 而監·留·兵·水營所在馬牌, 一體收上, 何如. 奉旨, 依允.

3. 밀부의 형태와 改造

가. 밀부의 형태

조선시대 밀부의 형태는 고종 연간에 편찬된 『寶印符信總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인부신총수』에는 밀부 前面과 後面의 도판을 수록하고 하단에 밀부의 재질, 규격, 보관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된 密符



*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寶印符信總數』, 1994, 91쪽.

密符는 山柚子로 만들고 모양·지름·두께가 命召와 동일하다. 前面에 第一符를 새기고 第一符부터 第四十五符까지 차례로 새기며 左隻에 左자를 새기고 右隻에 右자를 새긴다. 後面에 御押을 새기고 모두 붉은

색을 채운다. 수량은 45部이고 매 部는 左 2척, 右 1척이며 우 1척을 받아서 차고 鹿皮囊이 있다. 좌 2척은 껍데에 보관하고 命召橫 안에 함께 봉하여 넣으며 受納冊子도 또한 동일하다. 八道監司, 4都의 留守, 總戎使, 統制使, 8명의 兵使, 6명의 水使, 12명의 防禦使가 교대할 때에 密匣을 啓請하고 修正하여 넣는다. 밀부 9部를 더 만들어 46符부터 54符를 차례로 새겨서 별도로 密匣橫에 봉하여 넣으며 처음에 만든 밀부가 부족할 때에 사용한다.²¹⁾

밀부는 山柚子로 만들었고, 모양·지름·두께가 命召와 동일하여 모양이 원형이며 지름은 3촌 3푼, 두께는 3푼 5리이다.²²⁾ 밀부의 前面과 後面에는 모두 글자를 음각으로 새기고 붉은 색을 채웠다. 전면의 중앙에는 第一符에서 第四十五符까지 차례대로 새기고 左隻에는 左자를, 右隻에는 右자를 새겼으며, 후면의 중앙에는 국왕의 서명인 御押을 새겼다. 밀부는 매 部마다 左隻 2개, 右隻 1개를 제작하여 좌척 2개는 命召橫 안에 受納冊子와 함께 봉하여 넣었고, 우척 1개는 밀부관에게 내려 주었다. 밀부관은 밀부를 반달 모양의 密符匣에 넣고 다시 황색 密符囊에 넣어 철릭이나 군복에 차고 다녔다.²³⁾

21) “密符, 以山柚子爲之, 體·經·厚同命召. 前面刻第一符, 自第一符至四十五符, 次第刻之, 左隻刻左字, 右隻刻右字. 後面刻御押, 俱填紅. 數爲四十五部, 每部左兩隻右一隻, 右一隻受佩. 有鹿皮囊. 左兩隻內上, 同爲封入於命召橫中, 受納冊子亦同. 八道監司·四都留守·總戎使·統制使·八兵使·六水使·十二防禦使, 遼代之際, 啓請密匣, 修正以入. 加造密符九部, 自四十六符至五十四符, 次第刻之, 別爲封入於密匣橫, 而元符不足時用之.” 서울대학교 규장각, 『寶印符信總數』, 1994, 91쪽.

22) “命召, 以山柚子爲之, 體圓, 經三寸三分, 厚三分五里, … 有鹿皮囊, 左兩隻內上, 封盛橫子, 受納年月日成置冊子.” 서울대학교 규장각, 위의 책, 1994, 86쪽.

23) 密符囊은 호조에서 만들어 주었고 밀부를 반납할 때 밀부와 密符囊을 함께 密匣에 넣었다.

『승정원일기』 904책 영조 15년(1739) 12월 27일(기해). “上曰, 密符囊, 何以入於密匣乎. 聖應曰, 監兵使授符時, 戶曹製給, 還納時, 竝囊入之矣. 上曰, 密匣修正後, 空囊入之, 怪矣. 始炯曰, 戶曹, 以密符數, 製囊入之矣. 上曰, 依密符數製囊, 則必有餘剩矣.”

〈그림 3〉 密符 第二十六符 右隻·密符匣·密符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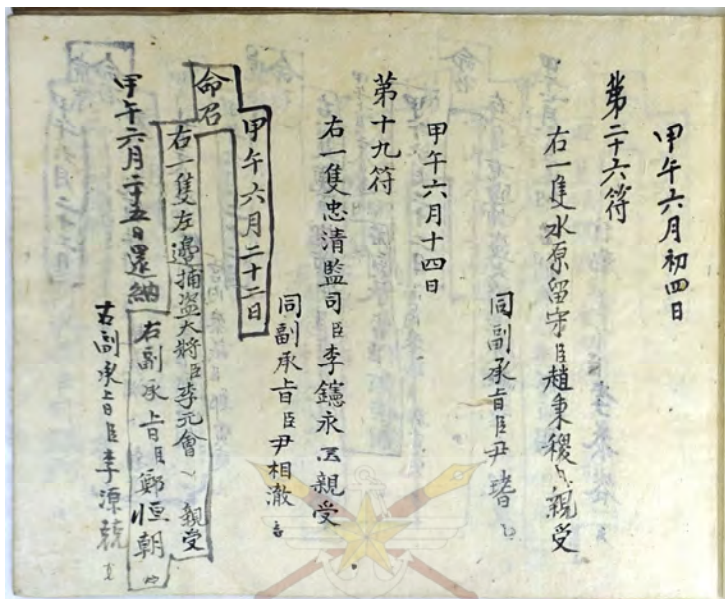


* 출처: 육군박물관, 『조선의 군사신호체계 「形名」』, 2014, 183쪽.

이러한 밀부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밀부 제26부의 右隻과 密符匣, 密符囊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命召虎符密符冊』²⁴⁾에 따르면 1894년(고종 31) 6월 4일에 水原留守 趙秉稷이 제26부 밀부를 직접 받고 着名하였다. 당시 동부승지 尹璿가 밀부의 전달을 담당하고 착명하였다. 『명소호부밀부책』에는 조병직이 제26부를 반납한 내용이 없었고, 밀부 제도는 1895년(고종 32)까지 시행되었기 때문에 위에 제시한 제26부 밀부의 우척은 고종이 수원부유수 조병직에게 내린 밀부로 추정된다.

24) 『命召虎符密符冊』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K2-3645' 2冊(1888~1895년)이 筆寫本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서지사항은 “線裝 不分卷2冊(32張:12張):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25.6×34.2cm, 22.9×30.4cm”이다.

〈그림 4〉 1894년(고종 31) 6월 4일 密符 제26부 趙秉稷 親受



* 출처: 『命召虎符密符冊』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3645)

나. 밀부의 改造와 교체

밀부는 선대의 국왕이 승하하고 새로운 국왕이 즉위할 때에 반드시 改造되었다.²⁵⁾ 밀부의 후면에 국왕의 御押을 새겼기 때문에 선대 국왕의 어압이 있는 밀부를 수거하고 새로운 국왕의 어압을 새겨서 제작하였다. 국왕은 宣傳官을 밀부관에게 파견하여 이전에 받은 밀부를 합쳐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받은 후에 새롭게 제작된 밀부를 내려주었다. 이러한 밀부의 개조와 교체는 성종 때부터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1470년(성종 1) 1월에 승정원에서는

25) 『銀臺便攷』 兵房攷 密符. “密符四十五. [體圖一面書第幾符, 一面御押, 中分.] 詳見符信摠圖. [大喪後改造.]”

여러 도의 관찰사·절도사 등이 받아 간 밀부에 대해 개조할 것을 요청하였고, 성종이 윤허하여 밀부를 개조하였다.²⁶⁾ 1494년(연산군 1) 3월에 연산군도 밀부를 새롭게 제작한 후에 선전관 李之房·李長生·辛允武 등을 8道에 보내서 밀부를 내려주었다.²⁷⁾ 1674년(숙종 즉위년) 9월에는 새로 제작한 밀부를 교체할 때에 선전관을 파견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므로 각 도에 1인을 보내서 차례로 밀부를 전해 준 경우도 있었다.²⁸⁾

조선 후기에 밀부의 개조와 교체 과정은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啓辭를 올려서 啓下를 받았다.²⁹⁾ 이어서 밀부의 개조와 교체에 대한 국왕의 명령을 승정원에서 有旨로 작성한 후에 밀부관에게 유지를 전달하였다.³⁰⁾ 이와 관련해서 1648년(인조 26) 京畿左防禦使·水原府使 洪振文에게 내린 告身·諭書와 1649년(효종 즉위년) 홍진문에게 내린 유지를 확인할 수 있다. 홍진문은 1648년(인조 26) 6월 9일에 수원부사에 임명되었고 아울러 경기좌방어사를 겸직하였다. 같은 달 29일에 인조에게 하직할 때에 밀부유서와 밀부 제4부를 받고 수원부에 부임하였다.³¹⁾

26)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1470) 1월 19일(무자). “承政院啓曰, 諸道觀察使·節度使等受去密符, 請改造. 從之.”

27) 『연산군일기』 4권, 연산군 1년(1494) 3월 24일(정미). “新造密符.”
『연산군일기』 4권, 연산군 1년(1494) 3월 27일(경술). “分遣宣傳官李之房·李長生·辛允武等于八道, 賜密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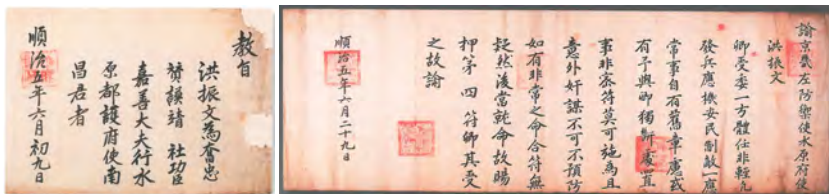
28) 『승정원일기』 241책, 숙종 즉위년(1674) 9월 7일(무진). “李東溟啓曰, 諸道監·兵·水使以下所受密符, 依前例宣傳官, 持標信發遣, 替換新符, 還收舊符以來, 而宣傳官各處分送, 不無弊端, 每道各一人定送, 以爲次第傳授之地之意, 敢啓. 傳曰, 知道.”

29) 『六典條例』 卷之二 吏典 承政院 啓稟. “密符(四十五部, 加造九部.), … 大喪後, 改造及傳授, 啓辭.”

30) 노인환, 앞의 논문, 2017, 436~437쪽.

31) 『승정원일기』 101책, 인조 26년(1648) 6월 9일(임인). “洪振文爲水原府使.”
『승정원일기』 101책, 인조 26년(1648) 6월 29일(임술). “下直, 水原府使洪振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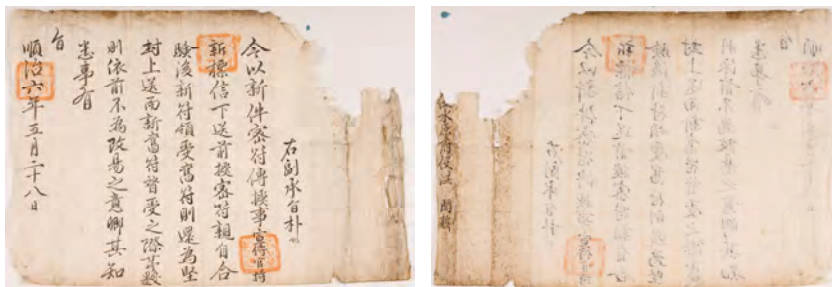
〈그림 5〉 1648년(인조 26) 京畿左防禦使·水原府使 洪振文 告身·諭書



* 출처: 화성시·화성문화원, 『남양홍씨 정효공파 -녹슨 거울을 닦아 미래를 비추다-』, 2010, 137~138쪽.

1649년(효종 즉위년) 5월 28일에 새로 즉위한 효종은 新舊 밀부의 교체에 대해 우부승지 朴長遠에게 명령하였다. 승정원에서는 효종의 왕명을 유지로 발급하여 홍진문 등의 밀부관에게 전달하였다. 홍진문에게 내린 유지에는 선전관이 새로운 밀부를 가지고 내려가니 이전에 내린 밀부를 직접 합쳐서 확인한 후에 새로운 밀부는 받고 옛 밀부는 견고하게 봉하여 올려 보내라는 것과 밀부의 숫자는 전에 받은 숫자를 고치지 않았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홍진문은 이전에 인조에게 받은 밀부를 올려 보내고, 효종의 御押이 새겨진 제4부의 밀부를 받아서 佩用하였다.

〈그림 6〉 1649년(효종 즉위년) 京畿左防禦使·水原府使 洪振文 有旨



* 출처: 화성시·화성문화원, 『남양홍씨 정효공파 -녹슨 거울을 닦아 미래를 비추다-』, 2010, 140쪽.

우부승지 朴長遠<작명>

지금 새로운 密符를 전해 주는 일로 선전관이 새로운 標信을 가지고 내려 보냈으니 전에 준 밀부는 직접 합쳐서 증험한 후에 새로운 밀부를 받고 옛 밀부는 도로 견고히 봉하여 올려 보내는데, 신구 밀부를 교체하여 받을 때에 숫자는 전에 따라 고쳐 바꾸지 않았다는 뜻을 경이 잘 알라는 有旨를 내린다.

순치 6년(1649, 효종 즉위년) 5월 28일.

(背面) 京畿左防禦使·水原府使 洪振文이 開拆하라.³²⁾

또한 승정원에서 밀부의 改造에 대하여 啓辭를 올리고 밀부관에게 유지를 보낸 사례는 1724년(영조 즉위년) 9월에 우부승지 李眞淳이 영조에게 올린 계사와 승정원의 유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부승지) 이진순이 아뢰기를,

“명소 10부, 밀부 45부, 좌·우포도대장패와 전령패를 합한 4부를 지금 이미 제작하여 모두 봉하여 들었습니다. … 여러 道の 監司, 統制使·兵使·水使, 각처에 防禦使가 받은 밀부는 己亥(1659년, 현종 즉위년), 甲寅(1674년, 숙종 즉위년), 庚子(1720년, 경종 즉위년)의 전례에 의거하여 매 道에 선전관 각 1인이 표신을 가지고 내려가야 하고, 당초에 준 諭書 중에 次第를 써 넣은 것에 의거하여 나누어 주며 선전관에게 각각 가지고 전하게 하는데, 濟州는 순풍을 기다려 바다를 건너는 땅이고 수로가 험하고 멀어서 遲速을 기약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곳에 나누어 주는 사람이 겸하여 갈 수 없으니 경자년의 전례에 의거하여 별도로 정하여 보내겠습니다. 새로운 밀부를 전해 주고 옛 밀부를 거두어 오는 것은 일이 매우 중요하게 관계하니 각처에 有旨를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또한 옛 밀부의 좌척을 보내서 선전관에게 밀부를 합친

32) “右副承旨 朴<着名>. 今以新件密符傳授事, 宣傳官持新標信下送, 前授密符, 親自合驗後, 新符領受, 舊符則還爲堅封上送, 而新舊符替受之際, 第數則依前不爲改易之意, 卿其知悉事有旨. 順治六年五月二十八日. (背面) [京畿左防禦使·水原府使洪開拆.”

후에 거두어 올 수 있습니다. … 감히 아뢰고, 모두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모두 이것에 의거하여 하라.” 하였다.³³⁾

이진순이 영조에게 아뢴 내용을 요약하면, 명소·밀부·전령패 등을 제작한 후에 밀부의 전달은 현종·숙종·경종의 전례에 의거하여 8도의 관찰사와 통제사·병사·수사·방어사 등에게 선전관을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선전관이 새로운 밀부를 전하고 옛 밀부를 거두어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미리 각처에 유지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영조는 전교를 내려 이진순이 아뢴 啓辭의 내용을 윤허하였다. 9월 10일에 이진순은 8도의 관찰사와 통제사·병사·수사·방어사 등에게 영조의 명령을 유지로 작성하였고, 승정원의 서리가 유지를 전달하였으며, 선전관이 밀부를 전달하였다. 이때 영조가 남병사 李順坤과 경상좌수사 韓範錫에게 내린 유지가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右副承旨 李眞淳〈着名〉

새로 제작한 제23부 밀부는 전에 받은 諭書 안에 써 넣은 숫자에 의거한 것으로 선전관이 가져가서 전하게 할 것이니 경은 잘 받고 옛날에 받은 밀부는 합친 후에 올려 보내라는 有旨를 내린다.

영정 2년(1724, 영조 즉위년) 9월 초10일.

(背面) 南兵使 李順坤이 開拆하라.³⁴⁾

33) 『승정원일기』 573책, 영조 즉위년(1724) 9월 10일(경술). “李眞淳啓曰, 命召拾部, 密符肆拾伍部, 左右捕盜大將牌·傳令牌合肆部, 今已造成, 竝爲封入. … 諸道監司, 統·兵·水使, 各處防禦使所受密符, 當依己亥·甲寅·庚子年例, 每道宣傳官各一人, 持標信下送, 而依當初所授諭書中次第書填分授, 使之各各持傳, 而濟州, 則乃是候風越海之地, 水路險遠, 遲速難期, 他處分授之人, 不可兼往, 依庚子年例別爲定送矣. 傳授新符, 收來舊符, 事係至重, 各處不可不成送有旨. 且送舊符左隻, 使之合符, 然後可以收來. … 敢啓, 竝此仰稟. 傳曰, 知道. 竝依此爲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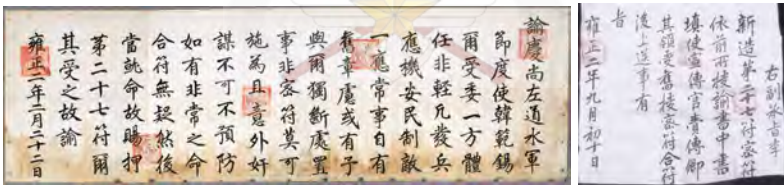
34) “右副承旨李〈着名〉. 新造第二十三符密符, 依前所授諭書中書填, 使宣傳官實傳, 卿

〈그림 7〉 1724년(영조 즉위년) 南兵使 李順坤 有旨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101쪽.

〈그림 8〉 1724년(경종 4) 2월 慶尙左水使 韓範錫 諭書와
1724년(영조 즉위년) 9월 慶尙左水使 韓範錫 有旨



* 출처: 국립해양박물관, 『고문서로 만나는 조선시대 수군』, 2014, 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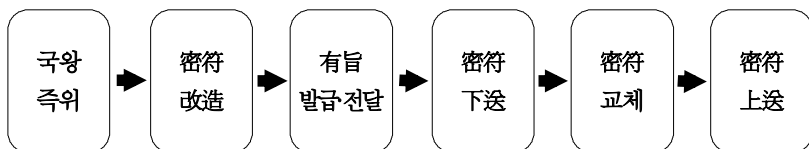
김학수, 『한범석(韓範錫:1672~1743) 교지(敎旨)의 역사적 가치』, 『남명학 연구』 4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4, 89쪽.

1724년(영조 즉위년) 9월에 영조가 남병사 이순곤에게 내린 유지는 앞에서 이진순이 영조에게 아뢴 내용을 수록하였다. 즉 새로 제작한 제23부의 밀부를 선전관을 통해 내려 보낸다는 것과 옛 밀부를 합쳐서 확인한 후에 올려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경상좌수사 한범석에게 내린 유지는 밀부의 숫자를 제외하면 이순곤에게 내린 유지

其領受, 舊授密符, 合符後上送事有旨. 雍正二年九月初十日. (背面)南兵使李 開拆.”

와 동일하였다. 특히 밀부 숫자는 한범석이 경상좌수사에 임명될 때 받은 유서에 기재된 제27부가 유지에도 동일하게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密符의 改造와 교체 과정



밀부의 제도가 시행된 후에 새로운 국왕이 즉위할 때마다 제1부에서 제45부까지 45개의 밀부를 제작하였다. 이후 1800년(순조 즉위년)부터 1864년(고종 1)까지 제46부에서 제54부까지 9개를 추가로 제작하여 총 54개의 밀부를 사용하였다.³⁵⁾ 추가로 제작한 9개의 밀부는 별도로 密匣櫃에 봉하여 넣었다가 처음에 제작한 밀부가 부족할 때에 사용하였다. 당시에 궐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符信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한 『時在符信等牌』에도 ‘密符 四十五部’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9개를 더 제작하였다는 의미로 ‘加九’를 기재하였다. 이후 1876년(고종 13) 11월 4일에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하여 符信이

35) 『승정원일기』 1824책, 순조 즉위년(1800) 7월 19일(기해). “韓用鐸啓曰, 宣傳標信三十一部, 開門標信五部, 閉門標信五部, 問安牌七部, 命召十部, 虎符二部, 密符四十五符, 加造九部, 左右捕將大將牌·傳令牌合四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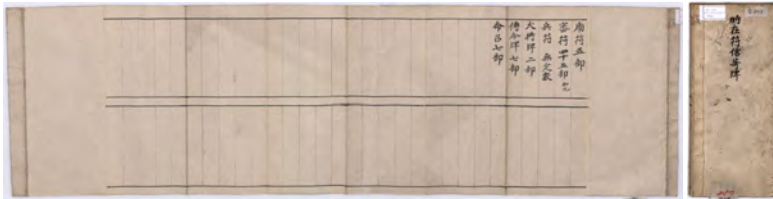
『승정원일기』 2310책, 헌종 즉위년(1834) 12월 5일(을미). “吳致愚啓曰, 宣傳標信三十一部, 開門標信五部, 閉門標信五部, 問安牌七部, 命召十部, 密符四十五部, 加造密符九部, 左右捕將大將牌·傳令牌合四部.”

『승정원일기』 2488책, 철종 즉위년(1849) 7월 5일(경자). “南性教啓曰, 宣傳標信六部, 開門標信三部, 閉門標信三部, 問安牌三部, 先爲造成. 命召十部, 密符四十五部, 加造密符九部, 左右捕將大將牌·傳令牌合四部.”

『승정원일기』 2672책, 고종 1년(1864) 1월 10일(임자). “又啓曰, 宣傳標信六部, 開門標信三部, 閉門標信三部, 問安牌三部, 先爲造成. 命召十部, 密符四十五部, 加造密符九部, 左右捕將大將牌·傳令牌合四部.”

모두 불에 훼손되자 다음날 5일에 밀부를 포함한 각종 부신을 승정원에서 새로 제작하였다.³⁶⁾

〈그림 10〉『時在符信等牌』



* 출처: 『時在符信等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S03 14 0374)³⁷⁾

밀부의 형태가 左隻과 右隻으로 절반을 나누어 제작된 것은 국왕의 명령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밀부유서에 ‘非常의 命이 있으면 밀부를 합쳐서 의심이 없는 후에 마땅히 命에 나아가야 한다(如有非常之命, 合符無疑, 然後當就命)’는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국왕의 御押이 새겨진 밀부의 형태는 大喪을 지낸 후에 반드시 밀부를 새롭게 제작해야 하는 당위성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국왕의 즉위는 왕권의 변화를 의미하였고, 왕권의 변화 속에서 밀부의 개조와 교체를 통해 지방의 군사권도 이양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6)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1876) 11월 4일(신유). “初四日. 景福宮災. … 俄頃之間, 諸殿閣蕩然灰燼, 列朝御筆舊物, 一未有收, 大寶及東宮玉印之外, 諸寶符信, 皆燒火.”

『승정원일기』 2832책, 고종 13년(1876) 11월 5일(임술). “傳曰, 符信, 多入於回祿之中矣. 標信問安牌·撤奸牌, 命召虎符·密符·兵符·符驗·馬牌烙印, 令政院新造以入.”

37) 『時在符信等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1冊(S03 14 0374)이 筆寫本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서지사항은 “折帖 不分卷1帖(4折8面) : 四周單邊, 有界, 5行字數不定, 無魚尾; 31.5×122.0cm, 折帖 31.5×11.4cm” 이다.

4. 밀부의 운용

가. 밀부관의 유형과 변화

조선시대에 국왕은 密符官, 즉 각 道의 觀察使와 節度使·留守·統制使·統禦使·防禦使·摠戎使에 임명된 관원에게 밀부를 내려주었다.³⁸⁾ 관직 제도가 변화하고 새로운 관직이 신설되면서 밀부관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인원도 점차 증가하였다.

밀부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에 세조는 각 道의 都觀察黜陟使·兵馬都節制使·水軍都安撫處置使에게 밀부를 내렸다. 1466년(세조 12) 1월에 도관찰출척사·병마도절제사·수군도안무처치사를 각각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로 관직 제도를 변화함에 따라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밀부를 내렸다.³⁹⁾ 이후 예종은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겸직하지 않아서 절도사에게만 밀부를 주었으나, 1469년(예종 1) 9월 1일에 조정의 논의를 거쳐 다시 8도의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에게 모두 밀부를 내려 주었다.⁴⁰⁾

留守는 지역의 행정뿐만 아니라 軍職을 겸직하고 군사를 통솔하였기 때문에 국왕은 유수에게 밀부를 내려주었다. 조선 전기 개성부에 유수를 설치하였다가 조선 후기에 강화부·광주부·수원부·춘

38)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啓稟. “密符官(留守·觀察使·統制使·摠戎使·鎮撫使·節度使·防禦使)”

39)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1466) 1월 15일(무오). “都觀察黜陟使改爲觀察使, … 兵馬都節制使改爲兵馬節度使, 水軍都安撫處置使爲水軍節度使.”

40)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1469) 9월 1일(신사). “左副承旨韓繼純啓曰, 舊法觀察使·節度使, 竝授密符, 近者觀察使不管兵馬, 故只授密符於節度使. 今復立密符, 觀察使·節度使皆授之何如. 上曰, 觀察使·節度使皆授密符, 則兵權不一, 若只授節度使, 儻有不虞之變, 則觀察使無密符, 何以處之. 都承旨權域啓曰, 觀察使不管兵馬, 不賜爲使. 如或有變, 觀察使豈以無符而坐視乎. 若竝授觀察使, 則職帶兵馬而後可也. 命議院相申叔舟·韓明膺·具致寬·崔恒·洪允成·曹錫文·金頌·尹子雲·金國光等議啓, 宜竝授密符. 從之.”

천부에 추가로 유수를 설치하면서 밀부관이 증가하였다. 1627년(인조 5) 강화부에 유수를 설치하였고,⁴¹⁾ 1678년(숙종 4) 10월에 강화부유수가 鎭撫使를 겸직하면서 밀부를 내려주었다.⁴²⁾ 1683년(숙종 9) 광주부에 유수를 설치하고 守禦使를 겸직하였다.⁴³⁾ 1793년(정조 17) 수원부에 유수를 설치하였고,⁴⁴⁾ 1802년(순조 2)에 수원부유수가 摠理使를 겸직하였다.⁴⁵⁾ 1888년(고종 25년) 춘천부에 유수를 설치하고 鎭禦使를 겸직하였다.⁴⁶⁾

관찰사·유수·절도사 이외에 밀부관은 통제사·통어사와 都體察使·都巡察使·巡察使 등이 있다. 통제사와 통어사는 수군의 최고지휘관으로 조선 후기에 설치되어 남해와 서해의 수군지휘관과 수군을 통솔하였기 때문에 밀부를 내려주었다. 통제사는 경상·충청·전라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수군지휘관으로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 8월에 선조가 전라좌수사 李舜臣에게 통제사를 겸직시키면

41) 『인조실록』 16권, 인조 5년(1626) 4월 2일(무술). “備局啓曰, 江華留守·郎廳, 當建置, 而群議皆曰, 苟非曾經而諳練, 則不可. 以沈悅除授留守, 郎廳則經歷·都事中一員, 令該曹極擇差出. 答曰, 還都後差除.”

『大典會通』「吏典」京官職 從二品衙門 江華府. “《續》掌治江都《增》原, 都護府, 光海戊午, 陞府尹, 仁祖朝丁卯, 置留守.”

42)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1678) 10월 17일(갑신). “以江華留守兼鎭撫使. 先是, 尹深建言, 江華與廣州無異, 而獨無密符, 似當變通. 李元禎言, 留守視同內職, 舊無此例. 今別立名號, 如防禦使之例, 始賜密符諭書爲宜. 上命大臣議定其號. 至是乃定.”

43) 『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1683) 1월 28일(경오).

『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1683) 2월 2일(갑술). “呂聖齊爲廣州留守.”

44) 『大典會通』「吏典」京官職 正二品衙門 水原府. “《補》掌治華城《原》都護府, 正宗朝癸丑, 置留守, 今移錄.”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1월 12일(병오). “改號水原府爲華城, 御筆揭額于壯南軒. 陞府使爲留守, 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 置判官一員佐之.”

45)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1802) 2월 7일(무신). “外營軍制釐正別單.〔壯勇外使·行宮整理使一員, 留守兼內營與整理所, 旣已撤罷, 則外使與整理使之名, 竝減下, 依守禦鎭撫管理使例, 以摠理使稱號, 令該曹啓下.〕”

46) 『승정원일기』 2972책, 고종 25년(1888) 4월 19일(경자). “上命書傳教曰, 關防之重, 所以固屏翰而嚴捍衛, … 春川, 乃東北咽喉之最爲要阨, 不可無另置留臺. 鎭禦使, 改以春川府留守兼鎭禦使下批. 畿甸及關東之附近幾邑, 竝使之管攝, 其規例, 一如四都之有屬邑, 諸般制置之方略, 該守臣商確磨鍊, 就議總理大臣稟處.”

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⁴⁷⁾ 이후 『대전회통』에서 통제사는 품계가 종2품이고, 인원이 1員이며, 경상우도수군절도사를 겸직하면서 경상·충청·전라의 舟師를 통솔한다고 규정하였다.⁴⁸⁾ 통어사는 경기·황해·충청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수군지휘관으로 정묘호란 이후에 강화도에 대한 방어가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1632년(인조 10) 9월에 京畿水使에게 통어사를 겸직시키면서 설치되었다.⁴⁹⁾ 1779년(정조 3) 경기수사가 폐지된 후에 통어사는 강화의 鎭撫使가 겸직하였으며, 1789년(정조 13)에 다시 경기수사가 설치된 후에 경기수사가 통어사를 겸직하였다. 이후 『대전회통』에서 통어사는 품계가 종2품이고, 인원이 1員이며, 경기수군절도사를 겸직하면서 경기·황해·충청도의 舟師를 통솔한다고 규정하였다.⁵⁰⁾

도체찰사·도순찰사·순찰사는 軍務로 국왕의 명을 받든 관직으로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경우에는 도체찰사, 1품 이하는 도순찰사, 종2품은 순찰사로 불리었다.⁵¹⁾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도체찰사로 임명된 柳成龍에게 밀부 제3부와 밀부유

47) 『선조수정실록』 27권, 선조 26년(1593) 8월 1일(임오), “以李舜臣兼三道水軍統制使, 本職如故. 朝議以三道水使, 不相統攝, 特置統制以主之.”

48)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續》宣祖朝, 慶尙道置統制使, 統慶尙·忠清·全羅舟師.”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慶尙道, “水軍統制使一員〔從二品《續》增置.〕… 節度使三員〔正三品 ○二, 左道·右道, 一, 觀察使兼《續》右道, 統制使兼.〕”

49) 『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1632) 9월 19일(갑인), “知中樞府事鄭應聖上疏曰, 江都, 卽京城之保障. 脫有虜賊長驅之患, 則舟楫不備, 何策可濟. 請依前規, 復立京江舟師, 定一武將, 整頓侍變, 則必無蒼黃顛倒之事. 且以京畿水使, 稱統禦之號, 兼制公清·黃海舟師, 則可能相須而濟矣. … 答曰, 依啓. 赴京船亦令移隸於江都.”

50)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續》… 仁祖朝, 諸道置鎭營將兼討捕使, 京畿·江原·咸鏡·平安道置防禦使以守令·邊將兼, 京畿置統禦使, 統京畿·黃海·忠清舟師. …《增》… ○ 罷京畿水使, 以江華鎭撫使兼統禦使, 以喬桐·永宗防禦使爲統禦營左·右海防將.〔正宗己亥《補》己酉, 還置水使兼統禦使.〕”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京畿, “水軍統禦使一員〔從二品《續》增置. ○水軍節度使兼《增》罷水使, 江華留守兼《補》水軍節度使還兼.〕”

51)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續》… 宰相以軍務奉命者, 隨品稱號〔議政則都體察使, 一品以下則都巡察使, 從二品則巡察使, 三品則察理使.〕”

서를 내려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관찰사가 도순찰사 또는 순찰사를 겸직하였기 때문에 밀부를 내려주었다.

군사적으로 요충지인 지역에 설치한 방어사에게도 밀부를 내려주었다. 국왕이 방어사에게 밀부를 내려준 기록은 선조 연간부터 확인할 수 있다. 1606년(선조 39) 8월에 방어사에게 정해진 시기에 유서와 밀부를 내려주지 않은 승정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였다.⁵²⁾ 1638년(인조 16) 5월에 비변사에서 제주목사에게 방어사를 겸직하고 밀부를 내려줄 것을 청하자 인조가 윤허하였다.⁵³⁾ 조선 후기에 방어사는 坡州·永宗·鐵原·濟州·三和·宣川·昌城·江界·吉州에 총 9명의 방어사를 설치하면서 밀부관의 인원이 점차 증가하였다. 끝으로 1624년(인조 2)에 설치된 충융청의 摠戎使에게도 국왕은 밀부를 내려 주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은대편고』에 수록된 밀부관은 충융사부터 길주방어사까지 총 37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⁴⁾

나. 밀부의 전달과 반납

국왕이 밀부관에게 밀부를 전달하는 장소는 궁궐과 부임지로 나눌 수 있다. 밀부를 궁궐에서 전달하는 경우는 밀부관이 국왕에게 肅拜하고 下直하는 朝辭(또는 辭朝)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밀부관

52) 『선조실록』 202권, 선조 39년(1606) 8월 10일(병오), 8월 11일(정미).

53) 『인조실록』 36권, 인조 16년(1638) 5월 3일(을축). “備局請以濟州牧使, 兼防禦使, 給密符, 從之.”

노인환, 「조선시대 濟州牧使의 문서 행정 연구」, 『藏書閣』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3~14쪽.

54) 『銀臺便攷』 “兵房攷” 密符. “佩符官凡三十七. [摠戎使·水原留守·廣州留守·江華留守·開城留守·京畿監司·喬桐水使·坡州防禦使·永宗防禦使·江原監司·鐵原防禦使·忠清監司·忠清兵使·忠清水使·黃海監司·黃海兵使·黃海水使·全羅監司·全羅兵使·全羅左水使·全羅右水使·濟州防禦使·平安監司·三和防禦使·宣川防禦使·昌城防禦使·江界防禦使·慶尙監司·慶尙左兵使·慶尙右兵使·慶尙左水使·統制使·咸鏡監司·南兵使·北兵使·吉州防禦使]”

은 부임하기 전에 국왕에게 숙배와 하직을 위해 入侍하였다.⁵⁵⁾ 국왕은 밀부관의 履歷과 所懷를 묻거나 부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당부하였고, 밀부관은 자신의 이력과 소회를 아뢰거나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대답을 하였다. 국왕과 밀부관 사이에 대화가 끝난 후에 관찰사·유수·통제사·통어사인 경우에는 입시한 승지가 敎書를 宣讀한 후에 교서를 먼저 전달하였고 이어서 밀부와 밀부유서를 내려주었다. 관찰사·유수·통제사 등이 朝辭할 때까지 교서가 製進되지 않을 경우에는 밀부와 밀부유서를 먼저 전달하고 교서는 추후에 전수하기도 하였다.⁵⁶⁾ 절도사·방어사에게는 교서가 없었기 때문에 밀부와 밀부유서를 내려주었다. 마지막에 국왕이 밀부관에게 물러날 것을 명하면, 밀부관이 물러나면서 朝辭하는 과정을 마치고 부임지로 향했다.⁵⁷⁾

밀부관이 숙배하고 하직할 때에 승정원은 密符單子(또는 符單子)를 즉시 국왕에게 入啓하고 밀부 숫자를 결정하였다.⁵⁸⁾ 승정원은 밀부를 보관하는 密匣을 아뢰어 청한 후에 유서와 함께 密匣을 들였다.⁵⁹⁾ 밀부단자를 작성해서 들고 밀감을 修正하는 과정은 승정

55) 『승정원일기』 1208책, 영조 38년(1762) 7월 18일(무인). “傳于南泰會曰, 忠淸監司入侍, 密符入侍傳授.”

56) 『승정원일기』 657책, 영조 4년(1728) 3월 15일(을축). “柳綬啓曰, 京畿監司李廷濟, 謝恩後仍爲辭朝事, 命下矣. 諭書·密符, 今方依例傳授, 而敎書時未製進, 追後傳授之意, 敢啓. 傳曰, 知道.”

57) 『승정원일기』 1575책, 정조 9년(1785) 1월 22일(임신). “上曰, 全羅監司, 黃海水使入侍. 賤臣承命出, 與全羅監司李在學, 黃海水使李壽鵬偕入進伏. 上問壽鵬履歷, 壽鵬進奏履歷. 上命聖彬宣諭, 傳給諭書·密符, 訖, 命先退.”

58) 『승정원일기』 715책, 영조 6년(1730) 12월 6일(경자). “儼曰, 密符置簿案冊, 留置政院, 凡有親授事, 輒書密符單子以入, 事體不輕而重.”

59) 『銀臺便攷』 「兵房攷」 密符. “佩符官下直, 則符單子, 卽爲入啓, 待第幾符填下後, 密匣啓請, 諭書同爲入之, 而仍爲啓請諭書寶. (如有敎書, 則同時入之, 又請施命之寶.)”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啓稟. “密符官<留守·觀察使·統制使·鎭撫使·節度使·防禦使>下直時<摠使無下直.>, 符單子入啓, 待第幾符填下後, 密匣啓請, 諭書同爲入之, 仍啓請諭書寶.”

원의 事變注書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사변주서는 密匣을 수정할 때에 남아있는 밀부와 기존에 내려준 밀부를 기록한 密符置簿冊⁶⁰⁾을 하나하나 비교하여 확인하였다.⁶¹⁾ 또한 밀부관이 하직할 때 남아있는 밀부가 단지 3개만 있으면,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微稟하고 국왕의 결정을 기다려 밀부단자를 입계하였다.⁶²⁾

승정원은 밀부치부책·밀부단자·밀갑을 통해 밀부 번호를 중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밀부치부책을 수정하지 않거나 밀부단자에 잘못 기재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다. 1649년(인조 27) 3월 경기우방어사에게 밀부를 내려줄 때에 注書가 밀부치부책을 수정하지 않아서 제30부가 중복으로 발급되자 해당 주서를 파직하였다.⁶³⁾ 1755년(영조 31) 8월에 총융사에게 밀부를 내려줄 때에 주서가 밀부단자에 잘못 기재하고 입계하여 제23부가 중복으로 발급되자 해당 주서를 從重推考하였다.⁶⁴⁾

밀부를 부임지에서 전달하는 경우는 국왕이 밀부관에게 除朝辭赴任의 명을 내린 경우이다. 제조사부임은 지방 관원이 다른 지방의 관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 도로가 멀고 官事가 긴급할 경우에 국왕에게 啓稟한 후에 朝辭하는 것을 면제하고 부임하는 제도이다.⁶⁵⁾

60) 密符置簿冊은 密符冊, 密符案, 密符置簿, 密符置簿案, 密符置簿案冊, 密符置簿官案, 密匣冊 등으로 명칭이 다양한 용례를 『승정원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 『銀臺便攷』「兵房攷」密符. “符單子書入及密匣修正等節, 事變注書專管次知.(密匣修正時, 完符與事變符冊, —較準.)”

62) 『銀臺便攷』「兵房攷」密符. “密符官下直時, 完符只存三箇, 則微稟, 待發落, 符單子入啓.”

63) 『승정원일기』 105책, 인조 27년(1649) 3월 18일(정축). “政院啓曰, 京畿右防禦使長湍府使金逸所受密符, 第三十符書下矣. 第三十符, 全南兵使李元老, 曾已受去, 而密符案不爲修正, 仍爲書入, 以致如此, 臣以該房, 不察之失, 在所難免, 不勝惶恐待罪. 不修正當該注書推考, 密符單子, 改付標以入, 論書當爲改書, 故前件還入交周之意, 敢啓. 傳曰, 勿待罪. 當該注書罷職, 應罷注書鄭時謀.”

64) 『승정원일기』 1122책, 영조 31년(1755) 8월 12일(계축). “鄭基安啓曰, 今此摠戎使李章吾所授密符, 第二十三符啓下矣. 修正次, 考見密符冊子, 則二十三符, 忠清水使任時偶, 已爲受去矣. 密符單子, 誤爲書入, 致有大段差誤之失, 當該注書, 從重推考, 原單子改修正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湖西에서 영남·호남, 海西에서 關西, 관서·관동에서 北道, 관동에서 영남·호서·해서로 부임하여 여정이 서로 가까운 경우에 제조사부임을 허락하였고, 1개의 道를 넘는 경우에는 가볍게 허락하지 않았다.⁶⁶⁾

밀부를 부임지에서 전달하는 과정은 이조 또는 병조에서 관찰사·절도사·방어사의 제조사부임에 대하여 국왕에게 啓目を 올려 啓下를 받았다. 이어서 승정원은 밀부를 仍佩하거나 傳授하는 것에 대해 啓辭를 올려 국왕의 비답을 받았다.⁶⁷⁾ 즉 밀부관이 재조사부임하면 기존에 받은 밀부를 그대로 佩用하였다. 그러나 밀부관이 아닌 관원이 밀부관에 임명되면 승정원의 서리가 새로운 밀부를 전달하였다. 이후 1781년(정조 5) 3월에 좌부승지 趙時偉의 筵奏로 인하여 선전관이 밀부관에게 밀부를 전달하였다.⁶⁸⁾ 또한 전임관에게 준 밀부를 후임관이 인수인계 받는 사례도 있었다.⁶⁹⁾ 승정원의 계사에 대한 국왕의 비답이 내려지면, 교서·유서 또는 유서를 正書한 후에

65) 노인환, 앞의 논문, 2016, 302쪽.

『大典會通』吏典 除授. “《續》外官之移擬他職者, 道里遙遠, 官事緊急, 則啓稟, 除朝辭赴任.(餘勿輕許)”

66) 『六典條例』「吏典」吏曹 總例. “外官之移除他職者, 湖西之於兩南, 海西之於關西, 關西·關東之於北道, 關東之於嶺南·湖西·海西, 程途相近處, 除朝辭赴任.(越一道, 則毋得輕許.)”

67) 『六典條例』「吏典」承政院 啓稟. “道帥臣·防禦使, 以外任移拜除朝辭啓目, 則本院, 以密符仍佩或傳授及教諭書下送之意, 啓辭.”

68) 『정조실록』11권, 정조 5년(1590) 3월 7일(경진). “承旨趙時偉啓言, 密符齎去, 事體至重, 而每當藩閫及防禦使, 除朝辭赴任之日, 只使院吏齎傳者, 有非重事體之道. 請自今爲始, 使宣傳官, 奉命齎去, 而院吏則只奉諭書傳宣, 以此定式施行. 敕曰, 所奏, 實合予意, 依此定式.”

69) 『銀臺便攷』「兵房攷」除朝辭赴任. “道帥臣·防禦使, 自外任移拜, 除朝辭赴任事, 自該曹啓目啓下, 則本院, 以密符仍佩, 或傳授, 及教諭書下送之意, 啓辭. 若本是佩符之人, 則以前所受仍佩, 若未佩符之人, 古則使院吏齎去密符, 至辛丑, 因承旨筵奏, 使宣使官齎去矣. 自正宗中年, 有以前官所授傳佩之例.”

『승정원일기』1463책, 정조 4년(1780) 5월 14일(임진). “李度默啓曰, 守禦使金鍾秀, 自鄉上來云, 教諭書, 似當更爲啓下, 牌招傳授, 而此與新除授有異, 在前如此之時, 有前所授密符傳授之例, 今番則, 何以爲之. 敢稟. 傳曰, 前所受密符傳授.”

密符冊과 밀부의 숫자를 비교하여 확인하였고 密匣을 修正할 때에 밀부책에 자세히 기록하였다.⁷⁰⁾

국왕은 밀부의 전달과 제조사부임의 명령을 승정원의 유지를 통해 밀부관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1644년(인조 22)에 咸鏡北道兵馬節度使 金汝水에게 내린 유지를 확인할 수 있다.

同副承旨 尹鳴殷<着名>.

지금 경을 咸鏡北道兵馬節度使에 임명하여 諭書와 密符를 내려 보내니 경은 잘 받고, 朝辭를 면제하고 부임하라는 有旨를 내린다.

순치 원년(1644, 인조 22) 12월 27일⁷¹⁾

<그림 11> 1644년(인조 22) 咸鏡北道兵馬節度使 金汝水 告身과 有旨



* 출처: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http://hnnkostma.org/emuseum/service/>)

1644년 12월에 김여수는 慶興府使에서 함경북도병마절도사, 즉 北兵使로 임명되었다. 김여수가 함경도 경흥부에서 북병영이 있는

70) 『銀臺便攷』 「兵房攷」 除朝辭赴任. “待啓辭批下, 敎諭書或諭書正書, 與事變符冊, 較傳符數後, 御覽次入之, 仍爲寶啓請, 安寶齎去.(後日密匣修日時, 消詳懸主於密符冊.)”

71) “同副承旨 尹<着名>. 今以卿爲咸鏡北道兵馬節度使, 諭書·密符下送, 卿其領受, 除朝辭赴任事, 有旨. 順治元年十二月二十七日.”

鏡城都護府로 관직을 이동하였기 때문에 인조에게 朝辭를 거행하고 부임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북병사는 국경과 인접해 있는 여러 鎭을 관할하는 중요한 관직이기 때문에 除朝辭赴任에 해당하였다. 인조는 승정원의 유지를 통해 함경북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된 내용, 유서와 밀부를 내려 보내니 잘 받으라는 내용, 朝辭를 면제하고 부임하라는 내용을 김여수에게 전달하였다. 승정원의 서리가 김여수에게 유서와 밀부를 전달하였고, 김여수는 狀啓를 올려 유서와 밀부를 祗受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김여수의 경우와 같이 국왕이 밀부를 부임지로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후임관이 전임관에게 밀부를 인수인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1799년(정조 23) 濟州防禦使 鄭觀輝 告身과 有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1799년(정조 23) 濟州防禦使 鄭觀輝 告身·有旨



* 출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71 -利川 豐川任氏·楊州 光州鄭氏篇-, 2004, 375쪽, 423쪽.

左承旨 鄭尙愚〈着名〉.

지금 경을 濟州防禦使로 승진하여 임명한다. 諭書는 院吏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전하게 할 것이니 경은 잘 받고, 密符는 전 방어사 林蓍喆이 佩用한 것을 그대로 줄 것이니 교대할 때에 유서 안에 밀부 숫자를 상고한 후에 그대로 佩用하며, 朝辭를 면제하고 부임하라는

有旨를 내린다.

가정 4년(1799, 정조 23) 11월 19일.⁷²⁾

1799년(정조 23) 11월 17일에 정관휘는 제주의 明月萬戶에서 濟州牧使·濟州鎮水軍僉節制使·全羅道水軍防禦使에 임명되었다.⁷³⁾ 정관휘가 제주의 明月鎭에서 濟州牧으로 관직을 이동하였기 때문에 정조는 정관휘에게 제조사부임의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도승지 李集斗는 전 제주목사가 패용한 밀부를 정관휘에게 주고 유서는 諭書之寶를 安寶한 후에 승정원의 書吏가 전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조에게 啓辭를 올려 운허를 받았다.⁷⁴⁾ 이어서 좌승지 鄭尙愚는 정관휘에게 전 방어사 林蓍喆이 패용한 밀부를 그대로 받고, 朝辭를 면제하고 부임하라는 정조의 명령을 유지로 발급하였다.

김여수·정관휘의 사례 이외에 밀부관이 관직을 이동할 때에 이전 관직에서 받은 밀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1809년(순조 9) 慶尙右道兵馬節度使 元永胄 有旨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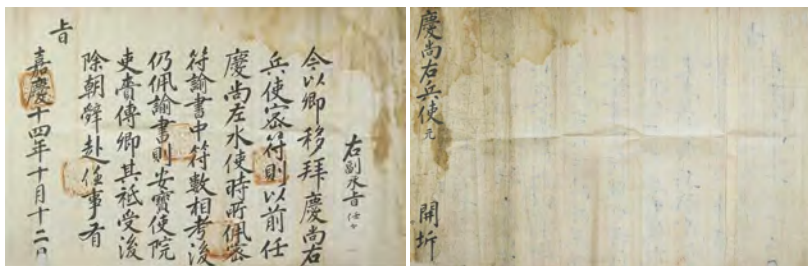
72) “左承旨 鄭<着名>. 今以卿陞授濟州防禦使 諭書使院吏齎傳 卿其領受 密符則前防禦使林蓍喆所佩仍授 交龜時 諭書中符數相考後仍佩 除朝辭赴任事有旨. 嘉慶四年十一月十九日.”

73) 『승정원일기』 1815책, 정조 23년(1799) 11월 17일(신미). “有政. 吏批, … 濟州牧使單鄭觀輝.”

노인환, 「조선시대 濟州牧使의 문서 행정 연구」, 『藏書閣』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4~15쪽.

74) 『승정원일기』 1815책, 정조 23년(1799) 11월 19일(계유). “李集斗啓曰, 明月萬戶鄭觀輝, 陞授濟州牧使, 除朝辭赴任事, 命下矣. 密符以前牧使所佩, 仍授, 諭書則安寶, 使院吏齎傳, 何如. 傳曰, 允.”

〈그림 13〉 1809년(순조 9) 慶尙右道兵馬節度使 元永胄 有旨



* 출처: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152쪽.

右副承旨 任厚常〈着名〉.

지금 경을 慶尙右兵使로 옮겨서 임명한다. 密符는 전임 慶尙左水使 때 佩用한 밀부를 유서 안에 밀부 숫자를 상고한 후에 그대로 패용하고, 諭書는 安寶하여 院吏로 하여금 가져가서 전하게 할 것이니 경은 공경히 받은 후에 朝辭를 면제하고 부임하라는 有旨를 내린다.

가경 14년(1809, 순조 9) 10월 12일.

(背面) 慶尙右兵使 元永胄는 열어보라. 〈着名〉⁷⁵⁾

1809년(순조 9) 10월에 원영주는 경상좌수사에서 경상우병사로 임명되었다.⁷⁶⁾ 원영주는 경상도 내에서 관직을 이동하였기 때문에 제조사부임의 명령이 있었다. 우부승지 임후상은 순조에게 啓辭를 올려 밀부는 전임 경상좌수사 때에 패용한 밀부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여 순조의 윤허를 받았다.⁷⁷⁾ 또한 임후상은 계사의 내

75) “右副承旨任〈着名〉. 今以卿移拜慶尙右兵使, 密符則以前任慶尙左水使時所佩密符, 諭書中符數相考後仍佩. 諭書則安寶, 使院吏寶傳, 卿其祇受後, 除朝辭赴任事有旨. 嘉慶十四年十月十二日. (背面) 慶尙右兵使元 開圻〈着名〉.”

76) 『승정원일기』 1973책, 순조 9년(1809) 10월 10일(신미). “兵批, … 元永胄爲慶尙右兵使.”

77) 『승정원일기』 1973책, 순조 9년(1809) 10월 11일(무술). “任厚常啓曰, 新除授慶尙右兵使元永胄, 以前任慶尙左水使, 時在任所, 而有除朝辭赴任之命矣. 密符則以前所

용을 유지로 발급하였고, 원영주는 경상우병사로 관직이 이동되었지만 기존에 패용하던 밀부를 계속 사용하였다.

밀부관은 휴가를 받아서 고향을 갈 경우에 特敎가 없으면 밀부를 차고 왕래할 수 없었다.⁷⁸⁾ 승정원에서는 밀부의 반납 여부를 국왕에게 啓辭를 올려 아뢰었고, 국왕이 밀부를 차고 왕래하라(仍佩往來)는 전교를 내리면 밀부를 차고 왕래하였다.⁷⁹⁾

관직이 교체되어 돌아올 때에 밀부관은 반드시 직접 승정원에 밀부를 반납하였다. 그러나 밀부를 대신 반납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1639년(인조 17) 7월에 京畿水使 羅德憲은 관직이 교체되어 올라왔는데, 肅拜하지 않고 軍官을 시켜서 밀부를 반납하여 처벌받았다.⁸⁰⁾ 또한 관직이 없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궁궐 밖에서 밀부를 직접 반납하였는데, 명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卿宰는 重推하고 通政대부는 禁推하였다.⁸¹⁾ 예를 들어 1849년(철종 즉위년) 9월에 전 昌城防禦使 李玄璣는 貶下되어 軍銜이 없었는데, 갑자기 궁궐에 들어와서 밀부를 직접 반납하여 처벌받았다.⁸²⁾

授密符仍佩, 諭書則安寶, 使院吏齎傳, 何如. 傳曰, 允.”

78) 『大典會通』 「兵典」 符信. “《續》… ○ 身帶將任者, 無論佩召 · 佩符, 毋得處城外. [受由下鄉者, 密符, 非有特敎, 不得仍佩往來.]”

79) 『승정원일기』 490책 숙종 41년(1715) 10월 15일(정축). “政院啓曰, 判尹閔鎮厚, 以掃墳事受由, 今方下去驪州地, 所授守禦使密符, 不敢以佩以去, 來詣還納, 何以爲之. 敢稟. 傳曰, 仍佩往來.”

80) 『승정원일기』 703책, 인조 17년(1639) 7월 19일(갑술). “朴守弘啓曰, 凡兵 · 水使遞來者, 復命之日, 親納密符, 乃是規例, 而京畿水使羅德憲, 遞任上來, 不爲肅拜, 使其軍官, 來呈密符, 其不識事體甚矣. 請從重推考. 傳曰, 允.”

81) 『大典會通』 「兵典」 符信. “《續》… ○ 將臣 · 藩臣 · 帥臣遞歸, 密符 · 命召, 必親納政院 [或無職, 或有故者, 親納闕外, 不遵命者, 卿宰重推, 通政禁推, 守職者以本資論.]” 김진옥, 앞의 논문, 2010, 210~212쪽.

82) 『승정원일기』 2491책, 철종 즉위년(1849) 9월 6일(경자). “申錫愚啓曰, 前昌城防禦使李玄璣, 貶下之後, 時無軍銜, 而遽然入來, 親納密符. 揆以事體, 極爲疎忽, 不可無警,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밀부관이 사망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밀부를 가지고 와서 반납하면 잠시 승정원에 머물러 두겠다는 뜻으로 入稟하고 다음 달 密匣을 수정할 때에 같이 수정하여 넣었다.⁸³⁾ 또한 죄를 지은 밀부관을 잡아올 때에 선전관을 파견하여 밀부의 좌척과 우척을 합친 후에 밀부관을 잡아 오는 것이 규례였다. 그러나 현종 연간에 선전관 대신에 의금부도사를 파견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간사한 뜻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례에 따라 선전관을 파견하였다.⁸⁴⁾

밀부의 전달과 반납 과정은 규정된 제도 속에서 이루어졌다. 국왕의 명령을 지방에 전달할 때 사용하는 유지를 통해 밀부를 전달하는 방식을 먼저 밀부관에게 지시하였다. 또한 『대전회통』 등의 법전에서 밀부의 반납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것은 밀부가 군사권을 운용할 때 사용하는 符信이기 때문에 밀부의 전달과 반납을 철저하게 시행한 것이다.

다. 밀부의 인수인계 관리

승정원에서는 밀부를 반출하거나 반납할 때에 인수인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注書가 密符置簿冊을 수정하여 보관하였다.⁸⁵⁾ 숙종 연간

83) 『銀臺便攷』 「兵房攷」 密符. “佩符官身死, 密符來納, 則姑留本院之意入稟〔封付房壁〕 易月後, 有密匣修正之時, 一體修正以入〔自入來之日, 如有符單子書入之時, 則依例書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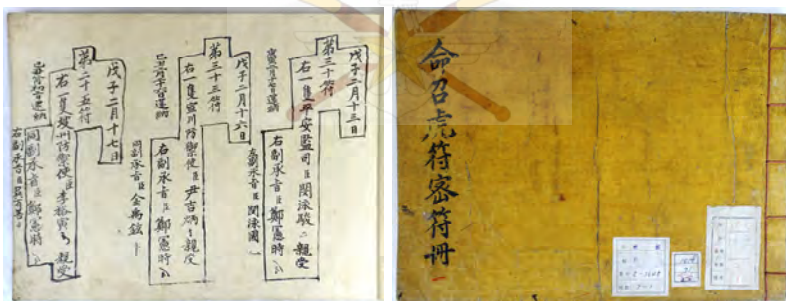
84) 『승정원일기』 198책, 현종 7년(1666) 11월 23일(기해). “又所啓, 在前則受密符之官, 拿來之時, 必有先遣宣傳官合符之舉, 而近例則只送禁府都事拿來矣. 論書中有如有非常之命, 合符無疑, 然後就命之教, 而不待合符, 徑先就命, 非所以防意外之奸也. 不遣宣傳官, 雖除一時廚傳之弊, 日後之慮, 恐有大於此矣. 上曰, 此事予嘗欲言之而未果矣, 論書中非常之命云者, 正謂拿來等事也. 不合符則不可就命, 今後政院, 依舊例, 發遣宣傳官合符, 然後拿來, 而以此定奪之意, 爲先下諭於各道監司, 仍爲分付於所管有密符之官, 俱皆知悉, 可也.”

85) 『승정원일기』 598책 영조 1년(1725) 8월 8일(계유). “李箕鎮啓曰, 監·兵使密符, 受去後, 院上密符案, 注書例爲——修正.”

에 밀부치부책을 수정하는 규정은 某官親受의 아래에 빈 공간을 두고, 다른 날 밀부를 반납할 때에 빈 공간에 수정하였다. 주서가 밀부치부책을 잘못 수정할 경우에는 標를 붙이고 小啓字를 踏印한 후에 수정하였다.⁸⁶⁾

밀부치부책은 1888년(고종 25)부터 1895년(고종 32)까지 국왕이 발급한 命召·虎符·密符에 대해 반입하고 반출한 내역을 수록한 『命召虎符密符冊』이 현전하고 있다. 『명소호부밀부책』에는 밀부를 전달받거나 반납할 때에 해당 밀부관의 관직·성명·着名과 담당했던 승지의 성명·작명을 수록하여 밀부의 반입과 반출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그림 14〉 『命召虎符密符冊』



* 출처: 『命召虎符密符冊』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3645)

『명소호부밀부책』에서 밀부를 전달할 때에 기재 방식은 제1행에 간지·월·일의 순서로 전달한 날짜를 기재하고 제2행에 반출하는 밀부의 숫자를 第幾符로 기재하였다. 제3행에 밀부를 전달한 사실

86) 『승정원일기』 509책 숙종 44년(1718) 9월 9일(을유). “南道揆啓曰, 密符冊修正之規, 案某官親受之下, 存其餘地, 以備他日還納時修正矣. … 今此誤修正處, 不得不付標還納, 自內踏小啓字以下, 然後依次序改修正以入, 似合事宜, 敢啓. 傳曰, 依啓.” 『命召虎符密符冊』에는 標와 小啓字이 없으며, 잘못 수정한 부분을 刀擦한 후에 수정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을 ‘右一隻+官職+臣+姓名+着名+親受’로 기재하였고, 제4행 하단에 밀부의 전달을 담당한 승지가 ‘某承旨+臣+姓名+着名’으로 기재하였다. 이때 밀부를 인수인계한 밀부관과 담당승지가 모두 着名을 하여 서로 확인하였다.

밀부를 반납할 때에 기재 방식은 먼저 승정원의 注書가 밀부의 전달 기록에 선으로 둘레를 그린 후(墨圈)에 둘레 외곽의 제4행 상단에 ‘간지·월·일+還納’을 기재하고, 제5행 하단에 밀부의 반납을 담당한 승지가 ‘某承旨+臣+姓名+着名’으로 기재하였다. 『명소호부밀부책』에서 밀부관과 담당승지의 착명을 제외한 기재사항은 모두 注書가 작성하였다.

밀부의 전달과 반납 사례는 察理使·兼濟州牧使 李奎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91년(고종 28) 8월에 이규원은 찰리사·겸제주목사로 임명되었고, 8월 20일에 밀부유서와 밀부 제25부를 직접 받은 후 『명소호부밀부책』에 着名하였다. 이때 담당했던 우부승지 李容善이 밀부를 전달한 후에 착명하였다. 이후 1894년(고종 31) 7월에 이규원이 軍務大臣으로 임명되었고,⁸⁷⁾ 11월 14일에 승정원에 직접 밀부 제24부를 반납하였다. 이때 담당했던 右副承宣 李采淵이 밀부를 받은 후에 착명하였다.

87) 『승정원일기』 3048책, 고종 31년(1894) 7월 15일(기축). “傳于趙鼎九曰, … 軍務大臣, 李奎遠差下.”

〈그림 15〉 1891년(고종 28) 察理使·兼濟州牧使 李奎遠 諭書와
『命召虎符密符冊』密符 第25符 전달·반납 기록



* 출처: 국립제주박물관, 『19세기말 제주의 계엄사령관 察理使 李奎遠』, 2004, 76쪽.

밀부관에게 밀부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선전관에게 밀부를 전달할 경우에는 밀부를 가지고 가는 선전관이 『명소호부밀부책』에 착명하였다. 예를 들어 1890년(고종 27) 3월에 李在護는 경상좌수사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이전 부임지인 法聖鎭에 있었다. 4월 4일에 우승지 李容植은 선전관이 밀부를 전달하게 할 것을 요청하는 啓辭를 올려 고종의 윤허를 받았다.⁸⁸⁾ 4월 5일에 선전관 權永洙는 이재호에게 전달할 밀부 제8부를 우승지 이용직에게 전해 받았다. 승정원의 주서는 『명소호부밀부책』에서 ‘右一隻’ 아래에 ‘慶尙左水使臣李在護處傳授次 宣傳官臣權永洙賁去’라고 기재하였고, 선전관 권영수가 성명 아래에 着名하였다. 권영수는 경상좌수영으로 밀부 제8부를

88) 『승정원일기』 2995책, 고종 27년(1890) 3월 18일(정해). “兵批, 再政, 以李在護爲慶尙左水使.”

『승정원일기』 2996책, 고종 27년(1890) 4월 4일(계묘). “李容植啓曰, 前法聖僉使李在護, 移拜慶尙左水使, 有除朝辭赴任之命下矣. 密符則使宣傳官賁傳, 諭書安寶, 使院吏賁傳, 何如. 傳曰, 允.”

가지고 가서 경상좌수사 이재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밀부 제8부는 1890년 11월에 경상좌수사에 임명된 金中鉉에게 인수인계되었다. 김중현도 이재호와 마찬가지로 법성진에서 경상좌수영으로 재조사부임하였고, 이재호에게 밀부 제8부를 전달받아서 경상좌수사의 재임 기간 동안에 패용하였다.⁸⁹⁾ 1891년(고종 28) 7월에 김중현은 전라병사에 임명될 때에도 경상좌수사 때 받은 밀부 제8부를 그대로 패용하고 재조사부임하였다.⁹⁰⁾ 『명소호부밀부책』에는 ‘第8符’ 아래에 ‘辛卯八月初八日 全羅兵使金中鉉除朝辭仍佩’가 기재되었다. 즉 밀부관이 조사를 면제하고 부임할 경우에는 ‘第幾符’ 아래에 간지·월·일과 移拜된 관직, 그리고 ‘除朝辭赴任仍佩’를 기재하였다. (<그림 16-①> 참고)

『명소호부밀부책』에는 밀부의 右隻 이외에 左隻을 인수인계한 내용이 기재되었다. 1888년(고종 25) 8월에 宣川府使·兼宣川防禦使에 임명된 吳順泳은 9월 6일에 밀부 제40부의 우1척을 전달하였다. 이후 1890년(고종 27) 죄를 지은 오순영의 밀부를 빼앗아 반납하기 위하여 1월 6일에 우부승지 金疇鉉은 선전관 金東振에게 밀부 제40부의 좌1척을 전해 주었고, 김동진은 밀부를 직접 받고 着名하였다. 같은 날에 김동진은 밀부 제40부의 좌척과 오순영이 받은 우척을 모두 반납하였다. 주서는 『명소호부밀부책』에서 밀부 제40부의

89) 『승정원일기』 3003책, 고종 27년(1890) 11월 20일(병술). “兵批, … 金中鉉爲慶尙左水使.”

『승정원일기』 3003책, 고종 27년(1890) 11월 29일(을미). “趙東協啓曰, 法聖前僉使金中鉉, 移拜慶尙左水使, 有除朝辭赴任之命矣. 密符則以前水使李在護所受仍佩, 論書則安實使院吏齎傳, 何如. 傳曰, 允.”

90) 『승정원일기』 3011책, 고종 28년(1891) 7월 29일(신묘). “兵批, … 金中鉉爲全羅兵使.”

『승정원일기』 3012책, 고종 28년(1891) 8월 15일(병오). “韓麟鎬啓曰, 濟州牧使鄭龍基移拜慶尙左水使, 慶尙左水使金中鉉移拜全羅兵使, 有除朝辭赴任之命矣. 密符則竝以前所受仍佩, 論書則安實, 使院吏齎傳, 何如. 傳曰, 允.”

좌척과 우척이 기재된 곳에 선으로 둘레를 그렸다(墨圈). 이어서 좌척에는 선전관이 정상적으로 반납하였기 때문에 ‘庚寅正月初六日還納’으로 기재하였으나 우척에는 밀부를 빼앗아 반납하였다는 의미로 ‘庚寅正月初六日奪納’으로 기재하였다. 좌척과 우척을 기재한 곳에는 밀부의 반납을 담당했던 우부승지 김주현이 모두 착명하였다. (〈그림 16-②〉 참고)

〈그림 16〉『命召虎符密符冊』 사례

① 宣傳官 賁去	② 密符奪納			③ 斥候·伏兵·傳語軍 調發

국왕이 밀부관의 병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선전관에게 밀부의 좌척을 인수인계한 내용도 『명소호부밀부책』에 기재되었다. 1893년(고종 30) 5월 1일에 고종이 明陵·翼陵·弘陵에 親祭를 지내기 위해 幸行할 예정이었다.⁹¹⁾ 4월 25일에 親軍經理廳에서 草記를 올려 고종이 幸行할 때에 친군경리청에 속한 斥候·伏兵·傳語軍을 調發

91)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1893) 5월 1일(임오). “詣明陵·翼陵·弘陵, 行親祭. 王世子隨詣, 行亞獻禮.”

하기 위하여 標信과 密符를 내어주기를 요청하여 고종의 윤허를 받았다.⁹²⁾ 같은 날에 선전관 李敏軾은 親軍經理使 閔泳駿이 패용하는 밀부 제27부의 좌책을 우부승지 金容元에게 전달받았다. 그리고 『명소호부밀부책』에서 제27부의 ‘左一隻’ 아래에 ‘幸行時 斥堠·伏兵·傳語軍調發事 宣傳官臣李敏軾 親受’를 기재하였고, 밀부를 인수인계한 우부승지 金容元과 선전관 李敏軾이 착명하였다. (<그림 16-③> 참고)

『명소호부밀부책』과 같이 밀부를 관리하는 密符置簿冊에 주서가 墨圈을 잘못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다. 1730년(영조 6) 12월 3일에 전 전라도관찰사 閔應洙가 밀부를 반납하여 주서가 밀부치부책을 수정할 때에 민영수의 親受를 기재한 곳 대신에 그 아래쪽인 黃海水使 具樹勳에게 잘못 墨圈하여 곧바로 刀擦하였다. 이에 대해 동부승지 鄭羽良은 해당 주서를 推考하고 본인은 살피지 못한 죄로 황공하여 待罪하겠다는 내용으로 啓辭를 올렸다. 영조는 주서의 추고는 윤허하였으나 정우량의 대죄는 윤허하지 않았다.⁹³⁾

『명소호부밀부책』을 통해 밀부를 인수인계할 때에 승정원의 주서와 승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주서는 밀부의 전달과 반납 내용을 기재하였고, 반납할 때에 전달한 내용을 墨圈하여 실질적으로 밀부의 인수인계를 관리하였다. 밀부의 전달과 반납에서 대부분 우부승지와 동부승지가 착명하여 하위의 승지가 밀부의 인수인계를 감독하였다. 『명소호부밀부책』을 통해 밀부의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92) 『승정원일기』 3033책, 고종 30년(1893) 4월 25일(정축). “又以親軍經理廳言啓曰, 今此幸行時, 本廳屬高陽境斥堠·伏兵·傳語軍, 以該邑束伍步軍除出, 整齊後臨時, 請出標信·密符徵發之意, 已爲草記蒙允矣.”

93) 『승정원일기』 715책, 영조 6년(1730) 12월 3일(정유). “又啓曰, 前全羅監司閔應洙, 還納密符, 修正冊子之際, 所當墨圈於閔應洙親受置簿之處, 而注書, 誤圈於其下傍黃海水使具樹勳所受置簿處, 旋即刀擦, 不傷字畫, 而莫重密符置簿冊, 有此誤圈之事, 此雖出於一時錯誤, 而不可無警責, 注書推考, 臣亦難免不察之失, 惶恐待罪之意, 敢啓. 傳曰, 依啓, 勿待罪.”

기재한 것과 승지와 주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밀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조선시대 밀부는 국왕의 명령에 의해 병력을 동원할 때 밀부관에게 내려지는 符信이다. 국왕은 밀부의 좌척을 궁궐에 보관하였고, 새로 임명된 밀부관에게 밀부유서와 밀부의 우척을 내려주었다. 국왕은 밀부를 통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병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였고, 아울러 중앙에서 지방의 군사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1457년(세조 3) 平安道都節制使 李允孫 밀부유서와 『세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세조 연간에 밀부가 시행되었다. 선조는 1589년(선조 22) 정여립의 난을 계기로 기존에 밀부관에게 내리는 밀부와 함께 비상시에 대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밀부를 추가로 제작하였고, 이후 국왕이 긴급하고 중대한 일이 있어 야간에 대신 등을 부를 때 사용하는 밀부는 ‘命召’라는 부신으로 대체되었다. 1746년(영조 22)에 반포된 『續大典』에 밀부 관련 조항이 수록되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고, 조선 후기에 고종 연간까지 시행되었다.

밀부는 전면의 중앙에 第一符에서 第四十五符까지 차례로 새기고 좌척에는 左자를, 우척에는 右자를 새겼으며, 후면의 중앙에 국왕의 서명인 御押을 새겼다. 밀부관은 밀부를 반달 모양의 密符匣에 넣고 다시 황색 密符囊에 넣어 철릭이나 군복에 차고 다녔다. 밀부에 새긴 御押 때문에 선대의 국왕이 승하하고 새로운 국왕이 즉위할 때에 반드시 밀부를 改造하여 교체하였다. 조선 후기에 밀부의 개조와

교체는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啓辭를 올려서 啓下를 받았고, 밀부의 개조와 교체에 대한 국왕의 명령을 승정원에서 有旨로 작성한 후에 밀부관에게 전달하였다.

밀부관은 각 道의 觀察使와 節度使·留守·統制使·統禦使·防禦使·摠戎使 등이 있었다. 관직 제도가 변화하고 새로운 관직이 신설되면서 밀부관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인원도 점차 증가하여 총 37명이 되었다. 국왕은 밀부관이 숙배하고 하직할 때에 궁궐에서 밀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밀부관이 朝辭를 면제하고 부임할 경우에 부임지에서 밀부를 전달하거나 전임관의 밀부를 인수인계 받았다. 또한 밀부관이 除朝辭赴任으로 관직을 이동할 때에는 기존에 받은 밀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승정원에서는 밀부의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命召虎符密符冊』과 같은 密符置簿冊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밀부가 국왕과 지방 관원 사이에 군사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및 운용되었다.

최근에 조선시대 군사와 무기 등을 주제로 하는 전시 도록에 密符·密符匣·密符囊 등의 도판과 설명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일부 전시 도록에서는 밀부와 兵符의 명칭을 혼동하거나 도판을 잘못 수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符信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밀부 이외에 兵符·命召·虎符·信符·漢符·標信·牌 등 다양한 符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20. 3. 28, 심사수정일 : 2020. 5. 13, 게재확정일 : 2020. 5. 18.)

주제어 : 密符, 密符官, 諭書, 有旨, 啓辭, 命召虎符密符冊, 符信

〈참고문헌〉

『命召虎符密符冊』(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3645)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

『時在符信等牌』(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S03 14 0374)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문화재청 국가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http://hnkostma.org/emuseum/service/>)

국립제주박물관, 『19세기말 제주의 계엄사령관 察理使 李奎遠』, 2004.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국립해양박물관, 『고문서로 만나는 조선시대 수군』, 2014.

김진옥, 「禁推의 성격과 특징」, 『민족문화』 36, 한국고전번역원, 2010. <http://uci.or.kr/G704-001842.2010.36.36.003>

김학수, 「한범석(韓範錫:1672~1743) 교지(敎旨)의 역사적 가치」, 『남명학연구』 4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4. <http://uci.or.kr/G704-001230.2014..43.007>

노인환, 「조선시대 諭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노인환, 「조선시대 濟州牧使의 문서 행정 연구」, 『藏書閣』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http://uci.or.kr/G704-001808.2015..34.006>

노인환, 「조선시대 觀察使 敎書와 諭書의 문서 행정과 운용」, 『古文書研究』 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http://uci.or.kr/G704-000717.2016.48..020>

노인환, 「조선시대 승정원 有旨의 유형과 제도」, 『규장각』 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 서울대학교 규장각, 『寶印符信總數』, 1994.
- 서울대학교 규장각, 『經國大典』, 1997.
- 서울대학교 규장각, 『大典會通』 上·下, 1999.
- 서울대학교 규장각, 『六典條例』 上·下, 1999.
- 서울대학교 규장각, 『兩銓便攷·銀臺條例』, 2000.
- 서울대학교 규장각, 『銀臺便攷』 上·下, 2000.
-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복식』, 2012.
- 육군박물관, 『조선의 군사신호체계 「形名」』, 2014.
- 이강욱 옮김, 『銀臺條例』, 한국고전번역원, 201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71 -利川 豐川任氏·楊州 光州鄭氏篇-, 2004.
- 화성시·화성문화원, 『남양홍씨 정효공파 -녹슨 거울을 닦아 미래를 비추다-』, 2010.



(Abstract)

System and Operation of Milbu(密符) in the Joseon Dynasty

Noh, In-hwan

In the Joseon Dynasty, the Milbu(密符), a round shape signal plaque made of wood, was given to the Milbukwan(密符官) when the troops were mobilized by the king's order. This system was implemented in the period of King Sejo. In Sokdaejeon(續大典), which was promulgated in 1746 (King Yeongjo 22), the Milbu-related regulations were legislated and recorded first and were enforced until 1895 (King Gojong 32). Milbu had the first to forty-fifth sections recorded in the center on the front page in order, and Letter Jwa(left) on the left side and letter Wu(right) on the right side and the engraving of kings' signature(Eoap, 御押) on the back page. When a king passed away and the succeeding king was enthroned, the Milbu was replaced with a new one because of the engraved signature of the previous king. In the later Joseon Dynasty, the Milbu was reconstructed and replac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The Seungjeongwon Office submitted Gyesa(啓辭) to the king and received Gyeha(king's approval, 啓下), and then Seungjeongwon compiled the king's order about the reconstruction and replacement into Yuji (Official Letter of King's Command, 有旨) and delivered it to the Milbukwan (official).

There was the Milbukwan office in Gwanchalsa(觀察使), Jeoldosa(節度使), Yusu(留守), Tongjesa(統制使), Tongeosa(統禦使), Bangeosa(防禦使), and Chongyungsa(摠戎使). The king delivered the Milbu to a Milbukwan at the palace when he was leaving the palace. If a Milbukwan was newly appointed and exempted from being present before the king, the Milbu was delivered to him at the place of appointment or he received the Milbu from his predecessor. And when a Milbukwan was appointed to a new official position with an appointment on exemption of being present before the king, he continued to use the Milbu.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handover of the

Milbu, the Seungjeongwon Office wrote and managed Milbuchibuhaek(密符置簿冊) such as Myeongso Hobu Milbuchaek(命召虎符密符冊). Because the Milbu was the medium which connects the military power between the king and local officials, it was strictly managed and operated.

Keywords : Milbu(密符), Milbukwan(密符官), Yuseo(諭書), Yuji(有旨), Gyesa(啓辭), Myeongso Hobu Milbuchaek(命召虎符密符冊), Busin(符信)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167-213
<https://doi.org/10.29212/mh.2020..115.16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미국해군제독 슈펠트와 조미수교(朝美修交)

-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중심으로(1880-1882)

최덕규*

- 
1. 서론
 2. 슈펠트의 태평양 해양제국 구상과 고종의 防俄聯美策
 3. 한반도 4강구도의 형성과 美·淸 접근
 4. 슈펠트-이홍장의 조미수교 교섭과 “중국인 배척법”
 5. 결론

1. 서론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의 핵심 쟁점은 제1조에 조선이 중국의 속방임을 밝히는 이른바 “속방조관(屬邦條款)”의 삽입 여부였다. 조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미수교의 전권을 부여받은 미국측 대표 슈펠트(R.W.Shufeldt) 제독은 “속방조관”은 조선과 미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체결 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명시하고자 한 청(淸)측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따라서 조미조약은 조선이 정치적으로 속국에서 독립국으로 인정받는 국제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특정국에게 독점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통용되는 시장으로 개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슈펠트는 미국의 번영은 아시아 국가와의 통상확대에 달려있다는 그의 신념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슈펠트 제독은 멀리 떨어진 미수교국과 외교관계 수립의 임무를 수행한 군인외교관이었다. 미국해군사에서 이같은 임무를 수행한 마지막 제독이 슈펠트였다.¹⁾ 그는 일본을 개국시킨 페리(M.C.Perry) 제독과 같이 19세기 미국의 해외팽창의 선봉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던 해군장교였다. 이는 그가 일반 외교관과는 달리 무력과 설득이라는 외교협상의 양대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슈펠트는 한편으로 이홍장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를 강력하게 몰아세울 압박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조미수교를 성사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조미수교를 위한 슈펠트와의 교섭과정에서 이홍장(李鴻章)이 결국 “속방조관”을 철회한 것은 防俄聯美策을 반드시 성사시키려 했던 절박함의 산물이었다. 이홍장은 1880년 12월 조미조약에 조선은 “중국의 명을 받들어 結約”한다고 성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駐日淸國公使 하여장(何如璋)의 건의(1880.11.18.)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 한바 있었다. 속국(屬國)의 명문화는 조선 국왕이 스스로 그런 요청을 해올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²⁾ 그럼에도 이홍장이

1) Charles O. Paullin, Diplomatic Negotiations of American Naval Officers 1778-1883, The Johns Hopkins Press, 1912, pp.7-10.

2)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김형중 외 역, 동북아역사재단, 2016. pp.109-114.

조미수교를 위한 슈펠트와의 교섭이 시작되었던 1882년 봄(1882.3.25.~4.18.) “속방조관” 카드를 다시 꺼내든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이홍장의 “속방조관” 카드는 “恐露症(Russophobia)”의 재현과 관련 있다고 본다. 1880년伊犁위기 당시 對淸 해상압박 작전을 위해 극동으로 파견된 전직 海軍相 레솅스키(С.С.Лесовский) 제독은 연합함대를 이끌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집결해있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 비준(1881.5.15.)을 기다린 후, 일본을 방문하여 천황을 알현(1881.6.15.)하고 러·일 우호를 과시하며 귀국길에 올랐다. 이후 러시아 해군성이 차르의 칙령에 따라 해군전략 수립을 위해 개최한 특별회의(1881.9.3.)에서 태평양에서의 해군력증강과 블라디보스토크의 방비를 강화가 결의되었다. 이로써 러시아는 러·청 전쟁위기 해소 이후 동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할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유일한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시베리아를 통해 유럽러시아로 연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1881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것도 레솅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의 결과였다.³⁾

슈펠트 제독이 “속방조관”이란 미국을 청국과 더불어 조선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국가(joint protectors of Korea)로 포섭하려는 이홍장의 계책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⁴⁾ 이홍장은 러시아 레솅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을 계기로 러·청 전쟁위기를 겪으면서 향후 러일 共助에 맞선 자구책의 일환으로 美淸 방위협력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러·청간의 전쟁위기와 맞물린 5개국

李鴻章-總理衙門(1880.12.23.)

3) Р.В.Кондратенко, Мор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80-х Годов XIX века, СПб. 2006, pp. 58; 75-78.

4) Frederick C. Drake, The Empire of the Seas: A Biography of Rear Admiral Robert Wilson Shufeldt, US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4. pp.290-291.

(朝美清露日) 세력관계가 조미수교에 투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조미수교는 1880년대 초반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왜냐하면 조미수교가 조선, 미국, 청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가 등장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美清露日)구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레솅스키 함대의 극동원정과 이후 동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한 러시아 요인과 미국의 슈펠트 제독이 아프리카·아시아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순항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인 조선에 당도(1880.5.4.)함으로써 나타난 미국 요인은 향후 동아시아 전통질서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1880년을 기점으로 한국근대사는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4대 열강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그 외연과 연동되는 구조가 성립되었다.

조미수교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1910년에 발표된 파울린(Charles O. Paullin)의 논문 “슈펠트 제독의 조선 개항”⁵⁾을 기점으로 미국⁶⁾과 중국자료⁷⁾를 중심으로

5) C.O. Paullin, “The Opening of Korea by Commodore Shufeld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25, No.3, 1910. pp.479-499.

6) 조미수교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는 활용한 사료의 특징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1960년대 초반 미국국립문서관(The U.S. National Archives) 소장 슈펠트제독의 순항일지(Commodore R.W. Shufeldt: Cruise of the Ticonderoga, 1878-1880) 자료와 미국의회도서관 소장 슈펠트 문서(Shufeldt Papers)를 활용한 연구들이다. 이 자료들은 조미수교를 둘러싼 슈펠트 제독의 활동들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기여하였다. 주요연구로는 李普珩, 「Shufeldt 提督과 1880年の 朝美交渉」, 『歷史學報』15, 1961. pp.61-91. 이보형 교수는 文一平의 『對米關係五十年史』(조선일보사편집부: 1939)가 Paullin의 논문에 주로 의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자신의 논문의 인용사료는 “The U.S. National Archives, Commodore R.W.Shufeldt : Cruise of the Ticonderoga, 1878-1880”라고 소개했다; 韓沄勳, 「Shufeldt 提督의 韓·美修好條約 交渉推進緣由에 대하여」, 『震檀學報』24권, 1963. pp. 419-438. 한우근 교수가 소개한 논문의 인용문서는 미국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의 슈펠트 문서였다. 그럼에도 이보형의 연구는 1880년 일본의 알선으로 추진된 슈펠트제독의 조미교섭이 실패한 이유를 고찰하였고, 한우근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으며 개별사실에 대한 각론은 정립된 듯하다. 그럼에도 청정부가伊犁분쟁으로 촉발된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했음에도 왜 결국 러시아와 타협하게 되었는지, 이홍장은 1880년 주일청국공사 何如璋이 건의한 “속방조관”을 거부한 바 있었음에도 왜 1882년 봄 이를 번복하여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했는지, 슈펠트 제독은 美日和親條約(1854)에는 없는 ‘居中調整(good offices)’ 조문을 조미조약 제1조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지를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의 연구 역시 미국이 조미조약 체결에 노력한 배경과 그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조미 양국 관계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7) 1972년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간행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勸導朝鮮與各國立約通商” 문서를 활용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清末 외교관계 문서 가운데 조선관련 사료들을 선별하여 편찬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은 연미론(聯美論)을 둘러싼 조청관계사를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의 미국 문서관 소장 자료의 발굴과 1970년대 대만 근대사연구소 檔案館 자료들이 출판됨에 따라 한국·미국·중국의 자료들을 활용한 업적들이 산출되기 시작했다.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의 朝鮮檔案에 대한 연구조사(1965-67)는 권석봉(權錫奉)에 의해 한국학계에 보고된바 있다. 권석봉, 「중국 중앙연구원 소장 조선당에 대한 연구조사 보고」, 『동양사학연구』 2, 1967. pp.43-74.; 아울러 1972년 간행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조미조약 관련 부분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번역 발간한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2016.」을 참조할 수 있다. 주요 연구업적은 다음과 같다. 권錫奉, 「李鴻章의 對朝鮮列國立約勸導策에 대하여」, 『역사학보』 21, 1963.; 宋炳基, 「19세기말의 聯美論 序說 李鴻章의 密函을 중심으로」, 『史學志』 9권, 1975; 宋炳基, 「金允植李鴻章의 保定天津會談(上下) -朝美條約 締結(1882)을 위한 朝淸交涉」, 『동방학지』 44-45권, 1984.; 김원모, 「슈펠트李鴻章의 朝鮮開港交涉始末」, 『國史館論叢』 第44輯, 1993. 주요 업적들을 정리해보면, 권석봉은 이홍장의 列國立約勸導策이 聯美策의 기초가 되었다고 분석하였고, 송병기는 기존연구가 미국측 자료에 의존했음을 지적하고 한국 및 중국측 자료를 이용하여 조미수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조정간의 교섭을 천착하였다. 김원모는 韓中美의 자료를 섭렵하여 종래의 조미, 조청 양국관계에 국한되었던 주제를 종합적으로 살핍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조미수교에 대한 연구사에서 러시아 자료가 인용되지 않았던 점은 기존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조미수교는 “防俄聯美論”을 국제조약으로 공식화하는 과정이었음에도 연미론과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는 당시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에 대한 고찰은 소홀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시론으로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슈펠트 제독이 미국을 태평양의 해양제국으로 부상시키고자 하였던 논리와 의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고종정부가 쇠락해가는 청제국을 목도하면서 조선의 안정보장책의 일환으로 대미접근 정책을 추진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일본이 아니라 청국이 조미수교를 주선하게 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러시아의 레쉴스키 함대의 극동원정과 관련하여 청국이 조선에 聯美論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이홍장이 1880년 하여장이 건의한 “속방조관”을 거부했음에도 1882년 봄 조미수교를 위한 협상에서 “속방조관”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1881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슈펠트 제독이 이홍장과 조미수교 협상을 전개하는 동안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은 조미수교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슈펠트가 이홍장과의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는 러시아의 문서관에서 찾은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⁸⁾

8) 러시아해군함대문서관 해군성관방국 문서(РГАВМФ. Ф.410. Канцелярия Мор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가 그에 해당한다.

2. 슈펠트의 태평양 해양제국 구상과 고종의 防俄 聯美策

조미수교는 미국을 태평양의 해양제국으로 부상시키려는 슈펠트⁹⁾ 제독의 구상과 연미론(聯美論)을 근대 조선의 안전보장책으로 삼고자 했던 고종의 대미접근 정책이 맞물린 산물이다. 슈펠트는 로마제국과 대영제국의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국가의 번영은 해외통상 확대가 관건이라는 신념의 소유자였다. 그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 미국의 지리적 특성상, 유럽열강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대서양보다는 태평양에 미국의 미래를 걸고 있었다. 반면 고종정부는 일본의 琉球병합(1879) 선례에서 보았듯이, 무기력한 청국보다는 서양강국이 조선의 안전을 보장해주길 바랐다. 이는 서양공법에 의존하여 자주독립을 유지하는 책략은 비현실적인 것임을 인식한 결과였다. 따라서 청국이 조선에 권고했던 聯美策을 계기로 고종은 근대조선의 안보체계에 미국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9) 슈펠트(1822-1895)는 뉴욕주 레드후크(Red Hook, Dutchess county)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45년 7월 해군장교에 임관 후, 증기우편선 애틀란틱(Atlantic)과 조지아(Georgia)호의 일등항해사로 근무했다. 1854년 해군 퇴역 후, 미국 상선대에 입대, 뉴욕-리버풀, 뉴욕-뉴올리언즈를 왕복하는 상선의 선장으로 활약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링컨대통령은 슈펠트를 쿠바의 아바나(Havana) 주재 미국 총영사에 임명함으로써 외교계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남북전쟁 중반 무렵인 1863년 슈펠트는 다시 해군에 입대, 연방 해군의 함장으로서 남부 연방군(Confederate forces)의 해군과 여러 차례 해전을 벌여 승리로 이끌었다. 남북전쟁 직후 아시아 함대에 배속된 그는 1866년 9월 5일 와쑈셋(Wachusett)號 艦長에 임명되어 해적의 약탈로부터 미국의 통상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Paullin, The Opening of Korea by Commodore Shufeldt, p.477; Frederick C. Drake, The Empire of the Seas: A Biography of Rear Admiral Robert Wilson Shufeldt, US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4, pp.4-13.

미국은 조미수교 조건으로 조선을 특권과 독점이 허용되지 않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실천되는 교역시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는 슈펠트가 조선을 아시아통상의 교두보로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문제를 둘러싸고 전통적 속방관계를 유지하여 조선을 독점하고자 한 청국과 조선에 自主國의 지위를 부여했던 미국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조미수교의 양대 주역인 미국해군의 슈펠트 제독과 조선국왕 고종의 세계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877년 슈펠트 제독이 워싱턴 소재 “미국식민협회(American Colonization Society)”에서 행한 연설 “미국 해군과 라이베리아 공화국의 건국, 발전, 번영”¹⁰⁾은 “문명의 힘은 화약에서 나온다”는 그의 문명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슈펠트가 아프리카 함대(1843-1844)를 지휘하며 라이베리아 해안을 순항했던 페리(M.C.Perry) 제독의 문명관을 계승했음을 의미했다. 이 연설에서 슈펠트가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페리제독을 꼽았던 이유도 후자가 토착민들에게 필요시 화약으로써 문명을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페리 제독이 함포외교로 일본을 최초로 개국시켰던 선례 역시 슈펠트의 조미수교 임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슈펠트가 1878년 미국식민협회 부회장에 선임된 것은 그가 인종주의자였음을 보여준다. 미국식민협회는 미국내 인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흑인들의 아프리카 재이주를 목적으로 설립(1817)되었다. 이 협회의 사상적 기반은 사회진화론적 인종론에 있었다. 각 인종들에게는 그들에게 적합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황인종이 아시아에서, 백인이 유럽에서 번영하듯이 흑인들도 그들에게 할당된 영

10) LC, African American Pamphlet Collection, "The American Navy and Liberia : an address before the American Colonization Society, January 18, 1876."

역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것이다.¹¹⁾ 따라서 그의 인종주의적 문명관은 조미수교를 위해 이홍장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화이론(華夷論)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서구의 국제법의 기준에서 조선의 지위를 결정짓고자 한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슈펠트가 미국의 인종문제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에 건국된 라이베리아(Liberia) 공화국에 주목하게 된 것은 이곳이 아프리카 무역시장의 확대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아프리카로 귀환한 미국 흑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신대륙을 개척하여 수립할 새로운 국가는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로서 거대한 상품시장으로 성장해 나가야 했다. 따라서 슈펠트의 연설에서 신생 라이베리아가 “유럽열강에 흡수되거나 야만부족들에 의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한 것은 라이베리아의 건국과 발전에 있어서 미국 해군장교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¹²⁾

슈펠트는 미국해군이 라이베리아를 보호해야 할 또 다른 이유로 기독교 선교를 꼽았다. 그는 이곳으로 이주한 미국 흑인들이 아프리카 중심부에 기독교를 선교하는 선봉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역할을 아프리카에서 라이베리아가 해주길 바랐던 것이다. 슈펠트는 아프리카 전역을 비추는 라이베리아의 등대가 수도 몬로비아(Monrovia)에 정박한 미국 군함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조로 양국 관계를 그리고 있었다. 이에 이슬람교를 믿는 아프리카 토착부족들과 투쟁하고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최선의 동맹자는 미국해군이었다. 따라서 슈펠트에게 해외통상, 기독교의 선교, 그리고 해군력은 삼위일체(三

11) LC, “The U. S. Navy in connection with the Foundation, Growth and Prosperity of the Republic of Liberia.” 1877. p.18.

12) 위의 문서. p.27.

位一體)이기도 하였다.

슈펠트가 소형군함을 활용하여 미국과 라이베리아를 직접 연결하는 우편연락선 개설을 제안한 것은 미국의 대외무역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군이 담당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영국의 해외 우편 시스템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되어 이후 민간회사가 이를 넘겨받아 세계적인 우편망을 구축한 선례에 주목한 결과였다. 이에 군함이 먼저 항로를 개척하고 상선이 뒤를 따르는 방식으로 라이베리아를 미국의 통상시장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슈펠트가 해군성 장비모병국장(Chief of the Bureau of Equipment & Recruiting)에서 물러난 것(1878.11.1.)도 군함과 상선을 “공동의 사도(Joint Apostles)”로 앞세워 기독교 교리를 아프리카에 전파하고 라이베리아를 통상의 거점으로 확보한다는 그의 원대한 구상과 무관하지 않았다.¹³⁾

슈펠트의 구상은 그가 미국의 통상시장 확대를 위한 아프리카·아시아 순항함 지휘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 해군장관(R. W. Thompson)과 국무장관(Maxwell Evarts)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슈펠트에게 전달한 훈령(1878.10.29.)의 요지는 남북전쟁 이후 침체를 겪고 있던 미국경제의 부흥을 위한 활로 모색에 있었다. 이는 과잉 생산된 상품과 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핵심인바, 미국이 유럽열강과 더불어 아시아·아프리카 시장 쟁탈전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후발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이 아시아·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발제국주의 국가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슈펠트가 라이베리아를 아프리카 통상확대의 거점으로 간주하였다면,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로 주목한 국가는 조선이었다. 조선은

13) 위의 문서. p.26.

한편으로 아직 서구열강에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세력권 분할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이며, 다른 한편으로 조선에 대한 접근성은 지리적으로 유럽보다 미국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버지니아의 케이프헨리(Cape Henry)를 출발(1878.12.7.)한 슈펠트의 순항 일정에서 최초 도착지가 라이베리아였다면, 조선이 그 종착지로 상정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슈펠트의 아프리카·아시아 순항여정에서 그 대미를 장식할 사건은 조미수교였다. 이는 그의 아프리카·아시아 원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한 미국정부에 대한 보답일수도 있었다. “페리가 일본을 개국시켰듯이 조선인들도 개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슈펠트를 격려하였던 미국 상원의 해사위원회 의장이자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사젯트(A. A. Sargent) 뿐만 아니라 국무장관 에바츠 역시 수교의 성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었다. 근거는 첫째, 신미양요(辛未洋擾)를 이끌었던 조선의 집권세력이 물러나 신정부가 등장하였고 둘째,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여 조선을 개항시킨 일본의 주선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¹⁴⁾

미국이 일본의 주선을 통해 조미수교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朝日修好條規를 보완하기 위해 6개월 뒤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부록(1876.8.24.)의 제10조였다. 제10조의 요지는 조선의 연해지방에 표류해오는 외국선원의 본국 송환 사무는 각 항구의 일본국 관리관의 소관으로 규정한 것이었다.¹⁵⁾ 이는 조선과 서구 열강간의 접촉 창구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종래 朝淸간에 존재했던 외국인 처리 업무가 일본에 이관되었음을 의미했다.

14) Frederick C. Drake, The Empire of the Seas, pp.176-181.

15) 高宗實錄 13年 7月 6日.

슈펠트가 해군장관으로부터 출항명령(1878.10.29.)을 받은 뒤, 국무장관 에바츠가 해군장관 톰슨에게 보낸 편지(1878.11.9.)가 추가로 슈펠트에게 전달되었다. 에바츠는 일본과 통상조약 개정(1878.7.25.) 작업을¹⁶⁾ 진행하면서 조선해안의 외국인 표류선원 송환업무가 일본으로 이전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조선이 조일수호조규와 유사한 조약체결 의지가 있는지 슈펠트가 이를 조사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해군장관 톰슨이 타이콘데로가(Ticonderoga)號의 순항 일정에 한반도를 포함시킬 것을 슈펠트에게 훈령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¹⁷⁾

슈펠트가 미국의 경제침체를 타개할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조선을 최종목적지로 삼은 순항여정에 올랐을 때, 조선의 신정부는 개방정책을 둘러싼 딜레마에 봉착해 있었다. 딜레마의 요체는 문서상 조선의 국제적 지위와 현실정치에서의 그것이 相符하지 않는데 있었다. 고종정부는 조일수교를 통하여 自主國의 지위로 국제통상조약 체제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안전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라는 현실과 문서상의 자주독립국가라는 모순은 고종시대사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어(key word)가 되었다.

북경주재 미국공사 사무엘 윌리엄스(S. Williams)가 국무장관 피쉬(Hamilton Fish)에게 올린 보고서(1874.3.30.)에는 1873년 말

16) Treaties and Conventions Concluded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ther Powers Since July 4, 177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89, pp.1351-1352. 1878년의 개정된 미일통상조약에서 미국은 관세와 통상규정 제정에 대한 일본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조약은 일본이 다른 모든 열강과 이와 유사한 협약 혹은 조약 개정을 이룰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다른 모든 조약국가들과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1889)에는 작동되지 못했다.

17) Tyler Dennett, *Americans in Eastern Asia*, pp.455-456.

에 발생한 조선의 정국 변화를 계기로 고종이 새로운 집권세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윌리엄스는 고종이 외국인과 기독교에 호의적인 개방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¹⁸⁾ 윌리엄스의 전망은 최근 북경에 도착한 만주와 한국 접경지역 교구를 관할하는 로마기독교 주교(Monsignor R.)의 전언에 근거하고 있었다. 전언의 요지는 신미양요가 조선 정국에서 기득권 세력인 쇄국론자들이 쇠퇴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신미양요와 쇄국론자들의 쇠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을까? 미군의 공격으로 재앙적 수준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성보 전투(Fort McKee)”가 조선정계에 남긴 교훈은 다음과 같았다. 무기와 전술이 월등한 서구 강대국 앞에서 衛正斥邪를 명분으로 한 수구파의 저항은 무의미함을 입증했다는 것이었다. 유교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위정척사의 쇄국정책이 국가의 안전과 부강의 원천임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미군의 가공할 군사력은 東道西器論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노정시킴으로써 조선정부 지배층의 세대교체가 불가피한 대세가 되도록 만들었다. 윌리엄스가 고종의 친정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없었다고 보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고종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대외개방 정책을 이끌어야 했다.

신정부 등장의 당위를 설명하는 또 다른 논거는 신미양요를 과연 조선의 승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기득권 세력의 이슈(Issue)에 대한 해석권이 도전받고 있음을 의미했다. 윌리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 호” 사건에 따른 미국해군의 탐문항행과 신미양요는 대원군에 의해 조선을 외국의 정복에서 구원한 대승리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18) S. Wells Williams - Hamilton Fish, 30 march 1874. FRUS. 1874, pp.253-254.

대원군 일파가 신미양요 직후 서울과 전국의 도회지에 세운 척화비(斥和碑)가 그 대표적 사례였다.¹⁹⁾

척화비의 용도는 배외정책의 정당성을 포장하여 사실을 왜곡하는데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대원군 일파는 국론을 斥邪와 주화(主和)파로 양분시켜 후자에 賣國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이를 사상통제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함포외교에 굴복하여 입약(立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을 미국의 정복으로부터 구해냈다는 척사론자들의 궤변과 사상통제는 진실을 덮을 수 없었다. 윌리엄스가 조선 지배층 가운데 합리적 일파(the more sensible part of rulers)가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보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²⁰⁾ 따라서 친정에 나선 고종에게 서양은 더 이상 척사파들에 의한 “만들어낸 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부국강병을 위한 탐구의 대상이자 교역의 대상이 되어야했다.

그러나 고종정부가 펼치게 될 대외개방정책은 조선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했다. 안전보장의 방책은 미비했다. 고종정부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굳건히 하는 안전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대화와 국제화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홍장이 조선에 서구열강과의 입약(立約)안을 제시했던 배경에는 국제법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유럽의 소국인 벨기에가 국제법에 근거하여 중립국으로서 독립을 유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²¹⁾ 그렇다면 과연 국제법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증하는 진리일 수 있을까?

그러나 고종정부는 서양공법 체제가 과연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장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심했다. 이는 서양공

19) 高宗實錄, 高宗8年 4月 25日.

20) S. Wells Williams - Hamilton Fish, pp.253-254.

21) 李鴻章-李裕元, 己卯年 7월 9일.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pp.37-41.

법이 일본의 침략성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기도 했다. 이홍장이 고종정부에 서구열강과 立約을 제의했던 논거는 한반도를 一國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열강의 균점(均霑)화였다. 그러나 고종정부는 서양공법이 단지 서구열강에 적합한 국제관계의 규범일 뿐,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국제규범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²²⁾

고종정부는 일본의 호전성을 어떠한 국제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음을 체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한제국이 폐멸될 때까지 해법을 찾지 못했다. 비록 이홍장이 벨기에(Belgium)와 불가리아(Bulgaria)의 사례를 들어 국제법을 통해 약소국이 독립을 유지하는 사례를 제시했음에도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요컨대 국제법 체제는 강제력이 不在하다는 허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들을 제재하고 징벌하는 방식을 찾고 제도화하기까지에는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국제법을 정교하게 다듬어도 이를 위반하는 국가를 제재하지 못한다면, 국제법에 의존하여 독립을 유지하는 방식 또한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고종정부가 서양공법을 통해 일본의 호전성을 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계기는 일본의 유구(琉球) 병탄(1879)이었다. 이홍장은 1879년 7월 9일 조선 原任太師 이유원(李裕元)에 보낸 편지에서 일본의 모략으로 조선이 위태로운 형세가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 서구열강과 수교를 통해 일본을 제압한다는 해법이었다. 일본이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것은 서양이며 서양 통례에는 지금까지 까닭 없이 다른 나라를 빼앗고 멸망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 벨기에와 같은 유럽의 아주 작은

22) 李裕元-李鴻章, 己卯年 11월 12일,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pp.59-63.

나라도 스스로 각국과 조약을 맺은 다음, 아무도 감히 함부로 침략하는 경우가 없었던 사례를 거론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²³⁾ 따라서 이러한 국제법 사례는 강국과 약소국이 서로를 보장해준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조선의 개항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홍장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유원은 과연 서양 공법(公法)이 사납고 교활한 일본이 득세한 동양에 적용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양의 공법이 이 유 없이 다른 나라를 빼앗고 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러시아가 강하지만 터키에서 병력을 철수했다고 했음에도, 일본이 유구(琉球)의 왕을 폐하고 영토를 병탄”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²⁴⁾ 더욱이 “조선이 무고한데 혹시라도 병탄의 毒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 나라가 함께 막아주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고종은 일본의 유구 병탄을 현실정치의 시각에서 해석했다. 국왕은 이 사태의 본질이 청국의 유약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²⁵⁾ 고종이 동지정사(冬至正使) 한경원(韓敬源)에게 “유구국왕(琉球國王)이倭에게 잡혀서 이홍장(李鴻章)과 예부(禮部)에 구원을 청한 일까지 있었으나, 끝내 구원하지 못한 사실을 상세히 탐지”할 것을 지시(1879.12.8.)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²⁶⁾ 벨기에와 덴마크는 작은 나라로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어도 강대국·약소국의 상호균형에 의지하여 왔지만, 琉球王은 수백 년의 오래된 나라인데도 유지되

23)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pp.38-39.

24) 「조선 原任太師 李裕元이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보낸 서신, 1880년 3월 19일,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p.61.

25)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pp.41-42. 이홍장은 미국 전임 대통령 그랜트(Ulysses Simpson Grant)에게 류큐(琉球)문제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류큐가 중국의 屬邦이 된지 이미 100여년이 지났고 관련 문서들도 모두 남아있음에도, 일본이 류큐를 폐멸하면서 중국에 알리지도 않았으며 수많은 거짓말과 증거를 날조하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26) 『承政院日記』 高宗 16年 11月 7日.

지 못하였던 사실은 공법을 통한 대일 견제(牽制)가 역부족임을 반증하는 사례였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시기 약소국의 중립화는 현실적으로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후견하는 강대국이 존재한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했다. 벨기에의 중립은 공법보다는 영국이 이를 강력히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이 중립국이 되고자 한다면, 이를 지탱해줄 수 있는 강대국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홍장의 정책은 중립의 본질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것에 불과했다.

고종은 유구병합 과정에서 청정부가 보여준 무기력과 이홍장의 입약 권고안이 일본의 호전성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에 대한 방비책은 무엇인가?²⁷⁾ 그것이 바로 고종이 미국에 주목한 이유다. 미국은 후발제국주의 국가로서 유럽열강에 의해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원했던 반면, 조선은 쇠락하는 청국을 대신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미수교는 현실적으로 슈펠트와 고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었다. 다만 斥邪운동으로 표출된 조선 내부의 반발²⁸⁾과 조선을 “동삼성의 병풍(東三省屏蔽)”²⁹⁾ 혹은 “왼팔(左臂)”로 간주하고 있던 청국의 간섭이 걸림돌이었다. 척사운동은 고종의 가혹한 탄압

27) 고종의 방아책과 관련하여 1880년 국왕의 명을 받고 장박(張博)이 현지사정을 살피기 위해 연해주에 파견되었다. 이후 연해주에 파견되어 국왕에게 올린 정세보고서가 이어졌는데 1882년 12월 백춘배(白春培)의 ‘아라사채탐사백춘배서계(俄羅斯探探使白春倍書啓)’가 대표적이다. 최덕규, 「朝鮮策略과 고종정부의 북방정책-러시아 레습스키함대의 극동원정을 중심으로」, 『군사』 108호, 2018. pp.272-273.

28) 反外勢的, 反開化的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庚辰, 辛巳年間(1880-1881)의 척사운동, 이른바 辛巳斥邪運動에 대해서도 다음 연구를 참조. 송병기, 「辛巳斥邪運動研究」, 『사학연구』, 제37호, 1983.

29)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p.40.

을 받고 진정되었으나 청국의 간섭을 제어하는 임무는 국왕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 따라서 조미수교에서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임무는 슈펠트의 몫이 되었다.

3. 한반도 4강구도의 형성과 美·淸 접근

1880년 봄의 한반도는 이전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청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슈펠트 제독과 러시아의 레솅스키 제독이 한반도 주변에 모여들으로써 조선을 둘러싼 4강구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개국의 합종연횡(合從連橫)은 일본보다 청국이 조미수교에 적극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 해군상 레솅스키 제독이 23척의 대규모 원정함대를 구성하여 극동에 출현한 것은 청국 신장(新疆) 지역의 일리(伊犁)지방을 둘러싼 러청간의 전쟁위기와 관련이 깊다.³⁰⁾ 함대의 파견은 러청 육상국경이 너무 길기 때문에 러시아 육군을 투입하여 청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레솅스키 제독이 해군상(海相)을 사임(1880.6.30.)하고 동아시아로 급파되어 러시아 원정함대의 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대중국 해상 압박 작전을 지휘하기 위함이었다. 러시아 함대의 對淸 해상압박은 육군과의 공동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경(北京)공약을 위한 상륙작전

30) РГА ВМФ. Ф.410. Оп.2. Д.4071. Л.140-141.伊犁문제로 촉발된 러청전쟁 위기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레솅스키 제독이 지휘하는 연합함대의 극동원정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최덕규, 「朝鮮策略과 고종정부의 북방정책-러시아 레솅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을 중심으로」, 『군사』, 108호, 2018.

이 그 대미를 이룰 것이었다.³¹⁾ 이에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당시 영불연합군에 의한 북경함락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차르정부가 극동원정 함대 사령관 레습스키 제독에게 부여한 최우선의 임무는 함대의 기지이자 거점이 될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정비와 연해주 해안방위였다. 이와 더불어 청국함대를 공격하고 항구를 점령할 수 있는 전권이 위임되었으나, 청국 항구의 봉쇄작전은 중립국(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대중국 교역상의 이해를 고려하여 외국함대 사령관들과 협의를 거친 후 전개하도록 훈령이 내려졌다.³²⁾

레습스키는 일본 및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 훈령을 받고 있었다. 대일 관계와 관련, 러일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對淸 개전 시, 일본의 우호적 중립을 기대하고 있었다. 차르정부가 러청간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립국 일본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훈령을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조선의 경우, 러청 개전시 청국 편을 들어 러시아와 전쟁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하되, 조선의 중립과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훈령했다.³³⁾

그럼에도 차르정부의 훈령(1880.7.17.) 가운데 유사시 조선의 항구를 점령할 수 있는 전권이 레습스키 사령관에게 부여되었던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훈령에 따르면, “러청 양국과 접경한 조선은 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함대의 필요에 따라 조선의 항구들을 이용해야 할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의 사항이 요구되었다. 첫째, 조선의 항구

31)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332-333.

32)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275: Указания, которыми должен руководиться Главный Начальник наших морских сил в Тихом Океане.

33) 위의 문서.

를 점령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조선인들의 증오를 야기할만한 일체의 행동을 회피해야 하며, 둘째, 만약 레쑤스키 제독이 어떤 형태로든 조선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반드시 일본정부의 동의하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조선과 수교하려는 유럽열강과 미국의 뒤를 질투심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³⁴⁾

러청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러시아함대의 극동 원정이 현실화되자 슈펠트 제독의 조미수교 임무도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연동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중립정책을 펼쳤고 러시아함대의 원정작전에 필요한 군수 조달 및 일본의 항구에서 越冬을 허가하는 편의를 제공했다. 이는 일본의 유구(琉球)병합(1879)을 둘러싼 청일간의 관계악화의 산물이기도 했다. 러시아가 청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러일 공조를 강화한 것도 청일간의 대립관계를 이용한 것이었다.

반면 러시아에 맞서 싸울 청국은 지지 세력이 이탈하고 있었다. 가장 큰 타격은 러시아의 적성국이자 청국의 강력한 후견세력이었던 영국이 대러 견제 전선에 불참한 것이었다. 영국의 불참은 1880년 4월 선거를 통해 수립된 자유당 정부인 글래드스톤 (William E. Gladstone) 내각이 러청전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쟁이 종식된다면, 북경을 점령한 러시아에 의해 중국내 영국의 지위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었다.³⁵⁾

34) РГАВМФ. Ф.410. Оп. 2. Д. 4071. Л. 278-279. Указания, которыми должен руководиться Главный Начальник наших морских силъ в Тихом Океане. 5 июля 1880 г.

35) Immanuel Hsu, The Ili Crisis, A Study of Sino-Russian Diplomacy 1871-1881, p.14.

청국은 차르정부가 주력함대의 대부분을 극동에 배치한 정세 속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다. 새로운 세력과 연대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조미수교를 위한 교섭과정에서 일본을 불신하게 된 슈펠트 제독과 러일 공조체제에 맞서기 위해 연대세력을 찾고 있던 북양총독 이홍장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러시아 레썽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은 러일의 공조체제와 청국과 미국이 연대하는 새로운 판짜기를 요구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露日과 美淸간의 양대 세력구도가 형성됨으로써 주변열강의 새로운 합종연횡의 시기가 도래했다. 청국은 한반도가 북경의 안위(安危)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³⁶⁾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부심했다. 따라서 슈펠트 제독이 해군장관에게 보낸 편지(1880.4.26.)에서 “여기서 내가 들은 정보로는 중국의 저명한 정치가가 조선에 외국 열강과의 입약을 권고했는데 아마도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 위협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같은 상황은 “수교를 위한 교섭 개시의 호기일 수 있으나, 성공에 대한 낙관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³⁷⁾

러시아의 레썽스키 함대가 블라디보스톡을 거점으로 북방세력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던 반면, 일본의 나가사키에 정박한 미국의 슈펠트 제독은 태평양 해양제국 건설의 화룡점정을 한반도에서 찍고자했다. 따라서 북방의 대륙세력과 남방의 해양세력의 이해가 교차하고 충돌하게 될 한반도는 점차 운명의 갈림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36) 황준현의 朝鮮策略에 따르면, 청국과 조선의 관계는 “형세가 서로 접하여 신경(神京)을 겨안아 호위하는 것이 마치 왼팔과 같다(抑右形勢昆連, 拱衛神京, 有如左臂)”. [金弘集 著, 金益洙 譯, 『修信使日記, 朝鮮策略黃遵憲私撰』, (제주문화원: 1998), pp.188-204.]

37) NARA, RG 46. Record of The U.S. Senate 46th Congress: Shufeldt to Thomson, April 26, 1880.

미국이 러시아보다 먼저 움직였다. 슈펠트 제독이 고종에게 올린 서신(1880.5.4.)³⁸⁾에서 조미수교가 조선에 가져다줄 가장 큰 혜택으로 안보와 경제적 이득을 꼽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논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조선은 영토 확장을 추구하는 인접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미국은 영토적 야욕이 없는 반면 강력하게 무장된 국가”라는 점 둘째, 미국은 지리적으로 “서구열강 가운데 조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조미수교는 물질적으로 강성해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선을 세계에서 외국 인들을 배척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파악하고 있던 슈펠트는 미국이 침략을 통해 조선해역으로 주권을 확장시키거나 종교 혹은 독립 국가의 정치제도들에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슈펠트는 고종에게 올린 편지의 말미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미국 시민이 해안에 표착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 둘째, 국가간 상업상의 편의 제공이 그것이었다.³⁹⁾ 따라서 그는 조미수교시 “평화, 우정 그리고 우호적인 유대가 앞으로도 영원히 미국과 폐하의 왕국(조선) 사이에서 계속 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러청간의 전쟁위기와 러시아의 한반도항구 점취(占取)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조미수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슈펠트의 편지가 서울로 전달된다면, 고종정부의 근대적 개혁정책에 큰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었다.⁴⁰⁾

38) NARA, RG 46, Letter of Shufeldt to the Korean King, May 4, 1880. 슈펠트는 고종에게 보낸 편지에서 과거의 오해(辛未洋擾 1871)로 인해 단절된 양국간의 우호적인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편지를 쓰며 국왕이 수교를 통해 청국과 일본에게 부여한 상업적 특권을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이제부터 통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했다.

39) Letter of Shufeldt to the Korean King, May 4, 1880.

40) 슈펠트는 이노우에(井上馨) 일본 외무경의 소개장을 받아 1880년 5월 4일 부산에 이르렀다. 부산주재 일본영사 곤도마스케(近藤真鋤)에게 조선 국왕에게 봉정하는 서신을 수교하여 서울에 전달하도록 부탁하였다. 곤도영사는 동래부사 沈東臣을

그러나 고종에게 올린 편지에 대한 회신이 없자 슈펠트의 실망감은 커져갔다. 그는 조미수교에 대한 낙관론이 퇴색하기 시작하자 마지막 남은 선택지를 찾았다. 무력시위였다. 슈펠트가 해군장관에게 보낸 편지(1880.5.29.)에서 강력한 함대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이와 관련 있었다.⁴¹⁾

슈펠트가 일본을 처음으로 개항시킴으로써 획득한 미국의 권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논리를 가다듬은 이유도 조미수교를 위한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찾기 위함이었다. 후발국가인 미국은 유럽열강보다 먼저 조선을 선점해야만 미국의 통상에 유리하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슈펠트는 고종정부가 미국과의 수교 제의를 거절한다면, 무력수단을 동원하여 조미수교를 강제해야 한다고 해군장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⁴²⁾

1880년의 한반도는 對淸전쟁에 대비하여 조선의 항구점령을 계획한 러시아와 남부해안의 전략거점을 무력 점거하려는 미국이 북과 남으로 조여 오는 형국에 처하게 되었다. 슈펠트는 조선정부가 수교를 위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 호 사건의 탐문항행(1868) 과정에서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거문도(Port Hamilton)를 점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계획의 골간은 고종정부가 합리적인 조건에 굴복할 때까지 거문도를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방문했으나 후자는 서신 受諾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미국군함의 조속한 퇴거를 곤도영사에게 부탁했다. 李普珩, 「Shufeldt 제독과 1880년의 朝美交涉」, 『歷史學報』 제15집, 1961. pp.69-70.

41) NARA, RG 46, Record of The U.S. Senate 46th Congress: Letter of Shufeldt to the Thomson, May 29, 1880.

42) Letter of Shufeldt to the Thomson, May 29, 1880. 슈펠트는 조선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초점이 된 것은 러청전쟁 위기로 촉발된 러시아의 한반도 항구 점령 가능성과 청국이 그 대응책으로 조선과 서구 열강간의 입약을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대조선 압박수단의 일환으로 거문도를 점령한다는 슈펠트의 구상은 아시아함대의 지휘권을 자신에게 이양해줄 것을 해군부에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는 거문도의 점령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함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辛未洋擾를 경험했던 미국 해군부의 입장에서 거문도 점령을 위해 아시아함대를 동원한다는 계획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다.

러청전쟁 위기와 관련하여 러시아 군함들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모여드는 상황에서 미국의 거문도 점령은 타 열강에게 조선의 항구점령 명분이 될 수 있었다. 미국의 아시아함대 사령관 토마스 패터슨(Thomas H. Patterson) 해군소장이 슈펠트에게 지휘권 이관을 거절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뒤를 이어 해군장관 톰슨은 슈펠트 제독에게 “조선인들과는 오직 설득의 수단만 사용할 뿐, 적대행위는 피하라”는 훈령을 발송(1880.6.30.)했다.⁴³⁾ 이제 조미수교는 조미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진화하고 있었다.

슈펠트제독과 청국의 북양대신 이홍장과는 만남은 조미수교가 조선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반증했다. 해군장관의 훈령에 따라 재차 고종을 설득하는 편지를 쓴 슈펠트가 한문번역의 자문을 구한 이가 바로 이홍장의 심복 여경(余璦)이었다. 그는 나가사키(長崎)주재 청국 영사로 재직하면서 슈펠트와 이홍장을 연결하는 채널 역할을 맡았다. 1880년 8월 7일 여경이 슈펠트에게 전달한 것은 이홍장의 초청장이었다.⁴⁴⁾ 이홍장이 1880년 여름 슈펠트를 반드시 만나야 했던 이유는 러시아 연합함대가 블라디보스톡 집결을 완료함으로써 對淸 해상압박 작전이 임박했기 때문이었다.

43) Frederick C. Drake, *The Empire of the Seas*, pp.243-244. 슈펠트는 해군장관의 훈령을 접수한 다음날(1880.7.1.) 신중하게 훈령을 따를 것임을 회신했다.

44) Shufeldt to Secretary of the Navy, 13 Aug. 1880, LC. Shufeldt Papers.

슈펠트와 이홍장의 천진(天津) 회동이 열렸을(8.26.) 무렵, 러시아 연합함대 사령관 레습스키 제독은 이미 홍콩에 도착(8.14.)해 있었다.⁴⁵⁾ 러·청海戰에 대한 전망이 천진회동의 주요 의제로 포함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홍장은 임박한 러·청海戰에 대한 슈펠트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했던 반면 슈펠트는 조미수교에 대한 청국의 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했기 때문에 양자간의 합의 가능성이 고조되었다. 이홍장은 슈펠트를 자신이 신뢰하는 해군장교라고 추켜세운 후, “중국연안에서 러청간의 해전이 발발할 경우”, 그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알고자했다. 이홍장은 슈펠트의 의견을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답변을 재촉했다. 슈펠트가 미국해군장관에게 보낸 보고서(1880.8.30.)에 따르면,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결과는 단지 청국에 재앙(disaster)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⁴⁶⁾

슈펠트의 이같은 견해는 조미수교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전개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홍장은 슈펠트와 국제적 시각에서 러청 전쟁위기에 대해 논의한 후, 러청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며 청국은 가능한 전쟁을 회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을 포함한 청조정(淸朝廷)도 화평파(和平派)라고 덧붙인 이홍장은 마침내 고종정부가 조미수교를 위한 교섭에 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⁴⁷⁾

따라서 슈펠트 제독의 조미수교 시도는 러시아 레습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을 계기로 이홍장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45) РГАБМФ. Ф.410. Оп.2. Л.4071. Л.359. 러시아 해군상 페슈로프(А.А.Пешуров)는 레습스키 제독에게 사형선고를 받았던 승후(崇厚)가 8월 5일 석방되었음을 알리면서 정치적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타진하고 있었다.

46) Shufeldt to Secretary of the Navy, 30 Aug. 1880. LC. Shufeldt Papers.; Paullin, The Opening of Korea by commodore Shufeldt, pp.481-482.

47) 위의 문서.

되었다.⁴⁸⁾ “동방에서의 조선과 미국의 이해(Corea and American interests in the East)”라는 제목의 해군장관에게 올린 보고서는 귀국길에 오른 슈펠트가 고베에서 호놀룰루로 가는 여정에서 작성(10.13.)되었다.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미국의 임무와 역할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슈펠트는 미국의 미래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통상확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미국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유럽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대서양보다는 태평양을 통상권역으로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하며, 둘째, 이주와 통상의 물결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미국은 향후 50년 이내에 유럽보다 아시아에서 더 큰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슈펠트의 “아시아중시론”에서 조미수교가 조선에게 안보상의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고종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선은 미국과 통상조약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미수교의 당위성을 이해하게 될 것으로 확신했다. 왜냐하면 슈펠트는 조선이 장차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쟁에서 “전장(Battle ground)”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⁴⁹⁾

이 보고서에서 슈펠트는 1880년 조선에게 사활적 이해가 걸린 조미수교가 성사되지 못한 원인을 조선 보다는 일본에게서 찾고 있었다. 조선 측의 수교거부 의사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과연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었다. 슈펠트의 대일 불신의 원인은 일본이 조선을 개항시킨 목적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대외통상 독점이 그 목적이며 무방비 상태의 이웃국

48) Shufeldt to Secretary of the Navy, 30 Aug. 1880, LC, Shufeldt Papers.

49) "Corea and American Interests in the East", 13 oct. 1880, LC, Shufeldt Papers.

가(朝鮮)를 가혹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을 외국인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했다는 것이었다. 한반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본은 조선에서 치외법권을 누리는 동시에 조선인들을 “철채찍(iron rod)”으로 지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⁵⁰⁾ 따라서 향후 슈펠트의 조미수교를 위한 교섭과정에서 일본이 철저히 배제된 것도 이같은 그의 일본관에서 비롯되었다.

슈펠트는 하와이를 거쳐 1880년 11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1880년 미국해군장관이 의회에 보고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슈펠트 제독이 지휘한 ‘타이콘데로가’號는 약 2년 동안 라이베리아, 걸프 만 등을 거쳐 홍콩, 조선에 이르기까지 36,000마일을 항행했다. 해군장관은 이를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금맥을 미국에게 열어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에 톰슨 제독은 대서양 보다 유럽열강과 경쟁에서 지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태평양에서 통상의 장점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슈펠트의 주장을 반복했다. 심지어 조선에서도 미국의 공산품에 대한 선호도가 영국의 그것보다 높지만, 영국은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일본을 통해 자국 상품의 조선 수출 길을 찾아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톰슨 해군장관은 만일 조미수교가 이루어진다면 수익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⁵¹⁾

50) 위의 문서.

51)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30 Nov. 1880. 46th Congress 3 session, pp.27-29.

4. 슈펠트-이홍장의 조미수교 교섭과 “중국인 배척법”

슈펠트와 이홍장의 天津 회동 결과를 반영한 황준헌의 “朝鮮策略”은 고종정부가 조미수교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종이 러시아 레썬스키 함대의 극동내도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에 파견(1880.8.11.)했던 김홍집이 귀국 후, 국왕에게 올린 “朝鮮策略”은 사실상 근대 조선의 안전보장책이었다. 고종은 3중구조의 다층적 안보책략(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가운데 미국과의 수교 즉 聯美策을 가장 실효적인 防俄策으로 보았다.

이에 고종이 “미국은 원수 나라가 아니라(米利堅鳥可謂讎國?)”고 정의함으로써 조미수교 준비를 위한 논리들이 갖춰지게 되었다. 하나는 신미양요(1871)와 제너럴셔먼호(1867) 사건과 같은 과거사 정리를 위한 해원(解冤)의 논리였고 다른 하나는 척사파(斥邪派)를 설득하여 미국을 포함한 서구열강을 조선의 대외정책으로 포섭할 개방(開放)의 논리였다.

해원의 논리와 관련하여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은 신미양요와 제너럴셔먼호 사건은 미국보다는 조선 측에서 사단(事端)을 제공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과는 본래 恩怨관계가 없었음에도 발생한 강화(江華)와 평양(平壤)에서의 싸움은 당초 조선의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이들을 끌어들었기 때문인바, 우리나라 스스로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영의정은 “서양 사람이 중국에 들어와 사는데도 중원 사람들이 모두 邪學을 한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척사파를 반박함으로써 미국을 수용하기 위한 논거를 갖출 수 있었다.⁵²⁾ 따라서 1880년 11월 고종이 역관 李容肅을 청국으로 파견한 것은 대미수교 방침을 통고하기 위함이었다. 동시

52)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9月 8日.

에 국왕은 탁정식(卓挺植)을 주일청국공관으로 보내 “국가안보의 좋은 계책(保國良策)”인 연미책을 신속히 성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⁵³⁾

그럼에도 청정부는 조미수교를 성사시킬 방식을 두고 혼선에 빠져있었다. 조선에 대한 일본 혹은 러시아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열강과의 입약을 권고해왔음에도 수교를 통해 청국의 원팔과 같은 조선이 자주독립국으로 분리되는 상황은 청국의 위신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주일청국공사 何如璋이 건의한 『主待朝鮮外交議』는 국익과 위신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제안이었지만 모순적이었다. 종래의 대조선 불간섭정책과 “속방조관”은 양립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홍장은 “속방조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는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1880.12.23.)에서 조미조약에 조선은 “중국의 명을 받들어 結約”한다고 聲明하도록 해야 한다는 何如璋의 건의에 대해 다음의 이유로 거부의를 밝혔다. 첫째, 조약에 속국의 명문화는 조선국왕 스스로 상주하여 간청해야 가능하다. 둘째, 조선이 일본과 조약체결 당시 조약문에 중국정부의 명을 받든다는 문구가 없었다. 셋째, 조선이 서양국가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중국정부의 명을 받들어야한다(必奉我政府之命)”라고 한다면, 조선은 따르겠지만 서양국가는 기꺼이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⁵⁴⁾ 따라서 1880년 12월의 이홍장은 조미수교에 기존의 불간섭(不干涉)정책을 유지하고자 했다.⁵⁵⁾

53) 국역『清季中日韓關係史料』 3, pp.115-122. 「朝鮮密探委員卓挺植來稟」

54) 국역『清季中日韓關係史料』 3, pp.109-114. 李鴻章-總理衙門(1880.12.23.)

55) 조선이 청국의 속방이 아니고 독립국이라는 사실은 청 당국이 미국에 이미 두 차례 인정한바 있었다. 청국은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 사건(1866)의 배상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조요구 뿐만아니라 신미양요(1871)와 관련 주청미국 공사 로우(F.F.Low)가 조선원정 이유서를 총리아문을 통해 조선에 전달하고자 하

이홍장의 이같은 입장은伊犁문제로 야기된 러청전쟁 위기가 해소됨으로써 러시아의 조선침략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러청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급파(1880.7.23.)된 청측 협상대표 증기택(曾紀澤)이伊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정의 최종안을 조율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1881년 2월 러청간의 서부국경을 획정하고 국경통상을 규정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협정을 체결한 청정부는伊犁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러시아와의 전쟁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⁵⁶⁾

그렇다면 1880년 겨울 “속방조관”에 반대했던 이홍장이 1882년 봄 슈펠트와 조미수교를 위한 교섭에 착수했을 때, 이전의 입장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는 “속방조관”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교협상의 핵심쟁점으로 삼았을까? 이는 “러시아공포증(Russophobia)”의 재부상과 관련 있었다. 러청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1881.2.24.)은伊犁위기만을 해소했을 뿐, 러시아는 레습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동아시아진출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恐露症”이 재등장함으로써 이홍장은 청의 안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조선의 보호에 미국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러시아공포증”의 실체는 차르의 칙령에 따라 러시아의 새로운 해군전략 수립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특별회의(1881.9.3.)와 관련이 깊다. 회의에서는 강력한 해군 건설의지를

였을 때, 총리아문은 조선에 대한 불간섭정책을 표명한바 있었다. 조선이 비록 청의 조공국이지만 사실상 독립국이므로 청이 관여할 수 없다는 對朝鮮 不干涉政策이 그 명분이었다. 金源模, 「슈펠트·李鴻章의 朝鮮開港交涉始末(1882)」, 『國史館論叢』第44輯, 1993, pp.146-147.

56) 최덕규, 「朝鮮策略과 고종정부의 북방정책-러시아 레습스키함대의 극동원정을 중심으로」, 2018, pp.285-294.

보인 알렉산드르 III세의 구상에 따라 黑海함대의 부활과 발트함대의 증강 그리고 태평양에서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레습스키 제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채 제출한 정책건의서(1881.9.4.)에서 강조된 것이 바로 ‘중국위협론’이었다. 건의서에 따르면, 일본은 재정문제와 정치 불안으로 함대증강계획을 뒤로 미루고 있는 반면 청국은 모든 정파가 유럽인에 대한 증오와 편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독자적 행보를 위한 군비지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1881년 11월부터 특별회의에서 결의된 해군전략과 레습스키 제독의 정책건의서에 부합하는 세부실천 계획이 러시아 해군성에서 수립되었다.

러시아 해군력 강화를 위한 건함20개년계획(1881~1901)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요새화 계획은 차르정부의 국책과제가 되었다. 유럽의 최신 군함건조 과정을 견학하여 이를 건함사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임무는 차기 해군상 후보였던 쉘스타코프(И. А. Шестаков) 제독이 맡았다(1881.11.16.).⁵⁷⁾ 특히 동아시아에서 유럽열강의 무역통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태평양의 유일한 항구로서 전시에 러시아 함대기지 역할을 하게 될 블라디보스토크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임에 틀림없었다. 따라서 1881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논의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시베리아를 통해 유럽러시아로 연결할 교통로 개설 문제였다.⁵⁸⁾

57) 쉘스타코프 제독(1820-1888)은 러시아 해군성 건함국 기술분과위원장의 자격(1886. 11. 16. - 1882. 1. 11.)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조선소를 방문한 후, 1882년 해군상에 임명되었다. 그는 1886년 극동시찰 과정에서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거문도에 기항하여 현지상황을 살폈고 영흥만을 비롯한 한반도 해안을 탐사한 후, 한반도에서의 부동항 획득문제에 대한 상주서를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다음 논문 참조. 최덕규, 「러시아 해군상 쉘스타코프와 거문도사건(1885-1887)」,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37호, 2015.

58) P.B.Кондратенко, Мор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80-х Годов XIX века, СПб 2006, pp.58; 75-78.

차르정부의 동아시아진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자, 이홍장이 재차 주목한 것이 聯美策이었다. 그는 조미수교를 위해 전권을 위임 받은 슈펠트로부터 조선의 보호를 위한 문서상의 약속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속방조관”이었다. 1882년 2월 15일 그는 황준헌이 작성한 조미조약 초안 제1조의 “중국정부의 명을 받들어”라는 어구에 金允植이 난색을 표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미국까지 중국의 명을 받들어야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우므로 슈펠트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윤식이 지적하였음에도 결국 그를 강압하여 “속방조관”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⁵⁹⁾ 요컨대 이홍장에게 “속방조관”은 조미수교의 본령이었다.

반면 슈펠트가 조미수교를 성사시키기 위해 준비한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1881년 6월 上海에 도착했음에도 이후 조선측 인사를 소개받은 적이 없었다. 그가 조미수교를 위한 교섭(1882.3.15.)에 착수할 때까지 천진에 머물렀던 시기는 한편으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조선정책의 原型을 만드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 원형이란 청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조미수교를 성사시키는 전략이었다. 슈펠트가 꺼내든 가공할 위력의 대청 압박 카드는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의 제정이었다. 이 법은 미국 의회 역사상 특정 국가 노동자들의 미국 이민을 광범위하게 제한한 최초의 법안이 되었다. 1882년 3월 23일 미국 의회에 제출된 중국인 배척법 1차 법안은 향후 20년간 중국인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를 배척하는 동시에 중국인들이 미국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권리 제한을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비록 이 법안은 아서(Chester A. Arthur)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미국의회는

59) 김원모, 「슈펠트-李鴻章의 朝鮮開港 交渉始末(1882)」, 『국사관논총』(44), 1993. p.136.

이를 보완하여 재상정하면서 입법화 과정에 들어섰다.

미국하원은 1882년 4월 17일 새롭게 보완한 중국인 배척법안(New Chinese Exclusion bill)을 통과(찬성 167: 반대 66)시켰다.⁶⁰⁾ 수정법안의 요지는 중국인 노동자의 중국 입국 금지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시키고,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출국 시, 미국에 재입국을 원한다면 왕복증명서를 받도록 했고, 중국인의 미국 국적 취득을 불허하는데 있었다.⁶¹⁾ 제1차 법안이 거부된바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중국인 배척법 역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⁶²⁾ 결국 아서 대통령은 마침내 5월 6일 이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당초 10년 기한의 한시법이었으나 이후 갱신되어 1965년까지 약 80여 년 간 중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전면 금지시키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⁶³⁾

이러한 인종차별적이고 중국혐오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중국인 배척법이 미국의회를 통과하는데 기여했던 인물이 슈펠트 제독의 지인이자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 사젠트였다.⁶⁴⁾ 슈펠트와

60) Patrick Fisher & Shane Fisher, Congressional passage of the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Immigrants & Minorities*, 20:2,(2001) pp.68-69.

61) H.Res. 683 (112th): Expressing the regre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or the passage of laws that adversely affected the Chinese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Chinese Exclusion Act.(Jun. 18, 2012)

62) Helena Weekly Herald, May 4, 1882. "The Chinese Bill. Probable Adoption by the House of the Senate Amendments."

63) Sang Hea Kil, "Fearing yellow, imagining white: media analysis of the Chinese excursion Act of 1882", *Social Identities*, Vol. 18, No. 6, 2012, pp. 663-664. 이 법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됨으로써 1943년에 폐지되었으나, 법적으로 인종적 제한이 철폐되는 1965년까지 중국인 이주는 재개되지 못했다.

64) 슈펠트와 사젠트의 공조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 바로 미국 서부에서 확산되고 있던 반중 정서였다. 반중국 캠페인이 미국에서 본격화되었던 계기는 중국인 저임 노동자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짐으로써 발생한 1877년 샌프란시스코 폭동사태였다. 1877년 7월 23일 저녁 미국 노동당 샌프란시스코 중앙위원회(The San Francisco central committee of Workingmen's Party of the US)

이홍장의 조미수교를 위한 협상이 천진에서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에서는 중국인 노동자를 특정한 배척법이 통과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슈펠트의 협상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사젠트 의원이 중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문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미국노동계의 反中정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는 중국인의 이주를 "침략"으로 표현하며 언론과 법조계를 제외한 전 영역에 중국인들이 침략하였고(The Chinese invaded) 그 결과 "미국 노동자들은 기아선상을 해매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 내 중국혐오 정서는 188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공화 양당 모두 득표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더욱 확산되어 갔다.⁶⁵⁾

이러한 반중정서가 “중국인 배척법”으로 법제화되는 주요 계기가 바로 슈펠트가 사젠트에게 보낸 공개편지(1882.1.1.)였다. 이 편지는 슈펠트가 6개월간 천진에 머물면서 중국인을 관찰한 기록으로서 미국의 중국이주민 정책 수립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슈펠트가 "공개 편지(open letter)"라고 지칭한 까닭은 언론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슈펠트의 편지는 사젠트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불레틴(San Francisco Bulletin)"에 공개되었고, 이후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가 슈펠트의 편지를 "중국인을 위한 중국(China for Chinese)"라는 제하로 기사화(1882.3.30.)⁶⁶⁾함으로써 미국 내 중국혐오 정서에 방아쇠를 당겼다.

가 시정 맞은편 공터에서 철도노동자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군중집회를 개최했을 당시, “안티쿨리클럽(Anti-Coolie Club)” 회원들이 인근의 차이나타운을 습격하여 샌프란시스코는 3일간 방화와 약탈의 무질서 상태에 있었다. Patrick Fisher & Shane Fisher, Congressional passage of the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pp.58-59.

65) Patrick Fisher & Shane Fisher, Congressional passage of the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pp.62-63.

66) The New York Times, March 30, 1882, "China for Chinese. Results of

슈펠트는 편지의 도입부에서 중국인들의 모든 행동은 기만과 위선이었음을 밝히고 있었다. 이는 그가 조미수교 준비를 위해 이홍장을 비롯한 중국의 지배층과 교섭을 통해 체득한 결과였다. 그는 중국인의 이같은 행동은 그들의 세계관이었던 화이관(華夷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화이관의 시각에서 청국은 문명인이고 서양은 오랑캐였기 때문이었다. 슈펠트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근대 문명의 담지자인 서구인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인들에게는 동정과 자비보다는 무력으로 대해야만 하고 무자비가 정의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일 경우,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려는 허약함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슈펠트는 중국인들이 자존심에 집착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대할 경우, 이를 기화로 외국인들을 경멸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파악했다.

슈펠트는 편지에서 미청관계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적대적 정치체제를 꼽았다. 그는 중국 관리들이 미국식 자유주의가 청제국에 도입된다면, 이는 천자(Heaven-born)시대의 종언뿐만 아니라 전체 체제에서 배를 불렀던 관료제도의 종결임을 잘 알고 있다고 보았다. 슈펠트는 미국에 유학중인 중국학생들이 중도에 소환되어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의 화신으로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청국 관료들의 반미성향의 결과로 파악했다. 결국 슈펠트에게 청국은 미국의 미래와 운명처럼 연관되어 있지만, 동시에 매우 적대적인 이중적 의미를 지닌 나라였다.⁶⁷⁾

슈펠트의 이 같은 중국관은 미국인과 중국인의 차이점을 부각시

Commodore Shufeldt's Observations, Deceitful Bearing toward All Foreigners - Character of Li Hung Chang and His Aims - Why Chinese Immigration is not Desirable".

67) The New York Times, March 30, 1882.

킴으로써 양자를 구분하는 논거가 되었다. 이는 백인이 善과 正義라면 그 대척점에 있는 중국인은 사악(evil)과 不義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기독교 중심의 백인사회에서 사악과 불의한 존재는 공존할 수 없는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슈펠트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무제한적인 미국 이주와 관련하여, 미국의 노동력 수요에 공급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사젠트에게 제안했던 것이다.⁶⁸⁾

슈펠트의 편지가 사젠트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블레틴”에 게재된 시기는 1882년 3월 20일 이었다. 이는 슈펠트와 이홍장이 조미수호 조약 체결을 위한 첫 교섭에 착수(3.25.)하기 5일 전이었다. 천진 北洋衙門에서 열린 회담에서 조약체결 협상을 위임한 고종의 封書(1882.1.14.)를 소지한 이홍장이 조선의 전권으로 나섬에 따라⁶⁹⁾ 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싼 美淸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견되었다.

슈펠트와 이홍장의 협상의 쟁점은 조선의 지위를 결정짓는 문제였다. 회담에 임하면서 이홍장의 관심사는 조약문에 이른바 “속방조관(屬邦條款)”을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이홍장은 조미조약을 미국과 이후 서구열강이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합법적인 문서로 삼고자 했다. 이는 조선을 독점하기 위해 조미수교 주선에 주저했던 일본의 입장과 유사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미수교 과정은 조선의 독점을 위한 청일간의 경쟁구도를 재확인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했다.

68) 슈펠트가 건의한 중국인 이주 제한법은 그 범위를 캘리포니아에 국한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가 중국인 노동자의 미국 이주 전면제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사례가 샌드위치 섬(Sandwich Island)이었다. 이곳은 미국의 육군과 해군에 사회적 이해가 걸린 중요한 곳이었음에도 이 섬의 중국인 비중이 적정선을 넘고 있었다.(The New York Times, March 30, 1882.)

69) 송병기, 「김윤식(金允植) 이홍장(李鴻章)의 보정(保定) 천진회담(天津會談) (상) - 조미조약(朝美條約) 체결(1882)을 위한 조청교섭」, 『동방학지』 44권, 1984, pp.187-189.

반면 슈펠트가 주청미국공사 홀콧과 함께 작성한 조약 초안에는 “속방조관”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이홍장의 처신에 대해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는 청국의 反外勢적 입장이 청의 군사적 약세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슈펠트는 조약 제1조에 “속방조관”을 포함시키자는 이홍장의 제안을 일축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슈펠트가 조약 제1조에 “속방조관”의 삽입 불가 입장을 견지한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째, “속방조관”은 조선과 미국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며 둘째, 조선을 자주국으로 이미 인정했던 조일수호조규라는 선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홍장이 “속방조관”은 고종의 의사를 물어 조선에서 삽입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음에도 슈펠트는 이를 거부했다. “속방조관” 수용 불가가 그의 지론이었다.⁷⁰⁾

슈펠트가 “속방조관”을 용납하지 않은 이유는 청국이 조선의 종주국임을 인정할 경우, 조선은 美淸의 공동보호국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는 양국간의 정치적 동맹의 단초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더욱이 동맹은 미국내의 반중정서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슈펠트에게 부여된 권한 밖의 문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조약문의 최종안에는 “속방조관”이 생략되었다. “恐露症”이 재림한 상황에서 슈펠트와 이홍장의 교섭은 전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었다.

슈펠트가 之罘에서 제물포로 출발(1882.5.8.)한 것은 조미조약 조인식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이날은 워싱턴에서 아서 대통령이 중국인 노동자의 미국 입국을 10년간 금지하는 “중국인 배척법”에 서명(5.6.)한 직후였다. 슈펠트가 조선으로 출발한 다음날(5.9.) 上海에서 발행되는 “노스 차이나 데일리뉴스(North China Daily

70) Frederick Drake, The Empire of the Seas, pp.289-295.

News)”가 사젠트에게 보낸 슈펠트의 편지를 공개한 것은 조미수교와 중국인배척법의 상관성을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슈펠트는 미국의 反淸정서를 배경으로 청정부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는 속국에서 독립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조선이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이 되어야지만, 조선의 시장에서 모든 국가들의 기회균등 원칙이 보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슈펠트는 조미조약 체결(5.22.) 후,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1882.7.29.). 미국에서는 조미수교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前 상원의원 사젠트에게 보낸 공개편지 때문에 그가 소환되었으며, 이 편지는 의회에 상정된 “중국인배척법” 통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편지는 편향되지 않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경우, “존경할만한 문서”이나 동시에 외국에서 準외교관의 임무를 수행했던 미국정부 장교의 편지로서는 “끔찍할 만큼 경솔하고 무분별”했다는 편집자의 평가를 덧붙였다.⁷¹⁾

반면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슈펠트의 편지에 대해 다른 평가를 했다. 슈펠트를 “賢人(great sagacity)”으로 칭송한 전직 해군장관 톰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1882.7.18.)했다. 톰슨은 슈펠트가 해군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던 사젠트가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⁷²⁾ 결국 슈펠트는 조미조약에서 “속방조관”을 삭제하기 위해 청정부를 압박했던 책략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받았으나, 곧 해군 자문위원단 단장에 임명됨(1882.8.5.)으로써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71) New York Times, July 4 & 6, 1882.

72) Frederick Drake, The Empire of the Seas, pp.307.

자문위원단은 “백색함대(White Squadron)”로 명명된 미국 최초의 철제 함대 건조를 심의, 감독하는 기구였다. 그 수장으로 해군 확장론자였던 슈펠트가 적격이었다. 그는 아프리카·아시아 순항과 청국 체류를 통하여 유럽열강의 강력한 해군력을 경험했고 성장하는 일본해군에 의해 극동에서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미국 해군의 목제 군함시대가 종식된 것도 그의 강력한 해군건설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조미수교 직후 슈펠트는 목선시대에 머물고 있었던 미국해군을 철선시대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슈펠트가 주력했던 신예해군(A New Navy)의 건설은 1883년 3월 3일 미국의회가 철제군함 건조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는 미국을 태평양의 해양제국으로 부상시키고자 했던 슈펠트의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는 첫걸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2개월 뒤 초대 조선주재 미국공사 푸트(Luicius Foot)가 서울에 도착(1883.5.17.)함으로써 조선정부와 미국상원의 비준을 받은 조미조약의 비준서 교환(5.19.)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슈펠트가 미국의 아시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의미를 부여했던 조선에서의 문호 개방(Open door)이 성사된 것이었다.

5. 결론

동아시아 국제관계(1880~1882)의 시각에서 살펴본 미국 해군 제독 슈펠트와 조미수교에 대한 결론은 1) 조미수교의 평가와 2) 그 영향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의 특징은 조약 제1조에 "거중조정(good offices)"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치(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相助)하여 잘 조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하기로 명시함으로써 조선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무가 명문화되었다. 이는 페리제독이 일본을 개항시킨 美日和親條約(1854)에는 없는 조문이었다. 이 조문에 따라 미국은 조선이 불공정한 모멸을 당할 경우相助의 조약 의무를 지게 될 것이었다.

주청미국공사 영(J.R.Young)은 국무장관에게 슈펠트의 활동에 대해 보고(1882.5.1.)하면서 조미수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조선과의 통상 조약은 값진 것이다. 아울러 '거중조정(good offices)'은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면, 청국에 의해 '독립국' 혹은 속국의 위치에 놓이게 될, 조선을 보호하는데 쓰일 것이다."⁷³⁾

슈펠트 제독이 성사시킨 조미수교는 미일수교(1854)와 필리핀 점령(1898)과 더불어 미국이 태평양의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미국 해군사에서 슈펠트가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M.C.Perry)제독과 필리핀 점령을 적극 지지한 마한(Alfred T. Mahan)제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국가의 번영이 해외통상에 달려있다는 신념에 따라 해군의 임무는 연안 방위보다 대외무역 보호와 확장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보았다.⁷⁴⁾ 조미수교가 외교 관료가 아닌 미국정부의

73) 『近代韓國外交文書』 제4권, pp.273-275. J.R.Young(1882.5.1.)-T.F. Frelinghuysen.

전권을 부여받은 해군 제독에 의해 성사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미국과 아시아 국가와의 통상 확대는 미국 해군의 동반성장과 궤를 같이하게 되었다.

슈펠트는 조미수교를 위한 교섭에서 무력과 압박의 방식으로 비문명인들을 다뤄야한다는 그의 경험칙에 의존하였다. 인종주의적 문명론자이며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슈펠트에게 이홍장은 기독교적 정의에 대립되는 불의와 사악의 전형이었고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중국인들은 미국에서 배척되어야 할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는 조미조약 체결과정과 “중국인 배척법”의 미국의회 통과과정이 겹쳐지는 이유이기도 했다.

조미수교 이후 조선은 속국에서 독립국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겪게 되었다. 국제공법의 관점에서 볼 경우 조선은 독립국이었지만, 중국적 세계질서의 시각에서 볼 경우 속국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근대 조선의 국제적 지위는 조선에 대한 美·淸간의 패권경쟁과 연동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의 지위를 둘러싼 미청 경쟁은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면서 청국에게 불리하게 마무리되었다. 미국은 청일전쟁(1894~1895)을 계기로 조선의 속국 지위를 부정했던 일본을 지지하는 동아시아 정책을 본격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일본군이 평양전투 이후 압록강을 건너 청국으로 진격하자, 청정부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1894.10.31.)했음에도, 미국이 이를 거절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駐淸미국공사 덴비(Charles Denby)는 청일전쟁이 확대되는 과정에 개입하기보다 청정부가 붕괴직전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중재

74) United States Congressional Serial Set, Board of Assistants for the Navy, Navy Department, March 27, 1878. pp.32-34.

에 뛰어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미국무장관 (W.Q.Gresham)에게 보고했다. 이는 중국이 무력의 이외의 방식으로는 결코 세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주청공사 덴비의 신념이기도 했다.⁷⁵⁾ 이는 상술한 슈펠트의 경험을 계승한 측면이 강했다.

덴비는 청국의 대조선 종주권 유지정책을 개전의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는 청정부가 일본에 항복하기 전까지는 조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청정부의 경친왕(慶親王) 혁광(奕劻)이 미국의 중재를 의뢰하기 위해 덴비를 방문했을 때, 후자가 요구한 것이 바로 조선의 완전한 독립에 대한 서면보장(Put in Writing)이었다. 요컨대 청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 포기를 선언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 미국이 청일전쟁에서 거중조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었다.⁷⁶⁾

결국 슈펠트가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로 간주하였던 조선은 조미 조약을 통하여 모든 국가에 기회 균등한 통상시장으로 변모해갔다. 이는 조선의 사례가 청일전쟁 이후 청국에도 적용 가능한 원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1899년 9월 6일, 미국무장관 존 헤이(John Hay)가 주요 강대국(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 각서를 보내, 중국의 영토보전과 상공업상의 기회균등을 요구한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 역시 슈펠트의 조미수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75) "Mr. Denby to Mr. Gresham, October 23, 1894," in American Diplomatic and Public Paper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eries III, The Sino-Japanese War to the Russo-Japanese War 1894-1905, vol. 2, The Sino-Japanese War I, pp.254-259.

76) "Mr. Denby to Mr. Gresham, October 31, 1894," in American Diplomatic and Public Papers, pp.279-282.

(원고투고일 : 2020. 3. 31, 심사수정일 : 2020. 5. 13, 게재확정일 : 2020. 5. 18.)

주제어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슈펠트 제독, 조선 국왕 고종, 러시아
레슈스키 함대, 러청전쟁위기.



〈참고문헌〉

1. 자료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국역『清季中日韓關係史料』3, 동북아역사재단 2016.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近代韓國外交文書』 제4권, 동북아역사재단, 2012.

金弘集 著, 金益洙 역, 『修信使日記, 朝鮮策略黃遵憲私撰』, 제주문화원, 1998.

Library of Congress, Shufeldt Papers.

NARA, RG 46, Record of The U.S. Senate 46th Congress.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FRUS). 1870; 1874,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РГАВМФ) Ф. 410 Ф.536

2. 논문 및 저서

김원모, 「슈펠트·李鴻章의 朝鮮開港 交渉始末(1882)」, 『국사관논총』 (44), 1993.

김용구, 『약탈제국주의와 한반도: 세계외교사 흐름 속의 병인 신미양요』, 도서출판 원, 2013. UCI : G701:B-00109150635

박일근, 「韓美修好條約에서 본 美·中の 對韓外交政策 - 高宗의 秘密外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11, 1977.

송병기, 「김윤식(金允植) 이홍장(李鴻章)의 보정(保定) 천진회담(天津會談)(상, 하) - 조미조약(朝美條約) 체결(1882)을 위한 조청교섭」, 『동방학지』 44-45권, 1984.

李普珩, 「Shufeldt 제독과 1880년의 朝美交渉」, 『歷史學報』 제15집, 1961.

정민정, 이근욱, 「미국과 영국의 대조선 수호조약 교섭 과정 연구:

외교문서에 기초하여」, 『동아연구』 61권, 2011.

DOI : 10.33334/sieas.2011.30.2.103

Dennett Tyler, *Americans in Eastern Asia*, New York, 1922.

Drake, Frederick C. *The Empire of the Seas: A Biography of Rear Admiral Robert Wilson Shufeldt, US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4.

Hsu Immanuel, *The Ili Crisis, A Study of Sino-Russian Diplomacy 1871-1881*, Oxford Univerity Press, 1965.

Patrick Fisher & Shane Fisher, "Congressional passage of the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Immigrants & Minorities*, 20:2,(2001)

Paullin, C.Oscar. "The Opening of Korea by commodore Shufeld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XXV. No. 3. 1910.

Robert Seager II, "Ten Years Before Mahan: The Unofficial Case for the New Navy, 1880-1890", *The Mississippi Valley Historical Review*, Vol. 40. No. 3, 1953.

Sang Hea Kil, "Fearing yellow, imagining white: media analysis of the Chinese excursion Act of 1882", *Social Identities*, Vol. 18, No. 6, 2012,

Кондратенко Р.В. *Мор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80-х Годов XIX века*, СПб. 2006,

Воскресенский А.Д.,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г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Договора 1881 года*, М., 1995.

(Abstract)

U.S. Navy Commodore Shufeldt and the Establishing Joseon(former Korea)-U.S. diplomatic Relations -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Choi, Deok-kyoo

The key point of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Joseon-United States Treaty (1882) was whether or not to insert the article for dependency of Korea on Qing dynasty. Commodore Shufeldt, the U.S. representative granted full authority from the US government, thwarted the attempt of the China to specify it for the reason of hindering the signing of a treaty on terms of equality and courtesy between Joseon and the United States. Thus, the treaty became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for Korea in it's history to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country politically, and open market where would not allow monopolies and privileges by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to certain countries economically. As a result, Shufeldt was able to put into practice his belief that America's prosperity depended on trade with Asian countries.

Li Hung-chang's idea of "dependency article" was to recruit the United States as a country that jointly protects Korea along with the Qing Dynasty. In the critical situations with Ryukyu annexation (1879) by Japan and the appearance of russian fleet led by admiral Lesovsky into the China sea, Li Hung-chang formed a scheme to cooperate with the U.S. in defense against Russia and Japan which led to the Russo-Chinese War crisis. Thus, if Shufeldt agreed to the "dependency article," Li wanted to seek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S. based on the traditional Korea-Chinese relationship.

In response, Establishing of Joseon(Korea)-U.S. diplomatic relations presented a broad spectrum of Korea's future status. While Korea, being

on terms of equality with the U.S., wanted to move away from its traditional dependency status on the Qing Dynasty and become an independent country, the China tried to strengthen its tributary relations with Korea. As a result, Korea's international status became a pendulum movement between independent and subordinate countries, linking it to the hegemonic rivalry between U.S. and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Korea-United States Treaty of 1882, Commodore Shufeldt, Korean King Gojong, Russian Fleet of Admiral Lesovskii, Russo-Chinese War Crisi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215-229
<https://doi.org/10.29212/mh.2020..115.21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중국과 소련의 협력과 갈등

정형아 저, 『동아시아 전후 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김지훈*

1. 변동하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

현재 동아시아를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는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강화된 냉전체제는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무너졌다. 중국은 개혁 개방 40여 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 속에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제 사회의 위상 강화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먹고 자는 등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 어느 정도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샤오강(小康)사회를 실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꿈”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모든 면에서 세계 1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1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개최된 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주석은 지난 70년간 중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모든 당과 군, 인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시진핑주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 평화 통일과 중국의 위대한 부흥,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등의 연설을 하였다. 이 날 열병식에는 중국인민해방군 1만 5,000명의 장병과 군용기 160여 대, 군사 장비 580대가 동원되었다.

중국은 열병식에서 DF-100 육상 공격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DF-17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JL-2 취랑2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DF-41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 세계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J-20 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 폭격기 등을 공개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의 첨단 무기를 과시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3일 중국인민항일전쟁과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박근혜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외국 인사가 참석했지만 201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 기념식에는 해외의 국가원수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은 덩샤오핑 시대에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외교적으로는 도광양晦(韜光養晦)로 미중 우호 관계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 개방 40여 년을 거치면서 대내외 정책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8년부터 민간기업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물러나고 국유기업이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 속에서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군사적으로도 인민해방군은 과거의 방어를 위주로 한 국방전략에서 적극적인 방어 군사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의 성장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대중국 무역 적자 문제와 화웨이 명완저우 사건 등을 통해서 중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미중무역 분쟁은 2019년 말 1단계 합의를 하였으나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의 확산, 홍콩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미중관계는 과거의 협력에서 대립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무역과 경제, 과학기술에서 금융과 군사, 이념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관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형아선생님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은 현재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국제질서가 동아시아에서 구축되는 과정을 중소갈등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는 타이완 국사관과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당안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 아카이브 등에 소장되어 있는 1차 사료들을 이용하여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한국전쟁시기까지 중국과 소련, 미국 등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은 모두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동맹의 성립과 갈등의 맹아’에서는 1941년부터 1945년 「중소우호동맹조약」체결까지를 다루고 있다. 제2부 ‘중국 동북지역 전후 처리와 중소갈등’에서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 동북지역 전후 처리와 중소갈등을 서술하고 있다. 제3부 ‘유엔에서의 중·미·소 대립’에서는 1949년부터 1952년까지 유엔에서 중국과 미국, 소련의 대립을 서술하고 있다.

2. 중국과 소련의 협력과 갈등

『동아시아 전후 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의 제1부는 1920년대부터 1945년 8월 「중소우호동맹조약」 체결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1937년 7.7사변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을 지원해 준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소련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1941년 일본과 「소일중립조약」을 체결하면서 대중국 원조를 중단하였고, 중소관계는 멀어졌다. 이후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동남아시아 침략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동맹체제에 중국과 소련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은 동맹관계를 지속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맹체제에 중국이 참여하면서 중국의 국가적 위상은 크게 높아져서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강대국의 일원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국가적 위상은 당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이외에는 동맹국으로 선택할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중요한 요인이 국민

당과 공산당과의 대립 등 내부적 분열에 있다고 보고 국공문제에 개입하였다. 「알타협정」에서 미국은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대가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참전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 대가로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없었다.

중국과 소련은 일본의 패배가 확실했던 1945년 8월 14일 「중소 동맹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소련이 국민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공산당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다.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면서 중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동북지역을 장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제2부에서는 소련이 「알타협정」에 따라 중국 동북(만주) 지역으로 출병하면서 중국과 소련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소련군이 중국 동북지역을 점령하면서 일본 적산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소련은 갈등을 일으켰다.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만주를 전쟁 수행을 위한 중공업 중심의 산업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만주 지역의 산업 시설은 중국과 소련 모두에게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었다.

소련은 당시 중국의 공업 중심지였던 만주 지역의 적산을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취급하였다. 반대로 중국은 동북 지역의 산업시설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소련은 중국 동북(만주) 점령지의 적산을 소련으로 반출하였다.

다른 한편 소련군의 철군이 지연되면서 국민정부는 동북 지역을 접수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일본군의 무기를 입수한 소련군은 상당수의 장비를 공산당 군대에 인도하였다. 소련군으로부터 일본군의 무기를 인수한 공산당군대의 전투

력은 크게 향상되어 이후 국공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소련이 동맹조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주를 공산당군대에 빼앗겼다고 판단했다. 국민정부는 동북지역을 확보할 수 없어서 통일을 실현할 수 없었고 소련의 비협조를 1945년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소련이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제3부에서는 중국이 소련을 유엔에 제소하는 등 1949년부터 1952년까지 중국과 소련, 미국 사이의 외교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는 국공내전에서 점점 궁지에 몰리는 과정에서도 소련이 「중소동맹우호조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소련을 유엔에 제소하였다. 반면에 소련은 1949년 10월 1일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중화민국을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퇴출시키자는 안건을 제출하였다. 당시 미국은 장제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타이완으로 이전한 장제스 국민정부를 타이완이 아직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타이완 지위 미정 등을 구실로 타이완과 분리하려 하였다. 또한 미국은 『중미관계백서』를 발표하여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책임을 장제스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부패한 장제스의 국민정부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중국 대륙을 상실하더라도 타이완을 지켜야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장제스를 제외하고 타이완에 정권을 수립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미 제7함대가 타이완 해협으로 이동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을 유엔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미군기가 중국 동북지역을 폭격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달라졌다.

이 책은 ‘알타체제’와 ‘냉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소 관계의 중요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알타체제’의 전개를 1945년 8월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 소련군의 동북(만주) 진주와 적산을 둘러싼 갈등과 소련군 철군, 1949년 소련 제소안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알타체제’ 속에서 중·소 관계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글의 1부에서 서술한 「중소우호동맹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소련을 대일전에 참전시키기 위해서 소련이 중국에 대해 요구한 이권을 인정하는 알타비밀협정을 체결하였다. 장제스는 알타비밀협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관계에서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4일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은 전후 중·소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조약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의 2부에서 소련이 중국 동북지역의 적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반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제합작을 강요하였고, 소련군의 철수시기를 국민정부에 알려주지 않아서 국민정부가 동북지역을 접수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 책은 소련의 만주 점령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국공내전 등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 1945년 8월 「중소우호동맹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국공내전과 함께 악화되었다. 결국 1949년 중국이 유엔에 소련 제소안을 제출하면서 ‘알타체제’ 아래에서 형성된 중국과 소련의 우호동맹은 파국으로 끝나고 한국전쟁으로 돌아

시아에서 ‘냉전’구도가 가시화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중국이 국공내전의 마지막 시기에 왜 소련 제소안을 제출하였는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륙을 상실하게 된 장제스는 국제사회의 힘을 빌리기 위해 소련을 제소하였으나 미국은 국민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국민정부가 1949년 소련 제소안을 제출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표면화되었고 알타체제가 무너지고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냉전구도로 재편되었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이 책은 주로 “알타체제”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비교적 긴 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1945년 8월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과 소련군의 동북(만주)진주와 철군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소련 제소안이 유엔에 제기된 그 중간에 중국에서 격렬한 국공내전이 전개되었다. 이 연구는 국공내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다만 제2부와 3부 사이에 국공내전이라는 큰 사건이 중소 관계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소련 제소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할 때 국공내전 시기 중소관계에 대한 서술이 보완된다면 독자들이 이 시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관계에서 중국국민당과 소련과의 관계가 중요했지만 중국 공산당과 소련과의 관계 변화도 중소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이 보완된다면 이 시기 중소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를 보다 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맹과 국가 이익

제2차 세계대전 후기 스탈린의 대중국정책의 중점은 몽골을 중국에서 독립시켜 소련을 방어하기 위한 안전지대로 만들고, 중국 동북 지역을 회복하여 태평양 진출을 위한 출구와 부동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944년 12월 소련의 스탈린은 미국의 루즈벨트대통령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여 미국의 보장을 받았다. 스탈린도 전후 소련의 대중국정책을 장제스의 국민당을 지지하고 공산당의 혁명활동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¹⁾

장제스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얄타밀약을 결국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장제스는 중국과 소련의 협상에서 소련이 외몽골의 독립을 주장한 것에 대응하여 동삼성(만주)의 영토, 주권과 행정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중공과 신장 지역 비적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외몽골을 독립을 승인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뤼순(旅順) 군항의 행정관리권이 중국의 주권 아래 소련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공동관리는 할 수 없고, 다롄(大連) 자유항은 각국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행정관리와 영토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²⁾

이에 대해 스탈린은 중국에는 국민당이 영도하는 하나의 정부가 되어야 하지만 비국민당 인사들을 정부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스탈린은 신장 지역을 중국정부가 회복하는데 동의했다. 소련의 무기도 중국정부에 공급하고 공산당에 공급하지 않으며 동삼성의 영토, 주권 행정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³⁾

1)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廣東人民出版社, 2003, 49-50쪽.

2) 「蔣主席自重慶致行政院長宋子文指示外蒙獨立須俟我國內真能確實統一時方能考慮并告以所謂國內統一鞏固之要旨電」(1945.7.6), 陳孝意,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三編 戰時外交(二)』,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593-594쪽.

3) 陳孝意,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三編 戰時外交(二)』, 臺北, 中國國

그러나 장제스의 이러한 희망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 소련군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진입한 후 중국과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중소우호동맹조약」⁴⁾을 체결하였다. 중국과 소련은 1945년 8월 14일에 체결된 이 「중소우호동맹조약」에 의거하여 「중국 창춘철로에 관한 협정」, 「다렌에 관한 협정」, 「뤼순항에 관한 협정」 등과 부속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협정으로 소련은 과거 제정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중국 동북지방에서 상실했던 권리를 회복했다. 이 조약의 기한은 30년이었고 소련정부는 군수품과 기타 물자를 중국 중앙정부인 국민정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외몽골에 대해서는 일본이 패전한 후 외몽골이 국민투표를 하여 독립을 원하면 중국정부가 외몽골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하였다. 소련은 동삼성이 중국의 일부분으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 영토에 대한 행정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다렌과 뤼순항, 중국 창춘철로는 중·소 양국이 공동경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창춘철로국 국장은 소련이 담당하고,⁵⁾ 창춘철로국 국장이 소련인을 다렌항 주임으로 임명하며,⁶⁾ 뤼순항 중소군사위원회 위원장도 소련이 담당했다.⁷⁾ 다렌항은 자유항으로 각국에 무역과 해운을 개방하고, 뤼순항은 소련과 중국이 해군기지로 중·소 양국의 군함과 상선만 공동사용하도록 했다. 소련은 창춘철로와 다렌, 뤼순

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588쪽-609쪽.

- 4) 이 조약은 1945년 8월 24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비준되었다. 「友好同盟條約」(1945.08.14), 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 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三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2, 1327-1331쪽.
- 5) 「關於中國長春鐵路之協定」(1945.08.14), 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 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三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2, 1332쪽.
- 6) 「關於大連之協定」(1945.08.14), 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 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三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2, 1334쪽.
- 7) 「關於旅順口之協定」(1945.08.14), 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 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三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2, 1336쪽.

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서 중국의 관세와 기타 세금을 모두 면제받았다.⁸⁾

「중소우호동맹조약」은 소련이 과거 제정러시아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누리고 있던 각종 특권들을 인정하였고, 창춘철로, 다렌과 뤼순항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였지만 주요 직책을 소련인들이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1945년 8월 14일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은 평등한 조약이 아니었고 중국에 불리한 조항들이 많았다. 결국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은 소련 모스크바에서 1950년 2월 14일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을 다시 체결하여 동북지역의 주권을 회수하였다.⁹⁾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의 부동항을 상실한 소련은 새로운 부동항을 원했다.

소련은 대일전에 참전하여 중국의 동북지역을 장악하였다. 1945년 7월 11일 스탈린은 국민정부의 송즈원(宋子文)과 회담에서 소련군이 동삼성에 진입한 후 일본이 투항하면 3주일 이내에 철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고 최종적으로 3개월이면 완전 철수가 가능하다고 했었다.¹⁰⁾

그러나 소련군은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해를 넘겨서 1946년에 철군하였다. 소련군 철군 이후 국민정부와 공산당은 동북 지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다 1946년 6월부터 내전을 시작하였다.

8) 「關於中國長春鐵路之協定」(1945.08.14), 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 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三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2, 1333쪽.

9) 1950년 2월 중국은 소련과 모스크바에서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체결로 소련은 창춘철로, 다렌과 뤼순항 등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반환하였다. 栾景河, 「《中苏友好同盟条约》与《中苏友好同盟互助条约》之比较」, 『当代中国史研究』2004 2期, 94-103쪽.

10) 「關於中蘇此次共同對日作戰蘇聯軍隊進入中國東三省后蘇聯軍總司令與中國行政當局關係之協定」(1945.08.14), 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 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三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2, 1339쪽.

국공내전시기에도 소련은 중국 국민정부와 공산당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련은 동북지역의 일본이 소유하고 있던 적산(敵産)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동북지역의 산업시설을 요구하였다. 소련과 중국 사이의 교섭은 지지부진했고 소련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다.

이 시기 중국공산당은 동북지역의 소련 적군이 공산당군대의 활동을 방임할 것으로 보았다.¹¹⁾ 반면에 국민정부는 소련과 「중소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국민당군대를 만주에 파견하여 소련군으로부터 치안업무 등을 이관받기를 희망했다.¹²⁾ 1945년 9월 초 산하이관 서쪽 지역의 공산당군대는 동북지역에 진입했다. 그러나 9월 14일 동북지역 주둔 소련군은 소련군이 철수하기 전 장제스 군대와 팔로군 모두 동북지역에 진입할 수 없으며 이미 선양(瀋陽), 다롄(大連), 창춘(長春) 등에 도착한 팔로군에 대해서 점령지역에서 철수하도록 하였다.¹³⁾

그러나 9월 말 미군이 국민당 군대를 도와서 화북과 동북에 국민당군대를 운송하고 미 해군 해병대가 직접 텐진(天津)에 상륙한다는 것을 알게 된 소련은 태도를 바꾸었다.¹⁴⁾ 소련군은 국민당 부대가 동북 지역의 항구에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중국공산당이 동북 지역을 장악하도록 방임했다.

이에 국민정부가 경제협상에서 소련에게 일정한 양보를 하자 11월 소련은 국민정부군이 창춘과 선양에 진입하는 것을 돕고 「중소 우호동맹조약」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고 하였다. 11월 20일 소련군

11) 「中央關於迅速進入東北控制廣大鄉村和中小城市的指示」(1945.8.29), 中央檔案館編, 『中共中央文件選集 第15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57쪽.

12)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廣東人民出版社, 2003, 56쪽.

13)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廣東人民出版社, 2003, 57쪽.

14) 楊奎松, 『中間地帶的 革命-國際大背景下的中共成功之道』, 山西人民出版社, 2014, 475쪽.

대표는 동북의 대도시에서 중국공산당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소련은 선양, 창춘, 하얼빈 등 3대 도시와 창춘철로 간선을 국민당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이다.¹⁵⁾

그러나 국민정부와 소련의 관계는 중소경제협력을 둘러싸고 큰 진전이 없었고, 1946년 1월 16일 국민당 기술자 장신푸(張莘夫) 살해사건이 일어나자 중국에서 반소감정이 강화되었다. 미국과 영국도 소련이 중국 동북에서 철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알타비밀 협정 전문을 공개하였다.¹⁶⁾ 결국, 1946년 3월부터 소련군은 동북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소련군이 철군한 이후 동북지역을 둘러싸고 국민정부와 공산당은 충돌하였다. 결국, 1946년 6월부터 국공내전이 시작되었고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49년 9월 중국 국민정부는 소련이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위배하고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유엔에 제소하였다. 이는 1945년 8월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조약」에 의거한 중국 국민정부와 소련과의 관계가 파탄이 난 것을 의미했다. 이 시기 미국은 『중국백서』를 발간하여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실패한 것은 국민당의 무능과 부정부패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국민정부와 선긋기에 나섰다. 중국 국민정부도 소련을 유엔에 제소하여 국공내전에서 자신들의 실패 책임을 소련으로 돌리려고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대표권을 놓고 대립하였다. 유엔에서 중화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가운데 어느 정부가 대표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15) 陳雲, 「對滿洲工作的几点意見」(1945.11.30),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陳雲文選(1926-1949)』, 北京, 人民出版社, 1984, 221쪽.

16)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廣東人民出版社, 2003, 63쪽.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이 제7함대를 타이완해협으로 이동시키자 중화인민공화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침략했다고 유엔에 제소하였다. 당시 소련은 중화민국정부의 대표권 행사에 반발하면서 유엔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었다. 미국은 소련의 부결권 사용을 저지하면서 중화민국 정부가 대표권을 유지하여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결의안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타이완 해방”을 위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타이완 방위에 나서면서 전 국토를 통일하겠다는 꿈은 사라졌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북한을 지키고 국제적 위상을 높였지만 “타이완 해방”으로 전 중국을 통일하려던 꿈은 무산되었다. 반면에 장제스와 타이완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의 타이완정책 변경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타이완은 한국전쟁의 최대의 수혜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대표권 변경문제와 한국전쟁 참전 결정, 타이완 문제 등은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1950년을 전후한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도 타이완 문제는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70년 전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대립과 봉쇄를 하면서 대립하였다.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 시기인 1972년 미국 닉슨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과 회담하고,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후 중국이 개혁 개방 노선을 추진하면서 미·중 관계는 40여 년 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중관계는 점차 악화되어 전방위적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립과 충돌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남중국해와 타이완해협, 그리고 한반도가 거론되고 있다.

지금부터 70년 전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 속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오랫동안 전쟁의 상처 속에서 고통받았다. 한반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거대한 전쟁 속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전쟁은 한반도에서 3년 동안 지속되었고, 전 세계에서 수십 개 국이 참여한 국제적 전쟁으로 비화하였다.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과거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의 동아시아와 현재의 국제관계는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중국과 소련의 협력과 갈등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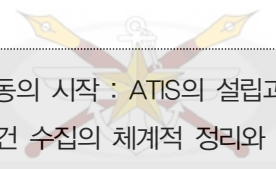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231-260
<https://doi.org/10.29212/mh.2020..115.2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자료소개]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해제

이상호*

- 
1. 적의 문건 수집 활동의 시작 : ATIS의 설립과 운영
 2. 한국전쟁기 북한문건 수집의 체계적 정리와 정보화 :
ADVATIS의 활약과 ATIS의 분석
 3. 자료집에 수록된 북한노획문서의 특징과 내용
 4. 맺음말

1. 적의 문건 수집 활동의 시작 : ATIS의 설립과 운영

북한노획문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문서가 공개된 1977년 직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후에야 미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¹⁾ 그러나 이들 연구는 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였을 뿐 문서의 입수 과정에 대해서는 그 경위와 해당 주체 등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후 북한노획문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북한노획문서에 대해 선구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방선주 박사이다.²⁾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논문에서 노획문서와 연합군번역통역국(Allied Translator & Interpreter Section, 이하 ATIS)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에 들어와 방선주는 「선별노획문서」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다시 한 번 ATIS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³⁾ 이후 국내에서 한국전쟁기 북한노획문서와 ATIS⁴⁾를 언급한 연구들이 일부 간행되었다.⁵⁾ 이하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ATIS의 창설과 활동, 그리고 한

1) Dae-Sook Suh,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1921-1952" Korean Studies, Volume, 1978; 桜井浩, 「朝鮮戦争における米軍の「捕獲資料」について」, 『アジア経済』, アジア経済研究所, 1983; 김학준, 「정권형성기(1951년 8월 15일~1948년 9월 8일)와 정권 초창기(1948년 9월 9일~1950년 6월 24일)의 북한 연구 I: 한국전쟁기에 미군이 노획한 북한 문서에 관한 소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학회, 1985.

2) 방선주, 「노획 북한필사문서 해제(1)」, 『아시아문화』 창간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6; 방선주, 「미국 자료에 나타난 한인 <중군위안부>의 고찰」, 『국사관논총』 37, 국사편찬위원회, 1992; 방선주, 「한국전쟁 당시 북한자료로 본 '노근리' 사건」, 『정신문화연구』 2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3) 방선주,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RG242내 <선별노획문서> 조사연구」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Ⅲ, 국사편찬위원회, 2002.

4) ATIS를 기존 연구에 따르면 '번역통역부', '연합군번역부', '연합통번역대', '연합국통번역대' 등으로 칭하고 있고, ADVATIS를 '선발번역통역소' 혹은 '연합군선발대번역소'로 칭하고 있다. 필자는 ATIS를 '연합국번역통역국'으로, 그리고 ADVATIS를 '연합국번역통역국전선파견대' 내지 'ATIS전선파견대'로 칭한다.

5) 이상호, 「전후 연합국번역통역국(ATIS)의 일본인 귀환자 심문과 공산권 첩보활동」, 『한일민족문제연구』 33, 한일민족문제학회, 2017; 국사편찬위원회, 『남서태평양지역 총사령부 연합군번역통역부(ATIS)문서』 1~3, 국사편찬위원회, 2017;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현실』 109, 한국역사연구회, 2018.

국전쟁기 북한지역의 문서 수집과 포로신문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자.

가.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ATIS의 설립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42년 9월 19일 남서태평양육군총사령부(GHQ/SWPA)의 지령에 의해 호주 브리즈번(Brisbane)에서는 ATIS가 창설되었다. 그 이전인 1942년 9월 3일에 한명의 장교와 8명의 사병으로 이루어진 미군이 브리즈번에 와서 번역통역대(TIS,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의 조직을 준비했다. 9월 19일 이 부대는 연합국의 요원들이 함께 조직됨으로써 연합(Allied)이라는 용어가 합쳐져 연합군번역통역국(ATIS,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rvice)로 확장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⁶⁾

ATIS의 임무는 연합국 간 및 업무 간에 있어서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투 중에 노획된 문서의 번역 및 분석, 포로에 대한 심문 및 조서 작성, 이러한 결과를 기관지(Bulletin), 회람(spot), 연구보고 등으로 인쇄 출판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동안 ATIS의 발간물의 양은 최대 200만 쪽에 달했다. 또한 ATIS는 추가적으로 일본군에 대한 항복권고문서를 작성하고 방송, 항복문서조인을 둘러싼 회합에서의 통역 등을 제공했다. 즉 ATIS의 임무에는 비밀감시, 암호해독, 독도법, 무선감청, 전투서열 분석, 포로 심문, 일기, 편지, 중요 기사, 적의 시체로부터 확보된 수집품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6) "Progress Report(1944. 9. 14.)", ATIS, SWPA,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P" File, 1940-45, Box 336A.

있었다.⁷⁾

ATIS요원의 훈련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군사첩보어학교(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Language School, MISLS)를 설립하여 이곳에서 훈련하는 방식과, 일반대학의 위탁과정을 두고 여기서 어학요원을 배출하는 방식이었다.

ATIS요원들은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Presidio)에 있는 군사첩보어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계미국인(Nisei, 二世)으로 미국시민권자들이었다. 1941년 11월 60명의 학생과 4인의 일본계교사로 구성된 군사첩보어학교가 설립되었다. 학생 가운데 2명만 백인이었고 나머지는 닛세이(二世)였다. 1942년 5월에 45명이 졸업했는데, 백인은 졸업 후 소위로 임관되었지만, 닛세이는 처음에는 트럭이나 지프운전수로 비(非)첩보부문에 배속되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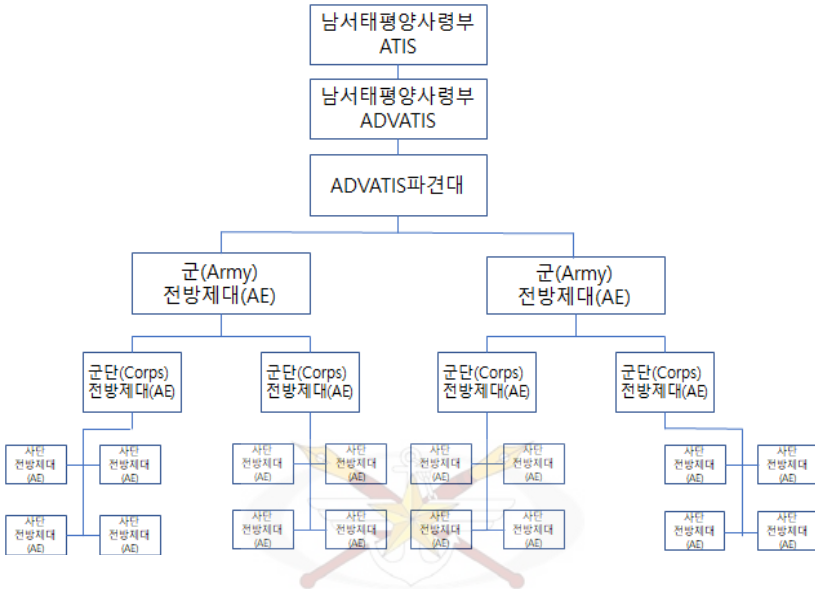
ATIS의 최고책임자(Co-ordinator)에는 매쉬버(Sidney F. Mashbir, 1891~1973)대령이 임명되었다. 1942년 1월 현역으로 복귀한 매쉬버는 호주로 보내져 한 달 만에 대령으로 진급한 후 1942년 10월에 ATIS의 책임자로 발령받아 1945년 12월까지 복무하였다.

ATIS의 규모는 시기마다 달랐지만 1945년 말에 가장 규모가 컸을 때에는 2,667명이 구성원으로 있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어학요원(Linguists)은 하와이나 캘리포니아로부터 온 닛세이들로 이들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여 180명 이상이 동성 무공훈장(Bronze Star)부터 수훈장(Distinguished Service Medal)까지 받았다.⁹⁾

7) Takemae Eiji,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NY: Continuum, 2002.

8) 山本武利, 『日本兵捕虜は何をしやべったか』, 文藝春秋, 2002, 25頁.

9) "Operations of the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GHQ, SWPA"(1948. 7. 12.), The Intelligence Series vol. V, A Brief History of

[표 1] 남서태평양사령부 ATIS전선부대(ADVATIS) 편제표¹⁰⁾

1942년 9월에 조직된 ATIS는 전선으로 파견대를 배치했다. 뉴기니아(New Guinea)에 ATIS의 전선파견대(Advanced Echelon)를 조직하여 1943년 1월 15일에 파견하였고, 이후 8개 전선파견대가 차례대로 6군, 1군단, 뉴기니아군(호주군) 등에 설립되었다. 1944년 9월 22일에는 홀란드아(Hollandia, 현재 인도네시아의 자야푸라

the G-2 Section, GHQ, SWPA and Affiliated Units, RG 331, Allied Operational and Occupation Headquarters, World War II,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Assistant Chief of Staff, G-2, Public Safety Division, General File, 1946-50, Box 283.

- 10) "Operations of the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GHQ, SWPA"(1944. 6.), RG 331, Allied Operational and Occupation Headquarters, World War II,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Assistant Chief of Staff, G-2, Public Safety Division, General File, 1946-50. Box 283.

Jayapura) 총사령부에 ATIS전선부대인 ADVATIS (Advanced ATIS)를 설립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ATIS는 29개의 유럽어와 아시아 언어를 취급했다. ATIS는 1945년 9월까지 적의 문건 및 포로심문조서 18,000건을 번역하고 16,000건을 출판했으며, 10,000명의 포로를 심사하여 779개의 심문보고서를 작성하였다.¹¹⁾

전쟁기 ATIS는 단위부대에 어학요원을 파견하였는데, 보통 사단에 12명(장교 2, 사병 10), 군단에 15명(장교 2, 사병 13), 군단사령부에 전선파견대(Advanced Echelon) 20명(어학요원 15, 비어학요원 5), 군사령부에 20명(어학요원 15, 비어학요원 5)을 파견하고, 총사령부에 ADVATIS를 배속(어학요원 53명, 비어학요원 71명)하였다.¹²⁾

또한 후방인 미국 본토에는 미국 육해군 합동심문반(Joint Interrogation Center)을 조직했다. 합동심문반은 캘리포니아의 바이런 핫스프링(Byron Hot Springs)에 위치하며 캠프 트레이시(Camp Tracy)로 알려져 있다. 캠프 트레이시는 1942년 12월에 개설되어 1943년 1월부터 1945년 7월까지 3,500여명의 일본군 포로에 대해 12,000건의 심문을 수행했다.¹³⁾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11) "Operations of the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GHQ, SWPA"(1948.7.12.), The Intelligence Series vol. V, A Brief History of the G-2 Section, GHQ, SWPA and Affiliated Units, RG 331, Allied Operational and Occupation Headquarters, World War II,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Assistant Chief of Staff, G-2, Public Safety Division, General File, 1946-50, Box 283.

12) "Progress Report(1944.9.14.)", ATIS, SWPA,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P" File, 1940-45, Nox 336A.

13) Alexander D. Corbin, The History of Camp Tracy: Japanese WWII POWs and the Future of Strategic Interrogation, VA: Ziedon Press, 2009, p.3.

에 있는 일본군 포로들은 전쟁 전기간 동안 완벽히 비밀로 처리되었다. 2년 반 동안 3,500명 이상의 일본군 포로를 심문했고, 심문을 통해 6,500페이지로 구성된 1,700개의 심문보고서를 작성했다.

나. 일본점령정책과 ATIS : 공산진영에 대한 정보 획득

전쟁이 종료되고 남서태평양사령부가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이자 미태평양육군사령부(USAFPAC)로 재편되자 ATIS도 이에 따라 움직였다. ATIS는 1945년 9월 27일에 선전대를 도쿄에 파견하였고 1945년 10월 3일에 ATIS전선부대가 마닐라에서 도쿄로 이전하여, 1945년 11월 17일에 정식으로 도쿄에 ATIS 본부가 설립하였다. 1946년 3월에 GHQ/SCAP는 연합국군의 기관으로 ATIS의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미국 육군의 기관인 번역통역서비스대(Translator and Interpreter Service, TIS)로 활동은 계속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따른 미군의 대대적 감축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나서 참모 제2부(G-2)의 명칭은 군사첩보과(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에서 첩보과(Intelligence Division)으로 변경되었다. 군사첩보서비스과(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ivision: MIS)는 이 때 육군부 참모 제2부의 직속과로 설치되었다. 이는 주요 부서로 극동군 참모 제2부에도 설치되었다.

MIS의 주요 하부기관으로 TIS와 기술첩보대(Technical Intelligence: TI)가 설치되었다. TIS는 극동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아는 전쟁경험이 풍부한 번역자 및 어학요원으로 구성되고, 점령의 일일업무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일본문서와 출판물을 수집하고 조사하여 번역했다. 출판된 번역물은 SCAP참모부의

사람들이 널리 이용하고, 그들은 이 번역물로부터 일본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경향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데 활용하였다. TIS는 해외로부터 귀환하는 일본인귀환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심문도 담당하였다.¹⁴⁾

하지만 1946년 12월 이후, 소련 관리지역으로부터 귀환(引揚)이 시작되면서 ATIS의 활동이 변화되기 시작했다.¹⁵⁾ 이미 중앙심문센터(Central Interrogation Center, CIS)가 1946년 6월 2일에 미 태평양육군사령부(AFPAAC)의 일반지령 26호로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SCAP, G-2휘하에 설치되었다. 주요 심문은 소련군과 극동지역의 산업 활동, 그리고 시베리아 및 국경지역의 내부정보를 귀환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이다. 소련이 억류했던 일본군 포로의 송환은 G-2에게 소련과 소련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¹⁶⁾

북한, 다렌, 뤼순으로부터 오는 귀환자는 사세보로 들어왔다. 1947년 4월 소련으로부터 송환이 중단되었고, 이후 만주지역으로부터의 귀환자가 이곳으로 입국하였다. 사세보는 미 제1군단 산하 미 제24사단이 관할하였는데, 1946년 12월 5일 6명의 장교와 21명의 사병으로 구성된 심문과견대를 설치하였다. 심문과견대는 1947년 2월에 장교 1명과 사병 4명으로 구성된 심문팀(Interrogation

14) 竹前榮治, 「GHQとインテリジェンス-MISと占領諜報との組織的關係」, 『現代法学』, 東京經濟大學現代法学会, 2014, 74~79頁.

15) 소련지역으로부터 귀환한 일본군 포로 및 민간인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 대공산권 정보를 획득한 내용에 대한 연구는 사토 스스무에 의해 정리되었다. 하지만 사토는 주로 일본내의 문서를 활용하였고 이미 이 자료는 모리타 요시오에 의해 소개되었다. 佐藤 晉, 「大陸引揚者と共產圏情報-日美兩政府の引揚者尋問調査」, 増田弘 編著, 『大日本帝國の崩壊と引揚復員』,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2.

16) "Effects of Personnel Allocation Policy on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ivision"(1946. 6. 2.),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Translator & Interpreter Service, General Correspondence, 1947-50, Box 20.

Team) 14개와 지리국(Geographical Section)으로 확장되었다. 여기에 5명의 전직 구일본군 정보장교가 배치되었다. 이 구 일본군 장교들은 “GHQ요원”으로 불렸고 이 가운데에는 러시아어 전문가가 포함되어 위조문서 발견이나 러시아지명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었다. 1947년 6월 미 8군 정보부(G-2)는 귀환항구의 심문기구를 개편하여 4개의 주요 첩보언어대(Intelligence Language Detachment)를 두고 그 산하에 31개의 심문팀(Interrogation Team)으로 재조직하였다.

2. 한국전쟁기 북한문건 수집의 체계적 정리와 정보화: ADVATIS의 활약과 ATIS의 분석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TIS¹⁷⁾는 1950년 7월 7일 한국전선에 배치할 ATIS전선부대(ADVATIS)의 조직을 서두르게 된다. 이들이 선발대로 파견되었고, 이후 ADVATIS의 조직은 확장되었다. ADVATIS는 일종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했다. 대구와 부산 동태를 주기지로서 하며 주요 지역(서울, 인천)과 전투부대에 전방제대(ATIS Advanced Echelon)를 파견하였다. 즉 ADVATIS는 전선에 파견된 예하 부대인 전방제대(AE)를 통해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에 대한 심문, 각 파견대 및 사단 파견대에서 보내오는 북한 노획문서를 분류, 정리, 번역하여 전략정보, 전술정보 등을 분류하고 이를 도교의 ATIS본부로 이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ATIS전방제대의 북한문서 수집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7) 전쟁 발발과 함께 TIS의 명칭도 ATIS로 통칭되었다. 이는 미국이 유엔군이라는 연합군 형태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기 때문에 Allied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가. 북진 시 인디언헤드 부대의 조직과 활동

한국전쟁기 북한문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구에서 수집되었다. 즉 미 제8군내 미 제2사단 병력으로 조직된 특수임무부대¹⁸⁾인 인디언헤드 부대(Task Force Indianhead), 미 극동공군사령부(U. S. Air Forces of Far East), 주한미8군(EUSAK) 정보참모부(G-2) 산하 정보대¹⁹⁾,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 MIS산하의 ATIS이다.

인디언헤드 부대는 1950년 10월 16일 미 제8군 G-2의 명령으로 미 제2사단 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포스터 중령(Ralph H. Foster)을 지휘관으로 하여 조직되었다.²⁰⁾ 당시 미 제2사단은 각 예하 부대가 반격작전으로 낙동강을 거쳐 북상하던 중이었다. 사단 사령부는 10월 10일에 영등포에 주둔하였고 사단 예하 모든 부대는 예비 집결장소에서 차후 명령을 위해 대기 중이었다.²¹⁾ 사단의 예하 부대인 제9연대는 평양지역에, 제23연대는 해주와 사리원 지역을,

18) 미국은 작전상황 및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주어진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는데 이를 Task Force로 통칭한다. 남정옥, 앞의 책, 477쪽. 사전에는 1명의 지휘관 밑에 여러 부대가 임시로 편성되어 특정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군사영어편찬위원회 편, 『군사영어사전』, 병학사, 864쪽, 1976.

19) 미 8군 G-2 산하에는 직접 운용하고 있는 군사정보대가 있었다. 바로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etachment인데, 163d MISD, 164th MISD, 521st MISD, 522d MISD, 9군단 MISD등 총 5개가 운영되어 포로에 대한 심문을 담당했다. Gordon L. Rottman, Korean war order of battle : United States, United Nations, and Communist Ground, Naval and Air Forces, 1950-1953, Prager Publishers, 2002, p.50.

20) "Personnel Periodic Report No. 9"(1950.10.21.),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21) "Activities Report for the Month of October 1950"(1950.11.7.), HQ 2d Infantry Division, G-1,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제38연대는 사단 포병대와 함께 영등포 지역에 주둔하였다.

이렇게 미 제8군의 예비부대인 미 제2사단의 예비병력으로 특수 임무대대를 조직한 것이다. 인디언헤드 부대는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다.²²⁾

제72탱크 대대에서 1개 소대 차출 : 6대의 M-26탱크와 1대의
반궤도 차량

제2정찰중대에서 1개 소대 차출 : 2대의 M-24탱크와 한 대의
M-39 장갑 보병 수송차

제38연대에서 1개 보병중대 차출 : 중대장을 포함한 6명의 장교,
차량화 보병중대

1명의 장교와 14명의 사병으로 구성된 공병폭파대 : 1대의 2.5톤
트럭과 1세트의 공병폭파물

제82방공포대에서 방공자동포 1개반 차출 : 1대의 M-16과
1대의 M-19

의무반에서 1명의 의사와 2명의 보조원으로 구성된 야전응급치료소(aid
station)²³⁾

제2CIC과견대에서 일부 요원

22) "War Diary 160001 Oct 50 - 162400 Oct 50, War Diary, HQ 2d Infantry Division, 1 Sep 50 ~ 31 Oct 50",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23) "History(Division Medical Activities)"(1950. 11. 5.), HQ 2d Infantry Division Office of the Surgeon,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여기에 미 8군의 대표자 및 GHQ의 정보특수팀(intelligence specialist teams)이 추가로 구성되었다. 특수임무부대는 전부 차량 기동화 되었다. 10월 17일에 인디언헤드 부대는 사단의 제2정찰중대 지역에서 집결하였다. 인디언헤드 부대는 공격 부대²⁴⁾와 함께 평양에 들어가서 문서를 수집(collecting)하고 분실되거나 파괴될지 모르는 가치(정부기록, 과학문서, 외국 강대국이 북한정책에 강제적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 등)가 있는 정보를 확보할 것을 임무로 하고 있었다.²⁵⁾ 여기에 가능하다면 북한 인사를 생포하는 것도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였다.²⁶⁾

10월 19일 북한 수도인 평양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 병사는 파커(E. V. Parker)병장이었다. 파커 병장은 인디언헤드 부대원이었다.²⁷⁾ 인디언헤드 부대는 10월 19일 평양 외곽까지 접근했으나 20일 오전까지 대동강을 건너지 못했다. 교량문제 때문이었다. 결국 오후 5시 50분경에야 한국군 병사로 구성된 소(少)병력이 공격단정으로 강을 건너고 나서야 경(輕)탱크를 이용하여 대동강 철교를 건널 수 있었다. 20일 밤 인디언헤드 부대는 평양에 있는 2곳의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했다. 한 라디오방송국에서는 신형 방송장비를 확보했고, 다른 곳에서는 북한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또 다른 장소에서

24) 공격부대는 미 제1기병사단의 선발대로서 인디언헤드 부대는 이 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였다.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92, p.652.

25) "G-2 Section Narrative Summary October 1950",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26) 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50-1951*,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p.284.

27) "Command and Unit Historical Report"(1950.11.1.),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상당량의 적의 문건을 노획했지만 번역하지는 못했다.²⁸⁾

인디언헤드 부대 요원들은 수집품(collection)과 기록물(recording of material)을 방해 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 인디언헤드 부대원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수많은 정보자료를 극동군사령부의 Special Team에 인계했다. 임무를 완수한 인디언 헤드 부대는 1950년 10월 25일 12:00 부로 해체되었다. 이후 모든 부대원들은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하였다.²⁹⁾

나. 북한지역에서 ADVATIS의 활동

다음으로는 북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주요 문서를 수집, 분류, 적재, 이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ATIS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6월 29일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해공군의 투입을 결정했다. 곧이어 일본에 주둔한 미 제24사단 21연대의 제1대대를 특수임무부대로 편성하여 파병하고, 본대인 미 제24사단의 한국전선 파견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TIS측에서도 ATIS전선부대(Advanced ATIS: ADVATIS)를 조직했다. 한반도에 3명의 장교를 포함한 조정반과 번역반 2개, 심문반 2개를 파견하는 것을 6월 30일에 결정했지만, 정식으로 ADVATIS가 발족했던 것은 1950년 7월 7일이었다.

그러나 이미 극동공군(FEAF)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은

28) "War Diary 210001 Oct 50 - 212400 Oct 50",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 - 1993, Entry NM3 429, Box 2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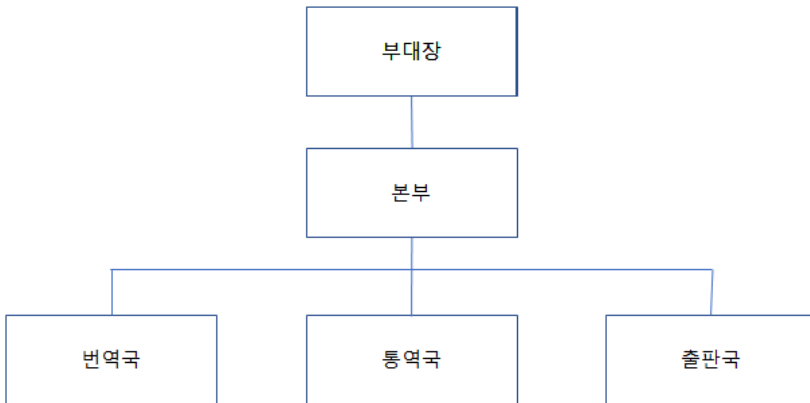
29) "War Diary 260001 Oct 50 - 262400 Oct 50",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Entry NM3 429, Box 2434.

링거프로젝트(Wringer Project)반을 가동하여 이미 1950년 7월 4일에 한국군에 의해 붙잡힌 북한군 포로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따라서 FEAF보다 뒤늦게 편성되어 전선에 파견된 ADVATIS는 7월 10일 FEAF의 담당자와 공동으로 포로에 대한 심문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1950년 7월 15일 ADVATIS는 금천(Kumchon)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 헌병대 2층 건물에 주둔했다. 이 때 문순덕을 통역가로 임명했는데 이는 ADVATIS가 최초로 고용한 한국인이었다. 이날 ADVATIS는 심문보고서를 최초로 주한미군사령부 G-2에 보고했고, G-2는 미8군 사령부 하의 모든 심문 조직은 ADVATIS 부대장의 통제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³⁰⁾ 7월 17일 미8군 사령부와 ADVATIS 합동으로 심문센터(Interrogation center)를 수립하고, 한국군으로부터 인계받은 포로 10명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³¹⁾

30) "Status of ADVATIS"(1950. 7. 17.),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Translator & Interpreter Service, General Correspondence 1947-50, A1. E34, Box 22.

31) "Records of Events, Advanced Echelon"(1950. 7. 8~10),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Translator & Interpreter Service, General Correspondence 1947-50, A1. E34, Box 22.

[표 2] ATIS전선부대(ADVATIS Korea) [1950. 8. 2]³²⁾

7월 16일 ADVATIS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는 1950년 7월 16일 대전지역에 있던 미 제24사단 21연대에 의해 노획된 북한 문서였는데, 이는 북한군 제4사단장인 이권무의 서명으로 예하 18, 16, 5연대에 6월 22일 발효된 정찰명령서였다.³³⁾ 이 문서와 함께 ADVATIS는 북한의 남침을 증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증거 문서로 작전명령 1호를 입수하여, 제4사단 포병장교의 진술과 함께 이를 유엔에 제출할 특별보고서에 첨부시켰다. 이 작전명령 1호에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제4사단이 38선 접경지역인 옥계리를 돌

32) “ADVATIS Presently in Kore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Translator & Interpreter Service, General Correspondence 1947-50, A1. E34, Box 22.

33) “Request for Information”(1950. 9. 16.),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22.

파하여 의정부, 서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³⁴⁾

8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ADVATIS는 한국에 파병된 미군 각 사단을 방문하여 심문 조직을 정비했다.³⁵⁾

미 제1기병사단 : 장교 3명, 사병 21명

미 제24사단 : 장교 2명, 사병 21명

미 해병 여단 : 장교 2명, 사병 11명

미 제25사단 : 장교 4명, 사병 16명

미 제2사단 : 장교 3명, 사병 11명

8월 22일에는 낙동강 전선에서 총공격을 감행하려는 북한군의 기밀문서를 가지고 자진 귀순한 북한군 13사단 포병연대 정봉옥 중좌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³⁶⁾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북한군 포로의 수와 노획된 문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ADVATIS는 제한된 인원으로

34) "Documentary Evidence of North Korean Aggression"(1950.10.11.),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16.

35) "Status and Employment of Div Linguists"(1950.8.11.); "Records of Events, Advanced Echelon"(1950.7.8~10),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Translator & Interpreter Service, General Correspondence 1947-50, A1. E34, Box 22.

36) "Telegram from ADVATIS, EUSAK to CO, TIS"(1950.8.23.),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Translator & Interpreter Service, General Correspondence 1947-50, A1. E34, Box 22.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ADVATIS의 또 하나의 주요 임무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심문이었다. 포로의 심문은 인천에서 가능한 한 3단계의 심문을 실행했다. 긴급한 현안 작전을 위해 전략적 심문(tactical interrogation)이 우선되었고, 10월말에는 중국군의 포로 심문도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노획문서의 수집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ATIS의 포로심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다른 논문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진이 시작되자 ADVATIS에 중요한 임무가 부과되었다. 바로 북한지역 내에 직접 투입되어 북한의 주요 문건을 입수, 분류, 이송하는 것이었다. ADVATIS의 문서과는 서울에 위치하며 북한 지역 내의 주요 문서를 수집했다. 1950년 10월 17일 평양으로 진격이 시작되자, 10월 19일 ADVATIS는 문서 수집팀을 파견했다.

한편 10월 12일 ADVATIS는 필리오드(Pilliod) 대령과 김종호, 박병욱 등 2명의 한국군 소위를 비행기로 원산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원산 지역의 북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 필리오드 대령은 원산에서 우연하게도 러시아 서고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양은 기대했던 것 보다 상당했는데, 약 2,000파운드에 달하는 양이었다.³⁷⁾ 이들의 활약으로 10월 15일부터 원산지역의 문서를 입수하기 시작했다. 원산 지역에서 입수한 노획문서 가운데 러시아 문서를 조사하기 위해 평양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크릴로프(Eugene B. Kryloff) 소령과 러시아 전문 번역가 3명이 급파되어 11월 4일까지

37) "Status of ADVATIS"(1950.10.22.),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22.

러시아 문서를 조사하였다.³⁸⁾ 평양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팀들도 11월 13일까지 노획한 문서 전부를 분류하는 작업을 마치고, 11월 30일 최종적으로 서울로 철수하였다.³⁹⁾

중국군의 공세로 인해 전황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자, 1950년 12월 1일 ADVATIS는 전방에 파견된 전방제대(AE)의 번역팀 및 포로 심문가들을 모두 후방으로 후퇴시켰다. ADVATIS는 부산 동래에 사령부를 두었고, 서울과 인천 지역에 배치되었던 산하 부대를 모두 대구로 이동시켜 크릴로프 부대 산하로 배속시켰다.⁴⁰⁾ 12월 2일 현재까지 ADVATIS가 수행한 작업은 매우 방대하였다. 9만 5천명의 포로를 1차 심사했으며, 그 가운데 1760명의 포로들에 대한 심문을 수행하였고, 2788개의 심문보고서를 작성했다. 또한 문서 수집에 있어서는 18톤에 해당하는 노획문서를 정리, 평가, 번역하였다.⁴¹⁾ 이렇게 한국전쟁기 ATIS는 ADVATIS를 파견하여 한국전선에서 포로심문, 주요문서의 번역 등을 통한 전략 및 전술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당시 주한 미8군, 극동공군, 국무부 심문팀(State Department Interrogation Team, ORO)등 공산권 자료를 확보하

38) "Message From CG X Corps to CINCFE"(1950.11.7.),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22.

39) "Pyongyang Special Project"(1950.11.13.),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22.

40) "Status of ADVATIS"(1950. 12. 26),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22.

41) "Message from Stark to Willoughby"(1950.12.2.),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16.

러는 다양한 기구들의 활동을 조정하여 이들이 입수한 주요 문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선적번호를 부여하였고, 이를 안전하게 본토로 이송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활약하던 ATIS는 1951년 2월 4일 제8238육군부대로 재조직 되었으며, 12월 1일 극동군사령부 군정보대(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Group, 8238th Unit)로 재편되었다. 이후 MISG는 1952년 9월 1일 500군정보대(500th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Group)로 다시 개편되어, 한국전쟁이 정전에 이르기까지 작전을 수행하였다.⁴²⁾

다. 노획문서의 종류와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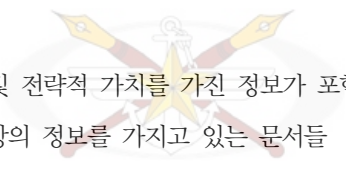
그럼 여기서는 북한노획문서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자. 현재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문서는 약 2,607Box이상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노획문서는 주제별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건설계획, 경제, 고전문학, 공산당의 역사와 활동, 공업, 농업, 북한군, 북한법원, 사회학, 산업, 소련과 소련위성국인 동유럽에서의 생활, 선전, 수학, 영화, 의학, 정치, 조러무역, 중국인민지원군, 지리, 항해, 항공학, 현대문학 등이다. 노획문서의 형태별로는 서신, 공문서, 사문서, 인쇄물(책, 신문, 연간물), 회보, 사진 등이다. 언어별 분류에 따르면 대부분이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된 것이 가장 많으며 이외에도 불가리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등이 있다. 여기서 동유럽계통의 언어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 북한의 대 동유럽 관계를 엿볼 수 있다.

42) "Lineage and Battle Honors Intelligence Support Complement, 8238th AU", RG 338, Record of U. 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Box 4834.

북한노획문서는 정보의 내용 면에서 3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러시아 자료이고, 둘째는 노획된 북한문서이며, 셋째는 노획된 적의 문서이다. 러시아 자료와 노획된 북한문서는 SA(Shipping Advice) 선적문서로 분류되어, SA2001부터 2013까지의 번호가 부여되었다. 총 분량은 2,394박스이다. 세 번째인 노획된 적의 물건으로 분류되는 문서들은 6개의 숫자가 부여되어 200001부터 208072까지의 번호가 부여되었다. 총 분량은 173박스이다.

노획문서를 관리하는 데 있어 모든 문서를 전부 번역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관리되었다.⁴³⁾ 아래의 문서 평가에 있어서 B나 S그룹으로의 최종 인가는 ATIS만이 할 수 있었다.

- 
- A - 전역에 전술 및 전략적 가치를 가진 정보가 포함된 문서들
 - B - 전역 수준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서들
 - S - 전역수준이나 전역 수준 이상의 정보를 가진 문서들
 - C - 군사적 가치가 없는 문서들.

각 문서분류에 따라 개략적인 북한노획문서는 다음과 같다.

- 러시아 자료[Russian materials captured in Pyong Yang]
SA 2001~2004 [1,123boxes]

43) "Examination of Captures Documents",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Assistant Chief of Staff, G-2 MIS(D/A) Intelligence Division, General Records, A1 E. 34, Box 22.

평양의 소련기관으로부터 입수. 세계문학, 예술, 음악, 기술, 정치 등에 관한 러시아 책을 포함한 도서관 자료

■ 노획된 북한문서[Captured Korean Documents]⁴⁴⁾

SA 2005~2013 [1,218boxes]

일기, 팸플릿, 신문, 전단, 포스터, 지도, 청사진, 오버레이, 투명도, 사진 등

SA 20181 [9boxes]

구일본 해군 수로국에서 1937~45년 작성한 책, 연간물, 소책자

SA 19177 [24boxes]

일본어 문서

An Additional 11 shipping advices [47boxes]

책, 연간물, 소책자

■ 노획된 적의 문건[Captured Enemy Documents]

SA200001~208072 [186boxes]

대부분 한국어로 된 문서들로 잠재적인 정보 가치를 가지는 문서들이다. 이들 문서들은 ATIS에 의해 번역이나 발췌 또는 요약되어 “Enemy Documents”나 “Bulletin, Enemy Documents, Korean Operations”로 발간되었다. 일부 SA번호 사이의 공백은 지도와 같이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인계되기 전에 삭제된 것이다.

■ 영화

242-MID [2,576items]

친소-반미를 나타내는 북한 영화

44)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북한관계사료집』 시리즈로 간행되었다.

3. 자료집에 수록된 북한노획문서의 특징과 내용

가. 자료집에 수록된 북한노획문서의 자료 현황

한국전쟁 자료총서 73~74권에 수록된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20만 단위의 노획된 적의 문건(Captured Enemy Documents)에서 발췌하였다.⁴⁵⁾ 이 자료군은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 산하 군정보부(MIS)의 ATIS가 정리한 것으로 시기상으로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가 재임하던 1950년 6월부터 1951년 4월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즉 ATIS가 번역한 “(적의 문건) Enemy Documents” 가운데 북한군(North Korean Force) 주제의 문서철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북한군(North Korean Force)’는 Issue No. 1~Issue No. 31로 이루어진 31권과 보충문건인 Issue No. 1~Issue No. 5로 총 36권으로 이루어졌다.

본 자료집에서 다루는 “적의 문건 : 북한군”의 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45) 그동안 20만 단위의 북한군 노획문서는 방선주 박사에 의해 그 실체가 공개되었다. 그러나 방선주 박사에 의해 이루어진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RG242 내 선별노획문서 조사연구」는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되어 있는 실제 북한 노획문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미 극동군사령부는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문서를 전체 이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선별노획문서>에서 결락되었던 부분의 다수가 이번에 확인한 ATIS의 “적의 문건”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자료집에 수록된 “적의 문간: 북한군” 자료 현황(Issue No. 1 ~ 31)

연번	생산날짜	수록 문서번호	매수
Issue No. 1	1950. 9. 26.	200326, 200262, 200272	34
Issue No. 2	1950. 10. 5.	200320, 200329, 200337, 200338, 200339, 200344, 200377, 200376, 200401, 200454, 200455	21
Issue No. 3	1950. 10. 12.	200047, 200419, 200446, 200449	29
Issue No. 4	1950. 10. 21.	200525, 200501	7
Issue No. 5	1950. 10. 31.	200572, 200570, 200571, 200566, 200575, 200593, 200602	25
Issue No. 6	1950. 11. 8.	200687, 200686	33
Issue No. 7	1950. 11. 16.	200714	1
Issue No. 8	1950. 11. 22.	200655, 200780	18
Issue No. 9	1950. 11. 27.	200811, 200817, 200774, 200738, 200792	28
Issue No. 10	1950. 12. 6.	200872	5
Issue No. 11	1950. 12. 13.	200656, 200915, 201371	71
Issue No. 12	1950. 12. 19.	200936	3
Issue No. 13	1950. 12. 26.	200117	20
Issue No. 14	1950. 12. 29.	200118	33
Issue No. 15	1951. 1. 3.	200118, 200884, 201100, 201021, 201103	62
Issue No. 16	1951. 1. 10.	201030	3
Issue No. 17	1951. 1. 13.	200812, 201310	21
Issue No. 18	1951. 1. 19.	200691	33
Issue No. 19	1951. 1. 30.	201312, 201197	2
Issue No. 20	1951. 2. 3.	-	-
Issue No. 21	1951. 2. 6.	-	-
Issue No. 22	1951. 2. 8.	201517	6
Issue No. 23	1951. 2. 13	200904, 200814, 201936	137
Issue No. 24	1951. 2. 16.	-	-
Issue No. 25	1951. 2. 21.	-	-
Issue No. 26	1951. 2. 26.	200809, 201893	30
Issue No. 27	1951. 3. 7.	200892, 201586, 201587, 201961, 201949	23
Issue No. 28	1951. 3. 11.	-	-
Issue No. 29	1951. 3. 17.	201071, 201886, 201765, 202028, 202051	52
Issue No. 30	1951. 3. 21.	200898	42
Issue No. 31	1951. 4. 3.	-	-

위 목록에서 보듯이 본 자료집에 수록된 “적의 문건: 북한군”의 주요 문서는 총 71건에 960여 매이다.

추가로 ATIS 적의 문건에는 보충자료(Supplement)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적의 문건 가운데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군을 전부 완역하여 회람하였다. 이 기간 중에 발간된 보충문건은 총 5건에 430매이다.

[표 4] 자료집에 수록된 “적의 문건: 북한군” 자료 현황(보충문건)
(Supplement Issue No. 1 ~ 5)

연번	생산날짜	수록 문서번호	매수
Issue No. 1	1950. 10. 17.	미상의 북한군 사단에서 작성한 군대 표식 및 재래식 무기 표시	30
Issue No. 2	1950. 10. 25.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1949년 작성 하여 발행한 통신 매뉴얼	139
Issue No. 3	1950. 12. 5.	개전 전후 한국군의 통신을 감청한 소련군 고문단 무르쥬 중위의 보고서	100
Issue No. 4	1950. 12. 16.	중국인민지원군의 지뢰 매설 방법, 전략 등	32
Issue No. 5	1950. 12. 13.	북한 민족보위성에서 작성한 참모부 작성 매뉴얼	132

나. 자료집에 수록된 북한노획문서의 주요 내용

본 자료집에 수록된 “적의 문건: 북한군”의 주요 문서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12가지 소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해당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① 작전명령서철

주요 작전명령서철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6·25전쟁 전후 발행한 북한군 작전명령서이다. 1950년 6월 23일에 발행한 북한군 제783부대의 전투명령서[200817], 1950년 6월 북한군 제2사단의 전투명령서[301103] 등이 있다. 둘째, 낙동강전투 시기에 발행한 명령서이다. 북한군 제4사단이 발행한 작전명령 제52호로 안동에서 함창으로 진격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200419], 북한군 제9사단의 1950년 8월 28일의 낙동강 도하계획[200501] 등이 있다. 셋째, 유엔군이 북진하여 북한군의 방어가 긴급히 필요해지던 시기의 명령서이다. 1950년 8월 1일의 북한군 제317포병부대의 인천방어문건[200602], 1950년 9월 4일의 인천방어 정찰명령서[200455], 9월 8일 북한군 제226부대의 인천방어계획[200454], 1950년 9월 22~30일의 함경남도 방어사령부의 방어전투계획[201936], 1950년 10월 13일 평양지구방어사령부의 정찰지령서[200915] 등이 있다.

② 일기류

일기류는 북한군 각 사단과 연대의 이동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특히 각 일기류에 나타난 해당 병사들의 일기 내용에는 부대 사기, 부대의 사상자, 전투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어 전쟁사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전쟁 이전인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의 이동로 및 소속부대의 피해상황을 기술한 리홍식의 일기[200272], 대전에서 낙동강까지의 이동로를 기술한 최성환의 일기[200320], 인천에서 진주까지 이동로를 기술한 윤형기의 일기[200329], 북한군 계탈라 부대원이었던 이견창이 1950년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이동로를 기술한 일기[200344] 등 남침 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10여 종의 일기와 유엔군 북진 시 후퇴하던 북한군의 이동 및 상황을 알 수 있는 1950년 11월 4일부터 1951년 1월 7일까지의 김형록의 일기[201893] 등이 있다.

③ 북한군의 유엔군 포로 취급 및 시설

6·25전쟁 초기전투에서 북한군은 미군을 포로로 획득했다. 북한군은 이들 미군 및 국군 포로 취급과 포로 시설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명령문으로 하달했다. 이 가운데 1950년 7월 20일 김책 전선사령관과 강건 총참모장의 연명으로 하달된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 규정[200525]이 있다. 포로수용소 설치에는 10시간 노동제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프로그램으로 각종의 선전 활동이 언급되고 있다. [200338]

④ 미군포로 신문기록

노획문서에는 북한군이 사로잡은 미군 포로에 대한 신문기록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본 자료집에는 Samuel Esudu[200572], Larey[200570], 미상[200571], Kaeraetu[00566] 등의 신문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전투규정 및 상학교재

북한군 노획문서에는 전투규정과 상학교재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1950년 6월 남침을 앞두고 정신 무장을 강조하기 위해 발행한 정치상학교재[주제: 조선인민군은 해방의 군대] [200047], 전투 중 도망자 처벌에 대한 규정 [200575], 1949년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에서 발간한 보병전투규정(1부와 2부로 구성) [200117, 200118], 1950년 10월 14일 김일성과 박헌영 연서로 작성한 북한군에게 보내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제70호[201312], 청천강 지역에서 기갑부대 운용을 명령한 제105전차사단장 류경수의 전투명령 제5호[201586] 등이 있다.

⑥ 북한해군

북한군 노획문서에는 해군에 관한 훈련일지, 훈련계획서 등이 번역(Full Translation)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북한해군의 훈련 및

전쟁 초기 훈련 및 전투계획, 전투보고서 및 부대일지 등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잘 알려지지 북한해군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50년 6월 10일 영흥만 일대에서 이루어진 북한군 제2정대의 항해 훈련 계획서[200811], 1950년 4월 북한군총참모부가 수행한 북한 해군의 함대 검열[200884], 북한해군 제3정대의 전투배치 계획표[200812],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작성된 북한해군 제599부대의 전투보고서[200691], 북한해군 제599군부대의 1950년 8월 전투일지[200904], 북한해군 제2정대의 총직일관이 1950년 7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작성한 부대일지 [200814], 전쟁을 앞두고 1950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전 훈련을 전개하고 수정한 북한해군 제1전단의 작전임무 보고서[200898] 등이 수록되어 있다.

⑦ 북한공군

노획문서에는 다량의 북한공군의 비행 노트, 학습 제강 등이 있다. 하지만 ATIS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서 위주로 번역하여 정보로 활용하였다. 1950년 YAK-9, YAK-11 등을 운용하여 훈련한 제887공군 부대의 훈련 파일[200655], 1950년 9월 5일 평양 근교인 강동군에 새로운 공항 건설을 명령한 명령서철[200738], 추격기 연대의 대대 훈련보고서철[200656] 등이다.

⑧ 러시아 문서

러시아어로 작성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한 주요 문건 가운데에는 군 기술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소련이 분석했던 미군의 사단 편제 및 조직에 대한 평가서[200687], 1950년 작성된 3단계로 이루어진 북한군의 남침 공격계획[200686], 소련 신문 프라우다가 1950년 8월에 발간한 잡지에 실린 전 서울주재 소련영사 샤브시나의 논문 “한국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201517] 등이 수록되어 있다.

⑨ 중공군 문서

중공군 문서는 주로 전투보고서, 전투 종결보고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 스촨 지역의 서부 군구에서 김일성을 응원하는 편지[200714], 중공군 제66군의 운산지구 전투결과 총결 보고서[201371], 연길 출신의 중공군 김호길이 1947년 6월부터 1950년 3월까지 이동로를 작성한 일기[201021], 중공군 소부대 야간 전투 자료[201961], 1951년 1월 24일에 작성된 중공군의 백운산 일대의 전투명령서철[201949], 1951년 1월 9일 작성한 중공군 제38군의 제3차 전역 경험 총결 보고서[202028] 등이 있다.

⑩ 보충문건

이 자료집에 수록된 보충문건(Supplement)는 총 5건으로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북한 및 중공군이 발간한 매뉴얼을 중심으로 발췌 및 완역을 하였다. No. 1은 북한군 사단(미상)에서 작성한 부대 표식 및 재래식 무기 표시를 담은 문건이다. No. 2은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1949년 작성하여 발행한 통신 매뉴얼로 통신 일반규정, 전투 시 지켜야 할 통신 규정 등을 수록하고 있다. No. 3은 소련 고문관인 무르진(Murzin) 중위에 의해 작성된 무선 감청보고서이다. 이 감청보고서는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한국군 전방사단(6사단, 3사단)의 무선 보고뿐만이 아니라 육군본부, 해군부대, 각 행정부서(법무부, 사회복지부 등)의 무선보고도 감청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보면 당시 개전 후 북한군(소련군사고문단의 지원)은 전방의 국군 부대뿐만이 아니라 육군본부 및 행정 부서의 움직임까지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No. 4은 1950년 8월 진주 부근에서 노획한 중국어로 쓰여진 문서로 지뢰 매설 방법 및 전략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진주 부근에서 활동한 북한군 제6사단(방호산)은 중국인 민해방군 제165사단이 북한에 들어와 부대를 변경한 것으로 다수가 중

공군의 전투 기술과 기재를 활용하고 있음을 반증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No. 5은 1949년 북한 민족보위성에서 작성한 참모부 야전 매뉴얼로 참모부의 조직, 운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⑪ 기타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 문서 가운데에는 1947년 6월 28일 북한 인민위원회 결정으로 작성한 청진항을 30년 동안 소련 해운회사에 양도하는 지시 문건[200852], 박헌영 결혼식의 북한 당, 군 주요 직위자 좌석 배치도[200792], 남한지역에 밀파된 공작원 명단[201100], 강건 사망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애도문[201197] 등을 수록하고 있다.



4. 맺음말

ATIS는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미국 남서태평양 육군의 한 부서로 조직되어 이후 일본점령과 한국전쟁기에 운영되다가 1951년 12월 군사정보단(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Group)으로 재편되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그 임무도 인계되었다.⁴⁶⁾

이렇게 한국전쟁기 ATIS는 산하 부대로 ADVATIS를 파견하여 한국전선에서 적의 문건과 포로심문을 통해 적의 전투서열과 작전 계획, 병참 관련 정보 등 전쟁에 필수적인 정보를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전 및 사보타주 등의 활동까지 전개하여 전쟁에 기여하였다. 또한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에 대한 심문 및 각종 문서를 수집 정리하여, 전략정보(Tactical Intelligence) 및

46) 정용욱, 「6.25전쟁 전후 NARA 한국 관련 자료의 활용 현황 및 과제」,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V』, 2007, 45쪽.

지리정보(Geographic Intelligence)로 분류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후 ATIS는 극동군사령부 군정보대로 재편되었고, 다시 500군정보대로 개편되어 정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작전을 수행하였다.



연구소 동정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 독립기념관 및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교류 협의
 - 일시 / 장소 : 2020. 5. 12.(화) / 독립기념관(천안)
 - 참석자
 - 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조성훈) 및 군사사부장(심현용),
 - 나. 독립기념관 : 관장(이준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신주백)
 - 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소장(신주백), 자료부장(김영임)
및 팀장(유완식)



2. 인 사

- 신규임용
 - 김상규(전쟁사부) : '20. 6. 1.부
 - 한동훈(군사사부) : '20. 7. 1.부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자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군사제도·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imhmd.2017.105..103.010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
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김태헌)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부분개정 2017. 8. 1

<목 차>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269
제 2 조	적용대상		269	
제 3 조	적용범위		269	
제 4 조	용어의 정의		269	
제 5 조	연구부정 행위의 범위		270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71
제 7 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272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273
-------	--------------	-------	-----

제 9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273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273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274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274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275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275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276
제16조	판 정	276
제17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276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277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277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278
부 칙		27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심현용(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광서(조선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연세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근욱(서강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신재(군사편찬연구소)	이한우(서강대학교)
전호수(군사편찬연구소)	정용욱(서울대학교)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 편집간사

김태현(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0/6(第115號)

2020년 6월 9일 印刷

2020년 6월 15일 發行

發行處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印刷處 국군인쇄창 (M20050452)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115. 2020.6.

Na, Sang-chul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Korean Service Corps(KSC) during the Korean War
Kim, Do-min	The ROK military's early experiences with studying in West Germany and their impact
Shin, An-sik	A Study on the Status of Pyeongyang[Seogyeong] and it's Fortress System in the Goryeo Dynasty
Noh, In-hwan	System and Operation of Milbu(密符) in the Joseon Dynasty
Choi, Deok-kyoo	U.S. Navy Commodore Shufeldt and the Establishing Joseon(former Korea)-U.S. diplomatic Relations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mnd



ISSN 1598-317X